

# 과거와 대화

# 미래의 성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Ⅱ) -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 (Ⅱ) -

目次

Ⅱ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4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진실규명	98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292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430

目次

Ⅲ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62.4 I

부일장학회 헌납(정수장학회) 및 경향신문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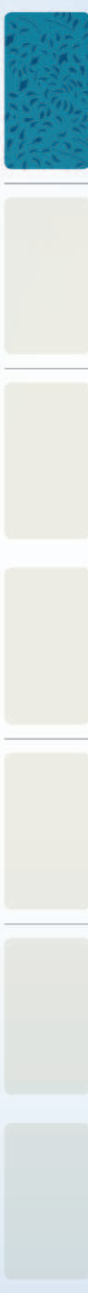

**신정사유**

- 5·16 쿠데타의 주동세력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의혹, 정경유착, 불법적인 정치 자금조성을 유발한 중요한 계기

**조사방향**

- 국가형법권 남용,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 여부 조사
- 당시 법무부 장관 및 중정 부신지부장, 담당수사관 등 사건관계자 진술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 I. 개 요

---

- 1. 조사 목적 · 8
- 2. 사건 개요 · 9

## II. 조사 내용

---

### 1. 핵심의혹 · 12

---

- 가.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 12
  - 나.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 13
- 

### 2. 자료 조사 및 분석 · 14

---

#### 가. 부일장학회 / 14

- 1) 국정원 보유자료 / 14
- 2) 타 기관 보유자료 / 14
-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14
- 4) 유족 제공 자료 / 15
- 5) 부산일보·정수장학회 제공 자료 / 15
- 6) 일반 자료 / 15

#### 나. 경향신문 / 15

- 1) 국정원 보유자료 / 15
- 2) 타 기관 보유자료 / 16
- 3) 일반 자료 / 16

---

3.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 16

---

가. 부일장학회 / 16

- 1) 金智泰 유족 / 16
- 2) 전 중앙정보부 직원 / 17
- 3) 「5·16장학회」 및 「정수장학회」 관계자 / 19
- 4) 사건 관련인물 / 19

나. 경향신문 / 20

- 1) 경향신문측 인물 / 20
- 2) 전 중앙정보부 직원 / 22
- 3) 사건 관련인물 / 23

### Ⅲ. 조사 결과

---

1.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 25

---

가. 사건의 발단 및 배경 / 25

나. 재산헌납 과정 / 40

다. 헌납재산의 성격 및 이전 경위 / 48

라.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 58

---

2.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 61

---

가. 1960년대 초반의 정권과 언론 / 61

나. 경향신문 당시 현황 / 63

다. 간첩 사건과 경향신문 / 70

라. 경향신문 매각과정 / 80

마. 매각 과정에 대한 정권의 개입 여부 / 85

---

3. 재산헌납 및 매각과 「5·16장학회」(現 정수장학회) 설립 · 91

---

### Ⅳ. 결론 및 의견

---

1. 결 론 · 94

2. 위원회 의견 · 96

---



# I 概 要

## 1 調 査 目 的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에 따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 그 동안 이 사건들은 5.16 쿠데타 주동자들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되어 왔고
  - 특히 이러한 정치공작에 中央情報部가 앞장서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아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을 엄정히 밝히고자 한 것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사실을 바로잡음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진실위」는 지난날 야기된 비슷한 유형의 권력남용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 國情院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기틀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 2

## 事件 概要

-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5.16 쿠데타 직후 주동세력들이 쿠데타의 명분을 세우고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만연했던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 中央情報部 부산지부는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당시 재산 축적 과정을 두고 평판이 좋지 않았던 前 부산일보 사장 金智泰를 희생양으로 지목, 비리사실을 입수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
  - 62년 4월 中央情報部가 金智泰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후, 수사 과정에서 中央情報部와 「국가재건최고회의」 관계자들이 金智泰 및 그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석방 등 신변 안전보장을 내세워 재산헌납 압력을 행사했고
  - 62년 5월 24일 金智泰는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후 5월 25일 구속 상태에서 자발적 기부헌납 형식으로 부산일보 등 언론 3社 주식과 부산시내 소재 토지 100,147坪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며
  - 62년 6월 20일 「5.16장학회」에 헌납한다는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한 후 6월 22일 공소취소<sup>1)</sup>로 석방되었고
  - 62년 7월 7일 군사정부가 朴正熙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金智泰 헌납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한 과정에 대한 논란임

1) 62년 6월 22일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재판장 준장 朴基錫), 金智泰 등 7명에 대해 군법회의법 제373조 제1항 1호에 의거 공소취소 결정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62년 당시 朴正熙 정권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신문의 대정부 비판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겨 대응책을 모색해 오던 중
- 65년 4월 8일 中央情報部는 경향신문 체육부장 李馨白 간첩사건을 발표하고, 이를 기화로 사주인 李俊九 사장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5.8)한 후 금융권에 압력을 가해 경향신문을 경매 신청(7.9)하게 하였으며
- 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매에서 경향신문은 朴 대통령과 同鄉으로 단독 응찰한 金喆浩 기아산업 사장에게 낙찰<sup>2)</sup>되었고
- 金喆浩는 朴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李厚洛 비서실장의 말에 따라 신진자동차로 소유권을 이전(69.1)시켰으며,<sup>3)</sup> 그 후 朴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방송과 통합(74.11)되면서<sup>4)</sup> 경향신문 역시 「5.16장학회」 소유로 넘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74년 11월 이후 유신시절 「5.16장학회」는 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경향신문·부산일보 등 4개 언론사를 보유

○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62년 7월 설립된 「5.16장학회」는

- 朴 대통령의 동서인 趙泰浩(65.10-71.6 이사, 80.7-88.11 5대 이사장)와 李厚洛(66.10-74.7 이사)·黃龍珠(66.10-74.7 이사) 등 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이사회에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2)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p.291-292

3)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p.291-293

4)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 \* 62년 7월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구사범 동기인 曹增出·王學洙(최고회의 자문)와 측근인 崔世卿(최고회의 고문)·朴浚圭(공화당 의장)·嚴敏永(내무부장관)·金永驥(대구사범 교장) 등을 「5.16장학회」 이사 및 부산 일보·문화방송 사장 등으로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
- 10.26사건 이후에도 李奎浩(80.2-84.2 이사) 문교부장관 등 당시 권력 핵심인물들을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등 박 대통령 유족들은 군사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 82년 1월 朴正熙·陸英修의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95년 9월 朴權惠 現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에 취임하여 9년여간 재임하다가 05년 2월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며
- 05년 3월 이후 박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으로 02년 5월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바 있는 崔弼立 前 뉴질랜드 대사가 후임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 현재(04.3 기준) 문화방송 주식 30%(6萬주)·부산일보 주식 100%(20萬주), 경향신문 사옥부지 723坪 및 현금 185億원을 기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Ⅱ 調査 内容

### 1 核心 疑惑

#### 가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 金智泰 재산헌납 과정의 강제성 유무
  - 재산헌납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구속 상태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中央情報部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
  - 5.16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金智泰만이 재구속되어 재산을 헌납하게 된 이유
  - 62년 4월 金智泰 구속 수사과정에서 中央情報部 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측에서 석방 등 신변 안전보장의 대가로 재산 헌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 구속수사 및 재산헌납 과정에서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 재산헌납 과정에서 中央情報部와 최고회의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
  - 金智泰 재산 중 부산일보 등 언론 3社와 「부일장학회」가 헌납 대상이 된 배경
- 金智泰 구속 과정에서의 적법·타당성 여부
  - 中央情報部가 金智泰와 妻 宋惠英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를 조작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5.16쿠데타 자금 요구 거절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였는지 여부

○ 헌납재산의 성격 및 이전 경위와 관련

- 부산일보 · 한국문화방송 · 부산문화방송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 관계
- 국가에 헌납된 金智泰의 재산이 「5.16장학회」로 이전된 경위, 특히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가 「5.16장학회」에 기부된 후 국방부로 무상 양도되는 과정에서의 中央情報部 개입 여부

**나**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 朴正熙 정권이 많은 언론기관 중 경향신문에 대해서만 강제 매각을 추진한 배경
- 朴 대통령이 65년 경향신문의 ‘허기진 군상’ 등 대정부 비판 보도와 관련하여 金炯旭 中央情報部長 등에게 경향신문 매각 처리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당시 中央情報部가 경향신문 매각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
- 中央情報部가 경향신문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李俊九 경향신문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부당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尹祐鉉 월북사건 및 경향신문 체육부장 李馨白 간첩사건이 경향신문 매각에 미친 영향 및 매각시 中央情報部가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회수 등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2 資料 調査 및 分析

### 가 부일장학회

#### 1) 國情院 보유자료 : 94건 1,147쪽

- 金智泰 동향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67건 504쪽과 경찰 등 他 기관 작성 존안 보고서 및 참고자료 27건 643쪽을 비교 분석
- 金智泰 재산헌납의 강제성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당시 中情 및 최고회의측의 金智泰에 대한 평가 등 일부 관련 자료 확인

#### 2) 他 기관 보유자료 : 342건 1,262쪽

- 「서울시교육청」 보관 ‘5.16장학회 기본재산 무상양도 허가공문’ 등 117건 327쪽과 「국가기록원」 보관 ‘마포교도소 수용자 金智泰 명부’ 등 7건 158쪽
- 국회 보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제87차 상임위 회의록’ 1건 25쪽, 「부산동부지원등기소」 보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 217건 752쪽 검토

####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1건 23쪽

- 金智泰 명의 기부승낙서 등 위·변조 의혹 문건 7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명날인의 차이점 및 기부날짜 변조사실 확인

4) 유족 제공 자료 : 35건 400쪽

- 金智泰의 처 宋惠英 등 유족이 보관하고 있는 ‘62년 7월 31일자 黃龍珠의 편지’ 사본 등을 입수하여 내용 검토

5) 부산일보·정수장학회 제공 자료 : 9건 48쪽

- 부산일보 전무 趙鏞生이 제공한 ‘부산일보 손익 계산’ 등 사건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내용 검토

6) 일반 자료 : 165건(권) 5,900쪽

- 단행본 등 관련 책자 20권 2,500쪽, 월·주간지 12권 600쪽, 신문·방송·인터넷 자료 25종 127건 800쪽, 논문 6건 등 기타 자료 2,000쪽 등 공개되어 있는 일반 자료에 나타난 각종 의혹 및 주장을 검토

나

경향신문

1) 國情院 보유자료 : 82건 1,901쪽

- 경향신문 관련 각종 보고서 54건 1,282쪽과 李俊九·洪研洙·李馨白 등 사건 관련자 동향 및 참고자료 28건 619쪽을 분석
- 경향신문 매각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건은 없으나, 李俊九 등에 대한 수사관련 문건 등 일부 자료를 확인



2) 他 기관 보유자료 : 8건 10,050여쪽

- 「서울중앙지검」 보관 ‘경향신문사 간첩사건 재판기록’ 3건 10,000여쪽, 「국가기록원」 보관 ‘李俊九·洪化洙에 대한 서울지법 판결문’ 등 3건 32쪽, 「서울지방중부등기소」 보관 ‘경향신문사 법인 등기부 등본’ 등 2건 17쪽의 자료를 분석·검토

3) 일반 자료 : 210건(권) 16,547쪽

- 단행본 등 책자 23권 10,716쪽, 신문 및 방송 165건 437쪽, 국회 속기록 등 기타 공개되어 있는 일반 자료 22건 5,394쪽에 나타난 경향신문 매각사건 관련 각종 의혹 및 주장 내용들을 종합 검토
- 金炯旭·白○○·方○○ 등 사건 당시 中情 핵심간부들의 회고록과 국내 언론史 관련 자료 등을 분석<sup>5)</sup>

3 關聯人物 面談調查 內容

가 부일장학회 : 총 18명

1) 金智泰 유족 : 6명

가) 金榮球(68세, 金智泰의 장남, 前 조선견직 회장)·金榮柱(61세, 金智泰의 3남, 前 삼화그룹 회장)

- 05년 4월 28일 면담조사 실시

5)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반역자의 고백」(白○○, 1996), 「KCIA 비록- X 파일」(文日錫, 1996) 前 中情 감찰실장 方○○ 증언집 등 참고

- 金榮球는 62년 사건 당시 한국생사 전무로서 朴正熙 장군이 부산일보 등 언론사를 헌납받은 것은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로부터 쿠데타 전후 언론사 장악의 필요성을 조언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
- 金榮柱는 62년 재산헌납 당시 정황 및 사건이후 金智泰 주변 상황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

나) 宋惠英(71세, 金智泰의 妻) · 金榮哲(53세, 金智泰의 5남) · 金榮燦(49세, 金智泰의 6남) · 李明善(52세, 金榮哲의 妻)

- 05년 4월 27일 1차 면담에 이어 6월 21일 2차, 7월 12일 3차 면담 실시
- 宋惠英은 62년 4월 中情에 의해 밀수 혐의로 구속된 당사자로 당시 자신의 구속은 체일중인 金智泰를 귀국시키기 위한 中情의 술책이라고 진술
- 金榮哲 · 金榮燦은 62년 군사정부가 부산일보 등 언론사만 헌납받은 것은 혁명의 정당성 홍보와 효율적인 국가통제를 위해 언론사 장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2) 前 中央情報部 직원 : 7명

가) 朴○○(78세, 당시 中情 부산지부장)

- 05년 4월 8일 면담조사 실시
- 62년 4월 金智泰 구속수사 당시 中情 부산지부장으로 수사 착수 배경과 재산헌납 과정에서 朴正熙 의장 등 최고회의 관계자들의 개입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나) 朴寅基(가명, 76세, 당시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 05년 4월 14일 면담조사 실시
- 金智泰 수사를 직접 담당한 수사 실무 책임자로 수사 착수 배경 및 수사진행 과정과 재산헌납 과정 등에 대하여 진술

다) 崔日晷(가명, 80세, 당시 中情 차장)

- 05년 4월 13일 면담조사 실시
- 당시 中情 부장 金鍾泌 및 부산지부장 朴○○과 육사 동기생(8기)이자, 사건 당시 中情 차장을 역임한 자로 中情 보고 체계, 朴○○ 등과 中情 부장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와의 관계 등 中情의 운영 전반상황에 대해 진술

라) 金容成(가명, 78세, 당시 中情 부산지부장, 朴○○ 후임)

- 05년 4월 15일 면담조사 실시
- 朴○○ 후임 부산지부장으로 근무 당시 金智泰 재산헌납은 사유 재산 강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었으며 헌납재산 처리는 中情 본부에서 별도 팀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진술

마) 기타 당시 中情 직원 : 3명

- 05년 4월 18일 朴智成(가명, 80세), 4월 19일 金閔植(가명, 78세), 4월 28일 李哲圭(가명, 78세) 등에 대해 각각 면담조사 실시
- 이들은 당시 中情 부산지부 근무자들로 金智泰 여론 및 수사 관련 본부 지시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

3) 「5.16장학회」 및 「정수장학회」 관계자 : 2명

가) 高元增(84세, 前 법무부장관)

- 05년 4월 19일 면담조사 실시
- 62년 6월 朴正熙 의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5.16장학회」 설립을 추진했으며, 朴 의장에게 金智泰 석방을 건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나) 崔弼立(77세, 정수장학회 이사장)

- 05년 6월 28일 면담조사 실시
- 05년 3월 25일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金智泰 재산헌납은 자발적 기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4) 사건 관련인물 : 3명

가) 金鍾漢(85세, 金智泰의 측근,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 05년 5월 25일 면담조사 실시
- 金智泰의 측근으로 자신 명의의 부산일보 등 언론 3社 주식에 대한 기부승낙서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일보 등 언론 3社가 헌납대상이 된 것은 朴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이자 부산일보 주필인 黃龍珠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

나) 金尙勳(69세, 부산일보 사장) · 趙鏞生(61세, 부산일보 감사)

- 05년 6월 11일 부산일보사를 방문, 의견 청취

- 62년 사건 전후 부산일보의 재정상태와 부일장학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

## 나

### 경향신문

#### 1) 경향신문측 인물 : 7명

##### 가) 洪研洙(74세, 李俊九의 妻, 前 경향신문 이사)

- 05년 6월 2일, 6월 9일 두 차례 면담조사 실시
- 65-66년간 中情이 간첩사건과 예금인출 금지 등을 통해 매각 압박을 하여 보상금 2億원을 받고 주식을 넘겼고, 매각 후 金炯旭 中情 부장으로부터 경향신문은 「5.16장학회」로 넘어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

##### 나) 金景來(78세, 前 사회부 차장)

- 05년 6월 8일 면담조사 실시
- 당시 경제부 기자들로부터 경향신문의 채무상태가 他社에 비해 양호했음에도 청와대와 中情이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 은행측이 무리하게 채무 일시상환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

##### 다) 崔相玩(68세, 前 편집부 기자)

- 05년 6월 8일 면담조사 실시
- 金在春 前 中情부장은 洪研洙의 오빠인 洪化洙와 육사 동기생(5기)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였고, 경향신문을 인수할 의사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

라) 李鍾全(71세, 前 사회부 기자)

- 05년 6월 10일 면담조사 실시
- 당시 경매장소에 기아산업측 직원 1명과 기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있었고, 집달리와 기아산업측 사람이 순식간에 서로 서류를 주고 받은 후 경매가 끝났다고 진술

마) 張明錫(66세, 前 경제부 기자)

- 05년 6월 18일 면담조사 실시
- 경향신문 사건은 국가 권력이 국가보안법 등을 악용하여 군사 정권에 대해 비판적 성향인 언론사를 강제로 뺀 것이라고 진술

바) 孫忠武(66세, 前 사회부 기자)

- 05년 6월 27일 미국에서 면담조사 실시
- 66년 경향신문 매각 사건의 주역은 金炯旭 中情 부장이며, 자신은 77년 6월 美 의회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金炯旭이 경향신문을 강제매각토록 한 주모자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진술

사) 徐東九(68세, 前 외신부 기자)

- 05년 7월 19일 면담조사 실시
- 朴正熙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비판 및 한일회담 반대집회 기사를 보도한 경향신문의 논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 2) 前 中央情報部 직원 : 18명

### 가) 方○○(78세, 당시 中情 감찰실장)

- 05년 6월 14-15일 미국에서 면담조사 실시
- 66년 초 金炯旭 부장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건에 개입하게 됐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李俊九 사장 부부에게 경향신문을 빨리 포기하도록 심리공작을 전개했다고 진술

### 나) 李成逸(가명, 83세, 당시 中情 대공활동국장6)

- 05년 5월 14일 면담조사 실시
- 65년 金炯旭 부장이 吉○○ 대공활동국 부국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경향신문 매각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후임인 洪○○ 국장이 부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 다) 柳英哲(가명, 74세, 당시 中情 부장 비서실장)

- 05년 5월 20일 면담조사 실시
- 66년 경향신문 매각은 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金炯旭 부장이 金鍾泌 등 쿠데타 주체세력들과의 권력투쟁을 의식하여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

### 라) 全澤秀(가명, 74세, 당시 中情 대공활동국 과장)

- 05년 5월 21일 면담조사 실시

---

6) 당시 中情 대공활동국(5국)은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

- 65년 5월 李俊九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李俊九 사장의 성향과 판결문 등으로 볼 때 당시 수사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마) 朴萬德(가명, 73세, 당시 中情 서울분실 과장)

- 05년 5월 14일 면담조사 실시
- 66년 경향신문 매각사건은 처음에는 白○○ 서울분실장이 주도했으나 方○○ 감찰실장이 뒷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바) 기타 당시 中情 직원 : 13명

- 대상자들에 대해 각각 1회씩 면담조사 실시
- 李俊九 사장에 대한 여론 및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내사 여부, 경향신문 인수 공작의 진행과정 및 공매 후 李俊九측에 제공한 대가 등에 대한 정황 설명

3) 사건 관련인물 : 3명

가) 金相賢(70세, 前 국회의원)

- 05년 6월 3일 면담조사 실시
- 사건 당시 洪研洙로부터 “李俊九 사장이 억울하게 사형될 것”이고 “吉○○ 中情 부국장이 신문사를 내놓지 않으면 李俊九 사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나) 吳壽德(78세, 洪研洙의 친구)

- 05년 6월 3일 미국에서 면담조사 실시



- 白○○ 中情 서울분실장은 李俊九 부부에게 경향신문 매각을 종용한데 이어, 자신에게도 경향신문이 매각될 수 있도록 洪研洙를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고 진술

다) 李桓儀(74세, 前 문화방송사장)

- 05년 6월 21일 면담조사 실시
- 71년 전북도지사에서 물러난 뒤 1년 8개월간 문화방송 사장으로 있던 중 74년 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을 문화방송과 통합하였다고 진술

※ 두 사건에 대한 면담 대상자 총 67명 중 21명 면담 거부

### Ⅲ 調查 結果

#### 1) 釜日獎學會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 가) 사건의 발단 및 배경

##### 1) 재산헌납 대상으로서의 金智泰 선정 배경

##### 가) 金智泰의 경력

- 金智泰는 08년 7월 부산 태생인 부산지역의 대표적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43년 5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하고, 8·15 광복 후 조선건직·한국생사·삼화고무등을 설립
- 50년 5월 제2대 민의원 선거에는 무소속(부산 甲)으로, 54년 3월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정치활동을 전개
- 56년 12월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자유당으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제명되었다가 57년 5월 복당한 후 58년 5월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정계 은퇴
- 49년 7월 부산일보 및 59년 9월 부산문화방송을 인수한데 이어 61년 2월 한국문화방송을 설립하는 등 언론사 운영
- 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 4년간 총 1萬 2,364명을 대상으로 17億 7,032萬 4,450환의 장학금을 지급
  - \* 60년 12월 모교인 부산상고에 「부상장학회」를 설립, 재학생을 대상으로 ‘金智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전개

○ 61년 5월 30일 5.16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에 의해 단행된 부정  
축재처리 방침에 따라 구속되었고, 61년 12월 30일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5億 4,570萬환을 납부

\* 부정축재처리법 제 2조 2항에 의거, 59년 한국생사 탈세사건 등 金智泰  
소유 기업체들이 탈세 등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

○ 62년 4월 24일 관세법·형법·농지개혁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재차 구속됐으나, 재산헌납 후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

\* ①관세법 : 60년 8월 妻 宋惠英과 해외 여행시 구입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카메라를 귀국시 未신고 ②형법 및 농지개혁법 : 실제 영농  
자가 아님에도 관세 구비서류를 위·변조하여 농지를 분배받아  
등기 ③국내재산도피방지법 : 金智泰 소유 조선전직이 일본에 수출한  
보증금 수수료를 일본에 예치

○ 68년 5월 생사수출조합 이사장 및 70년 한국생사협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 표창 및 각종 산업  
훈장을 받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다 82년 4월 11일 사망

※ 이러한 金智泰에 대해서

○ 부산일보 사장 재직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金朱烈의  
주검 사진을 보도하여 反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도한 언론인이자  
부일장학회 설립 등 장학사업도 전개한 기업인이라는 긍정  
평가가 있는가 하면

○ 탈세를 목적으로 「부일장학회」를 설립했고 부정축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상존

## 나) 金智泰와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과의 관계

### ○ 金智泰 장남 金榮球·삼남 金榮柱는 면담시<sup>7)</sup>

- 당시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朴正熙 장군(60.1.10-7.30 사령관으로 재임)은 대구사범 동기(32.3 졸업)인 黃龍珠 부산일보 주필을 통해 선친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 60년 4.19직후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비리를 고발한 기사에 항의하여 부산일보를 점거하자 朴 장군이 군대를 동원해 보호해 준 적이 있는 등 5.16 쿠데타 전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으나

### ○ 朴正熙 장군이 金智泰에 대해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을 내세워 부정축재 및 탈세를 일삼고 혁명사업에 非협조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sup>8)</sup>도 제기되는 점 등으로 보아

※ 朴正熙 의장은 부산에서 군수기지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를 통해 金智泰와 교류한 사실은 있으나, 金智泰에 대해 부정축재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다) 金智泰에 대한 쿠데타 자금 요청 문제

### ○ 朴正熙 장군의 5.16 쿠데타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 쿠데타 직전인 61년 5월 3일 당시 朴正熙 2군 부사령관이 군수사 참모장 金容珣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金智泰에게 500萬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7) 05년 4월 28일 金榮球·金榮柱 면담

8) 「진주지」(金漢重, 2000.4) 게재 ‘5.16과 1軍’ 제하 기고문

- 黃龍珠는 평소 金智泰가 집권당인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재벌의 속성상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자신이 金智泰에게 많은 신세를 진 처지를 고려하여 자금요청 사실을 金智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 o 金智泰측은 5.16 거사직전 朴正熙 장군이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金智泰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朴 장군은 이를 문전 박대 받은 것으로 생각<sup>9)</sup>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
- o 이와 관련
  - 金智泰의 장남 金榮球·삼남 金榮柱는 당시 朴 장군이 선친과의 친분을 믿고 혁명자금 500萬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산을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sup>10)</sup>
  - \*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은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로부터 朴 장군이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金智泰와 술을 마시면서 혁명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sup>11)</sup>
  - 당시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는 월간조선 88년 8월호 “5.16 장학회의 유물-정수장학회” 제하 기사에서 “후일 朴正熙 대통령에게 당시 金智泰에게 거사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9)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자명 金智泰 선생 전기 간행위원회, 2003)

10) 05년 4월 28일 金榮球 면담

11) 05년 4월 8일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 면담

※ 위 증언들로 미루어

- 당시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은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를 통해 金智泰에게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으나, 黃龍珠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 5.16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 환수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 재구속되어 강압적인 상태에서 재산을 다시 헌납한 경우는 金智泰 뿐이므로
- 유족측의 입장에서 볼 때, 5.16 쿠데타 이후 金智泰가 구속되어 재산을 헌납한 후 석방된 것은 거사자금 지원 거절에 따른 쿠데타 세력의 보복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라) 5.16 쿠데타 이후 부정축재자 처리

- 군사정부는 4월 혁명 이후 장면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정축재자 처리가 지지부진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사실에 착안, 국민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해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재산 몰수조치를 단행<sup>12)</sup>

\* 金容成(朴○○의 후임) 前 中情 부산지부장은 당시 5.16혁명 주체 세력들 사이에서는 비리재산의 국가헌납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하였다고 진술<sup>13)</sup>

-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정축재처리요강<sup>14)</sup>을 발표

12)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p.88

13) 05년 4월 15일 金容成 前 中情 부산지부장(朴○○ 후임) 면담

14)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pp.14-15

\* 金智泰는 4월 혁명 직후의 부정축재자 처리 명단에는 제외되었으나 5.16쿠데타 후에는 李秉喆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5월 30일 구속되었고, 6월 5일 재산헌납 결의 및 각서를 제출한 후 6월 30일 석방

- 61년 6월 14일 군사정부는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 金智泰 등 총 120명의 기업인들을 조사한 후 61년 8월 2일 총 378億 2,000萬환의 부정축재 환수액을 대상자들에게 통보

- 61년 8월 13일 부정축재처리 완화 방침을 통해 수정을 거쳐 12월 30일 환수액을 42億 2,800萬환으로 최종 확정

\* 61년 8월 2일 金智泰는 부정축재 환수금 9億 2,027萬환을 통보받았으나, 12월 30일 최종적으로 5億 4,570萬환으로 확정되자 주식과 현금으로 완납

※ 5.16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부정축재 처리’는 민주적 경제질서와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였으나, 당시 쿠데타 주동세력들은 비리 경제인들을 제물로 삼아 정치·경제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평가

## 2) 수사의 발단

### 가) 金智泰에 대한 中央情報部の 인식

o 金智泰 유족들 주장과는 달리, 朴正熙 의장은 金智泰에 대해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을 내세워 부정축재 및 탈세를 일삼고 혁명사업에 非협조적’이라고 생각<sup>15)</sup>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金智泰 장남 金榮球는 05년 4월 28일 면담시 “4.19 직후 선친과 朴 대통령의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

15) 「진주지」(金漢重, 2000.4) 게재 ‘5.16과 1軍’ 제하 기고문

- 國情院 보관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中情은 金智泰에 대해
  - 62년 2월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이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을 독대하기 이전에 부산지부가 작성한 ‘정치인 실태 보고서’에서는 “부일장학회 장려로 인하여 국가에 큰 도움이 되며 학생 각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 62년 3월 1일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서는 “금력과 권력에 의해 변절하는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일보와 육영사업 등에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다”고 기술<sup>16)</sup>하고 있고
  - 62년 3월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中情의 보고서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문란과 호화생활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범”으로 평가<sup>17)</sup>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당시 中情 부산지부 관계자들도 金智泰가 사생활이 문란한 데다 탈세를 위해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는 등 비난여론이 팽배했다고 진술
- \*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은 면담시 “당시 金智泰는 現 시가 1조원이 넘는 국방부 땅을 농민들로부터 쌀 2말 정도씩을 제공하는 대가로 헐값에 매수, 부일장학회 명의로 소유했다”고 주장<sup>18)</sup>

16) 國情院 보유자료, ‘정치인 실태 보고서’ (경찰 종로분실, 62.3.1)

17) 國情院 보유자료, ‘金智泰 동향내사 보고’

18) 05년 4월 8일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 면담



※ 中情 부산지부가 金智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 부산지역내에서의 김지태에 대한 비난 여론 등 부정적 평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中情의 金智泰에 대한 평가가 62년 2월 이후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볼 때 특정한 지시에 따라 수립된 계획하에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

나)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수사 지시 여부

- 당시 中情 부산지부장이었던 朴○○은 金智泰 수사에 대한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여부에 대하여
  - 2000년 4월 「진주지」에 게재된 “5.16과 1軍” 제하 기고문에서는 62년 정초 연휴(1.2-3)간 부산을 방문한 朴 의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金智泰 구속수사 지시를 직접 받았다<sup>19)</sup>고 주장한 바 있으나
    - \* 「62년도 의전일지」(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작성)에는 당시 朴 의장이 구정 연휴중(2.2-3)에 부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朴○○이 朴 의장 독대 시점을 1월 2-3일간으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
  - 최근 언론 인터뷰<sup>20)</sup>와 면담에서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朴 의장의 지시는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수사를 잘하라는 의도로 “金智泰에 대해 잘 알아보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언급

19) 「진주지」(김한중, 2000.4) 게재 ‘5.16과 1군’ 제하 기고문

20) 주간동아 04년 9월 23일자 “朴正熙와 金智泰 나쁜 거래를 했다” 중 朴○○ 인터뷰 기사

\* 朴○○은 05년 4월 8일 면담에서 “62년 1월 下釜한 朴 의장 독대시 金智泰에 대한 특별한 수사 지시는 없었으나, 알아보라는 언질을 받았다” 고 진술

※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金智泰에 대한 구속지시 여부와 관련

- 朴○○ 中情 부산지부장이 朴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이 논란을 야기하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최근 면담 등을 통해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 설령 “잘 알아 보라” 는 정도의 언질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절대적 명령권이 행해지던 계엄하에서 朴 의장과 독대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다) 中央情報部 부산지부의 독자적인 수사 여부

- 당시 金智泰 수사 책임자인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朴寅基는 면담 조사시
  - 쿠데타 직후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부산지역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金智泰에 대한 각종 비위사실을 입수하였으며
  - 이에 대한 수사계획을 수립, 부장(金鍾泌)을 경유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보고·승인을 받은 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고 진술
- \* 62년 3월 일본에 체류중인 金智泰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妻 宋惠英을 밀수혐의로 구속했고, 金智泰가 1주일 후 귀국하자 서울분실과 합동으로 귀국 즉시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sup>21)</sup>

21) 05년 4월 8일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 · 4월 14일 朴寅基 前 부산지부 수사과장 면담

※ 따라서 金智泰 구속 수사는 中情 부산지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中情 부장을 경유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中情 서울분실에서도 수사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당시 권력 핵심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 3) 수사 과정

#### 가) 金智泰 妻 宋惠英과 조선방직 간부 등 구속

○ 中情 부산지부는

- 62년 3월 27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金智泰 소유의 부산일보 전무 尹佑東, 한국생사 상무 李相學·金正鎬, 조선견직 전무 裴正基 등 임직원 10여명을 구속하는 한편
- 62년 4월 金智泰의 妻 宋惠英을 2,000萬환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00달러 상당의 서독제 카메라를 구입한 것과 관련 관세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당시 수사 책임자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朴寅基는 “宋惠英의 구속은 체일중인 金智泰의 조속한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sup>22)</sup>

#### 나) 金智泰 구속 과정

○ 中情 부산지부는 62년 4월 20일경 일본에서 귀국한 金智泰를 김포공항에서 체포, 부산으로 압송한 후 62년 4월 24일 부정 축재처리법 등 9개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22) 05년 4월 14일 朴寅基 前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면담

- \* 國情院 보유자료에서 金智泰의 구속일자가 62년 4월 24일로 확인됨에 따라,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金智泰가 일본에서 귀국한 시점은 4월 20일경인 것으로 추정
- 62년 5월 10일 軍검찰은 金智泰를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에 기소한데 이어 5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법 및 형법·농지개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
- 62년 5월 25일 金智泰는 구속 상태에서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경영권 포기 및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 소재 토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6월 20일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
- 62년 6월 22일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는 金智泰가 죄과를 뉘우치고 국가재건에 이바지할 뜻을 표명했다며 공소취소로 석방 조치

#### 다) 혐의내용 분석

- 62년 4월 24일 中情 부산지부는 金智泰를 구속하면서 부정축재처리법·외국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법·형법·농지개혁법·조세범처리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
- 中情이 金智泰 구속 당시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sup>23)</sup>로는
  - 金智泰의 妻 宋惠英이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백색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을 소지하였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와

23) 國情院 보유자료, ‘金智泰 신원조사서’ 중 金智泰 동향기록(부산지부 작성)

- 조선견직주식회사가 일본 동양레이온 회사에서 수출 보증금 수수료를 교부받아 일본에 예치한 것에 대해 국내재산도피방지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 실제 영농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 구비서류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농지 23萬여坪을 분배받아 등기를 완료한 것에 대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同 행사죄, 농지개혁법 위반 혐의와
  - 조선고무공업주식회사 건물 및 대지에 대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해 국가재산을 편취한 것에 대해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 해외여행 여비를 법인세 결산신고에 포함한 것에 대해 조세범 처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 위와 같이 中情 부산지부가 적용한 혐의점에 대하여 62년 5월 10일 軍검찰은 형법(허위공문서 작성 및 同 행사죄)·농지개혁법·관세법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만 적용,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에 기소
- 軍검찰의 구체적 기소 내용<sup>24)</sup>으로는
-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 宋惠英이 반지를 손에 끼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될 수 없고 또 카메라 등은 금수품이므로 휴대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24) 軍 檢 査 長 基 所 長 事 本

- 규정상 휴대품이란 500환에서 10萬환까지로 800萬환 상당의 물품은 휴대품이라 할 수 없으며, 金智泰가 해외여행자들의 대표격이므로 휴대품 반입 신고 의무가 있음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관련
  - 金智泰가 국가의 정당한 수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며
  - 金智泰의 서독여행은 당시 상대방 회사에서 초청을 받고 왕복여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으므로 국가에서 허용한 외국환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萬달러를 불법으로 가져간 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임
- 형법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농지개혁법 위반 관련
  - 증명서를 발부한 공무원들은 허위사실을 모르고 발부했고 그 서류에 의해 수속을 마친 당국자 역시 책임이 없으며
  - 농지개혁법의 규정대로 구입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고 한다면 지목을 변경해야 하나 변경하지 않고 농지를 대지라고 하는 것은 위법임
- 이러한 中情 및 軍 검찰의 구속혐의에 대하여 당시 金智泰의 변호사 李盛浩·金章鎬·崔崙喆 등은 변론을 통해 무리한 法 적용이라며 무죄를 주장<sup>25)</sup>했는데
-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석과 카메라는 휴대품으로 통관 규정에서 서면 외 구두신고도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宋惠英이 입국 당시 휴대품과 함께 손에 낀 반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25)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자명 金智泰 선생전기간행위원회, 2003)

- 일본 수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는 일본의 상거래에 있어서 개인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60년 이전에는 그 리베이트마저도 없었으며
- 형법의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만 범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이 성립하지 않는 한 同 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 o 朴 의장의 지시에 따라 金智泰 수사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 前 법무부장관 高元增은 “수사기록을 봤더니 중죄도 아니고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아무 것도 아니고 해서 10億 가까운 돈을 혁명정부에 헌납까지 했으니 공소취소로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朴 의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sup>26)</sup>한 바 있고
- o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朴寅基도 宋惠英에 대한 구속은 일본에 체류중인 金智泰의 조속한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sup>27)</sup>한 점으로 보아

※ 金智泰에 대한 구속은

- o 당시 中情이 적용한 혐의 내용 중 軍 검찰이 일부 혐의점만 인정하여 기소한 점과 金智泰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처 宋惠英까지 무리하게 구속한 것으로 미루어
- o 金智泰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26) 05년 4월 19일 高元增 前 법무부장관 면담

27) 05년 4월 14일 朴寅基 前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면담

## 라) 석방 과정

- 62년 5월 24일 金智泰는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에서 7년형을 구형 받은 다음날 ‘포기각서’를 작성한데 이어 6월 20일 기부 승낙서에 서명 날인한 후 6월 22일 軍 검찰의 공소취소로 석방되었으며
- 이러한 金智泰의 석방과 관련,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朴○○은 언론 인터뷰 및 면담 조사시
  - 金智泰 수사중 군수기지사령관 金容珣이 찾아와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심정은 金智泰 재산중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을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절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sup>28)</sup>했고
  - 62년 5월 일자 미상경 정보보고를 통해 申植秀(당시 최고회의 법률고문)가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金智泰를 면회, 재산포기 각서를 징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 당일 부산지역계엄사령관 겸 최고의원인 金容珣이 찾아와 “朴 최고회의 의장 각하의 뜻”이라며 金智泰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sup>29)</sup>
- 前 법무부장관 高元增은
  - 62년 6월 자신이 朴 의장에게 金智泰 기부재산에 대한 행정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공소취소로 석방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金智泰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건의<sup>30)</sup>하자

28) 「진주지」(김한중, 2000.4) 게재 ‘5.16과 1군’ 제하 기고문

29) 05년 4월 8일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 면담

30) 신동아 04년 9월호 高元增 前 법무부장관 인터뷰 기사



- 朴 의장이 金容珣에게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金智泰를 석방하라”고 지시하여 2-3일 후 석방<sup>31)</sup>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金智泰는 자서전인 「나의 이력서」와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에서 자신의 석방과 관련
  - 결심공판을 기다리던 중 면회를 온 측근이 문화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충고함에 따라 협상에 응하였으나, 석방된 이후 이행하겠다고 주장<sup>32)</sup>하였지만
  -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맞서는 경우 간부들과 수천 종업원이 희생당할 것이 안타까워 미리 작성해 온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하자 며칠만에 경남지구고등군법재판소는 자신을 비롯한 전원에 대해 공소취소를 선고<sup>33)</sup>하였다고 기술

※ 金智泰 석방은 62년 6월 20일 金智泰가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한 이후 前 법무부장관 高元墾의 건의를 받아들인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

## 나 | 재산헌납 과정

### 1) 경과

- 62년 4월 金智泰 구속 이후 수사 책임자인 朴寅基는 당시 부산 문화방송 사장 安星洙에게 재산헌납을 유도, 金智泰측이 재산헌납물품을 제출하자 바로 中情 본부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고

31) 05년 4월 19일 高元墾 前 법무부장관 면담  
 32)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자명 金智泰 선생 전기간행위원회, 2003)  
 33) 「나의 이력서」(金智泰, 한국능률협회, 1976)

- 62년 6월 前 법무부장관 高元增은 朴正熙 의장의 지시에 따라 구속중인 金智泰로부터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주식 및 부산시내 토지 100,147坪을 재단법인 「5·16장학회」에 무상 기증한다는 내용의 기부증낙서 서명·날인을 획득
- 62년 7월 20일 「5.16장학회」 재단 설립 등기시 金智泰 헌납 재산이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등재
- 63년 7월 5일 「5.16장학회」 이사회 결의로 기본 재산 중 부산 지역 토지 100,147坪을 국방부에 무상양도하기로 의결
- 63년 7월 16일 문교부는 同 토지의 국방부 무상양도를 허가
- ※ 金智泰 등이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으로 소유했던 부산시내 소재 토지 100,147坪의 소유권은 62년 「5.16장학회」로 넘어 갔다가 곧바로 국방부로 무상양도됐으며, 이 과정에 당시 최고 회의·中情·국방부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2) 재산헌납의 강제성 여부

### 가) 유족 등 사건관계자 진술 및 관련자료 검토·분석

- 당시 金智泰의 재산헌납과 관련 수감중인 강압적인 상태에서 中情 또는 최고회의 관계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유족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金智泰의 재산헌납은 당시 자신의 구속상태를 면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대두

○ 金智泰의 자진헌납이라는 주장으로는

- 62년 6월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孫昌奎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sup>34)</sup>에서
  - 5.16장학재단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金智泰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에 회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최고회의에서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 「5.16장학회」 설립 실무자인 前 법무부장관 高元增은 면담시
  - 당시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金智泰로부터 기부승낙서에 도장을 날인받을 때 언론 보도와는 달리 아들 등 입회한 사람이 없었고
  - 金智泰에게 “5.16재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 만들다 보니 기증서에 도장이 필요해서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니 “아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했다면서, 당시 수갑도 차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sup>35)</sup>하고 있으며
- 前 「5.16장학회」 간사 金爽謙은 「정수장학회 30년지」 기고문에서<sup>36)</sup>
  - 「5·16장학회」는 밀수혐의로 구속된 金智泰 선생 내외분이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부산시내 토지를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朴正熙 의장에게 기증한 것을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킨 것으로

34) 조선일보 62년 6월 5일자 ‘5.16장학회 곧 발족-연차적으로 規模확대’ 제하 기사에서 5.16장학회의 설립 추진 상황을 보도

35) 05년 4월 19일 高元增 前 법무부장관 면담

36) 「正修獎學會 三十年誌」(정수장학회, 1994) 제4장 ‘정수장학회 태동기의 이야기들’ 중 p.135

- “구속 기소된 곤경을 면하려고 재산을 최고회의 실력자에게 기증하였다는 속설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金智泰의 재산헌납은 자발적 기증임을 강조하였으며
- 金智泰 자신도 71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sup>37)</sup>를 통해
  - “요즘 재벌들 중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나도 수년 전 부산일보 등 60億원 상당의 재산을 나라에 바쳐 부의 사회환원을 시도했었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재산헌납이 강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는
  - 金智泰 妻 宋惠英 및 장남 金榮球 등 유족측은 면담시
    - 혁명자금 500萬환을 전달하지 않았기에 재산을 강탈 당했고, 당시 金智泰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강제로 포기각서(기부 승낙서로 추정)에 날인한 것을 목격하였으며
    -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한 것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 억울하게 강탈당했기 때문에 되찾으려는 것이라며 재산헌납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고
  - 또한 金智泰는 62년 6월 석방된 이후 부산일보 등 언론 3社와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자진해서 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구속 상태에서 탈취당했다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데
  - 63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군사정부가 헌납 사건이 쟁점화 될 것을 우려해 제의한 「5.16장학회」 이사직을 거절하고,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을 「5.16장학회」에서 분리 운영하되 자신이 주식의 51%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서울신문사를 불하해 주도록 요구

37) 조선일보 71년 3월 27일자 “나의 기업경영” 제하 金智泰 인터뷰 기사

- 71년 7월 「5.16장학회」가 경영난으로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을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당시 공화당 의원인 金澤壽로부터 입수한 뒤 「5.16장학회」이사장 金顯哲에게 2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매각시 자신이 인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sup>38)</sup>하였으며
- 朴正熙 대통령의 사망 이후인 80년 4월에도 「5.16장학회」에 “62년 4월 강탈해 간 재산을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반환청구서’를 보낸 바 있음
- 당시 수사책임자인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朴寅基는 면담시
  - 金智泰 구속 수사중 자신을 찾아온 金智泰의 측근인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安星洙에게 “5.16 혁명주체 세력인 나에게 뇌물을 주는 것보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충고하자
  - 수일 후 安星洙는 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부일장학회 등의 헌납 물목을 작성, 자신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sup>39)</sup>
- 62년 9월 金智泰가 자필로 작성한 비망록에서도 서류상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헌납 물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각서를 써줬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부세력의 요구에 의해 「부일장학회」등을 강제 헌납하였음을 시사
  - \* 同 비망록은 金智泰가 62년 9월 4일 서울시 「아서원」에서 군부측 관계자 高 某장군과 「5.16장학회」초대 이사장 李 某씨 등과 만나 토지이용과 장학회 운용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자필로 적은 메모

38) 71년 7월 26일과 8월 6일 金智泰가 「5.16장학회」이사장 金顯哲에게 보낸 편지 내용

39) 05년 4월 14일 朴寅基 前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면담

- 國情院 보유 문건중 부산지부에서 작성한 ‘金智泰 신원조사서 (작성일자 미상)’에 인용된 경찰의 ‘金智泰의 언동 관련 정보 보고’(내정치 1962.7.31)에서는
  - 金智泰가 “군정에서는 나의 재산을 강취했다는 사실을 시인 하고 반환계획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동했고
  - 또한 경제기획원장 金裕澤으로부터 “재산헌납은 선의의 기증 행위가 아니라 강제로 약탈된 행위로 반환 방법을 고려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 강제로 헌납된 재산이 자신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군인은 역사적으로 영구히 규탄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술

#### 나) 金智泰 명의 기부승낙서 등 관련 문건 감정

- o 62년 6월 구속 상태에서 金智泰가 작성한 기부승낙서 등 재산 헌납 문건에 대한 위·변조 의혹이 언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sup>40)</sup>되었는데
  - \* 언론에서는 金智泰의 기부승낙서 등 작성시점이 62년 6월 20일이나, 서울시교육청에 보관중인 기부승낙서 등에 6월 30일로 기록된 것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
- 「정수장학회 30년지」 등 「정수장학회」 자체 서류 및 金智泰 평전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 등에는 모두 「5.16장학회」로 기부된 날짜를 62년 6월 20일로 기술<sup>41)</sup>되어 있고

40) 신동아 04년 9월호·MBC 05년 2월 19일 방영 「암니옵니」·시사저널 05년 3월 1일자 등에서는 관련 문건이 위·변조됐고, 이는 강제헌납의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

41) 05년 3월 1일자 시사저널 게재 ‘문화방송 기부승낙서 위조됐다’ 제하 기사

- 62년 9월 작성된 金智泰 자필 비망록에서도 “高장군(高元曾 지칭)으로부터 62년 6월 20일자 각서에 의한 부일(부산일보 사옥 지칭) 공사 촉진을 요구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金鍾漢은 면담시 “자신은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적이 없고 재산헌납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다”며 자신 명의의 서명·날인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 \* 金鍾漢은 05년 5월 20일 방송된 KBS 라디오 “정수장학회 강탈인가? 헌납인가?” 제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자신 명의로 부일장학회 토지에 대한 기부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前 법무부장관 高元增도 면담시 “金智泰 이외 기부자들의 기부승낙서는 당시 부산일보 논설위원 겸 「5·16 장학회」 상임간사인 金奭謙 등 실무자들에 의해 날인됐을 것”이라고 진술<sup>42)</sup>
- o 이에 따라 金智泰 명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의 필적 동일성과 기부날짜 변조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 기부증서(2매), 위임장(2매)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의 필적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 \* 각각 문건에 기재된 필적은 문자의 균형과 조화, 배자, 유연한 운필 습성 특히 자획 구성과 필순, 각도와 곡획, 획과 획이 연결되거나 교차되는 접필 상태에서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확인
  - 기부승낙서 중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의 주소와 서명은 동일인의 필적이거나, 한국문화방송 기부승낙서의 주소와 서명 필적은 다른 사람(金智泰)의 것으로 추정되며
    - \*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 기부승낙서 필적은 구조적인 구성 요건의 특징 및 필법에서 같은 점이 관찰되고, 한국문화방송 필적은 각도와 곡획 접필과 분기점 등의 차이점이 관찰

42) 05년 4월 19일 高元增 前 법무부장관 면담

- 기부증서 및 기부승낙서상에 기록된 ‘六月三十日’ 날짜는 ‘六月二十日’로 작성된 부분에 ‘一’자를 가필하여 ‘三’자로 고친 것으로 감정되어

\* 잉크색상을 현미경에 투과, 반사광 및 적외선의 다양한 파장을 검사한 바, 각각 다른 양상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필한 흔적 발견

- 金智泰를 포함한 3명의 서명 주체들이 각기 특정 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음

○ 특히 기부증서 및 기부승낙서상에 기록된 날짜가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감정 결과는 金智泰가 6월 22일에 석방된 점을 고려할 때

- 헌납시점이 강압적인 구속상태였는지, 아니면 석방이후 자발적 상태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 향후 재산 헌납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에 대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사전 제거할 목적으로 「5.16 장학회」 관계자가 행한 것으로 추정됨

\* 「정수장학회」 이사장 崔弼立은 “정수장학회가 보관하고 있는 기부승낙서에는 6월 20일로 되어있다고 자신들이 변조하지 않았다”고 주장<sup>43)</sup>하고 있으나, 감정을 실시한 기부승낙서는 「5.16장학회」가 설립당시 제출해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정본으로 보관과정에서 변조될 가능성은 全無

※ 당시 金智泰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진헌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구속 상태였던 金智泰가 당시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中情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측 관계자의 재산헌납 유도 및 압력에 따라 기부승낙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

43) 05년 6월 28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崔弼立 면담



## 1) 개 요

- 金智泰가 부정축재 등 혐의로 中情 부산지부에 구속된 후 「5.16장학회」에 헌납한 재산은
  - 부산일보 주식 100%(2萬주)와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2萬주),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1萬 3,100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시내 소재 토지 100,147坪이나
  - 이외에도 62년 6월 22일 金智泰가 석방된 이후, 당시 부산일보 사옥 신축비용 부담을 「5.16장학회」 관계자가 강요하여 金智泰의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이 있고
    - \* 金智泰의 비망록에 62년 9월 4일 서울 「아서원」에서 「5·16장학회」 관계자를 접촉했을 때 “高 장군이 6월 20일자 각서를 근거로 공사 축진을 요구하였다” 고 기술
  - 68년 1월 18일 사옥이 완공됐으나 「5.16장학회」가 63년 1월 10일 문교부에 신축사옥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편입하였다고 신고한 점<sup>44)</sup> 등으로 보아 이 건물도 헌납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한편 金智泰의 헌납재산중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 시내 소재 토지<sup>45)</sup>는 당시 「부일장학회」가 정식 재단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여서 등기상 소유권이 「부일장학회」가 아닌 金智泰 등 8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 \* 「부일장학회」 기부증서에 “左記 부동산(토지 89,197坪·임야 20,950坪)은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으로 소유권자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바” 로 기재

44) 「정수장학회 30년지」 중 기본재산의 증감내용 부분 p.87

45) 05년 7월 12일 宋惠英은 면담시 “金智泰가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에 대한 관리 대장을 별도로 작성해 직접 관리했다” 고 진술하면서 토지관리대장 사본을 제공

- 한국문화방송 주식은 11명이, 부산일보 주식은 6명, 부산문화방송 주식은 9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金智泰가 처남 尹佑東 등 회사 임원들의 명의로 신탁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

## 2)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부산시내 소재 토지

### 가) 「부일장학회」의 활동과 법적 지위

- 「부일장학회」는 58년 11월 향토인재 발굴 등을 위해 부산시내 토지 100,147坪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후 62년 6월까지 4년간 중·고·대학생 등 1萬 2,464명에게 17億 7,032萬 4,450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부산·경남지역 최대규모의 장학사업을 전개<sup>46)</sup>

\* 60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우리나라 장학금 실태’ 제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문교당국에 등록된 육영법인 37개중 가장 큰 「상이군경장학회」가 연간 300명 대상 각 5萬환씩 총 1,500萬환을 지급한 정도임

- 그러나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金鍾漢은 「부일장학회」는 법인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며, 「부일장학회」명의 재산으로 알려진 토지 10萬여坪은 金智泰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장학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sup>47)</sup>

\* 당시 金智泰 기소장에는 62년 4월 金智泰와 함께 기소된 裒柄台의 직업은 「부일장학회」 사무원으로 토지 관련 사무를 담당한 자로 기록되어 있어 100,147坪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

- 前 「5·16장학회」 간사 金奭謙도 “金智泰는 임의단체인 「부일장학회」를 장차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키고자 자기 재산을 산하 기업체 간부들에게 명의 신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46) 「나의 이력서」(金智泰, 1976) pp.188-213

47) 05년 5월 25일 金鍾漢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면담

○ 前 부산일보 주필 黃龍珠는 당시 부산일보가 학생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요인이 생기자, 부산일보내에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임금 대신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주장<sup>48)</sup>

※ 당시 「부일장학회」는 법률상 재단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성격으로 부산일보 산하 장학사업부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규모 면에서 부산·경남지역 최대 장학재단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

#### 나) 金智泰의 토지 취득 경위

○ 金智泰는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부산시내 토지 100,147坪 (253필지)을 58-62년간 자신과 처남 尹佑東, 회사 임직원 명의로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이 등기부를 검토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 ○ 이와 관련

-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은 면담시 현재 1조원이 넘는 국방부 토지를 당시 金智泰가 농민들에게 쌀 2말 정도씩을 주고 헐 값으로 사들여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었다고 진술<sup>49)</sup>했으며
- 前 법무부 장관 高元燧은 당시 징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불분명하자 도장을 임의로 새겨 등기를 완료한 것은 사문서 위조이고,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언급
-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金鍾漢은 농지는 농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역들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법인 등기 할 때 金智泰 본인 명의로 하려고 했다고 진술<sup>50)</sup>

48) 현대사연구소 자료총서 제3집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兪炳勇, 한국정신문화원 현대연구소, 1999) 게재 ‘비관적 지식인에서 현실참여자로 - 黃龍珠 증언록’ p.142

49) 05년 4월 8일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 면담

50) 05년 5월 25일 金鍾漢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면담

\* 62년 4월 中情 부산지부는 金智泰 구속 당시 토지 취득과정에서 처남인 尹佑東 등과 공모, 수심 회에 걸쳐 실제 영농자가 아님에도 구비서류를 위조 내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농지를 분배받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농민측의 권리를 침해하여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적용

※ 따라서 당시 金智泰가 취득한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시내 소재 토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편법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

#### 다) 처리과정(「부일장학회」 → 「5·16 장학회」 → 국방부)

○ 金智泰가 구속중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 시내 토지 100,147坪을 「5.16장학회」에 헌납한 이후

- 62년 5월 28일 中情은 국방부에 「부일장학회」로부터 현재 軍이 사용중인 부동산 대지 253필지 100,147坪을 정부에 기부하겠다는 결의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sup>51)</sup>
- 62년 8월 13일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에 「부일장학회」의 해체로 소유권자와 접촉이 불가능해 등기 이전이 62년 9월 30일까지 지연되겠다고 보고
- 62년 9월 4일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에 同 부동산의 등기가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고 보고하자, 국방부는 中情측에 두 차례에 걸쳐 경위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
- 63년 2월 15일 국방부는 최고회의 의장·내각수반 및 재무부장관에게 해결 방안을 요청, 63년 3월 22일 내각수반으로부터 軍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지이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내비민 125273)를 수령

51) 63년 3월 27일자 국방부의 ‘기부출원 부동산 등기이전’ 제하 공문(국군시 1261.4-1356) 중 中情 작성 공문(중첩공 060, 62.5.28)내용 인용

- 63년 3월 27일 국방부는 「5.16장학회」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조치후 원소유자로부터 국방부로 등기이전하는 방안을 제시
- 63년 6월 21일 「5.16장학회」는 이사회를 개최, 同 부동산 이전과 관련 국방부의 제시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의<sup>52)</sup>
- 63년 6월 24일 「5.16장학회」는 문교부에 장학회 기본재산중 토지 100,147坪을 국방부에 무상기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sup>53)</sup>
- 63년 6월 29일 서울시는 「5.16장학회」로부터 ‘기본재산 반환 허가신청’ 제하 공문을 접수받아 이를 문교부에 전달<sup>54)</sup>
- 63년 7월 5일 「5.16장학회」는 제1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방부에 同 토지를 무상양도하기로 결의<sup>55)</sup>한 후 그 근거로
  - 국방부가 본 재단이 기증받은 62년 5월 25일에 앞서 4월 11일 기부출원서 일체를 접수하였고 현재 軍에서 사용하며 앞으로 軍 영구기지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 63년 6월 22일 국방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각 수반의 지시(내비민 125273) 등을 제시
- 63년 7월 16일 문교부가 서울시에 「5.16장학회」 기본재산의 무상양도를 허가함에 따라 63년 7월 24일 서울시는 「5.16장학회」에 同 사실을 통보
  - \* 문교부는 서울시에 “원소유자에 반환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것은 불허하나 「5.16장학회」가 직접 국방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문예사 1732.53)을 발송

52) 63년 6월 21일 개최 「5.16장학회」 제 9회 이사회 회의록

53) 5.16장학회, 문교부 대상 공문(문서번호: 5.16장 제 125호) 발송

54) 서교문 1732.53-5603

55) 63년 7월 5일 개최 「5.16장학회」 제11회 이사회 회의록

- 이러한 처리과정 관련 공문과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 63년 3월 27일자 당시 국방부장관 金聖恩 명의의 “기부출원 부동산 등기이전” 제하 공문(국군시 1261.4-1356)을 검토한 결과
    - 기부결의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받은 최초 주체가 中情이고 국방부 조치결과를 中情부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미루어 中情이 기부출원서와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국방부가 62년 9월 4일자로 「5·16 장학회」에서 토지등기를 이전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中情부장에게 요구한 것도 당시 中情이 同 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이에 대해 유족측은 “국방부가 「5.16장학회」가 기증받은 62년 5월 25일보다 앞서 4월 11일 기부승낙서 일체를 접수하였다”는 「5.16장학회」측의 주장<sup>56)</sup>과 63년 10월 21일 金聖恩 국방부장관 명의의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감사공문에 대해
  - \* 63년 10월 21일 국방부는 金智泰에게 “62년 4월 11일 舊 「부일장학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부에 기부출원한 부동산은 「5.16장학회」로부터 이전받아 등기중에 있으며 기부에 감사한다”는 공문(국군시 1261.4-4709(302,4624))을 발송
  - 62년 4월 11일에는 「부일장학회」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당시는 金智泰가 지병인 간부전 치료차 일본 동경 적십자중앙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 국방부가 62년 4월 11일 부동산 기부출원서를 접수했다는 주장은 허위 조작된 것이고

56) 63년 7월 5일 개최된 제 11회 이사회에서 同 토지의 국방부로의 무상양도 근거로 제시

\* 62년 10월 21일자 국방부장관이 金智泰에게 보낸 감사 공문(국군시 1261·4-4709(302·4624))에 金智泰가 자필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없고 당시 일본 적십자 중앙병원에 있었다” 고 기록한 메모, 62년 4월 2일자 일본 동경 적십자중앙병원의 金智泰 진단서 및 62년 4월 10일 金智泰가 동경에서 당시 한국생사 李文壽 전무에게 보낸 안부편지 사본 등을 그 근거로 제시

-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시내 소재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金智泰와 명의신탁한 회사 임원들에게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없이 「부일장학회」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부 또는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

※ 「부일장학회」 소유 토지 100,147坪의 소유권이 「5.16장학회」를 거쳐 국방부로 무상 양도되는 과정에서

○ 당시 최고회의·中情·국방부 등 정권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무상양도의 근거인 “62년 4월 11일 개최된 「부일장학회」 이사회의 결의로 부동산을 기부받았다” 는 것은 조작된 허위 사실로 판단됨

### 3) 헌납재산 중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주식

○ 부산일보 등 언론 3社は 주식기부 형식으로 헌납됐는데, 이에 대한 당시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감정평가<sup>57)</sup> 결과는 총 3億 4,875萬 960환으로

57) 金智泰의 헌납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흥·국민·제일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서 실시

- 부산일보 주식은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총 2萬주로, 액면가 10환(총 20萬환)으로 당시 감정가로 1億 9,285萬 6,490환으로 평가
- 한국문화방송 주식은 발행주식 100%에 해당되는 총 2萬주 액면가 10,000환<sup>58)</sup>(총 2億환)으로 당시 은행 감정가는 1億 446萬 3,420환으로 평가
- 부산문화방송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65%인 1萬3千100株로 액면가는 5,000환(총 6,550萬환)으로 당시 은행 감정가는 5,144萬 1,050환으로 평가

○ 당시 부산일보 등 언론 3社에 대하여

-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金鍾漢은 재산헌납 당시 언론 3社의 경영 상태는 부산일보만 적자였고 한국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은 예상보다 3-4배 이상의 흑자였다고 언급<sup>59)</sup>하였고
- 金智泰 妻 宋惠英은 당시 한국문화방송은 TV사업 초기단계였으나 광고량이 급증하는 등 상당한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주장<sup>60)</sup>하는 반면
- 前 법무장관 高元增은 재정상태가 어려웠던 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등 3社는 「5·16 장학회」로 편입된 이후 재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진술<sup>61)</sup>하고 있고
- 부산일보 감사 趙鏞生은 당시 부산일보의 부채가 기본 재산의 배가 넘고, 자본이 980배나 잠식된 만성적인 적자 부실기업이었는데 부산문화방송의 경우도 유사했다고 주장<sup>62)</sup>

58) 「정수장학회 30년지」에는 동 주식의 액면가를 500원으로 명기

59) 05년 5월 25일 金鍾漢 前 한국문화방송 사장 면담

60) 05년 4월 27일 宋惠英 면담

61) 05년 4월 19일 高元增 前 법무부장관 면담

62) 05년 6월 11일 부산일보가 제출한 ‘정수장학회의 관련 사실’ 제하 문건



#### 4) 金智泰 헌납재산 중 언론기관 포함 배경

- 金智泰 구속수사 과정에서 헌납된 재산에 金智泰 소유 언론사가 전부 포함된 것은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자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黃龍珠의 주도적 중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 黃龍珠는 88년 5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sup>63)</sup>에서
    - 金智泰 가족들이 재산 헌납의 뜻을 내비치며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측과의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언론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재단법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 金智泰의 석방 조건에 재산헌납 물목으로 부산일보 등 언론 3社를 택해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측에 대해서는 정부 홍보수단으로서의 언론의 필요성을, 金智泰측에는 언론 및 장학사업의 공익재단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양측의 승낙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재산헌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
    - \* 黃龍珠는 5.16 쿠데타 전후 朴正熙 의장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측근 인물로 朴 의장에게 언론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였으며 「5.16장학회」가 설립된 이후 부산일보·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한 자임
- 金智泰 유족과 측근들은

63) 88년 6월호 월간조선 게재 “5.16의 유물 정수장학회” 제하 기사에 수록된 인터뷰

- 사건 당시 黃龍珠가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체일중이던 金智泰에게 조속한 귀국을 종용하였고, 金智泰가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냉담하게 대하였으며
- 또한 수감중인 金智泰를 찾아가 “생사업체는 해야 하므로 부일장학회를 내놓고 이사장을 맡으면 공익사업은 한 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부문은 살려야 되고 언론부문은 내놔야지 않겠냐”며 언론관계 재산 포기를 종용하는 등 재산헌납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 ‘배은망덕한 인물’이라고 평가
- 한편,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金鍾漢도 면담 조사시 “부일장학회 등은 결과적으로 강탈당한 것으로 주연은 朴正熙이고, 조연은 黃龍珠다”라고 주장<sup>64)</sup>
  - \* 前 부산지부 수사과장 朴寅基는 면담조사시 金智泰 측근인 부산문화방송 사장 安星洙에게 “살고 싶으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하자 수일 후에 부산문화방송 사장 安星洙가 부산일보 등 헌납물목을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진술<sup>65)</sup>
- 金智泰 妻 宋惠英도 군사정부가 언론사만 헌납받은 것은 민정이양을 준비했던 군정의 필요성 때문이라 언급<sup>66)</sup>하였으며
- 金智泰의 장남 金榮球·삼남 金榮柱는
  - 헌납물목에 부산일보 등 언론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朴 의장이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金朱烈 변사체 사건’ 보도 등 언론의 힘을 경험한 데다가

64) 05년 5월 25일 金鍾漢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면담

65) 05년 4월 14일 朴寅基 前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면담

66) 05년 4월 27일·6월 21일 宋惠英 면담

- 朴正熙 의장은 거사문제를 논의했던 黃龍珠 주필로부터 언론사  
장악 필요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sup>67)</sup>

※ 당시 군사정부가 金智泰로부터 부산일보 등 언론사를 헌납받은  
것은 민정이양을 앞두고 5.16의 정당성 홍보와 효율적인 국가  
통제를 위한 언론기관이 필요했던데다, 朴 의장의 측근인 부산  
일보 주필 黃龍珠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라

### 中央情報部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 1) 中央情報部

○ 군사정부는 5.16 쿠데타 직후 민심수습 및 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中情은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sup>68)</sup> 등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

○ 이에 따라 中央情報部 부산지부도

- 부산지역내 비리사범으로 金智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리  
사범 척결 수사를 기획하여 中情 부장의 승인 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나

-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였고

67) 05년 4월 28일 金榮球 면담

68) 05년 4월 13일 崔日星 前 中情 차장 면담

- 수사과정에서 金智泰 측근을 대상으로 재산의 헌납을 유도, 헌납 물목을 제출받아 본부 및 최고회의에 보고<sup>69)</sup>하는 등 재산 헌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또한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부산시내 토지의 국방부 무상양도 과정에서도
  - 국방부가 中情의 공문(중첩공 060, 62.5.28)에 의거 「부일장학회」 토지 253필지 100,147坪 기부결의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 받은 후 同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등 제반 문제해결을 中情 부장에게 요구<sup>70)</sup>하였는데
  - 이는 中情이 「부일장학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기부결의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방부로 이관한 것으로 헌납과정에서 中情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수사책임자인 朴○○도 “자신도 모르게 최고회의측에서 金智泰에게서 재산헌납 포기각서를 받아왔다”고 진술<sup>71)</sup>하였고
- 부산지부장 朴○○의 후임 金容成은 “전임 지부장 朴○○도 구체적인 사용처는 몰랐을 것이며, 본부에서 별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재산처리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sup>72)</sup>하고 있음
- ※ 당시 中情 부산지부는 부정축재 척결을 빙자, 金智泰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남용했고, 수사 과정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中情 본부가 재산헌납을 유도하여 물목을 접수했던 것으로 추정

69) 05년 4월 14일 前 中情 부산지부 수사과장 朴寅基 면담

70) 63년 3월 27일자 국방부의 ‘기부출원 부동산 등기 이전’ 제하 공문(국군시 1261.4 1356)

71) 05년 4월 8일 朴○○ 前 中情 부산지부장 면담

72) 05년 4월 15일 金容成 前 부산지부장(朴○○ 후임) 면담

## 2) 국가재건최고회의

- 金智泰 재산헌납 과정에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역할에 대해
  - 前 부산지부장 金容成(朴○○ 後任)은 면담시 金智泰 헌납 재산과 관련 中情 부산지부장 朴○○도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몰랐을 것이며<sup>73)</sup>
  - 崔日星 前 中情 차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정부패 일소를 내세우며 부정축재처리법 등을 제정하고 비리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中情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였다고 언급<sup>74)</sup>
  - 高元增 前 법무부 장관은 金智泰의 헌납재산은 개인한테 바친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를 대신하는 혁명정부에 좋은 목적으로 써달라며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바친 것이라고 진술<sup>75)</sup>
- ※ 재산헌납은 中情 부산지부가 金智泰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헌납재산 처리는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申植秀와 高元增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계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

73) 05년 4월 15일 金容成 前 中情 부산지부장(朴○○ 후임) 면담

74) 05년 4월 13일 崔日星 前 中情 차장 면담

75) 05년 4월 19일 高元增 前 법무부장관 면담

## 2 京郷新聞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 가 1960년대 초반의 정권과 언론

- 박 대통령은 5.16 쿠데타 직후부터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 61년 11월 訪美시 박 대통령은 “한국 신문들은 금전에 좌우되고 부패했으며, 공산주의의 색채를 띠었다”고 주장<sup>76)</sup>한 바 있고
  - 64년 6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시국수습 교서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 \* 박 대통령은 “신문이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도 있고, 사회 혼란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리도 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8년간 너무나 많이 국민들을 자극했고 편파적인 언사를 써왔다” 라고 언명
- 박 대통령의 對언론 시각은 일련의 언론관계 조치들을 야기하였음
  - 쿠데타 이튿날 포고 제1호로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sup>77)</sup>한데 이어, 61년 7월 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명의로 명예훼손 기사 게재금지와 언론사 등록취소 등을 규정한 ‘신문 등 등록법안’을 발표했으며
  - 62년 6월 28일 언론의 윤리 및 책임 확립 등의 언론 통제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최고회의 언론정책’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63년 12월 12일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sup>78)</sup>
- 특히 64년 韓·日협정 반대여론 등으로 정국혼란이 극심해지자

76) 「한국신문 필화의 성격 연구」(趙貞鎭, 1994) p.190

77) 「한국군사혁명사」(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1963) p.4

78) 「커뮤니케이션과 정통성」(李康洙, 1999) pp.210-214, 5개항의 기본방침과 20개항의 세부 방침으로 구성

- 朴 대통령은 “정부의 지나친 관용이 사태를 이 꼴로 이끌었다”며 언론을 철저히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64년 6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으며<sup>79)</sup>
- 이후 데모 현장 취재기자들의 폭행과 언론계 주요인사 피습사건 등이 수시로 발생<sup>80)</sup>하는 등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강화됨
  - \* 65년 8월 25일 서울대를 취재하던 조선 閔·洪기자, 고대·연대를 취재하던 조선 閔기자, 신아 徐·李기자, 경향 朴기자 등이 군인 등에 의해 폭행당함
  - \* 65년 9월 7일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자택 대문앞 폭파사건 및 65년 9월 8일 동아방송 제작과장이 경찰관 사칭 괴한에 의해 납치·폭행당함
- 한편, 64년 8월 정부와 공화당 주도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언론간의 대결국면이 세칭 ‘언론파동’으로 이어졌는데
  - 보도내용 정정 지시와 언론사 자격정지·제명 등 언론통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요 언론사들이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언론인 대회를 개최(8.10)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 정부는 5개 시중은행에 同 법에 반대하는 경향·동아·조선·대구매일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지시<sup>81)</sup>한데 이어
    - \* 사주가 내각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일보와 정부 기관지격인 서울신문, 「5.16장학회」 소유의 한국문화방송·부산일보 등이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를 탈퇴하면서 64년 8월말 26개 언론사중 4개사만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sup>82)</sup>

79)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86

80) 「宋建鎬 전집 9편」(宋建鎬, 2002)중 ‘민주언론 민족언론 2’ pp.182-183

81) 경향신문 64년 9월 4일자

82) 「커뮤니케이션과 정통성」(李康洙, 1999) pp.220-221

- \* 64년 8월 25일 재무부 지시로 소집된 5개 시중은행 관리부장회의에서는
  - ①기일초과 용자 강력 회수 ②4개 언론사 경매신청 공동보조 등에 합의
- 8월 31일 임시국무회의시 반대사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결의하고 이를 은행·정부기관 등에 시달렸으나<sup>83)</sup>, 국내·외 비난 여론에 부딪쳐 보복조치와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음<sup>84)</sup>
  - \* 보복조치는 정부기관의 구독·광고의뢰 금지, 용지배급 차별대우, 은행 용자 제한 및 대출금 회수, 취재편의 제한, 정간 및 폐간조치 검토 등임
  - \* 4개사 편집국장단은 정부의 보복조치 결의에 대해 “그 악랄한 수법은 일제 때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며 당국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sup>85)</sup>
- o 언론과동을 겪은 뒤 朴正熙 정권은 법률적 제도보다는 中情 등 정보기관을 동원한 언론통제나 언론 공작방법을 시도<sup>86)</sup>

## 나

### 경향신문 당시 현황

#### 1) 경향신문의 변천 및 매각과정

- o 경향신문은 46년 10월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에 의해 창간된 후 李承晩 정권에 항거해오다 자유당 정부에 의해 ‘餘滴’ 필화 사건<sup>87)</sup> 등으로 59년 4월 30일 폐간됐다가 60년 4월 26일 복간
- o 유지재단이 성모병원 신축 등으로 재정난을 겪자, 성우산업(주) 대표였던 李俊九는 장인 洪龍澤 소유 명동극장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준 대가로 62년 1월 8일 사장으로 취임<sup>88)</sup>

83) 동아일보 64년 9월 2일자

84) 「커뮤니케이션과 정통성」(李康洙, 1999) pp.218-222

85) 「한국신문윤리 30년사」(한국신문윤리위원회, 1994) pp.156-159

86) 「대한민국 50년사 I」(林映兌, 1999) p.413

87) 「한국 필화사」(金三雄, 1987) p.79



o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 이사장인 盧基南 대주교는

- 李俊九 사장이 그간의 야당지지 논조에서 政府지지로 선회하는 등 재단 이사진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다 부채문제로 재정이 악화되자 62년 경향신문을 매각기로 결정하고

\* 선거에 출마하려는 李俊九가 취임 후 군사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 지지논조를 전개하자, 유지재단에서는 李俊九를 경질할 계획을 마련하였음<sup>89)</sup>

- 매각을 위해 야당 중진인 李載滢, 시인 具常, 三星 李秉喆 회장 등을 접촉했고, 具常과는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자금원이 朴正熙 의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3億환을 돌려주어 무산되자<sup>90)</sup>

\* 朴 의장이 평소 자신과 친분이 돈독하며 천주교내에서도 신망이 높았던 具常을 내세워 경향신문을 인수토록 자금을 지원했으나, 李俊九 사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金在春 당시 中情 부장이 盧基南 주교 등에게 “경향신문을 朴 의장에게 꼭 팔 필요는 없다” 고 언급함에 따라 朴 의장의 경향 인수가 무산<sup>91)</sup>

- 천주교 재단 이사회로부터 백지 위임장을 받은 李俊九 사장에게 63년 6월 경향신문을 매각했으며<sup>92)</sup>

\* 洪研洙는 “李俊九가 경향신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경영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盧 주교로부터 위임장을 하루동안 빌려 경찰국장 출신 인척인 洪炳熙를 내세워 신문사를 인수했다” 고 설명<sup>93)</sup>했고, 盧 주교는 李俊九 사장이 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신문사를 매각 처분한 것을 뒤늦게 알고 분개하였음<sup>94)</sup>

88)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 면담, 「한국천주교회 대부 盧基南 대주교」(朴壽遠, 1985) pp.377-378

89) 國情院 보유자료, 해본정 63호(1962.8.18)

90) 「한국천주교회 대부 盧基南 대주교」(朴壽遠, 1985) pp.380-382, 具常의 계약시점은 中情이 金智泰를 구속하고 언론 3社의 헌납을 강요한 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

91) 05년 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제1·3공화국의 언론과 정치」(孫忠武, 1987) pp.286-287

92) 「한국 천주교회의 대부 盧基南 대주교」(朴壽遠, 1985) pp.382-386, 「당신의 뜻대로」(盧基南, 1978), p.218

93)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 면담

- 이 과정에서 李俊九와 妻 洪研洙 등이 盧 주교의 사생활 등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경향신문을 인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됨<sup>95)</sup>
- o 이후 李俊九 사장이 65년 5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李馨白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상 불고지죄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sup>96)</sup>
  - \* 李 사장은 64년 6월 4일에도 필화사건(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駐韓외교사절단 부인회 한국측 총무였던 妻 洪研洙가 美대사관측에 요청해 석방<sup>97)</sup>
- o 경향신문 채권단인 서울·제일·한일은행은 65년 7월 3-5일간 경향신문측에 대출금 4,627萬원을 일시 상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sup>98)</sup>
  - 65년 7월 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경향신문 사옥 및 대지 등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접수하여
  - 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매에서 朴 대통령과 同鄉으로 단독 응찰한 기아산업 金喆浩 사장에게 2億 1,807萬원에 낙찰<sup>99)</sup>
    - \* 洪研洙는 대표이사직을 金喆浩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張勉 前 총리의 계보인 吳緯泳 前 무임소장관을 접촉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金鍾泌이나 金成坤 의원 등에게 넘길 계획이었음<sup>100)</sup>

94) 「한국천주교회 대부 盧基南 대주교」(朴濤遠, 1985) pp.382-386

95) 國情院 보유자료, '李俊九 동향' (외사정보국, 65.5.7),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80, 「KCIA 비록-X파일」(文日錫, 1996) 前 中情 감찰실장 方○○ 증언집 p.17 및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사장·05년 6월 14-15일 方○○ 등 면담

96) 「한국현대사론」(鄭晉錫, 1989) p.314

97)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 면담

98) 경향신문 66년 1월 27일자 3면

99) 동아일보 66년 1월 25일자 1면,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p.291-292

100) 國情院 보유자료(출처미상, 1966.2.22)

\* 金炯旭 부장은 金喆浩 사장에게 신문 구입자금의 절반 가량에 대해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었다고 주장<sup>101)</sup>

- 경향신문 매각 당시 他 언론사는 방관적 자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쟁지라는 의식<sup>102)</sup>, 李俊九 사장이 非언론인 출신이라는 반감과 李俊九의 경향신문 인수과정에 대한 잡음<sup>103)</sup>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2) 경영상태

- 경향신문은 창간때부터 대표적인 정부 비관지로 잘 운영되어 왔으나
  -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이 성모병원 신축에 따른 과도한 지출로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처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고<sup>104)</sup>
  - 李俊九가 사재 3億환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62년 1월 사장으로 취임<sup>105)</sup>했을 때도 매달 2,000萬환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었음<sup>106)</sup>

\* 62년 6월 10일 화폐개혁을 통해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으며 화폐가치는 1/10로 감소

- 그러나 62년 1월 李俊九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101)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p.291-292

102) 05년 6월 2일 洪研洙, 6월 3일 金相賢 당시 민중당 국회의원·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103) 05년 6월 9일 洪研洙 2차·6월 14-15일 方○○ 前 中情 감찰실장·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104)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사 韓昌愚에 대한 수사기록’ (61.7.20), 「한국 천주교회의 대부 盧基南 대주교」(朴濤遠, 1985) pp.377-378

105)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 사장 李俊九 동향’ (내치정 작성, 62.1.13)

106) 「당신의 뜻대로」(盧基南, 1978) p.218

- 처가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親정부지로의 변모 시도<sup>107)</sup>와 특집 기사 발굴<sup>108)</sup>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 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신문사 운영실적이 1년만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흑자 경영으로 전환되었고<sup>109)</sup>
  - \* 경향신문의 경영실적은 62년 2,500萬원<sup>110)</sup> · 64년 2,191萬원 흑자<sup>111)</sup>, 65년 1,473萬원 적자<sup>112)</sup>
- 당시 은행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여타 신문사들에 비해 오히려 은행 빚이 적은 편이었음<sup>113)</sup>
  - \* 65년 9월 30일 당시 경향신문의 부채가 4,627萬원인데 비해 A사 1億 3,700萬원, B사 1億 2,600萬원, C사 1億원의 부채가 있었음<sup>114)</sup>

### 3) 경향신문의 논조와 영향력

- o 경향신문은 카톨릭을 배경으로 창간된 이후 자유당 정권 기간 내내 정부 비판지 역할을 수행한데 이어<sup>115)</sup>
- o 朴正熙 정부에 대해서도 64년을 전후로 政經유착과 농촌의 궁핍한 실상 폭로 등을 통해 對정부 비판을 강화
  - 64년 2월 1일자 머릿기사로 ‘폭리의혹 점차 확대’ 제목으로 三粉폭리 내막을 폭로<sup>116)</sup>하여 정치쟁점화 시킨데 이어

107)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 사장 경질설에 대하여’ (해본정 63호, 62.8.18)  
 108) 05년 6월 9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는 면담에서 “허기진 군상은 李俊九의 商術이었다” 라고 진술  
 109) 05년 6월 2일 洪研洙 1차 면담  
 110) 경향신문 63년 3월 16일자 4면, 62년도 대차대조표  
 111) 경향신문 65년 2월 15일자 4면, 64년도 대차대조표  
 112) 경향신문 67년 2월 13일자 4면, 66년도 대차대조표, 66년 1월 당시 쌀 한가마의 가격은 3,300원이었고, 66년도 국가 총 예산은 1,537億 7,700萬원 수준  
 113) 05년 6월 9일 洪研洙 · 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宋建鎬 전집 9편」(宋建鎬, 2002) 중 ‘민주언론 민족언론 2’ p.184  
 114) 66년 3월 12일 국회 운영위 회의시 柳靑 의원 對정부 질문 내용  
 115) 「KCIA 비록- X 파일」(文日錫, 1996) 前 中情 감찰실장 方○○ 증언집 p.17

- 64년 5월 9일부터 ‘허기진 군상’ 제하 연재물 등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해 왔으나
- 64년 5월 12일자 ‘난국타개는 이것부터...丁一權 내각에 바란다’ 제하 기획기사와 관련 기고자인 자유노동자 李亨春이 가공인물인데다 북한전단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실제 작성자인 秋泳炫 기자 등 10명이 구속되었음<sup>117)</sup>
- \* “지금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구호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萬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고 주장

○ 당시 경향신문은

- 자유당 독재와 맞서 싸운데다 민주당 張勉 정권의 탄생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고<sup>118)</sup>
- ‘야당의 대변지’로 불릴 정도로 대정부 비판논조가 강해<sup>119)</sup> 他 신문에 비해 판매 부수가 뒤지지 않았음<sup>120)</sup>
- \* 경향신문의 발행부수는 54년 43,000부(A사 80,000부, B사 60,000부)에서 56년 201,875부(A사 300,000부, B사 80,000부)로 급증
- \* 전국 일간신문중 경향신문의 가구 보급실래는 61년 61,681부(3위), 63년 68,890부(4위), 65년 97,360부(4위), 67년 99,530부(5위)<sup>121)</sup>

○ 이에 따라 朴正熙 정부는 경향신문 견제방안 마련에 골몰하였는데

116) 경향신문 64년 2월 1일자 1면  
 117)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 불온기사 사건처리 결과보고’ (치안국, 64.6.1)  
 118) 「반역자의 고백」(白〇〇, 1996) p.110  
 119) 05년 6월 3일 金相賢 前 민주당 의원 면담  
 120) 05년 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121) 「신문발행인의 권력과 리더십」(安炳瓚,1999) pp.118-119, p.129

- 경향신문이 朴 대통령의 남로당 연루사건 자료를 보유하여 대선에서 야당인 尹潽善 후보가 활용케 한데다, 黃泰成 간첩 사건 보도 등 朴 대통령의 사상문제를 거론하고<sup>122)</sup>
- 정국안정을 바라는 군사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韓日 회담과 언론윤리법 반대를 주도하고, ‘허기진 군상’ 등 기사를 통해 朴 정권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하자<sup>123)</sup>
- 朴 대통령과 金炯旭 中情 부장은 경향신문의 보도내용 등에 못마땅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sup>124)</sup>
  - \* 박정희 정권은 동아·조선일보에 비해 훨씬 비판적이었던데다<sup>125)</sup> 역사도 짧고, 인수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경향신문을 선택했던 것으로 추정<sup>126)</sup>
-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64년 6월 4일 李 사장 등을 ‘허기진 군상’ 등 기사내용을 문제삼아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가 언론계 반발 등으로 석방했으나<sup>127)</sup>
  - \* 洪研洙는 “자신이 美 대사관측에 도움을 요청해 석방되었다” 고 진술<sup>128)</sup>
- 中情은 65년 4월 경향신문 간부들의 간첩 및 월북사건을 계기로 경향신문 강매를 위한 공작을 진행하였으며<sup>129)</sup>
  - \* 李俊九 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朴 대통령이 金炯旭 中情 부장에게 李俊九 사장이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sup>130)</sup>

122) 05년 6월 2일 洪研洙·6월 28일 孫忠武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동아일보 63년 10월 10일자 1면 ‘尹潽善씨 안동서 중대 발인’·경향신문 63년 10월 10일자 1면 ‘尹潽善씨 안동 폭로 발인’

123)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한국언론사의 이해」(朱東晁, 1998) p.93

124) 05년 5월 23일 全澤秀 前 中情 대공활동국 과장·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125) 05년 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126) 05년 6월 18일 張明錫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127) 조선일보 64년 6월 17일자 7면

128)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 면담

129)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6월 18일 張明錫·6월 27일 孫忠武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130)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0

- \* 中情은 경향신문을 없애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활동을 전개<sup>131)</sup>했으며 경향신문의 반공법 위반사건을 통해 언론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혜금융의 영향력을 적절히 구시해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음<sup>132)</sup>
  - 李俊九 사장에 대해서는 “소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 무지하며 일본군 밀정과 공산군 부식조달 노릇을 하고 아편장사와 달리 장사도 했다”는 등으로 폄하<sup>133)</sup>
  - \* 62년 中情 자료에는 李俊九를 “정부입장에 적극 순응하고 민주사상이 투철하다”고 평가했고<sup>134)</sup>, “李俊九가 좌익 사상을 가졌다고보다는 對정부 비판 때문에 中情에 좋지 않게 낙인 찍혔다”<sup>135)</sup>라는 진술도 있어 사상적 측면에서의 李俊九에 대한 평가는 상반됨
- ※ 경향신문은 자유당 시절부터 대표적인 정부 비판지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높았는데
- o 5.16 쿠데타 이후에도 朴 대통령의 좌익경력·군사정부의 政經 유착·서민생활의 궁핍상 보도 등 對정부 비판 여론을 주도함에 따라 朴 정권의 반감을 샀던 것으로 보이며
  - o 朴正熙 정권이 中央情報部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 언론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對정부 비판 언론사로 낙인찍혀 매각된 첫 사례가 된 것으로 추정

## 다 | 간첩 사건과 경향신문

### 1) 尹祐鉉 경향신문 동경지사장의 북한행

131) 05년 5월 18일 文閔圭(가명) 前 中情 직원 면담

132)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6월 18일 張明錫 前 경향신문 기자 면담, 「한국 언론사의 이해」(朱東晁, 1998) p.96

133) 65년 11월 3일 내무위원회 中情 국정감사시 金炯旭 부장 답변

134) 國情院 보유자료, ‘李俊九 신원조회 결과’ (62.7.30 및 12.25, 서울 서대문서)

135)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 中情은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李馨白 無電간첩 사건과 同社 동경지사장 尹祐鉉 월북사건을 발표한 후 65년 5월 27일 李俊九 사장과 洪化洙 업무부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sup>136)</sup>
  - \* 金炯旭 부장은 “尹祐鉉은 李馨白 사건이 발표되고 李俊九가 구속되자 제풀에 놀라서 북한으로 도망쳤다” 고 주장<sup>137)</sup>
- 당시 東亞日報는 “尹祐鉉이 경향신문을 조종하기 위한 자금을 祐昌商社를 통해 정상 교역자금으로 가장하여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보도<sup>138)</sup>
- 尹祐鉉은 동경 소재 丸内商社(주) 사장·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편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월북한 者<sup>139)</sup>로
  - \* 國情院 보유자료에 의하면 “尹祐鉉은 李基芳 간첩사건으로 日警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월북하였다” 라고 기재<sup>140)</sup>되어 있으나, 孫忠武는 “尹祐鉉이 50億엔의 부도를 내고 잠적도피중 월북하였다” 고 상반되게 기술<sup>141)</sup>
- 정계·언론계 정보수집 등을 목표로 일본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李基芳(일본명 守谷豊吉)과 접선하였으며
  - \* 李基芳은 53년 9월 북한 내무성 對日공작원으로 선발되어 54년 2월 일본 침투후 在日간첩단 총책으로 암약하다가 64년 7월 16일 日警에 의해 구속된 후 64년 12월 25일 북한으로 추방되었음<sup>142)</sup>

136)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사 간첩사건 송치서’ (대공활동국, 65.5.27)

137)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0

138) 동아일보 65년 4월 8일자 7면

139) 國情院 보유자료, 인물신상추가기록(대공활동국, 65.7.15)

140) 國情院 보유자료, ‘尹祐鉉 의견서’ (대공활동국, 65.7.10)

141) 「제1·3공화국의 언론과 정치」(孫忠武, 1987) p.173

142) 國情院 보유자료, ‘65.9.1 현재, 일본 관헌취급 북괴간첩 사건 개요’ (대공활동국, 66.2.2)



- 57년 9월 동경에 丸内商社(주)를 설립하여 공작거점을 구축하였고, 64년 4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경향신문을 在日 북한공작 조직인 朝總聯에 8부, 통일조선신문사에 2부씩 공급<sup>143)</sup>하였으며

- 李基芳이 남한내 활동거점 구축지령을 하달하자, 57년 6월 祐昌商社를 설립하는 한편, 64년 4월 3일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李俊九와 자신의 고종사촌인 鄭○○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간첩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sup>144)</sup>

\* 65년 7월 13일 中情은 尹祐鉉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고  
65년 9월 15일 검찰은 尹祐鉉이 북한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  
증지를 결정<sup>145)</sup>

o 한편 65년 4월 16일 中情 駐日과견관은 ‘李基芳(모리야) 간첩’  
관련 내용을 본부에 보고

- 李基芳은 현행 일본법상 간첩죄가 없는 관계로 외국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萬엔 및 추방결정이 내려졌는데

- 日警은 李基芳 수첩에서 尹祐鉉의 전화번호 외에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尹祐鉉의 월북사실도 오히려 주일한국대표부의  
통보에 의해 알게된 바 있으며

- 경향신문 동경지사 부지사장 김해성은 “尹祐鉉이 조총련계  
원식창과 자주 접촉하였고, 조총련계 언론사인 조선통일신문사에  
경향신문을 배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종종 문의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고<sup>146)</sup>

143) 國情院 보유자료, ‘鄭○○ 사건 의견서’ (대공활동국, 65.5.30)

144) 國情院 보유자료, 인물신상추가기록(대공활동국, 65.7.15)

145) 서울지검, ‘尹祐鉉 외 1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형 제37134호) 처리결과  
통보’ (65.9.21)

※ 尹祐鉉 월북 사건은

- 李馨白 간첩사건 조사시 尹祐鉉의 월북사실이 드러나자 내사하여 同人이 在日간첩 李基芳과 접촉,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李馨白 사건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보이나
- 日警에서 李基芳 간첩사건 수사시 尹祐鉉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적이 없고, 월북사실조차 몰랐던 점으로 보아, 中情이 간첩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李俊九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판단

2) 간첩 사건과 李俊九 사장의 구속

가) 無電間諜 사건

- 中情은 65년 5월 3일 언론기관 배후조종 사명을 받고 남파된 북한 간첩 李文白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李馨白 등 무전간첩 4명을 검찰에 송치<sup>147)</sup>

\* 간첩 李文白은 58년 5월 남파된 후 李馨白 등과 접선한 후 서울에서 활약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한으로 복귀하였으며, 60년 8월 재남파되어 국내 정보 등을 수집한 후 64년 9월 복귀<sup>148)</sup>

- 國情院 보유자료 및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李馨白은
  - 북한간첩인 實弟 李文白의 지령에 따라 61년 경향신문 내부 실태와 종교재단 현황 등을 탐지하여 북한에 보고하고
  - 민단으로 위장한 조총련을 통해서 경향신문사 배후조종 공작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포섭대상자를 선정했으며

146) 검찰 보유자료, ‘모리야 간첩사건에 대하여’ (공첩470, 中情 해외공작국 작성, 65.4.16)

147) 國情院 보유자료, ‘李馨白 송치서’ (대공활동국, 65.5.3)

148) 國情院 보유자료, 주간보안정보 제48호(대공활동국, 65.5.22)

- 李俊九 사장을 부추겨 親北논조와 어둡고 선정적인 편집방향을 유도하는 한편 특히 경향신문 편집국에 농산부를 신설하여 농촌의 비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되어 있음<sup>149)</sup>

#### o 재판 결과

- 李馨白은 66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79년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sup>150)</sup>되었으며

- 또 다른 관련자 宋澤奉·兪益在는 공작금 및 공작물품·지령 등을 직접 수령하고, 수집정보를 대북 송신하는 등 간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아 집행되었고, 宋昌來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

\* 金炯旭은 “65년 3월 中情이 무선통신 제386호 간첩을 무선송신 현장에서 잡았는데, 경향신문 체육부장 李馨白의 동생으로 월북했다가 돌아온 간첩으로 확인됐다”며 마치 직파간첩인 李文白이 검거된 것처럼 과장<sup>151)</sup>

※ 주모자는 사형, 李馨白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李馨白을 핵심 인물로 부각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경향신문의 친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

#### 나) 李俊九 사장 구속

- o 65년 5월 8일 中情은 간첩방조·불고지 등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경향신문 사장 李俊九·업무부국장 洪化洙·동경지사장 尹祐鉉의 고종사촌인 유창상사 사장 鄭○○을 구속했는데

149) 國情院 보유자료, 인물신상추가기록(대공활동국, 66.3.8)

150) 國情院 보유자료,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79.8.28)

151)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89

- 혐의내용은 61년 12월 조총련계 간첩 尹祐鉉을 동경지사장으로 임명하여 간첩활동을 방조하는 한편, 64년 1월 同人의 청탁으로 경향신문 250여부를 조총련을 통해 北에 전달케 했다는 것임<sup>152)</sup>
- o 中情은 검찰 송치 후에도 李俊九에 대한 조총련계 불온자금 유입 혐의와 尹祐鉉 추가접촉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른바 ‘K공작’을 입안하고, 李俊九에 대해 재조사<sup>153)</sup>하였는데
  - 中情은 65년 5월 李俊九가 조총련으로부터 4-5천萬원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李俊九 재소감방에 공작원을 투입하는 ‘K공작’을 추진<sup>154)</sup>하였으나
  - 내사결과 첩보 출처가 盧基南 주교가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득문한 것으로 밝혀지고, 李俊九가 신병을 이유로 병동에 입실하여 중단<sup>155)</sup>
- o 65년 11월 6일 서울형사지법(합의4부)은 李俊九에게 불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반공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 \* 검찰은 65년 10월 14일 李俊九에게 횡령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sup>156)</sup>
- o 66년 2월 中情은 李俊九에 대한 새로운 압력 수단으로
  - 同人이 한국전쟁 직후 금전출납 군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탈취하였으며 부역행위를 했다는 첩보<sup>157)</sup>를 활용하여 추가 여죄를 찾기 위해 내사하였으나

152) 國情院 보유자료, 주간보안정보지 52호(65.6.10)

153) 國情院 보유자료, ‘증거보강수사에 관한 협조의뢰’ 제하 서울지검 수신공문(중대공700, 65.5.31)

154) 國情院 보유자료, ‘공작계획보고’ (대공활동국, 65.6.3·65.6.21)

155) 國情院 보유자료, ‘수사보고’ (대공활동국, 65.8.16)

156) 서울중앙지검 보유자료, ‘李俊九 공소장’ (65.10.14)

157) 國情院 보유자료, ‘李俊九에 대한 여죄 수사 중간보고’ (대공활동국, 66.3.22)

- 同 자금출처가 李俊九의 사유재산으로 확인된데다, 부역행위 역시 단순가담으로 판명되었고
- 관련자 元正禧도 66년 4월 12일 李俊九 공판에 출석하여 살인 혐의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66년 4월 22일 여죄수사 중지를 결정하였음<sup>158)</sup>
- 洪研洙는 면담을 통해 66년 4월 초순경 경향신문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李俊九 석방을 요구하자, 中情측에서 “다 무죄로 해줄 수는 없고, 외환관리법은 기소하겠다”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주장<sup>159)</sup>하고 있으며
- 66년 4월 19일 서울고법은 李俊九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및 횡령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萬원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
- 당시 中情 간부인 全澤秀도 “李俊九 성향과 판결문 등으로 볼 때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sup>160)</sup>
  - \* 金炯旭은 자서전에서 “검찰이 李俊九 등 3명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과 관련, 朴 대통령에게 ‘李俊九가 간첩사건에 본의 아니게 말려 들었지만, 고의는 없었다’ 라고 보고한 바 있다” 고 언급<sup>161)</sup>
- ※ 中央情報部는 남파간첩 李文白과 연계된 宋澤奉·兪益在·李馨白 등이 적발되자 李馨白이 경향신문 체육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尹祐鉉이 64년 12월 월북한 것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158) 國情院 보유자료, ‘李俊九에 대한 여죄 수사 결과보고’ (대공활동국, 66.4.22)

159) 05년 6월 2일 洪研洙 1차 면담

160) 05년 5월 21일 全澤秀 前 中情 대공활동국 과장 면담

161)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0

- 국민들에게 정부를 비판해 온 경향신문이 실제로는 간첩의 영향 아래 있었고, 사장 李俊九가 간첩들에 포섭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편, 李俊九에게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토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 李俊九에 대한 국보법·반공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되었고, K공작과 살인혐의 등 여죄수사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리하게 적용됐던 것으로 판단

### 3) 李俊九 사장의 간첩사건 관련성

#### 가) 尹祐鉉 월북사건과의 관련성

- 공작금 수수 여부 및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임명 경위와 관련
  - 中情·檢察은 李俊九가 63년 8월 28일 渡日시 尹祐鉉에게서 日貨 200萬엔을 받은 후 63년 12월 그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으로 임명, 간첩혐의를 방조했다고 주장한 반면
  - 李俊九는 63년 8월 일본신문발행인협회 초청으로 渡日시 여비가 부족하여 한국신문발행인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尹祐鉉에게 차용한 후 전액 변제한 바 있고, 주일 한국대표부도 尹씨를 건설한 사업가로 평가해 임명했다고 주장
    - \* 國情院 보유자료에 의하면 駐日 한국대표부 작성 ‘尹祐鉉 신원확인서’ (62-64년)에는 “사상면에서 이색점을 발견할 수 없음”·“제2단계 내사에서 재확인 필요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sup>162)</sup>
    - \* 李桓儀는 자신이 동경특파원 재직시 본사가 어려울 때, 尹祐鉉에게서 몇 차례 급여를 받은 적은 있으나, 尹祐鉉을 동경지사장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sup>163)</sup>

162) 國情院 보유자료, ‘주일대표부 작성 尹祐鉉 신원확인서’ 3부(1962년·1963년·1964년)

※ 재판부는 李俊九가 尹祐鉉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불고지 및 편의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 한편 북한 요구 선전·정보자료 발송 및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 中情·檢察은 64년 1월 李俊九가 尹祐鉉의 청탁으로 경향신문 250부를 조총련을 거쳐 북한에 전달하여 대남선전 자료로 활용케 했다고 주장한 반면
- 李俊九는 尹祐鉉이 일본 통상대신에게 보내는 신문 배부처 신청 서류를 보내와 업무부국장 洪化洙가 검토하여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

※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이 傳聞증거에 지나지 않으며, 李俊九가 이를 알고도 결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李俊九의 관련성을 부인

○ 尹祐鉉 한국 방문시 간첩활동 편의제공 여부와 관련

- 中情·檢察은 64년 4월 尹祐鉉 입국시 李俊九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 반면
- 李俊九는 尹祐鉉이 방한하여 前 상공장관 및 前 산은총재 등을 접촉한데다 이전부터 한국신문발행인협회에 신문용지를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

※ 재판부는 李俊九가 尹祐鉉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李俊九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음

---

163)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 나) 李馨白 無電間諜 사건과의 관련성

○ 친북적 신문논조와 관련 李俊九의 사전 목인 여부에 대해서는

- 65년 6월 中情·檢察은 “李馨白이 李俊九를 1급 포섭인물로 선정·보고한 바 있고, 李俊九로 하여금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지면 제작을 하도록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나

- 李俊九는 64년 9월 경향신문 쏠 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수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李馨白은 사상이 온순하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

\* 66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李馨白은 李俊九를 포섭인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64년 12월 李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친북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1심 증언내용을 부인<sup>164)</sup>

※ 재판부는 李馨白의 친북 발언에 李俊九가 동조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

○ 경향신문 편집국내 농산부 설치 관련 李馨白 사전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 中情·檢察은 李馨白이 64년 12월 李俊九와 2회 독대하고 농산부 신설을 적극 유도하여 농촌의 비참한 실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주장했으나

- 李俊九는 농산부 설치가 李馨白의 주장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이 문제로 사장실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고 부인<sup>165)</sup>

164) 서울중앙지검 보유자료, 서울고법 공판조서(66.4.12)

165) 서울중앙지검 보유자료, 서울지법 공판조서(65.10.16)



- \* 前 경향신문 사장 비서 趙彙成은 64년 12월 당시 李俊九 사장은 부재중 이었고, 12월중에 李馨白이 사장실에 찾아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sup>166)</sup>
- ※ 재판부는 증인 李馨白이 진술을 번복하고 趙彙成 역시 만남을 부인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 李俊九의 관련성을 부인
- ※ 國情院 보유자료 및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中情이 李馨白 사건, 尹祐鉉의 월북 등을 이용하여 李俊九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한 것과 조총련 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K공작)를 비롯해 살인혐의와 부역죄까지 씌우려 했던 여죄수사 등은 수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 라 | 경향신문 매각과정

### 1) 李俊九 사장에 대한 경향신문 포기 압력

- 65년-66년 초에 걸쳐 金炯旭 부장은 대공활동국·감찰실·서울분실 등에 경향신문 매각 공작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고, 李俊九 부부 및 주변인들에 대한 감시 및 회유작업을 진행한 바 있고
  - \* 中情은 洪研洙 동향감시시 同名에 대해 “양귀비” 라는 은어를 사용하였음<sup>167)</sup>
  - 65년 白○○ 서울분실장도 李俊九 부부에게 신문매각을 종용하는 한편, 당시 洪研洙 친구인 吳壽德에게도 洪研洙 설득을 부탁<sup>168)</sup>
- 65년 5월 李俊九 구속 이후 中情의 신문사 매각공작이 본격화 되었는데

166) 서울중앙지검 보유자료, 서울지법 공판조서(65.10.23)

167) 05년 5월 16일 前 中情 직원 白珠勳(가명)·禹宗鉉(가명), 5월 17일 金榮大(가명) 면담

168) 05년 6월 3일 吳壽德(洪研洙의 친구) 면담

- 吉○○ 대공활동국 부국장은 매각과정에 관여하다 협박 내용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바람에 경질되었고
- 이후 方○○ 검찰실장이 개입하여 李俊九 부부와 주변인들에게 폭력과 고문·협박 및 회유 등을 통해 매각압력을 전개<sup>169)</sup>
  - \* 洪研洙는 金炯旭 부장이 “金智泰에게 7년형을 구형하니 재산을 다 바치더라”는 등 수시로 金智泰를 거론하며 매각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sup>170)</sup>

## 2) 競賣過程

- o 65년 6월경 金炯旭 부장은 中情 간부들을 시켜 경향신문의 주거래 은행인 한일·서울·제일은행에게 법원경매를 신청토록 압력을 가했는데<sup>171)</sup>
  - 洪研洙는 65년 7월 채무일시상환 요구를 받고 은행을 찾아가 항의했더니 中情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채무일시상환 내용증명’도 中情에서 보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sup>172)</sup>하고 있고
    - \* 당시 中情 간부들은 언론통제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은행을 통한 대출금 회수였다면서, 지휘부에서 직접 은행장들에게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sup>173)</sup>
  - 金景來 前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도 당시 경제부 기자들로부터 경향신문의 재무상태가 타사에 비해 양호했음에도 청와대와 中情이 재무부에 압력을 넣어 은행측이 무리하게 채무일시상환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sup>174)</sup>

169) 6월 14-15일 方○○ 前 中情 검찰실장 면담, 「KCIA 비록- X 파일」(文日錫, 1996) 前 中情 검찰실장 方○○ 증언집 pp.17-28, 05년 6월 2일 洪研洙 면담

170) 05년 6월 2일 洪研洙 1차 면담

171) 「제1·3공화국의 언론과 정치」(孫忠武, 1987) p.211

172) 05년 6월 9일 洪研洙 2차 면담

173) 05년 5월 20일 高成彬(가명) 前 中情 과장 면담

174) 05년 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면담

\* 각 은행은 언론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일을 관례적으로 자동연기해 주었는데 경향신문의 경우 만기일을 불과 2-3일 남겨 놓고 상환을 촉구<sup>175)</sup>

o 또한 中情은 66년 1월 24일 洪研洙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은행 광고지점에 예치한 800萬원을 인출하려 하자 조총련 자금 유입 혐의를 내세워 지불을 정지<sup>176)</sup>

- 中情은 66년 1월 15일 “월북한 尹祐鉉이 66년 1월 중순경 북한 자금을 경향신문사에 제공한다는 첩보와 동경 소재 林 모(日本人)가 산업경제신문사 서울특과원 林建言(日本人)에게 전달키 위해 66년 1월 韓貨 4~5천萬원을 반입한다”는 첩보<sup>177)</sup>를 입수하고

\* 同 첩보에서 尹祐鉉의 월북 사건을 李俊九 수사와 연관지은 점은 실제 월북한 시기가 李俊九 구속전인 64년 12월 25일인 점<sup>178)</sup>으로 보아 中情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1월 19일 은행측에 지불유예조치를 요청한 후, 1월 25일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洪研洙 명의 통장 및 인감을 압수하였으나

\* 中情은 66년 2월 24일 압수금품 환부를 결정<sup>179)</sup>하였고, 검찰은 66년 9월 14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sup>180)</sup>

- 洪研洙는 위 돈이 소공동 소재 경향신문 부지를 李庭林 대한양행 회장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의 일부라면서, 경매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中情측에서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sup>181)</sup>

175) 「한국 언론사의 이해」(朱東晁, 1998) p.95

176)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 불온자금유입사건 의견서’ (66.5.14)

177) 國情院 보유자료, ‘경향신문 불온자금유입사건 의견서’ (66.5.14)

178) 國情院 보유자료, ‘인물신상추가기록’ (대공활동국, 65.7.15)

179) 國情院 보유자료, ‘압수품 還付·返還付指揮稟申書’ (대공활동국, 66.2.24)

180) 國情院 보유자료, ‘洪研洙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사건처리결과 통보’ (서울지검 작성, 66.9.14)

181) 05년 6월 9일 洪研洙 2차 면담

- 한편 경향신문은 66년 1월 25일朴 대통령과 同鄉인 金喆浩 기아 산업 사장에게 2億 1,807萬원에 낙찰되었으나,<sup>182)</sup> 기아산업은 産銀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데다 언론과 무관한 중소기업으로 실제 주인은朴 대통령과 측근들이라는 주장이 있었음<sup>183)</sup>
  - \* 당시 야당은 경향신문이 타사에 비해 부채(4,627萬원)가 적은 편인데도 경매한 것은 사장 구속을 기화로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음모라고 주장
  - \* 60년 11월 14일 기아산업은 부도로 산업은행 관리업체가 되었고, 60년도 당기 순손실금이 2億 4,914萬환, 61년도에는 2億 8,149萬환이었으나, 62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733萬원, 63년도 1,931萬원, 64년도 2,153萬원, 65년도 566萬원, 66년도 459萬원을 기록<sup>184)</sup>
- 이와 관련, 張明錫 前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金喆浩 사장은 신문 경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직원들간에 경향신문 인수를 위한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인수 후 재정상태가 오히려 악화됐음에도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sup>185)</sup>

### 3) 강제매각 이후 과정

- 66년 1월 25일 경매 이후 李俊九측은 中情의 주식양도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 朴 대통령과 중재역할을 하려했던 金在春 前 中情 부장이 方○○ 실장 등에게 테러<sup>186)</sup>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우군이 없다는 고립감을 느꼈던 데다

182)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p.291-292

183) 「반역자의 고백」(白○○, 1996) pp.114-115

184) 「起亞五十年史」(기아자동차, 1994) pp.580-587

185) 05년 6월 18일 張明錫 前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면담

186) 05년 6월 14-15일 方○○ 면담시 “金在春 前 中情 부장이 경향신문을 인수하려고 하자 金炯旭 부장이 金在春 前 부장을 죽이라고 지시하여 주먹으로 때리는 등 테러를 가했다”고 진술, 「KCIA 비록- X 파일」(文日錫, 1996) 前 中情 감찰실장 方○○ 증언집 pp.26-28

- 李俊九의 체중이 영양실조로 40여kg으로 줄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석방을 조건으로 한 주식양도 협상안을 제시하자<sup>187)</sup>

\* 金炯旭 부장은 洪研洙에게 “이미 朴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이렇게 주식을 안주면 어떡하나. 먼저 주식을 넘겨주면 석방해 주겠다” 고 회유하는 등 4개월간 승강이를 벌였음<sup>188)</sup>

- 金炯旭 부장이 10년간 해외에 체류하는 조건으로 2億여원의 보상금을 제안함에 따라, 洪研洙는 66년 4월초 金炯旭 부장을 찾아가 주식을 양도하였으며<sup>189)</sup>

\* 金炯旭 부장은 경향신문 매각사건 직후 洪研洙를 집으로 찾아와 “당신이 빨갱이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안다, 그걸 빼앗아 「5.16 장학회」에 다 갖다줬다” 고 해명<sup>190)</sup>

- 당시 中情 직원들은 李俊九 구속이후 洪研洙가 金炯旭과 “남편 석방·경향신문 매각 대금” 등에 대해 흥정을 벌였다고 증언<sup>191)</sup>

\* 당시 中情 수사관계자는 李俊九측이 경향신문을 매각한 이후 되찾을 것을 포기하였으며<sup>192)</sup> 오히려 보상금으로 3億원 이상을 받았고, 이마 빌딩 부지를 특혜 불하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sup>193)</sup>

o 66년 4월 金喆浩 기아산업 사장은 경향신문 인수 이후

- 朴 대통령 등의 요구로 제헌 국회의원이자 50년대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朴瓚鉉에게 경영을 맡겼고, 주식도 50%를 청와대에 바쳤으며

187) 05년 6월 9일 洪研洙 2차 면담

188) 05년 6월 2일 洪研洙 면담

189)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 면담

190) 05년 6월 2일 洪研洙 면담

191) 05년 5월 14일 朴萬德 前 中情 서울분실 과장 면담

192) 05년 6월 3일 吳壽德(洪研洙의 친구) 면담

193) 05년 5월 16일 禹宗鉉 前 中情 직원 면담

- 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金昌源)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李厚洛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양도함<sup>194)</sup>

○ 이후 경향신문은

- 경영난이 심화되자 74년 朴 대통령이 李桓儀 문화방송 사장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sup>195)</sup>함으로써 결국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고
- 74년 11월 당시 문화방송이 입주한 정동 22번지 사옥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부지사용료를 「정수장학회」에 지불<sup>196)</sup>
- \* 「5.16장학회」는 66년 러시아정교회로부터 중구 정동 부지를 구입<sup>197)</sup>

마

매각 과정에 대한 정권의 개입 여부

1)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 여부

- 金炯旭 中情 부장과 白〇〇 서울분실장은 제각기 朴 대통령으로부터 李俊九가 경향신문을 포기토록 하라는 지시 또는 암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sup>198)</sup>

194) 「반역자의 고백」(백〇〇, 1996) p.115, 「金炯旭 회고록 제 II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2, 「경향신문 50년사」(경향신문사) p.776에는 기아산업은 66년 4월 28일 임시주총에서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고, 회장 金喆浩·사장 朴瓚鉉을 선임했다고 기술  
 195)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196) 「경향신문 50년사」(경향신문사) p.391  
 197) 「5.16장학회」관련 國情院 보유자료, 한국정교회 홈페이지  
 198)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대통령 재가 문서 접수부, 1965’에 따르면 白〇〇 서울 분실장이 65년 1월 24일, 6월 9일, 6월 28일 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음, 「반역자의 고백」(白〇〇, 1996) p.110, 「金炯旭 회고록 제 II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0

- 方○○ 前 中情 감찰실장도 경향신문 매각이 朴 대통령의 엄명이라는 것을 金炯旭 부장으로부터 들었다면서, “李俊九와 가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였다”며 유감의사<sup>199)</sup>를 표명했고
  - 당시 中情 직원<sup>200)</sup>들도 사건 정황상 朴 대통령 지시로 中情의 쏘 부서가 동원되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 洪研洙도 경매 직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원인 金成坤과 접촉했으나, 오히려 “1億 5,000萬원에 朴 대통령에게 넘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sup>201)</sup>하고 있으며
  - 金相賢 前 의원도 당시 국회에서 폭로한 吉○○의 협박테이프에는 “내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 뜻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sup>202)</sup>
- ※ 朴 대통령의 지시를 담은 문서가 없는데다, 지시를 받았다는 金炯旭 부장이 사망했고, 白○○도 증언을 회피하고 있으나, 당사자 회고록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매각 사건은 李俊九가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게 하라는 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中情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

## 2) 강제매각에 대한 中情의 조직적 개입 여부

### 가) 경매신청 전후 李俊九 사장 등에 대한 中情의 압력행사 여부

- 65년-66년 당시 자료 및 中情직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金炯旭 中情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감찰실·서울분실 등이 경쟁적으로 경향신문 매각 공작에 개입했다는 사실 확인<sup>203)</sup>

199) 方○○은 6.14-15 면담시에는 “金炯旭으로부터 朴 대통령 지시라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부인하면서도 “Maybe Yes, Maybe No”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 「KCIA 비록-X파일」(文日錫, 1996) 前 中情 감찰실장 方○○ 증언집 p.17, 「제1·3공화국의 언론과 정치」(孫忠武, 1987) pp.192-194

200) 05.5.16 白珠勳(가명) 前 中情 감찰실 조사관 등 면담

201) 05.6.9 洪研洙 2차 면담

202) 05년 6월 3일 金相賢 前 의원 면담

203) 05.6.14-15 方○○ 前 中情 감찰실장 면담

\*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경향신문 매각공작이 지지부진하자 金炯旭 부장은 초조해했고, 이에 주요 간부들은 공을 세우기 위해 李俊九 부부를 압박<sup>204)</sup>

○ 李俊九 妻 洪研洙는

- 65년 5월 남편 구속이후 中情 대공활동국에서 경향신문 강탈을 주도했으며, 특히 吉 부국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 66년 2월 吉 부국장이 국회 공개로 경질된 이후에는 方○○ 감찰실장이 개입하여 자신과 주변인에게 폭력과 고문·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사 매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으며<sup>205)</sup>
- 金炯旭이 “이게 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며 “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얘기했다고 진술<sup>206)</sup>

○ 한편 金相賢 前 의원은

- 66년 초 洪研洙로부터 “吉○○ 부국장이 신문사를 내놓지 않으면 李俊九 사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말을 듣고
  - \* 洪研洙는 吉 부국장으로부터 “사형시킨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없이 들었다고 진술<sup>207)</sup>
- 洪研洙와 吉○○ 부국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건네 받아 66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폭로 했는데, 그 직후 吉○○ 부국장은 경질되었다고 주장<sup>208)</sup>

204) 05년 6월 2일·6월 9일 洪研洙 면담, 「반역자의 고백」(白○○, 1996) pp.111-119  
 205) 05년 6월 9일 洪研洙 2차 면담, 한편 方○○은 면담시 “李俊九·洪研洙 등에게 경향신문을 갖고 있는데 대한 회의감이 들도록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심리공작을 실시한 것이 먹혀 들어갔다”고 주장  
 206) 05년 6월 2일 洪研洙 면담  
 207) 05년 6월 2일 洪研洙 면담  
 208) 05년 6월 3일 金相賢 당시 민중당 국회의원 면담



\* 66년 2월 14일 당시 金相賢 의원은 吉 부국장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두 가지 다 잃겠지요. 징역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하고... 경매 하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쏘를 하겠지요. 누가 입찰하는 것처럼..” 이라는 협박 내용을 공개<sup>209)</sup>

※ 中情 직원·洪研洙·金相賢 前 의원 등의 증언과 國情院 보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볼 때, 中情이 경향신문 매각 작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

#### 나) 경향신문 경매 신청 관련 中情의 금융권 압력행사 여부

○ 中情은 65년 6월경 경향신문 주거래은행인 金振興 한일은행장·朴錫春 서울은행장·李寶衡 제일은행장을 불러 법원에 경향신문 경매를 신청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sup>210)</sup>

\* 경향신문은 당시 한일은행에 2,207萬원, 서울은행에 1,470萬원, 제일은행에 950萬원 등 총 4,627萬원의 은행채무가 있었음

\* 65년 11월 8일 재무부 국정감사에서 李重載 의원은 “해당 은행장들이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신청이 부당하고 가혹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이를 시인” 하였고, “특히, 제일은행장은 외부의 작용으로 경매신청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 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주장<sup>211)</sup>

○ 66년 1월 25일 경향신문 경매 현장에는 기아산업에서 참석한 대리인 1명과 기관원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서류를 주고받은 후 기아산업에 2億 1,807萬원에 낙찰되었는데<sup>212)</sup>

○ 당시 기아산업은 자전거 제조사로 언론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金喆浩의 이름만 이용되었을 뿐 진짜 주인은 朴正熙와 측근들이라는 의혹<sup>213)</sup>이 제기됨

209) 66년 2월 14일 국회본회의시 金相賢 의원 발언 내용

210) 05년 6월 8일 金景來 前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면담, 「제1·3공화국의 언론과 정치」 (孫忠武, 1987) p.211

211) 65년 11월 8일 재정경제위의 재무부 대상 국정감사시 李重載 의원 발언 내용

212) 05년 6월 10일 李鍾全 前 경향신문 법원 출입기자(당시 공매상황 취재) 면담

○ 이와 관련 洪研洙는

- 65년 5월 李俊九 구속이후 서울·제일·한일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 변제<sup>214)</sup>는 물론 예치금 인출마저도 거부당했으며
- 65년 7월 3개 은행이 발송한 “채무 일시상환”에 관한 내용 증명의 문구가 모두 동일했는데, 나중에 中情에서 각 은행에 동일 문구의 내용을 보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sup>215)</sup>

※ 洪研洙와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의 진술내용과 中情 국정감사시 金炯旭 부장의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中情이 금융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경향신문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판단

### 3) 강제매각 이후 경향신문 운영에 대한 정권의 간여 여부

#### 가) 李俊九 사장 퇴진 이후 경향신문 소유권 변경 경위

- 경향신문이 66년 4월 李俊九에서 기아산업 金喆浩 사장으로 넘어간 이후
  - 신문사 경영은 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헌 국회의원이자 50년대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朴瓚鉉이 담당했고<sup>216)</sup>
  - 그후 金喆浩는 李厚洛 비서실장에게 불려가 압력을 받고 경향신문 주식 50%를 朴 대통령에게 바친데 이어

213) 「반역자의 고백」(白〇〇, 1996) pp.114-115

214) 65년 11월 3일 내무위원회 中情 대상 국감시 金炯旭 부장은 “사장이 반공법에 걸려 들어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 어떻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돈을 융자해 주겠느냐 그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향신문 사장이 무죄로 나오면 이자를 받고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유죄판결이 나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

215) 05년 6월 9일 洪研洙 2차 면담

216) 「반역자의 고백」(白〇〇, 1996) p.115

- 다시 1년쯤 후 李厚洛으로부터 朴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말을 듣고 경향신문을 신진자동차 金昌源에게 넘겨주었으나<sup>217)</sup>
- 이후 경향신문사 경영이 악화되자 1974년 朴 대통령이 당시 문화방송 사장 李桓儀를 불러 문화방송과의 통합을 지시<sup>218)</sup> 함으로써, 경향신문이 「5.16장학회」로 넘어가게 되었음

※ 당시 외부자료와 회고록 등을 종합해 볼 때 朴 대통령이 경향신문 운영권자 선임을 관장해 왔던 것으로 판단

#### 나) 「정수장학회」의 경향신문 정동부지 소유경위

- 66년 1월 25일 경향신문의 소공동 소재 사옥·대지·부속건물과 불광동 소재 임야 및 운전기 등이 기아산업에 낙찰된 후<sup>219)</sup>
- 69년 1월 20일 경향신문의 운영권 및 일체 재산이 신진자동차 공업주식회사로 이전<sup>220)</sup>
- 69년 8월 6일 「5.16장학회」는 재단사무소를 종로구 와룡동에서 66년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구입해뒀던 정동 22번지 부지로 이전<sup>221)</sup>
- 74년 11월 30일 경향신문도 문화방송에 흡수 합병되어 단일 법인 문화방송·경향신문(주)이 발족됨에 따라 소공동 사옥에서 문화방송이 입주해 있던 정동 22번지의 새 사옥(부지 723坪)으로 이주<sup>222)</sup>

217)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2

218)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219) 「경향신문 50년사」(경향신문사) p.274

220) 경향신문 69년 1월 21일자 1면

221) 5.16장학회 관련 國情院 보유자료, 한국정교회 홈페이지

222) 「경향신문 50년사」(경향신문사) pp.355-356

- \* 소공동 사옥(대지 332坪)은 74년 9월 9일 한일은행에 11億원에 매각한 뒤, 매각 대금 전액을 경향신문 부채 19億여원<sup>223)</sup> 상환에 사용
- 그 이후 81년 1월 1일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규정한 언론기본법이 발효되면서 81년 4월 1일 문화방송·경향신문(주)도 각각 분리되었으나, 경향신문사 정동 부지는 「정수장학회」가 보유
  - ☞ 경향신문측은 지난 30여년간 정동 부지 임대료를 「정수장학회」에 지불하여 왔으며, 현재는 월 3,400萬원을 납부<sup>224)</sup>

### 3 재산헌납 및 매각과 「5.16장학회」(現 정수장학회) 설립

-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은 5.16 쿠데타 이후 62년 5월 캐나다 출신인 「스코필드」 박사가 장학기금으로 372,500환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孫昌奎 등에게 장학제도 설립을 준비토록 했고
- 中情은 불법·부정축재 재산 강제환수라는 명분아래 62년 4월 金智泰를 부정축재처리법·농지개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과정에서 재산헌납 압력을 행사하여 62년 5월 부산일보 등 언론 3社 주식과 부산시내 소재 토지 100,147坪 등을 강제 헌납받게 되었으며
  - \* 「5.16장학회」 설립 전후 하와이 교포들로부터 1,000여萬환을 모금하는 한편 장학회 이사인 李秉喆로부터 1億환, 경제인연합 회장 金季洙로부터 3,000萬환을 기부받은 바 있으나, 「5.16장학회」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金智泰로부터 강제 헌납받은 재산으로 구성

223) 05년 6월 21일 李桓儀 前 문화방송 사장 면담

224) 04년 10월 10일 문광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시 閔丙楅 의원 주창

○ 이를 계기로 62년 6월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이 5.16 쿠데타 직후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高元增에게 “金智泰 기부재산이 유출되고 있으니 장학회를 설립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5.16장학회」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고

\* 「62년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의전 일지」에는 6월 13일 高元增이 「5.16장학회」 설립 경과 보고를 위해 朴 의장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高元增이 장학회 설립 현황을 수시 보고한 것으로 추정

○ 「5.16장학회」는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부산일보 주식 100%(2萬주)·한국문화방송 주식 100%(2萬주)·부산문화방송 주식 65.5%(1萬 3,100주) 등 金智泰 소유 언론 3社의 주식 5萬 3,100주와 부산시내 토지 100,147坪 등을 보유

\* 설립 당시 기본재산 평가액은 주식과 토지를 합쳐 8,527萬원이었으나 63년 7월 토지를 국방부로 무상양도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3,487萬원을 보유

○ 62년 7월 7일 「5.16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 朴 의장이 직접 추천한 金季洙 경제인연합회 회장, 李秉喆 삼성물산 회장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sup>225)</sup>한 후 7월 14일 문교부의 재단 설립 허가를 거쳐 7월 18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 이후 「5.16장학회」 및 부산일보 등 언론 3社는

- 朴 대통령의 동서인 趙泰浩(65-71년간 5.16장학회 이사, 80-88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 및 李厚洛(66-74년간 5.16장학회 이사)·黃龍珠(64.8-12월간 문화방송 사장, 66-74년간 5.16장학회 이사) 등과

225) 「5.16장학회」초대 이사진은 李寬求 이사장을 비롯하여 5.16 직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高元增, 朴 대통령의 대구사범 은사인 金永驥, 당시 경제인연합 회장 金季洙 및 삼성물산 회장 李秉喆과 공화당 창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게 되는 金用雨·尹日善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사진 모두 朴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며, 高元增은 05.4.19 면담시 “초대 이사진은 朴 대통령의 직접 추천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진술

- 朴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인 曹增出(65-85년간 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사장)·王學洙(73-80년간 부산일보 사장)와 大邱출신으로 朴 대통령과 가까운 朴浚圭(63-64년간 부산일보 사장) 등 친인척과 측근들에 의해 운영되는 등 사실상 朴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 이후 80-90년대에도 朴 대통령의 총무비서(65.4-67.2) 출신인 秦惠淑 前 배화여전 교수와 97년 10월 「朴正熙 대통령과 陸英修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결성을 주도한 盧哲容 前 경향신문 사장 등 朴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이사진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으로 朴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지되었음

○ 한편 경향신문도

- 中情의 압력 등으로 66년 1월 실시된 경매에서 기아산업에 낙찰된 이후 주식 50%가 朴 대통령에게 바쳐졌고, 69년 1월 결국 李厚洛 비서실장의 지시로 신진자동차에 경영권이 이전되었으며<sup>226)</sup>
- 74년 11월 李桓儀 문화방송 사장이 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을 통합함에 따라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81년에 분리

○ 「5.16장학회」는 10.26사태 이후 제5공화국에서도 李奎浩 前 문교부장관(80.2-84.2 정수장학회 이사) 등 당시 권력 핵심인물들로 이사진이 구성되는 등 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의 영향하에 운영되었으며

226) 「반역자의 고백」(백○○, 1996) p.115, 「金炯旭 회고록 제Ⅱ부 한국중앙정보부」(金炯旭·朴思越, 1985) p.292

- 82년 1월 朴正熙와 陸英修의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로 개칭한데 이어, 95년 9월 朴槿惠 現 한나라당 대표가 8代 이사장에 취임하여 9년여간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05년 2월 28일 이사장직을 사임
- 05년 3월 24일 9대 이사장으로 朴槿惠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고 있는 崔弼立 前 뉴질랜드 대사를 선임하여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 IV 結論 및 意見

### 1 結論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5.16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 정권이 中央情報部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이 두 사건은 40여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朴正熙 정권이 중정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金智泰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社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坪을 헌납받았고
- 당시 中央情報部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 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 결국 同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朴正熙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中央情報部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당시 中央情報部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 논조를 지속해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李俊九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 특히 경향신문 처리 과정에서 金炯旭 中情 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서울분실·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 관계자들의 진술과 國情院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2 委員會 意見

-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中央情報部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
-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金智泰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 따라서 金智泰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 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朴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金智泰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적 언론이었지만, 李承晩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朴正熙 군사정권이 中央情報部를 내세워 강제매각시켰음
-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음
-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신문사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던 경향신문사가 강제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에 이르게 되어서 매달 사옥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왔으므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봄

○ 國家情報院은

-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



## 64.8 I

###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첫 회

#### 신장사유

-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우국충정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사회적으로 탄압한 권력남용 사건

#### 조사방향

- 공개자료 및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를 종합정리
- 사건 연루자 증언과 수사관 면담을 통한 실제 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진실규명**

---



## I. 개요

---

- 1. 조사 목적 · 104
  -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 105
- 
- 가. 인혁당 사건 / 105
  - 나. 민청학련 사건 / 105
  - 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 106

## II. 조사 내용

---

- 1. 자료조사 및 분석 · 107
- 
- 가. 국정원 보유자료 / 107
  - 나. 타기관 보유자료 / 108
  - 다. 일반자료 / 108
- 
-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 109
- 
- 가. 사건 당시 증정직원 / 109
  - 나. 사건 관련자 / 109
  -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 109
  - 라. 기타 / 109

### Ⅲ. 조사 결과

---

#### 1. 인혁당 사건 · 111

---

- 가. 시대적 배경 / 111
- 나. 사건개요 / 112
- 다. 주요 관련자 활동내용 / 116
- 라. 의혹사항 / 117
- 마. 조사결과 / 118
  - 1) 수사착수 경위 / 118
  - 2) 소위 ‘인혁당’의 실재 여부 / 118
    - 가) 당명 및 강령·규약 논의 / 118
    - 나) 판단 / 125
  - 3) ‘북한의 지령’에 의한 조직결성 및 활동 여부 / 127
    - 가) ‘남파간첩 김영춘’ 부분에 대해 / 127
    - 나) ‘김상한 월북’ 부분에 대해 / 130
    - 다) ‘김배영 월북’ 부분에 대해 / 134
    - 라) ‘북한의 인혁당을 통한 한일회담반대 학생테모 지령’ 여부 / 137
    - 마) 판단 / 139
  - 4)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 141
    - 가) 물·전기 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 여부 / 141
    - 나) 판단 / 147
- 마. 소 결 / 149

#### 2. 민청학련 사건 · 150

---

- 가. 시대적 배경 / 150
- 나. 사건개요 / 153
- 다. 쟁점사항 / 157
  -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 157
  - 2) 조직의 성격 / 158
  - 3) 조직체계와 활동 / 159
  - 4) 「인혁당재건위」와의 관계 / 159
  - 5) 조총련과의 연계성 / 160
  -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60

- 라. 조사결과 / 160
  -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 160
  - 2) 조직의 성격 / 165
  - 3) 조직의 활동 및 목표 / 172
  - 4) 인혁당재건위와의 관계 / 179
  - 5) 일본인 및 조총련과의 연계성 / 186
  -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93
- 마. 소 결 / 200

### 3. 인혁당재건위 사건 · 202

- 가. 시대적 배경 / 202
- 나. 사건개요 / 205
- 다. 의혹사항 / 208
  - 1) 조직결성 / 208
  - 2) 수사과정 / 209
  - 3) 사형집행 / 211
- 라. 조사결과 / 212
  - 1) 활동내용 및 조직결성 여부 / 212
    - 가) 중정의 수사착수 경위 / 212
    - 나) 인혁당 재건위 명칭 정립과정 / 214
    - 다) 활동 내용 및 성격 / 218
    - 라) 조직결성 여부 / 227
    - 마) 조직 수준 / 233
  - 2) 수사과정 / 237
    - 가) 수사체계 / 237
    - 나) 검찰관 조사의 임의성 문제 / 240
    - 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242
  - 3) 사형집행 / 258
    - 가) 전격적 사형집행 경위 / 258
    - 나) 최후진술(유언) 조작 / 262
    - 다) 시신탈취 및 강제 이송 / 267
- 마. 소 결 / 268

---

#### 4. 유신체제와 군사법정 · 270

---

- 가. 군사법정의 구성 / 270
- 나. 유신헌법 하 군사법정의 문제점 / 273
- 다.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군사법정 / 274
  - 1) 쟁점 및 의혹사항 / 274
  - 2) 조사결과 / 275
    - 가) 피고인 방어권 침해 / 275
    - 나) 공판조서 변조 / 279
- 라. 소 결 / 287

#### IV. 결론 및 의견

---

- 1. 결 론 · 288
- 2. 의 견 · 290



# I 概要

## 1 조사 목적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 이 사건들은 박정희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와 반공이데올로기를 활용,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되어 온 사건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사실을 바로 잡음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진실위」는 지난날 야기된 권력남용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 가 인혁당 사건

-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중
  - 1964.8.14 중정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는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이 ‘배후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 발표 직후,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문수사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나 민청학련 사건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 1974.4.3을 기하여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중앙정보부 폐지, 구속인사 석방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시도한 사건으로
  - 1974.4.25 중앙정보부는 同 사건에 대해 ‘민청학련’이 조총련·인혁당과 결탁,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 1,034명 검거 중 민청학련 관련자 57명 구속,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24명 구속, 재야인사 7명 구속하는 등
- 반유신 학생데모를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건임

-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은
  - 1974.4.25 중정이 ‘민청학련사건’을 발표하면서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한 후
  - 195.27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중 등이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고
  - 1975.4.8 관련자 7명은 사형, 8명은 무기징역, 6명은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후,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을 포함한 8명이 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건임

## Ⅱ 調査 内容

### 1 자료조사 및 분석

#### 가 國政院 保有자료 : 459건 67,223쪽

-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사항이 포함된 각종 보고서, 수사 및 공판 기록 일부, 기타 참고자료 등 459건 67,223쪽을 면밀분석
- 인혁당사건과 관련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 등 관련 문서가 발견돼 1964년 8월 14일 발표문에서 등장하는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참고할 수 있었고
-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초점」, 「수사지침」 등의 문서가 발견돼 ‘조총련과 일본공산당의 민청학련 배후조종’이라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서도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내사 결과보고」라는 문서가 발견돼 ‘공판조서 변조’ 의혹해소에 참고가 되었음
- 그러나 사건과 관련하여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극히 일부 자료들만 존안돼 있어 이들 사건과 관련한 정권 및 중앙정보부 수뇌부의 의도 및 개입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나****타기관 보유자료 : 문서 164건 45,968쪽, 녹화테이프 25개**

---

- 국가기록원 자료으로
  -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장석구사건 기록’ 등 80건 22,165쪽, 참고인 조사 녹화테이프 25개
  - 기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료 24건 2,214쪽
  - 특히 관련자들의 조사 녹화테이프들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었음
- 서울지검 기록으로 ‘인혁당사건기록’, ‘김배영사건기록’ 등 51건 20,064쪽
- 국방부 기록으로 ‘불온유인물 사본’ 등 6건 1,481쪽
- 국회 기록으로 국정감사회의록 등 50쪽
  - 1964년 인혁당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에 대해 당시 국회국정감사반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문의혹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음
- 기타 법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서 7쪽 검토

**다****일반자료 : 82건(권) 6,490쪽**

---

- 「사법살인」 등 관련책자 14권 4800쪽, 월·주간지 25건 800쪽, 신문 및 방송자료 43건 120여쪽, 관련 논문 10건 500쪽 등 기타자료 600쪽 등 공개되어 있는 일반자료에 나타난 각종 의혹 및 주장을 검토하여

-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건관련 의혹사항과 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국가기관의 자료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음

##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 이용택, 윤종원 등 8명

### 나 사건 관련자

- 전창일, 유인태 등 18명

###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 전재팔, 조규철, 문상익 등 19명

### 라 기 타

- 김정강 등 3명

【 면담조사 상황 】

구분	성명	면담일시	관련성	비고
사건 관련자	이철	05.10.29	재건위사건 관련자	
	유인태	05.10.13	재건위사건 관련자	
	이영교	05.5.16	하재완의 처	
	외 15명			
중정 직원	윤종원	05.10.6	재건사건 담당팀장(74년)	
	이용택	05.9.22	수사과장(64년), 6국장(74년)	
	외 6명			
경찰	손중덕	05.9.28	재건위사건 수사	
	박재명	05.9.29		
	신홍수	05.9.29		
	이덕삼	05.9.29		
	임찬욱	05.9.28		
	나갑열	05.10.14		
	전재팔	05.11.2		
교도관	이강준	05.10.5	서울구치소 명적과	
	외 7명			
검찰	장원찬	05.9.22	인혁당사건 최초 담당검사	전화면담
	정태균	05.10.7	고문사건 수사검사(64년)	
군법회의	조규철	05.10.6	공판조서 작성 서기	
국회	문상익	05.9.28	국회법사위 전문위원(64년)	
기타	김정강	05.9.7	‘불꽃회사건’ 관련자	
	외 2명			

### Ⅲ 調査 結果

#### 1 인혁당 사건

##### 가 시대적 배경

-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원대복귀를 약속한 이른바 혁명공약과는 달리 1963.10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던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회담은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으나
  - 대학생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정권 차원의 이해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했음
- 1964.5.20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당시 박정희가 표방하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르며 시위를 벌였는데
  - 정부는 이를 체제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정국의 긴장감은 높아져 갔음
-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가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서울 중심에서 경찰이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위기에 몰리자
  - 학생시위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1960.4을 경험한 박정희 정권은 1964.6.3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군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 한편 인혁당 사건이 발발한 1964년 여름은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하려던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던 상황이었음
- 정권이 위기에 몰릴 정도로 대학생들의 데모가 거세지면 정권은 학생데모의 확산을 차단하고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위해 공산당 내지는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이란 카드를 빼들곤 했는데
  - 1964.7.6 치안당국은 “선량한 학생을 충동시켜 국가전복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서울대생 김정강과 前 민족자주통일협의 회조사위원장 도예종을 수배했고
  - 1964.7.18 양찬우 내무장관은 학생데모의 배후는 김정강 등이 조직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집결체 불꽃회이며 불꽃회는 “공산주의 사회실현에 일조가 됨을 중국의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밝혔음
- 1964년의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와 같이 6·3사태라는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 속에서 학생데모의 배후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발한 공안사건임

## 나

### 사건개요

-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사건은
  -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학생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대되면서 군사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로서 정권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박정희정권은 1964.6.3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중
  - 1964.8.14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음

o 이 발표에 따르면<sup>1)</sup>

- 인혁당은 1962.1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 (본명 우홍선), 김배영, 도예중 등이 창당받기인 모임을 갖고
-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신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 1962.5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은 인혁당의 조직확대 공작 및 투쟁목표 등 제임무를 도예중, 우동읍에게 일임하고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했고
- 우동읍은 1962.10 교양위원인 김배영을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으며
- 도예중은 전국조직을 담당 1963.12 중앙상임위원회 중앙당대회 중앙당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완료하고 전국의 일반 당부와 특수부 조직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 1964.2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당중앙상무위원인 도예중,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시위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학생조직을 정비·강화하고 데모주도 학생을 포섭하였으며
- 중앙당 데모지도부는 데모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 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였으나

1) “발표전문”, 『서울신문(64.8.14)』

-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 조직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데모 주동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하여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는 것임
- 이렇게 발표된 인혁당사건은 1964.8 서울지검 공안부로 송치된 후
  -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한 김병리, 장원찬, 최대현 검사는 20여 일 간의 수사 끝에 1964.9.5(구속기간 만료일) 증거 불충분으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자
  - 신직수 검찰총장은 당직검사(정명래)를 통해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검사는 ‘인혁당’ 사건 기소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sup>2)</sup>
- 국회는 1964.9.9 민복기 법무부장관을 불러<sup>3)</sup>
  -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 사건은 6·3 계엄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등 기소경위를 추궁하자
  - 법무장관은 사건이 중대하고 여러 가지 의심할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
- 인혁당사건에 대한 의혹이 정치사회적으로 제기되던 9.12 한국 인권옹호협회 회장 박한상 변호사는 인혁당사건에 관련돼 구속 기소된 26명 대부분이 중정에서 발가벗긴 채 물·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는데<sup>4)</sup>

2) “26명을 구속기소”, 『조선일보(64.9.6)』; “사표를 제출”, 『조선일보(64.9.11)』

3) “조작된 사건 아니냐”, 『경향신문(64.9.9)』

4) “발가벗기고 고문당해”, 『경향신문(64.9.12)』; “혹독한 고문 받았다”, 『조선일보(64.9.13)』

- 9.15 신직수 검찰총장은 고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상을 조사해 고문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sup>5)</sup>
- 서울지검 형사 4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16일부터 서울교도소를 방문하여 26명의 피고인들을 면접하고 구체적인 방법, 고문자들의 인상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도됐으며<sup>6)</sup>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반은 9.15 서울교도소로 출장, 박한상 변호사가 만난 피의자들을 제외한 14명의 진술을 듣고 이들도 대체로 같은 방법의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음<sup>7)</sup>

○ 한편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 26명중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 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10.16 재기소했음<sup>8)</sup>

○ 결국 사법부는 인혁당사건에 대해

- 1965.1.20 1심에서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 판결했고
- 1965.6.29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1965.9.21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음

5) “인혁당사건 고문설 검찰서 진상조사에 착수”, 『조선일보(64.9.16)』

6) “당시 수사관의 명단 작성, 고문은 행동대원이 맡아”, 『조선일보(64.9.18)』

7) “인혁당피고 진술을 청취”, 『조선일보(64.9.16)』

8) “공소취하로 14명 석방”, 『조선일보(64.10.17)』

- 그러나 10년이 지난 1974년 중정에 의해 인혁당재건위사건이 발표된 후
  - 1975.2.24 황산덕 법무장관은 ‘정부의 법적 견해를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인혁당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와 방침을 밝힌다’고 전제하고
  -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1962.1 조직한 지하당으로 김은 그 후 1962.5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 당시 재정책임이었던 김배영이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함으로써<sup>9)</sup>
- 1965.9.21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정의 발표문 내용 그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사건임

**다** | 주요 관련자 활동내용<sup>10)</sup>

성명	학력	활동내용(년도)
도예중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 영주 교육감 당선(56) · 4·19 후 민민청 경북연맹 간사장(61) · 민자통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조직부책(61)
박현채	서울대 경제학과(석사)	· 한국농업연구소 연구위원(63) · 국학대학, 서울 상대, 농협대학 강사
정도영	서울대 사학과 중퇴	· 경북 오상중학교 교원, 미군부대 통역(50) · 합동통신사 기자
김영광		· 대위로 예편(56), 4·19 후 통민청 중앙간사장 · 민족일보사 기자, 원릉건설 사원(62)
김금수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민민청 중앙간사장(61) · 운수업 자영(63)

9) “인혁당 찬양엔 반공법 적용”, 『조선일보』(75.2.25)』

10)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부 판결문 참조(사건 64고13663, 16042, 65고369)

성명	학력	활동내용(년도)
임창순		· 경북중 교사, 대구사범 강사, · 성균관대 부교수, 태동고전연구소 주간
김한덕	동국대 법학과 중퇴	· 경산 가야 중학교 강사 · 사회대중당, 민자통 부산진구 조직위원
김병태	중앙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 한국농업문제 연구위원 · 중앙대, 한양대, 농업대학 강사 ·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 경제과 위원
김경희	서울대 사학과 졸업	· 민중서관 사원
전무배	서울대 사학과 졸업	· 민족일보사 기자(61) · 서울신문사 기자(63)
박중기	건국대 정치과 중퇴	· 민민청 간사장, 민통련 청년부장 · 한국여론사 취재부장(64)
양춘우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신진회 학술간사 · 통민청 발기인

## 라

### 의혹사항

- ‘인혁당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시점에 발표됨으로써 당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사항은
  - 첫째,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인민혁명당’의 조직결성 여부
  - 둘째, 소위 ‘인민혁명당’이 남파된 간첩에 의해 조직된 후 창당 결과를 북에 보고하기 위해 남파간첩을 월북시키고 당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김배영을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는가의 여부

- 셋째, 1964.2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관련자들이 한일회담반대 학생대모를 배후조종했는가의 여부
- 넷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여부 등임
- o 요컨대 당시 혁신계 인사들의 모임과 활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조직된 인민혁명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으로 과장·왜곡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자극해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인한 박정희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잠재우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할 것임

## 마 | 조사결과

### 1) 수사착수 경위

- o 6·3 학생대모 관련자를 수사하던 중
  - 서울대 학생조직 ‘불꽃회’ 창설자인 김정강의 노트와 수첩에 김정강이 접촉한 인물로 도예종과 김금수가 기록돼 있어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음

### 2) 소위 ‘인혁당’의 실재 여부

#### 가) 당명 및 강령·규약 논의

- o 관련자들은 당시 중정에서
  - 당명에 대해
    - 김금수·김영광 등 처음 검거된 피의자들이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진술<sup>11)</sup>

11) 김금수는 중정 1차 신문조사(7.23)에서 ‘도예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비밀조직을 함께 했다’고 진술했고 7.26 진술에서는 당조직 및 강령·규약을 진술했고, 김영광은 1회 진술서(7.24)

· 도예중 등 여타 피의자들은 1962.1 모임부터 당명을 논의한 결과 ‘인민혁명당’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1962.8 모임 등을 통해 이에 합의한 것으로 진술했고

\* 도예중은 1회 진술서(7.30)에서 ‘당명은 결정된 것이 없고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면 당시의 총의에 의해 정하기로 하고 출발’ 했다고 진술했고 3회 진술서(8.1)에서는 1962.5 우동읍에게 ‘인민혁명당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고 들었다고 진술

· 늦게 검거된 양춘우는 1962.8 모임에서 합법화에 대비한 당명 논의 결과 이견이 많았으나 대체로 ‘인민혁명당’이 지배적 견해였다고 진술<sup>12)</sup>

·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난 남윤호는 ‘인민혁명당’ 가입관련 김영광으로부터 지하조직이라는 설명을 듣고 불안했으나 당시로서는 체면상 물리설 수 없어 가입했다고 진술<sup>13)</sup>

· ‘중앙당 조직위원’으로 발표된 박현채는 1964.8.5 작성한 4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당명을 확인한 바 없고 상부에서 지칭한 바 없어 모르고 있다’고 진술했음

#### - 강령·규약에 대해

· 김금수, 도예중, 김영광 등은 검거 초기 작성한 진술서에서 강령·규약 내용을 진술했고 뒤늦게 검거된 양춘우도 진술했으며<sup>14)</sup>

---

에서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은 그 합의를 알 수 없고 도예중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12) 양춘우 자필진술서 1회(64.9.25)

13) 중앙정보부 피의자 신문조서, 남윤호

14) 도예중은 1회 진술서(7.30)에서 ‘앞으로 합법화될 것을 예정 그 당시에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그때까지의 강령·규약을 대신하는 것을 구상’한 내용을 진술, 3회 진술서에서 ‘63.1.17 우동읍 집에서 강령·규약을 검토 후 채택’했다고 진술, 6회 진술서(8.6)에서는 64.3경 강령을 최종결정했다고 진술했으나 4회 피의자신문조서(8.6)에서는 63.6 중순경 ‘인혁당 강령·규약을 백지에 써서 김금수에게 숙독하여 암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 양춘우는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7) 증정에서 진술한 강령·규약에 대해 당시 도예종 등과 논의하였던 내용과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혼합하였으며 취조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검거된 관련자들이 말한 강령내용이라고 제시한 것을 부분적으로 진술했다고 했음

· 핵심인사를 제외한 1964년에 참여한 학생 등은 강령·규약에 대해 구두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

- 한편, 강령·규약 등을 기록한 문건과 관련

· 도예종은 중정진술에서 일부 관련자들에게 교육용으로 강령·규약 등이 담긴 문건을 회람시켰고, 6.3 계엄령 후 소각토록 지시했다고 진술

\* 도예종은 학생시위 배후조종 혐의로 지명수배(7.7)되자 도피하면서 어떤 여고생에게 자신의 문건을 소각하도록 지시했고, 여고생도 이를 인정했으나 도예종은 검찰조사시 이를 부인

-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 조사과정에서 당명과 강령·규약 등이 실재하는 것처럼 진술했으나

○ 관련자들 대부분은 당시 검찰조사시<sup>15)</sup>

- 1962.1 여러 명칭 중 하나로 ‘인민혁명당’이 제시된 사실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당명을 채택한 바 없고 강령·규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한바 있으나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도예종은 중정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서 규약은 63.10, 강령은 64.3 각각 채택되었다고 진술해 강령·규약의 채택 여부와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15) 62.1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당명을 논의할 때 여러 명칭 중 하나로 제안(도예종 검찰 신문조서 8회, 김영광·김한덕과의 대질 신문)되었으며, 강무갑은 63.1 도예종과 혁신정당의 명칭을 논의하면서 월남의 ‘인민혁명당’의 사례를 토의한 바 있다고 진술(강무갑 검찰 신문조서 1회)했고, 임창순은 자신이 도예종에게 합법화될 때의 당명을 물었을 때 도예종이 ‘인혁당’이라고 응답했다고 진술(임창순 검찰 신문조서 2회)했으며, 도예종도 강무갑·김영광·정도영, 박현채 등과 당명에 대해 논의했다고 진술(도예종 진술서, 8..29)하면서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피의자들도 이에 동조한 반면, 양춘우는 62.8 본인과 도예종·김배영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강령을 통과시켰다고 진술(양춘우 검찰 신문조서 1회)

- 서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정당 합법화에 대비한 활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 공판조서에 따르면

- 민민청과 통민청의 주요 인물인 김금수, 우홍선, 김영광 등은 1961.9과 동년 12월 사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 민정이양 후 정치활동이 허용될 것에 대비하여 양심적인 청년들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서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형태 등에서 참여자들이 다른 의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그러던 중 1962.1 우홍선 집에서 우홍선, 김영광, 허작, 서상호, 차재윤, 김배영, 김상한이 모여 서클조직에 관해 논의
  - 명칭, 강령·규약,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결정하지는 못했고 서클을 만든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 ‘인민혁명당’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여러 명칭 중에 하나였음
- 1962.8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도예중, 양춘우, 김영광, 김한덕, 김배영, 우동읍, 허작, 차재윤, 조만호가 모여 서클의 조직과 운영방법, 강령·규약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 1963.5 하순경 수유리에서 도예중, 김영광, 정도영, 우홍선 등은 서클운영 방침, 강령·규약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결론짓지 못했으며

- 이 자리에서 정도영은 ‘혁신정당의 합법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이 서클도 해체하자’는 의견도 제기했음

○ 한편, 당명과 강령·규약의 공식적인 채택 여부에 대해

- 서울형사지방법원(64고13663, 16042, 65고369)은

- 정당활동의 허용에 대비해 과거 혁신계열에 속했던 사람들을 서클형식으로 규합하고 장차 합법적으로 결성될 정당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 1962.8 모임에서 앞으로 정당활동 등이 허용되면 정당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게 되자 여러 의견 중 대체로 인민혁명당으로 하자는 것에 합의 되었고
- 강령은 도예중, 양춘우, 김배영에 초안을 작성시키기로 합의 후 이들이 강령을 기초하였다고 판시

- 당시 서울고등법원(63노69)과 대법원(65고505)은

- 1963.5경과 1964.6경 사이에 수시로 각처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수명씩 밀회하여 상호간에 장차 피고인 등이 이룩할 혁신정당의 기본이념 및 기초적 강령 등을 토론 또는 심의’했고
- ‘피고인 양춘우 증인 서상호 등의 검찰에서의 인민혁명당이란 당명이 결정되고 그 창당이 되어 그 강령·규약이 심의·통과되었다는 지의 진술 등은 위에 내세운 각 증거들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해
- 강령·규약에 대한 토론 또는 심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심의·통과되고 당명이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sup>16)</sup>

○ 당시 기소를 거부했던 장원찬 검사는

- 도예중은 ‘당을 만들려면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름을 썼을 것’이며 ‘설사 북한의 돈을 받아서 만들었더라도 혁명과인민이란 표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라며 강력히 부인했고
-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인민혁명당 이야기가 오르내렸을 수는 있었겠지만 인혁당을 만들려고, 혹은 만들었다고는 심증조차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음<sup>17)</sup>

○ 인혁당사건 관련자

- 조만호(1964년 당시 불기소 처분)는 1974년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로 구치소에 구금 중 변호사와 접견시 인혁당원으로 임시 가입했으나 금방 나왔다고 진술<sup>18)</sup>
- 김영광은 「진실위」 전화면담시(05.10.5)
  - ‘인혁당’ 관련자들은 통민청과 민민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 당시 순수하게 진보 혁신적인 활동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 있었고, 좀 과격하게 당을 지향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으며 나중에 어떤 계기로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고 진술

16) 다만 대법원은 “북괴의 위장적 민족자주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자 당시 관련자들이 서클의 확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을 예비한 사실을 인정했다.

17) “심증도 물증도 전혀 없었다”, 『한국일보(03.5.8)』

18) 1964년 공판시(65.1.13 1심 9차 공판) 박중기가 구치소에서 조만호에게 공판시 진술이 변한 이유를 묻자 검찰관계자가 호텔에서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맥주 5병까지 사주면서 ‘서클이 정치성을 띤 것이라고 말하라’더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자 조만호가 박중기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시인해서 문제가 되었으며, 1974년 당시 ‘인혁당’이라는 용어는 조직의 성격과 수준을 내포하는 것이라기보다 1964년에 ‘서클’로 규정된 조직이 사후적으로 ‘범칭’되어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양춘우는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6)
  - 소위 인혁당은 외형상 조직체계를 갖춘 정당조직이 아니라 정당 이전의 준비단계·추진단계의 형태로 조직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단계였지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 이러한 혁신정당 준비단계로서의 ‘무브먼트’는 일종의 서클 형태로 참여자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그 조직 형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비합법 조직은 일반적인 정형이 없으며
  - (조사관의 ‘무브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대해) 당시 ‘인혁당’ 성격은 한마디로 ‘혁신정당을 지향하는 비합법조직’이라고 정의했음
- 김금수는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12)
  - 중정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인혁당’ 강령·규약 등은 평소 자신이 생각했고 혁신계 인물들과 일반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 당시 도예종이 주었다는 강령·규약 문건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전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 김경희 또한 「진실위」 면담조사시(05.9.14) 강령·규약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
- 반면 당시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중정 직원 이용택·윤종원은 「진실위」 면담조사시(각각 05.9.21, 10.16)
  - 당시 수사과정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인혁당’이란 지하전위조직의 당명·강령·규약이 노출된 것이었고,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것으로 진술

- 당시 공안부 검사 장원찬은 「진실위」 전화면담시(05.9.22) 기소를 거부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수사에 오류가 있다거나 사건내용이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 장원찬은 정보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쪽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고 피의자 모두가 ‘인혁당’이란 단어 자체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며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증도 전혀 없었다고 말한바 있다고 보도되었음<sup>19)</sup>

## 나) 판 단

### ○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당명 논의 과정을 보면

- 1962.1 우홍선 집에서의 모임과 1962.8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모임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 도예중, 우홍선, 김영광의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1962.1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제시되었고 ‘인민혁명당’은 제시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고
- 공판조서에 따르면 1962.8 모임 이후 서클에 참여한 임창순, 이재문, 박현채, 정도영, 김병태 등도 당명을 알고 있지 못하고 당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는 진술이며
- 1962.8 이후 당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당명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채택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19) 자세한 내용은 김재명, 1989, “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사건”, 『월간중앙』 2월호 참조

○ 강령·규약 논의과정을 보면

- 1962.1 모임에서 강령·규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았고 1962.8 모임에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 1963.5 도예중, 김영광, 우홍선, 정도영 등이 모여 서클운영 방침과 강령·규약의 초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해체’까지 거론하는 등 당시 활동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1964.3 도예중은 강령·규약의 초안을 가지고 양춘우 등과 논의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보이나
- 이후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다른 자료가 없고, 공판조서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강령·규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 또 당시 사법부도 당명과 강령·규약의 토론·심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합의·채택한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

○ 따라서 소위 ‘인혁당’은

- 혁신계의 인물들이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장차 혁신정당활동이 합법화 될 것에 대비해 동지 규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혁신계의 통합을 위해 논의하고 활동한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 일부에서는 소위 ‘인혁당’은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학술적 연구단체가 아니라 조직 구성 및 강령·규약,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북한의 평화통일방안에 동조·표방하는 지휘체제를 갖춘 단체(서클)성격의 비합법 지하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음

- 「진실위」는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칭 ‘인혁당’이 공식적인 당명과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黨 수준의 반국가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

### 3) ‘북한의 지령’에 의한 조직결성 및 활동 여부

#### 가) ‘남파간첩 김영춘’ 부분에 대해

##### 【 조사 내용 】

- o 발표문에 따르면 ‘김영춘’은 1962.1 ‘창당발기인회’의 사회를 보고 1962.5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월북한 인물로
  - 1964년 중정이 작성한 「인민혁명당 조직체계」 등의 문서에 1962.1 모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1962.5에 월북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인물은 ‘김상한’이고
  - 1964년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변경신청서」에도 ‘위원장 김상한’이라고 제시되었으며
  - 1981년 이후 중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혁당 사건의 개요」에는 ‘61. 가을 김상한이 남조선내 비밀지하당 구축과 통일전선공작 임무를 띠고 남파된 후, 1962.5 인혁당 조직 및 사업 보고 차 입북’했다고 기록돼 있어
  - 발표문에 등장하는 ‘김영춘’을 ‘김상한’으로 판단하는데 무리 없음



○ 한편 당시 중정이 가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 김형욱 당시 중정 부장은 회고록에서 ‘나는 김배영이 머지않아 다시 남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김배영이 아니라 김영춘이란 가명으로 발표해 두고 예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했고<sup>20)</sup>
-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9.21)
  - ‘사건 발표 당시 인혁당 핵심 가담자인 김배영이 일본을 거쳐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해 버리면 향후 북한에서 남파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고<sup>21)</sup>
  - ‘발표당시 인혁당 초대위원장을 김某로 발표하였는데, 당시에 김某가 김상한이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것 또한 나중에 남파되어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
- 가명을 사용해 발표한 사실과 이것은 ‘월북 후 남하할 때를 대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됨

---

20) 이와 같은 김형욱의 회고 내용은 사실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남하를 예상’하고 가명으로 발표했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김형욱·박사월, 「인민혁명당과 사꾸라 파동」, 『김형욱 회고록Ⅱ부』, 성도문화사, 1989, p.135.

21) 김형욱과 이용택 모두 김영춘을 김배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후 맥락을 보더라도 ‘일본을 통해 월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김배영과 김상한을 혼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발표문에 김배영이 일본을 경유 월북했다는 것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모순되는 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가명으로 발표한 의도가 ‘월북 후 남하를 예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형욱과 이용택이 일치하고 월북했다는 측면에서 김상한과 김배영이 공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명을 사용해 발표한 사실과 의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김상한이 ‘남파간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 1964.8.14 사건발표 전 중정에서는 김상한에 대해 신원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8.15 부산지부로부터 자세한 인적사항을 보고 받았고 8.18 최종 확인했으나<sup>22)</sup>
  - 당시 중정이 작성한 다른 기록에서도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9.21)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실무진에서는 김영춘을 ‘남파간첩’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당시 주로 언론인 출신이 많고 있던 ‘부장 공보관이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소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해
  - 당시 중정은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발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 판 단 】

- 발표문의 ‘남파간첩 김영춘’은 김상한으로서 월북 후 다시 남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것은 발표 당시 중정도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서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2) 최종 확인된 김상한의 신원사항을 보면 일본 동양대학 문학부 철학과 중퇴(1945)하고 1949년부터 1950년까지 마산고등학교 교사(1947.2.1), 동래고등학교 교사(1949.6.1), 육군 종합학교 교관(1950.8.1), 육군 병기감실 번역관(1950.12.1)을 역임했고, 1951년부터 1960년까지 경남여고 교사(1951.10.1-1952.3.20), 동아대학 강사(1952.4), 부산대학 강사(1953.4.1), 동아대학 문리학부 문학과 전임강사(1954.4.1), 동 문리학부 영문학과 조교수(1955.3.31), 동 문리학부 교양학과 부교수(1958.10), 동 문리대 문학부 교양학과 부교수(1959.4), 의원면직(1960.6.22) 등이다.

## 나) '김상한 월북' 부분에 대해

### 【 조사 내용 】

- 1964.8.14 중정의 발표문에 김상한(발표문 김영춘)은 1962.5 중순 인민혁명당의 조직확대 공작 및 투쟁목표에 의한 제임무를 도예중, 우동읍에게 일임 후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민혁명당 창당 결과를 보고하고 비밀조직연락선을 연결했다고 함
- 이와 관련, 1964.8.20경 중정에서 작성한 「김상한에 대한 대북공작 상황보고」 등에 의하면 김상한은 1962.5경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을 받은 후 1962.7.12 북파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구체인 내용을 보면
  - 물색 동기 및 목적으로
    - ‘과거 좌익활동 경력소지자로서 북파 후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사회대중당에서 활동하다 지명 수배로 도피 중에 있고 생활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수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시키면 공작성과 거양이 기대’된다고 기록돼 있고
  - 공작목표로
    - ‘적으로부터 고첩으로 선정되어 남파되기를 요청, 남파 불가능시는 북한에서 인물을 선정 남파’시키는 등 두 개의 목표를 선정하고
  - 위장구실로
    - ‘자진월북과 좌익 또는 혁신계 활동경력을 주장하고 ‘관련인물들과 서클을 조직해 민정이양 후 정치활동 재개시 활동을 대비하고자 했다’며 신뢰를 얻고

- ‘남파시는 지도원을 동행시켜 주어 서클지도를 요망하도록 요청하여 불가하다면 북한에서 영주할 의사를 개진하되 남한정부기관의 공작원임을 일절 기밀에 보하도록 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 공작지령으로

- 공작기간은 ‘월북하여 북괴에서 신뢰를 득하고 남파시까지’이고, ‘남파 불가능시는 영주를 희망하고 월북자를 포섭하여 남파시켜 일선 정당에서 활동하라’고 기록
- 부차적 임무로 ‘간부인물 명단, 첩보정책 변경유무 등’을 제기

○ 이와 관련해 관련자

- 이○○(김상한 북과공작 담당 팀장, 당시 중정 직원)은 중정 피의자 신문조서(64.9.1)에서

-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인민혁명당 사건이 공개 발표되고 또 오늘 인민혁명당이 본인에게 물색된 1962.5 이전에 창당되었고 김상한 자신이 초대위원장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생각해 볼 때
- 자기 이외의 혁신세력을 월북시켰다가 넘어 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상한 자신이 넘어 가야겠다고 하는 애국적으로 나오던 태도가 즉 자기 목적수행을 위하여 월북하려는 위장구실이었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 신원조사에서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당시 김상한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활동하겠다고 하기에 그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속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김○○(김상한 북과공작 담당 과장)은 중정에서 1964.9.1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 김상한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를 포섭 조종하여 완전히 우리 사람을 만들고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도와준다면 자진 월북자로 가장하여 임무수행 될 것이라고 착안하여 채용했고
  - 김상한은 이번 기회에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남한정부를 위해 노력할 의지도 있다고 들었고, 그렇다면 북괴의 비위에 맞게 위장술을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남한에 처자를 둔만큼 돌아 올 의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
- 한편 당시 김상한의 월북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혁당사건’ 관련자
  - 김영광은 중정 조사시
    - 1962.5경 김상한이 사무실에 찾아와 신상관계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간 뒤 우홍선에게 알아보라고 말했다
    - 1주일이 지나서 김상한이 다시 찾아와 탈퇴이유를 물었더니 “미군관계 특수 기관원으로서 이북에 갔다 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갈 수 없게 되었고 미군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 고 했으며
    - 1962.5경 도예종, 우홍선과 만났을 때 우홍선이 김상한이 다시 내려와 찾아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니 도예종이 ‘지금까지의 조직을 백지화 하자’고 했고
    - 1962.8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김상한에 대해 묻자 도예종과 우홍선이 밝힐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진술

- 우홍선은 1965년 검찰조사시
  - 김영광으로부터 김상한 월북에 대한 얘기를 듣고 1962.5 도예종, 김영광과 모였을 때 ‘김상한이 다시 월남하면 이중간첩으로 내려 올 것인데 절대로 만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진술
- 한편 김영광과 도예종은 중정에서 1964.8.9 실시한 대질조사에서
  - 도예종이 1962.5 모임에서 ‘김상한이 월북할 때 당의 활동 상황과 과업문제를 가져가겠다는데, 개인적으로 월북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우홍선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진술하자
  - 김영광은 도예종의 말이 맞다고 진술
- 인혁당사건과 우홍선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김상한의 월북사실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당시 ‘김상한 월북사건’을 담당하던 중정 수사관 오○○은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나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음

## 【 판 단 】

- 김상한이 1962.7.12 육군첩보부대 북과공작원의 임무수행을 위해 월북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 반면 ‘인혁당 창당결과 보고’라는 목적수행을 위해 육군첩보부대의 공작원으로 위장했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로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 결론적으로 ‘김상한의 월북’에 대한 발표문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모든 사실들이

1964.8.14 이후에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 다) '김배영 월북' 부분에 대해

##### 【 조사 내용 】

- 1964.8.14 중정의 인혁당사건 발표문에 따르면 우홍선이 김배영을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차 1962.10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해 김배영이 1967.10 '남파간첩'으로 검거된 후 작성된 「북괴간첩 김배영에 대한 수사 중간보고(67.10.28)」와 「신문 조서(68.2.5)」를 검토해 보면
  - 김배영은 '활동자금난에 봉착하자 일본에서 조총련계 활동을 하고 있는 실형 김배준을 통해 조달할 것을 구상하고 있던 중, 도예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조총련계 박모(일본명 木泉勝)를 접선'하였고
  - 1962.10부터 1964.10까지 김배준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자주 왕래하던 박씨(명불상)를 김배준에게 소개 받고 친하게 되어 한국에서 밀항한 사실을 알리게 된 후 박씨가 조총련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1964.8 인혁당사건이 발표되고 일본경시청에서 수배하자 이를 박씨에게 알리고 구원을 요청, 박씨가 소개한 조총련계 사람 집에 거주'하던 중, 1964.11 월북하게 되었다고 함
- 김배영의 공판조서와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 1962.9 도예종이 ‘도일을 추진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도예종이 학술연구단체의 자금마련을 위해 일본에 가야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 그 후 도예종이 쪽지를 전해 달라고 해서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전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모르며 전해 달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고, 일본에 가서 만난 실형 김배준은 조총련계가 아니며
  - 일본에 간 것은 생활이 곤란했고 혁신계에 가담했다고 해서 취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고
  - 북한에 가게 된 것은 1964.8경 한국일보를 통해 자신이 수배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경시청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김배영사건과 관련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판결문(1968.4.27)에서
- 김배영이 도예종의 ‘밀서를 수령’해 일본에 있는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 ‘인혁당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밀항할 것을 모의’했다는 부분과 김배준이 ‘조총련계’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 한편, 1964.9.21 중정이 작성한 「업무연락」에 의하면
- 중정이 김배영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1964.8.7 이전으로 보이고 이 문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보면
  - ‘김배준의 조총련 지위 및 활동상황(북괴와의 관계), 김배영의 소재, 인혁당과 북괴 및 조총련과의 관계, 북한 내왕사실 유무’ 라고 기록돼 있어 적어도 1964.9.21까지는 김배영의 소재와 북한 내왕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 판 단 】

- 김배영은 1962년 일본에 있는 실형 김배준에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도예중으로부터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쪽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본에 도착하여 전해 주었고<sup>23)</sup>
- 김배준의 피혁가공업을 도와주며 일본에 거주 중 1964.8 인혁당사건으로 일본 경시청에서 수배하자 1964.11 월북한 것으로
- 김배영이 ‘당자금 수령차’ 일본에 갔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 또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도예중이나 우홍선의 지시 혹은 ‘인혁당’ 차원의 결정으로 김배영이 일본에 갔다고 할 수 없고
- 김배영이 월북한 이유가 인혁당사건 발표로 인한 일본 경시청의 수배이고 그 시점이 1964.11로서 중정의 인혁당사건 발표일인 1964.8.14 당시에는 월북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며
- 당시 중정은 1964.9.21까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 우홍선이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약정된 암호 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차 김배영을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다는 1964.8.14 발표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23) 62.9 도예중은 밀항도일 김배영에게 일본 동경도 신주쿠 거주 기하라(木原一夫)에게 전달해 달라고 쪽지를 전달한 바, 동 연락문은 길이 5cm, 넓이 약 4cm 가량의 지편에 기입한 후 말아서 비닐로 포장하여 백양담배 1본의 내부를 빼고 그 속에 삽입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넣어 일견 담배인 척 가장하여 백양담배 19본과 공히 갑에 넣어 봉함(김배영사건 의견서, 68.4.27 서울형사지법 제3부 판결문)

라) '북한의 인혁당을 통한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 지령' 여부

【 조사 내용 】

- 1964.8.14 중정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1964.2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학생데모를 조종했다'고 발표
-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반대 데모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제기
- 이와 관련해 당시 중정이 핵심적으로 활동한 학생으로 지목한 오병철은<sup>24)</sup>
  - 1963년 말경 김금수 등과 민족문제, 민족자본형성문제, 농촌진흥문제 등을 연구하는 서클형성에 관해 이야기한 후, 박종열, 서정복 등을 만나 위와 같은 문제 등의 토론·연구하는 서클을 만들자고 말한 일이 있으나
  - 이것은 서클조직의 준비로 의견교환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으로 서클조직에 착수한 사실은 없고
  - 서정복과 3.24 학생데모는 '애국적'이고 '학생들의 애국충정이 반영되도록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후, 김경희와 박현채 등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으며

24) 1심 7차 공판조서(65.1.8)

- 학생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고
- 6.3 계엄령이 선포된 후 박현채로부터 서클활동이 위험하니까 행동을 중지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 없다고 진술

\* 오병철은 중정의 5회 진술서(7.31)에서 1964.3.26경 김경희로부터 “3.24 데모가 일어났는데 왜 일찍 보고를 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데모를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공판시(1965.1.8) 이를 부인

○ 또 박현채는<sup>25)</sup>

- 오병철을 통해 학생데모에 대해 데모를 억제하라, 4·19를 기하여 각 대학연합전선을 형성해 전국적으로 일제봉기토록 하라는 등 지시한 바 없고 학생서클 구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했으며<sup>26)</sup>
- 6·3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sup>27)</sup>

○ 박현채, 김병태, 정도영 등은 서로 만나서 3·24와 5·20 학생 데모의 과격성과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를 비판했다고 진술<sup>28)</sup>

25) 박현채는 중정 진술서(1964.8.13)에서 한일회담 반대학생데모를 주도한 것은 혁명수단의 한 방법이며 도예종이 직접 학생지도부 조직을 통해 주도했고, 도예종·정도영 등과 함께 데모를 조종해오다 5.20 데모의 실패로 조직보호를 위해 후퇴시켰다고 진술했으나 공판시 이를 부인했다.

26) 1심 2차 공판조서(64.12.3)

27) 1심 7차 공판조서(65.1.8)

28) 1심 2차(64.12.3), 3차(64.12.10), 4차(64.12.24) 공판조서

- 한편 당시 중정의 수사기록에서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해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 김정강은 중정 신문조서(1964.8.1)에서 1964.3 도예종이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종용한 적은 있다고 진술

- 검찰은 오병철, 서정복 등 ‘인혁당’사건 학생관련자들의 공소장을 변경 공소취하했으며<sup>29)</sup>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위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 판 단 】

- 김금수, 박현채 등이 학생이던 오병철을 만나면서 학생서클 구성을 시도하고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한일회담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나
-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해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배후조종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없어
- 19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전적으로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마) 판 단

- 1964.8.14 중정의 인혁당사건 발표문에 등장하는 ‘남파간첩 김영춘’은 김상한으로서 ‘남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명으로 발표한 것이고 실제로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것은 발표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29) “공소취하로 14명 석방”, 『조선일보(64.10.17)』

- 김상한은 1962.7 육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으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월북
  - ‘인혁당 창당결과보고’라는 목적수행을 위해 육군첩보부대 북파 공작원으로 위장했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당시 중정조사시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김상한의 월북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사후에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에게 추인되거나 합의된 바 없고, 당시 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 발표된 ‘남파간첩 김영춘(김상한)’과 그의 ‘월북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 김배영의 월북이유가 ‘인혁당사건’으로 인한 일본 경시청의 수배이고 월북시점이 사건이 발표된 이후이며 64.9.21까지 중정이 김배영의 소재와 북한 내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들로 볼 때, 김배영과 관련된 당시 발표문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
  -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에게 ‘북괴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학생서클 구성을 위해 당시 학생들과 만났으나 학생데모의 전개양상에 대해 우려했던 점과 위 오병철의 관련 진술로 볼 때
  -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전적으로 ‘북괴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조종’해 발생·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 가) 물·전기 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 여부

- ‘인혁당사건’ 담당검사의 ‘기소거부 파동’으로 사건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던 1964.9.12 한국인권옹호협회 박한상 변호사(당시 민정당 국회의원)는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고문<sup>30)</sup>을 받았다고 발표했고
- ‘인혁당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중정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반이 서울구치소에 방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신직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당시 박한상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sup>31)</sup>
  - 한국인권옹호협회가 9.11부터 12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인혁당 피의자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이 발가벗긴 상태로 전기·물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도예중, 정도영, 전무배, 김경희, 임창순, 김영한의 고문, 구타, 협박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
-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sup>32)</sup>

30) 헌법 제10조(1962.12.26. 헌법 제6호)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형법 제125조(1953.9.18. 법률293호)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 형사소송법(1963.12.13. 법률1500호)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1948.12.10) 제5조에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31) “혹독한 고문받았다”, 『조선일보(64.9.13)』; “병신될 줄 알라고 채찍”, 『동아일보(64.9.12)』

32) “인혁당사건 고문설 검찰서 진상조사에 착수”, 『조선일보(64.9.16)』; “당시 수사관의 명단 작성, 고문은 행동대원이 맡아”, 『조선일보(64.9.18)』; “고문은 행동대가?”, 『경향신문(64.9.17)』; “가해자 색출에 착수”, 『동아일보(64.10.20)』

- 신직수 검찰총장은 1964.9.15 ‘고문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사결과 고문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방침을 밝히고 수사에 착수하여
- 형사부 정태균 부장 검사가 64.9.16부터 17까지 서울구치소에 출장, 피의자 26명 전원을 개별 면담하여 고문의 구체적 방법, 고문자들의 인상에 대해 조사하고
- 중병 상태에서에서만 들어가는 병감의 도예종 병실일지 조사, 전문의의 상처 진단서 작성, 당시 수사관들의 리스트 작성 등을 진행했으며
- \* 검찰은 도예종이 교도소에 온 후 병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교도소에 따르면 병감은 중환자가 아니면 입실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외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중에는 아직까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자와 옆구리가 아픈 자가 발견되었고
- 허작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이 두려워 자기의 안경알로 성기를 잘라 자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진술로 확인하고 관련자들은 취조관이 아닌 행동대원이 고문을 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했으며
- 구속기소 된 바 있는 26명 중 14명을 공소취하 한 것은 중정 수사기록에 임의성이 없어 이것을 백지화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수사한 끝에 밝혀져 취한 조치라고 밝혔음
- \* 정태균 변호사는 「진실위」 전화면담(05.10.7)서 사건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당시 신문기사를 誤報라고 진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반은 9.15 서울구치소에서 박한상 변호사가 만난 이외의 14명을 중심으로 진술을 듣고 이들도 대체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고문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sup>33)</sup>
- 제45회 국회법사위 회의록(1964.10.21) 제10호 기록에 따르면
  - 박중기, 박상홍, 김한덕의 경우 우측 다리 관절부 부근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상처가 발견되었고
  - 도혁택, 황건의 경우 구타와 전기고문, 남윤호의 경우 집단 구타를 당했으나 하일민은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 도예종 이하 26명 중 20여명을 조사한 바 거의가 전기 또는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1964.11.13) 제21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 문상익은
  -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사건 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을 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으므로 동 피의자 등에 대한 증언녹취를 통하여 진실여부를 감사한 바
  - 전무배외 20여명의 피의자 등은 모두 전기고문, 물고문 등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 고문의 결과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처도 목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했음
- \* 검사 신문시 도예종, 강무갑, 도혁택은 중정 진술서가 고문에 의한 허위라고 주장했고 정도영, 김한덕 등은 위협과 강요에 의해 중정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했음

33) “인혁당피고 진술을 청취”, 『조선일보(64.9.16)』



- 한편 사건 관련자 김규철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9.27)
  - 인혁당 총무위원이라 발표된 제일은행원 이종배(일명 이상배)는 1964년 7월 성북서 2층<sup>34)</sup>에서 투신하였는데
  - 이종배는 당시 수배 중인 도예종의 은신처를 알고 있던 인물로 도예종을 검거하기 위해 심한 고문을 당했고
  - 이날은 도예종이 은신하고 있는 곳에 수사진과 함께 다녀온 뒤 도예종 검거에 실패한 수사관들로부터 다시 심한 고문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한 것이며
  - 그 결과 이종배는 척추골절상이라는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1970년 고문의 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진술
- 반면, 중정은 인혁당사건이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인혁당사건 국정감사 대비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 인혁당 사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 함께 수사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함부로 고문을 자행할 수가 없었다고 반박 논리를 준비했고

34) 이상배가 투신한 이후 작성된 신문조서에는 투신장소가 성북서로 되어 있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으나 이상배의 매부로 인혁당 사건 관련자인 김규철은 「진실위」 한홍구 위원과의 면담에서 이종배의 투신장소는 동대문 고양구청 자리에 있던 중앙정보부 수사국 건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성북경찰서 작성 「국가보안법 5조, 반공법 45조 위반 피의자 이종배 수사상황보고(64.8.5)」 및 이종배의 「진단서」 참조

- 당시 사회분위기는 한·일회담 반대학생데모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6.3사태를 계기로 안정화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할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
- \* 당시 중정 수사관 오○○ 등은 1964.9.4 검찰에 출석해 사건의 실체에 허위가 없고 고문은 일절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음
- 중정부장 김형욱은 1964.9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고문여부에 대해
  - 한 사람(허작)은 2시간 만에 자기 진술을 다하고 변소에 가서 안경을 가지고 자살을 기도, 고문할 시간 여유가 없었으며
  - 고문을 피하려고 2층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데 2층에서 고문할 경우 소리를 지르면 밖으로 다 들리고 지하실이 있는데 굳이 2층에서 고문할 필요가 없으며
  -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자 그 비밀만 지켜달라고 하면서 모두 진술했으며
  - 폐가 나쁜 사람(정도영)은 고문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고문자체를 할 수 없다고 고문사실을 부인
  - \* 도예종이 병감에 입감된 것에 대해 도예종이 위장이 나빠, 특별히 음식을 따로 제공해 주었고 위장치료를 위해 병감에 입감하도록 배려했다고 주장
- 또 중정 관련자 이용택 당시 수사과장과 윤종원 수사관은 「진실위」 면담조사시(각각 05.9.21과 10.6)
  - 1964년에는 남산에 있던 미군이 사용하던 원형 콘센트 막사 2개동(개당 100평)과 동대문운동장 근처에 있던 고양군청이 철수하고 비어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 피의자들을 사무실 여기저기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크게 신문해도 옆 팀에서 진술내용을 못 알아듣고, 이로 인해 수사관끼리 다툼이 있기도 하는 등 고문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 추궁과정에서 고성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당시 5국 건물이 대로변에 있어 길가의 행인들에게 다 들리기 때문에 고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법원은 도예중·양춘우의 고문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 판결에 문제없다고 판시<sup>35)</sup>
- 사건을 담당한 검사 장원찬은
  - 의문사위 조사시 도예중이 옷통을 벗어 보여 주었는데 몸통에 지지고 멍든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송치되기 전 정보부에서 고문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했고
  - 또 「진실위」 전화면담 조사시
    - 고문, 고문하는데 그 범주를 정하기도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역사가 무너지며 지금도 세상 어디에선가는 억울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
    -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지, 사건내용이 조작인지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는 것인데 약간의 강압 흔적이 있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진술

35) 도예중은 5차 공판(64.12.29)에서 조서의 내용은 중정의 엄문에 못 이겨 그와 같이 진술했고 향소이유서에서는 고문실의 구조를 그려 상세히 고문과정을 설명, 양춘우는 1심 5차 공판(64.12.29)과 6차 공판(65.1.7)에서 중앙정보부 조사시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2심 2차 공판(65.5.17)에서는 수사관 10여명의 위협으로 진술서를 쓰고 났더니 검찰관이 왔다고 진술했다.

## 나) 판 단

- 박한상의 발표에 따른 언론의 보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들에서 확인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 고문수사가 문제되자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
  - 도예종이 중환자만 입실하는 병감에서 치료받은 사실, 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귀와 옆구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 확인, 허락이 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해한 사실, 고문한 사람이 행동대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 피고인들의 상처 진단서와 수사관들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 국회 법사위의 회의록(1964.11.13)에 “고문의 결과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처도 목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 특히 검찰과 국회의 조사 시점이 1964.9.15일 이후로
  - 사건이 송치된 1개월 후이고 관련자들이 중정에서 조사받던 시점으로 보면 1개월 반 가까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이 신체에 외상과 이상이 일부 발견되는 점은 관련자들의 물·전기고문과 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 더구나 당시 ‘고문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sup>36)</sup>
- 장원찬의 의문사위 진술내용과 「진실위」 전화면담에서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역사가 무너지며, 약간의 강압흔적이 있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당시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있는 등
- 중정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진술 또는 자료들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됨<sup>37)</sup>
- 한편 당시 중정 관련자 이용택과 윤종원이
  - 당시 수사국의 위치(대로변 주변)와 구성(콘센트 건물과 2층 건물)을 고문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중정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진술 또는 자료들에 대비하여 설득력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해 위 진술만으로 중정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와 정도의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가 이뤄졌다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중정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하는 형태의 고문·구타·위협 등 인권침해 행위가 관련자 각각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임

36) 「진실위」 조사결과 현재 검찰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사건명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었는지 불투명하며 당시 검찰에서 재판과정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수사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

37) 일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 있다.

○ 소위 ‘인혁당사건’은

-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혁명 포고령 제4호’<sup>38)</sup>가 발표되면서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군사혁명재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혁신계가 처벌되는 등 혁신계 활동이 억압되고 정치활동공간에서 배제되는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 혁신계의 주요 인물들이 혁신계의 활동을 평가하고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정이양 이후 혁신정당의 활동이 합법화될 시기에 대비해 혁신계 규합과 통합논의를 시작
- 구성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동방식과 통합형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서클’ 수준의 활동방식과 통합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혁명공약’ 6항에서 밝힌 ‘민정이양’의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해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 ‘한일회담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964.5.20 서울시내의 대학생들이 군사쿠데타 타도투쟁을

38) 조선일보(61.5.17) 보도에 따르면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오후 5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4호 6개항목을 결정선포하였는데, 1항은 현 장면정부의 일체 정권은 단기 4294년 5월 16일 하오 8시까지 완전 인수한다, 2항은 현 국회는 해산한다(지방의회도 포함), 3항은 일체의 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은 엄금한다, 4항은 현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체포한다, 5항은 국가기구의 일체 기능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6항은 모든 기관시설의 운영은 정상화하고 여하한 유혈적인 행위는 이를 엄금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63.1.1로 해제되었고 62.3.16 민간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 박정희, 김종필 등 군사정부의 핵심세력이 구정치인 및 군내 반대파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규제기간 6년의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든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최고회의에서 추방된 전 군지도자와 군사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비롯해서 자유당, 민주당, 신민당 및 진보적 군소정당의 지도자, 전직 고위관리, 부정축재자, 남북학생회담 관련 학생지도부 등이 규제 대상이다.

선언하는 등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군사정권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확대되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자

- 6.3 일체의 시위금지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 모든 학교의 휴교를 명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한일회담반대시위를 잠재우는 등 정권의 반대세력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던 중
- 8.14 중정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북괴의 지령’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이 ‘배후조종’한 것이라고 발표했음
- o 조사결과, 당시 발표문 내용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이었으며, 많은 관련자들은 중정의 수사과정에서 물·전기 고문 및 구타 등의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

### 가 시대적 배경

- o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감 고조
  - 박정희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자 1971.10.15 위수령을 발동하고 10.19에는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
  - 1971.12.6 비상사태 선포, 12.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자 박정희 정권은 안보위기를 느끼고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를 선택

○ 유신체제의 등장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조치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 시킨 후, 비상국무회의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유신헌법’을 제정
- 1972.12.27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가결 ‘유신헌법’ 제정에 의해 3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이 강화되는 등 박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성립
- 1973.1.19 비상각의에서 사법관계 5개 법률을 개정하여 구속적 부심제도와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애고, 법관의 임명 보직권을 대통령이 갖고, 긴급구속을 확대 강화<sup>39)</sup>
- 1973.3.24 대법원 판사 15명 중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됨

○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1973.8.8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 뒤 대학가에서 동 사건 규명 및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번져나가자,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이 본분을 이탈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경고
- 1973.10.2. 서울 문리대생 300여명은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단행
- 정부는 학생 2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학생시위는 10월 4일 서울법대, 10월 5일 서울상대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전개됨

39) 한승헌,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천주교인권위원회 역음, 『사법살인』, 학민사, 2001



- 1973.11.12. CBS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문화방송,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모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데모를 보도하기 시작
- 1973.12.24.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명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1974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경북대학교를 필두로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됨

#### ○ 유신정권의 대응

- 1973.12.26 김종필 총리가 전국 TV와 라디오 특별방송을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
- 1973.12.29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불온 언동과 소위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
- ‘개헌청원운동본부’ 발족과 관련 박대통령은 “10월 유신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개헌운동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담화문 발표
- 1974.1.8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반대 운동 제압을 위해 긴급조치 제1호(개헌논의 금지) 및 제2호(비상군법회의 창설) 선포하면서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 이를 여기는 자뿐 아니라, 이 조치를 비방한 자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긴급조치 1호의 6항은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규정
  - 긴급조치 2호는 이에 따라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긴급조치 선포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이나 방송국장을 소집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4개항의 협조사항 요청<sup>40)</sup>

## 나

### 사건 개요

- 1973.10.2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반유신 시위를 벌이자 학원가에서 동 시위를 계기로 반유신 운동이 불붙기 시작하였으며<sup>41)</sup>
- 1974.3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경북대를 필두로 학생시위가 전개되고
- 1974.4.3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일명 삼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일부 시위가 전개되자

40) 협조요청사항은 ‘1. 데모·퇴학처분·휴강 등 학원내의 움직임을 일체 보도하지 말아달라, 2. 종교계의 민권운동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 3. 외국(월남 등)에서의 반독재운동에 대한 사태를 취급하지 말아 달라, 4. 연탄기근문제 등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취급하지 말아 달라’이다.

41) 유인태, 2003, “내가 겪은 민청학련 사건”,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엮음, 『1974년 4월』 2권, 학민사

○ 1974.4.3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sup>42)</sup>

-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 합법을 가장, 정체를 위장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인민혁명’의 수행을 기도하고
-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이 대두되고 있어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절차에 따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고 발표하였음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諸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 선포 전에 제 1항 내지 제 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출석, 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 연구 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2) “박대통령 특별담화”. 『조선일보(74.4.4)』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또는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조치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에 따르는 제반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8. 제 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 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 1항 내지 제 3항, 제 5항, 제 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의 검찰관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지역 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

○ 1974.4.25 중정(부장 : 신직수)은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시<sup>43)</sup>

-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1974.4.3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4단계 혁명을 통해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권수립을 목표로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고 발표함

○ 1974.5.27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sup>44)</sup>

43) “민청학련 수사상황”, 『동아일보(74.4.25)』

44) 비상군재 발표 전문, 『조선일보(74.5.28)』

-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 정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하였으며
  - 서도원·도예중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재일 조총련계열·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 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기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에 대해 긴급조치 제1·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선동 혐의로 기소하였음<sup>45)</sup>
- o 1974.7.13 비상보통군법회의(재판장: 박현식)는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이철 등 7명 사형,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으며<sup>46)</sup>
  - o 1974.9.7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 o 1975.4.8. 대법원은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 사건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

45) 박홍규, 2001, “인혁당 재건단체 사건과 법”, 천주교인권위원회역음, 『사법살인』, 학민사

46) 이철, “민청학련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 『사법살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민사, 2001

## 사건 일지

- 1973.10.2 서울문리대 학생 300여명 선언문을 발표하며 반유신시위
- 1973.10.4,5 서울대 법대, 상대 반유신시위
- 1973.11.5 지식인 15인 시국선언 발표, 경북대학교 학생 300여명 반유신시위, 서울대 사대생 동맹휴학
- 1973.11.7~ 12.7 서울대 공대 등 단과대별 시위 및 시국선언문 발표,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숭전대, 서강대, 동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수도여사대, 경희대, 영남대, 상명여사대, 경북대, 효성여대 등 전국 각 대학에서 반유신 시위 전개
- 1973.10.23~11.30 경향신문을 필두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독교방송국, 문화방송국, 중앙일보 등 언론자유수호운동 전개
- 1973.12.24 함석헌, 천관우, 장준하 등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발족,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 1973.1.8 대통령긴급조치 1, 2호 선포
- 1974.1.21 도시산업선교회 소속 교역자 긴급조치와 유신체제 비판 성명서 발표
- 1974.1.24 고영하 등 연대생 7명 대학 강당에서 긴급조치 철회 토론회 진행
- 1974.1.27 문인 61명 시국선언 발표 개헌서명운동 전개
- 1974.3.21 경북대 반유신 시위
- 1974.4.3 서울대 의대, 문리대, 성균관대, 고대, 서울여대, 감신대, 명지대 등 시위
- 1974.4.5 정윤광, 강구철, 정찬용 등 긴급조치 4호 반박문 작성 및 배포

## 다

### 쟁점 사항

####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민청학련」은 74.4.3 기해 전국적인 반정부 데모를 전개하기 위한 조직으로 통일된 목적수행을 위해 결성된 법률상 단체라고 판단<sup>47)</sup>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47) 검찰관 의견(74.7.9)

- 조직의 결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청학련」 결성을  
관련자들이 인정하고 조직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구체적 물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중정 및 검찰부에서 제출한 증거는 출판서적·반독재구국선언문  
·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전부이고
- 명칭은 단지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붙인 것이며, 조직의  
실체는 반유신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기구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함

## 2) 조직의 성격

### ○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 「민청학련」이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국가 건설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면서
- 유인물 및 선동내용이 북한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단순한 학생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sup>48)</sup>

###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 유인물 및 주장내용이 박정희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각종 구호와 비슷하다는 것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것은 설득력이 빈약한데다
- 화염병 제작 시도만으로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를 친북용공으로 규정했으며
- 민청학련의 실제 활동내용은 폭압적인 유신 1인 독재체제에  
반대하여 전국동시 다발 시위를 전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전복 및 노동정권 수립 등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

48)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 의견진술(74.7.9, 1심 16차공판)

### 3) 조직체계와 활동

-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일관되게
  - 1973.12월 초순경 모임에서 「10·2 데모」는 산발적·비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한 후, 향후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모의하였으며
  -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1974.1.21 서울의대, 3.21 경북대, 3.28 서강대, 4.1 연세대 및 4.3 충봉기로 국가변란을 기도하다 좌절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 「민청학련」 조직은 반유신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기구적 성격에 불과하고, 정부를 전복할 만한 체계나 하부조직이 없었다는 입장

### 4)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

-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 도예중·서도원 등이 서울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학생 조직을 결성해 민중봉기에 점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 여정남을 포섭, 「민청학련」 구성과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거사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 여정남이 서울지역 학생운동 지도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정남이 「민청학련」 지도부를 지도·조종한 관계가 아니고
  - 전국 동시다발 유신반대 시위 준비과정에서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리더들이 만나 유신반대 활동을 준비하였다고 주장



## 5) 조총련과의 연계성

-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일본인 다찌가와·하야가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곽동의를 지령을 받아,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 지도부를 접촉,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금품 제공 등의 활동을 했다고 판단
- 사건 관련자들은
  - 다찌가와는 곽동 의와 1973.9 「김대중 선생구출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으며 기자와 취재협력자의 관계에 불과하였고
  - 이철, 유인태 등은 두 일본인이 신학기 학원가의 투쟁계획에 대해 취재요청을 해와 인터뷰에 응한 것에 불과함에도, 조OO의 거짓 자백으로 폭력혁명을 사주하고 거사자금을 받은 것으로 각색되었다고 주장

##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음

## 라

### 조사 결과

####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 【 수사기관 및 재판부 】

- 1974.4.25 중앙정보부(부장 신직수)는
  -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4.3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 혁명을 통해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민족지도부」 등 과도단계를 거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고 발표
- o 검찰의 공소내용에 의하면 1974.3.29 경기도 양주에서 김병곤이 오성숙·강박인 등 타 대학 대표자들을 만나 명칭 결정 사실을 전달
- o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심 16차 공판(1974.7.9)에서
  - 피고인들이 「민청학련」이란 4.3 데모를 추진한 의사의 주체임을 법정에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조직은 6개 도시 24개 대학과 10여개의 고등학교로 연결되고 있으며
  - 뚜렷한 명분을 내걸고 각자 임무까지 결정해 유형적 결합을 이루었다면 명칭이 무엇이었던 단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민청학련」의 단체성을 논고
- o 대법원은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서 말하는 결사는 2인 이상이 결합되면 족하고, 공동목적이 있어야 하나 공동목적이 존재한 이상 그것이 결사의 유일한 목적임은 요하지 않으며
  - 결사에 있어 지속성이라 함은 사실상 지속하여야 함을 요하지 않고 지속시킬 의도에서 결합한 이상 결사에 해당된다며
  - 동 단체를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단체로 인정한 점에 있어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

## 【 민청학련 관련자 】

### ○ 명칭 사용 배경과 관련

- 1974.3.6. 유인태의 집에서 서중석, 유인태, 나병식, 정문화, 이철 등이 참석하여 역할분담 및 투쟁계획을 논의하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sup>49)</sup>
- 그러나 1974.3.27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김병곤·정문화·황인성이 모여 유인물의 신뢰도 및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 유인물에 사용할 명칭의 필요성을 느끼고
- 당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시한 ‘민주회복전국학생연맹’, ‘반파쇼민주학생연맹’(김병곤), ‘반독재전국민주학생연맹’(정문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황인성)을 놓고 황인성이 제안한 명칭으로 결정

○ 서중석(1심 8차, 1974.6.24), 임규영 등은 공판 시 민청학련 명칭을 중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

### ○ 단체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 정문화는 「민청학련」은 유인물에 붙이기 위한 명칭으로, 실재한 단체는 아니며 강령이나 규약도 없었다고 진술<sup>50)</sup>
- 송무호는 9차 공판에서 연세대에서는 ‘민청학련’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

49) 명칭은 박정권에게 말려들 우려가 있고, 당시 조직적 수준에 따라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철, 앞의 글

50)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8차공판(74.6.24)

- 이철은

- 「10·2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 반유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학생운동 내부의 논의는 1973.12경 일단락을 맺었는데 이것은 엄밀한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 “우리는 반정부이나 반국가는 아니다. 더구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일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빨갱이라는 누명만은 씌우지 말아 달라”<sup>51)</sup>고 진술
- 각자의 인간관계를 총동원하여 폭압통치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적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전국투쟁의 연대조직 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창했을 뿐이다.<sup>52)</sup>

o 반면, 핵심 관련자들은 면담조사에서는

- 유인태는 2005.10.13 면담시 「민청학련」이란 중정에서 조작한 것으로 조직을 만든 일이 없었으며, 약간의 역할분담으로 동시다발적 데모를 해보자는 뜻으로 모인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
- 안양로는 2005.10.14 면담에서, 조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제인 유신 철폐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결의한 수준이었다고 주장
- 서중석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09.28)
  - 「민청학련」 활동을 위한 논의에서 단체 결성 및 북한과의 연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유신정권에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

51) 이철, 앞의 글

52) 이철, 앞의 글

-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기 위해 키우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며
- 단체명 및 구체적인 연결방법 등을 아예 만들지 않고, 상부 지원선 등은 없으며, 화염병 등은 제작해 봐야 별로 쓸데가 없으니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3개 사항을 강조
- 한편 서중석은 1974.3.7 유인태의 집 회합에서, 이미 전국적인 조직체계와 사회 각 계층과의 연락방법 등이 완비되었다'고 했고
- 나병식도 「진실위」 면담조사시(05.10.14) 1974.3.7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민청학련 명칭을 쓰기 전부터 실제적 조직은 갖추어 졌다'고 진술

### 【 판 단 】

- 「민청학련」의 지도부로 분류되었던 이철, 유인태, 황인성, 이강철 등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대중적 설득력과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고
- 또한 각 대학들이 동일한 명칭으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지 않는 등<sup>53)</sup>
-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유신반대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민중선언문'등 일부 유인물에서만 사용한 명칭임
- 「민청학련」이란 조직은 반유신 민주화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기구'적 성격으로 정부전복을 수행할 만한 하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53) 경북대는 '반독재구국투쟁위원회' 동국대, 성균관대는 '반독재투쟁위원회', 경희대는 '반독재자유수복투쟁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유인물 제작·배포 했다.

- 조직에 관련되는 규약, 강령, 조직체계 등이 없었으며
- 「민청학련」은 조직체계를 가지고 움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 주도세력들이 1974.4.3 전국 동시다발 유신반대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일시적·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2) 조직의 성격

### 【 수사기관 및 재판부 발표 】

- 중정은 「민청학련」의 활동은 반정부 활동을 넘어서 ‘노농정권’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민족지도부 등 과도단계를 거쳐 공산국가 건설을 기도했다고 발표
-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 투쟁목표가 정부 전복 후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의 확립에 있었다면 국가변란의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며
  - 그 논고로서 ① 북한의 선전구호를 인용한 유인물 ② 저지선 돌파를 위한 화염병·각목 제작 기도 ③ 정부 전복 후 ‘민족지도부’ 구상 ④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을 적시했고
  - 유인물의 용어들이 북한의 상용용어이며 각종 구호는 북한 간첩에 대한 지령사항과 상호연관성 있는 것<sup>54)</sup>으로 판단하면서 북한방송 청취와 관련한 수사를 통하여 북한과의 연관성을 주장<sup>55)</sup>

54)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의견진술(1심 16차, 74.7.9)

55) 「민청학련」에서 채택하여 주장하고 있는 12개의 사실은 매 항목마다 북괴방송의 선전이나 대남지령과 수미일관하고 일치하고 있다. 본건 피고인 등의 목표가 민주화 요구에 그친 단순한 학생운동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의견(74.7.9)

「민청학련」 구호	북한 방송	일시
독재정권 물러가라	독재를 타도하라, 박정권을 타도하라	73.10.9, 74.3.27
폭력정치의 원인 중앙정보부 해체	정보폭력정치의 총본산 중앙정보부 해체	73.10.9, 74.2.4
유신헌법 폐기	유신체제 폐기, 유신독재 타도	73.10.9, 74.2.14,
1·8 긴급조치 철폐	민주를 우롱하는 긴급조치 즉각 철회	74.2.22
긴급조치로 구속된 민주인사 즉각 석방	체포·구금된 학우들의 석방을 위해 견결히 싸워야 한다	73.12.2 74.3.20
대일 예측경제 청산	박정권은 나라의 경제명맥을 일본에 바치는 매국행위와 굴욕외교를 당장 중지하라	73.12.14, 74.2.21
지식인은 민중의 길잡이로서 투쟁의 선봉에 나서라	지식인은 민주수호 투쟁에 참여해 민족의 지성이 건재함을 과시하라	73.10.8
언론인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언론인은 문필활동으로 언론봉쇄 정책을 짓부시고 식민지 통치제도를 고발하라	73.10.13
종교인은 순교자의 결단으로 민주투쟁의 깃발을 들라	종교인들에게 유신체제 반대투쟁 호소문 발송	74.2.16
임금 인상, 노동약법 철폐, 노동운동의 자유 보장	최저생활비 보장,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 투쟁,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73.11.22, 74.1.5
남북통일 사탕발림 영구집권 최후 수단	박 도당은 남북대화를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	74.2.7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원심과 1심 판결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보법 위반 및 내란 예비음모에 대한 판단을 한다’며 검찰 신문조서를 적시하고 있는데
  - 기본질서의 파괴를 비합법적 무력투쟁에 의해 성취해야 한다는 것은 소신이었고 방법만은 공산주의 이론에 찬동<sup>56)</sup>

56) 이철의 검찰관 1회 피의자신문조서

- 화염병·각목 등으로 유혈사태를 유발해 정부타도후 과도적 통치 기구로서 민족지도부를 결성<sup>57)</sup>
- (민청학련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라고 생각<sup>58)</sup>
- 화염병 등을 사용, 국가기관을 강점하고 유혈사태를 야기시켜 정부를 전복하자는 방법론에 찬동<sup>59)</sup> 등을 들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 국헌문란 또는 국가변란 목적의 유무, 반국가단체 존재 인식의 유무 등은 사실인정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 사실심 심판관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 인정이 적법절차와 자유심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심에서 다룰 수 없다고 판시 하면서 사실심인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

○ 검찰은 「민청학련」에서 살포한 13곡의 노래 가사 중 「날아가는 까마귀야」라는 혁명가는 단어 1개만을 바꾸어 썼을 뿐 북한이 제창하는 노래라고 주장

○ 한편,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공판 과정에서

- 유근일은 11차 공판에서 1974.3.9 이철, 유인태 등과 만나 외신 보도 중 한국 학생들의 데모 이슈가 불투명하여 잘못하면 용공 분자로 몰린다는 등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57) 유인태의 검찰관 1회 피의자신문조서

58) 여정남의 검찰관 3회 피의자 신문조서

59)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의 검찰관 피의자 신문조서



- 자유민주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을 밝힐 목적으로 원로들을 지지하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 그때 김수환, 한경직, 천관우, 김재주, 박순천 등 이름을 대면서 명칭을 붙인다는 것이 ‘민족지도자’라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 유근일은 상고이유서에서 ‘본 피고인의 소위 범죄사실이란 나병식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과 구타와 기망에 의해 본의 아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하여 본 피고인 역시 수사관의 묵시적 명시적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주장
- 1974.3.13 박형규 목사에게 정부타도후 과도체제로 민족지도부 구성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3.16 서중석에게 전달<sup>60)</sup>(나병식)
  - \* 나병식은 05.10.11 면담시 유근일과 ‘민족지도부’ 얘기를 했다고 확인, 반면 유인태는 05.10.13 면담시 유근일 등이 ‘사회 원로들이 잘 중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외전되어 민족지도부·과도정부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
- 김지하에게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이라면서 자금지원을 해달라고 요청<sup>61)</sup>(이철)
  - 이철은 ‘개인적으로 정부 전복이 가능하다면 바라는 바’<sup>62)</sup> 라면서도 노농 정권 수립 등은 얘기한 적이 없고, 과도기적 통치기구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다 진술<sup>63)</sup>

60)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3차 공판(74.6.18)

61)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2차 공판(74.6.17)

62)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2차 공판(74.6.17)

63)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6차 공판(74.6.21)

- 6차 공판에서 이철은 과도기적 정부수립을 한다거나 노동자 농민 등 무산대중을 위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민족지도부’ 이야기는 중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
- 이철은 검찰조사시 혁명은 불가피하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했다. 정부나 중요기관의 전복은 물러가게 한다는 뜻이었다<sup>64)</sup>고 진술
- 김효순은 1974.3.23 이근성과 만나 데모를 벌여서 행정을 마비시켜 전복하는 방법을 바란다고 했다. 검찰조사시 내가 바라는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생각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sup>65)</sup>고 진술
- 공판정 진술시 나병식은 1974.2.하순경 서상섭의 셋방에서 라디오 다이알을 돌려 북한방송을 틀었으나, 방송내용은 듣지 않았고 신문지상에 「통혁당 목소리 방송」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잡히는가 하고 들어봤는데 안 들렸다고 주장
- 김효순은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3회 청취했으나 식별이 어려운 몇 마디만 들었다고 주장
- 변호인들은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변론

**【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진술 】**

- 유인태는 05.10.13 면담시 종교계나 학계 등 재야 및 「인혁당 재건위」에서도 나름대로 「10.2 데모」가 저항의 불길을 일으킨 이후에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데모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지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무슨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64)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5차 공판(74.6.20)

65)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5차 공판(74.6.20)

- 유근일 등의 경우 “내년 봄에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 원로급들이 나서서 중간에서 잘 중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의 말이 와전되어 「민족지도부」니 과도정부니 하는 식으로 작성되어 한 일도 없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
- 이철은 05.10.29 면담시 기독교계통에서 「민족지도부」 운운하는 말이 나와 중정에서 이에 대해 ‘과도체제’라는 빌미로 사용하였는데 이상주의자들의 낭만적인 ‘막걸리’수준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 서중석은 05.9.28 면담시 「과도체제」 내지 「10인지도부」 등 용어는 학생들 3 - 4명이 모였을 때는 우리의 단체명도 만들지 않을 정도의 보안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 다만 조영래·이현배 등 선배들이 “어른들도 잘 뛰고 있으니 너희들이 잘만 뛰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대화 중에 공상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나온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신독재하에서 거사에 참여할 학생수 등을 예상할 때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여겼다고 진술
- 안양로는 05.10.14 면담시 당시 박정희 정권의 굴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민족지도부 운운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

## 【 판 단 】

- 당시의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까지 명시하였고,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규정,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진행

- 사법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체계하에서 민청학련이 반국가단체임을 최종 확인하였으나
- 민청학련 관련자들이 1974.4.3전후 5개월간 유신반대 전국동시다발 시위 준비와 각 대학별 시위를 전개한 사실 이외에
  - 공소장 및 검찰의견 상의 ‘공산화’를 위한 활동내지 결의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유인물 내용 및 피의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한 유추해석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주동자들이 「민청학련」 데모만으로 정부전복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유신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는 등 단순한 내심적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논의정도에 그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 특히 정부를 참칭한다거나 주동자들의 정권탈취 등 적극적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특히 최고 리더격인 이철, 유인태 등은 ‘민족지도부’에 대해 모르고 있는 등 ‘반국가단체’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정 수사상황보고(92보, 74.4.21)의 「수사초점」에 의하면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집단에 대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용공성, 반국가단체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이미 정해진 방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짐

**수사상황보고 - 수사초점 주요내용**

1.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하고 2.이들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의 작성 경위와 초안을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는 것을 추궁하여 공산주의자임을 입증 3. 조직체계 전모를 규명, 발본색원 할 것 등을 중심으로 수사

- 「민청학련」 사건관련자들은 각종 유인물의 내용 및 조직활동은 억압적인 1인 독재 유신헌법 철폐를 통한 민주주의 쟁취와 노동 약법철폐, 부정부패 해소, 구속인사 석방 등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 북한방송청취 부분 및 각종 구호가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당국의 발표는 박정희 정권이 사회적 위기감 조성과 함께 사건 주모자들에게 대한 처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한 측면도 있으며
  -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북한방송 청취와 관련하여 일부 관련자들은 신문매체에 의한 보도가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국내정세 파악을 위해 청취하였다고 주장
- 그 당시 학생들이 부르던 “까마귀야 시체보고 우지마라”등 노래를 친북용공으로 규정한 내용은
  - 일제 때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부르던 노래<sup>66)</sup>였으며, 가사의 내용은 독재정권의 부패상과 비리를 의미하는 것임

### 3) 조직의 활동 및 목표

#### 【 수사기관 적시 활동 내용 】

- 1973. 「10.2 데모」에 고무된 운동권 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는 학생들의 힘으로 밖에 성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 이철·유인태 등 서울대 문리대를 중심으로 여정남 등 경북대학 운동권 등 전국적 학생망을 구축해 나가면서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구체적 세력 규합을 모색
- 1974.1 이후 이철, 유인태 등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삼양동 자취방」에서 전국 각 대학과의 연락망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정세를 파악, 조직체계를 완비해 나감

66) 192년대 만주일대 독립진영에서 많이 부른 노래다. 독립군시가집편찬위원회, “독립군추도가가”, 『배달의 맥박』, 독립동지회, 163쪽

- 1974.3.7을 전후하여 1선, 2선 및 각 대학 조직책과 유인물 작성책 등을 선정하는 등 조직결성을 완료
- 1974.3.27경 경기 양주에서 황인성이 제안한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을 단체의 명칭으로 결정하고 4.3을 거사일로 결정
-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혁명선동적인 유인물 10여만장을 제작, 배포 및 경찰저지선 돌파를 위한 화염병 및 각목 사용 등을 연구
  - 조직원 상호간의 회합·연락은 점조직으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접선
  - 시간·장소·관계자명에 관한 암호사용 등 비밀 지하활동 전개

〈 규모 및 인원 등(1974.5.16 현재) 〉 67)

- 활동자금 출처 및 총액
  - 윤보선 1명 400,000원
  - 종교계 인사 지학순 등 5명 1,345,000원
  - 혁신계 인사 고인순 등 8명 2,773,000원
  - 학생자체조달 김병곤 등 21명 662,000원
  - 기타 선경물산사원 김형관 등 8명 111,500원      총계 : 5,291,500원
- 인원
  - 총관련자 1,034명(검거 745명, 고지자 266명, 수배중 23명)
  - \* **구속 230명, 불구속 23명**
  - 계열별 인원(총 67명, 57명 구속)
  - 인혁당재건단체 24명(21명 구속)
  - 일본인 기자 등 조총련계선 3명(2명 구속)
  - 반정부 인사 11명(7명 구속)

67) 「민청학련 국가변란기도사건 수사결과 보고」(74.5.16)

## 【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 진술 】

- 정문화(서울대내 조직책)는 1974.3.7 총지휘 이철, 기독교책 나병식, 서울대책 정문화, 서울시내 대학책 김병곤, 지방대학책 황인성 등의 역할 분담 결정 내용 진술(1974.4.9)
- 9차 공판에서 안양로는 내가 2선 조직을 맡았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진술
  - \* 이철은 1974.4.24일 체포된 후 4.25 신문에서 동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했으나 안양로는 05.10.14 면담시 1선·2선·지휘부 등 역할분담 사실을 부인
- 김병곤(서울시내 대학책)은
  - 민중·민족·민주선언(이 철 초안, 1만부), 지식인과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정문화 초안) 등 2만부, 민중의 소리(김병곤 초안) 1만부 등을 인쇄기로 결정했다고 진술(1974.4.9)
- 이철은 공판시 유신체제 타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목표에 정부 전복은 없었고 데모 목적은 민생고 해결, 민주회복, 학원 자유 수호, 유신헌법 폐지 관철이었고<sup>68)</sup>
  - 3·4월에 벌이는 데모의 요소는 정부 타도였으나 구체적 목표는 없었다<sup>69)</sup> 고 진술
- 유인태도 ‘최종목표는 유신철폐 등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고 관철이 안 될 때는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 “기소장에는 국가변란, 정부전복, 노동정권 수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웃기는 소리다. 당국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데모를 계획한

68)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2차 공판(74.6.17)

69)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2차 공판(74.6.17)

일은 있으나 정부가 학생데모로 전복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했다.  
이 점은 당국이 더 잘 알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

- 유신헌법 철폐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주안점을 두면서 민족주의 내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사회상으로 보면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sup>70)</sup>한 바 있다고 진술
- 나병식은 3차(74.6.18) 공판에서 정부주요기관을 강점하고 화염병 등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 9차 공판과정에서 강구철은 변호인의 질문에 유신독재체제를 반대한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 12차 공판에서 정화영은 내가 계획한 데모의 목적은 ‘유신헌법’ 폐기를 정부가 관철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 화염병, 몽둥이, 각목 등을 사용하자는 논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평화적인 데모를 하려고 했다고 진술
- 황인성(각 지방대학 조직 담당)은
  - 1974.2.22 유인태 집에서 서울 각 대학 및 영남은 경북대, 호남은 전남대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 데모를 모의했고(1974.4.16)
  - 1974.3.27 서울 삼양동 셋방에서 이철·정문화·김병곤 등과 회합, 거사일자를 4.3로 결정했다고 진술(1974.4.9)
  - 4차 공판에서 데모의 이슈로는 「유신헌법」 폐지, 민주헌정 질서 회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내세울 것을 합의하였다고 진술

70) 비상보통군법회의 1심 5차 공판(74.6.20)



## 【 관련자 회고록 및 면담 내용 】

- 이철은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사법살인』, 천주교인권위) 라는 회고글에서 민청학련의 결성 과정과 활동 내용 등을 기술
  - 우선 「민청학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각 그룹을 보면
    - 학생운동권 선배그룹(3선개헌 반대운동시 강제징집후 복학한 이들로 서중석·유인태·안양로·정윤광·이철 등)과 70·71학번을 주축으로 한 후배그룹으로 나뉘며
    - 이외 종교계(지학순 주교 등), 졸업생 선배(김지하·이현배·장기표 등), 정계(윤보선 등), 재야(함석헌·장준하·백기완 등), 문학계와 학계(김동길·김찬국·백낙청 등)로 크게 분류
  - 10·2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 반유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학생운동 내부의 논의는 1973.12경 일단락
    - 이철과 김효순이 서울대내 단과대, 조영래·이현배 등이 재야원로, 유인태가 전국 각 대학을 연결하고
    - 지방으로는 이 철과 유인태가 전남대, 최국신을 통해 전북대, 안양로를 통해 충남대, 여정남을 통해 경북대 등을 연결
  - 1974.1 전국 투쟁조직을 서울대(문리대·법대·상대), 서울(서울대·고대·연대), 전국(서울·대구·광주)의 3·3·3원칙 합의
  - 투쟁계획이 확정된 것은 1974.3 하순경 경기도 양주군의 모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을 결정

- 1974년 신학기 투쟁이 실패하고 있었지만 4.3 예정대로 투쟁을 결행하기로 했고, 4.3 서울대·성대·이대·고대 등이 시위를 전개
- 한편, 나병식은 05.10.11 면담에서 당시 고문은 받았으나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은 없었다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
- \* 나병식은 1974.3.7 유인태의 집에서 서중석 등 4-5명이 만나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란 명칭을 쓰기 전부터 역할분담은 이루어져 있었다고 진술

### 【 판 단 】

- 「민청학련」은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기보다는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이 긴급조치 철폐, 유신헌법 폐기, 민주화 쟁취를 위해 전국동시다발 시위를 전개하여 유신체제 타도투쟁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 당시 전국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알고 있던 학생운동 진영이 효과적인 유신반대 운동을 전개하려고 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임
- 사건 관련자들은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였고
-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구호로서 ‘격문’ ‘민족·민주·민중선언문’ ‘지식인·언론인·종교인에게 드리는 글’등 유인물, 진술내용만으로는 사건관련자들의 최종목표가 ‘노농정권 수립’으로 추론하기 어려우며
- 「민청학련」의 최종목표는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건설’에 있다기보다는 유신헌법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었고

- 「4·3 유신반대시위」 준비 모임은 폭력혁명을 통한 인민혁명을 하려 하였다기 보다는 박정희 정권의 폭압정치에 항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통하여 민주회복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됨
- 박정희 정권 폭압통치의 폭력성에 비해, 데모 저지선을 뚫고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화염병 제작 시도를 한 것 등은 폭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임
- 중정 수사상황보고(92보, 74.4.21)의 「수사초점」에 의하면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이적성을 부각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 수사이전에 이미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 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

#### 수사상황보고 주요내용

- 투쟁방법과 목표를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술에 따라 우리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중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 내용 조사
- 배후관계에 있어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지령이다. 국내혁신계의 조종 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괴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하여 친북용공으로 규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

- 1974.4.3. 박정희 정권은 “소위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으로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문 발표
  - 박정희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있기도 전에 학생들이 ‘인민혁명’을

하려한다는 결론내리고, 재야 및 혁신계를 학생운동의 배후로 만들어 유신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

- 1974.4.5. 문공부에서 발행한 “국가변란획책 전국청년학생총연맹의 불온상”제하의 책자 내용에 사건 관련 자료, 사건내용 등이 충망라되어 있고
- 중정의 자료 중 ‘3·30조치’라는 문서가 존재하는 것 등으로 볼 때, 1974.4.3. 긴급조치 4호 관련 박정희 담화문 발표 전부터 사건 인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 4)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

- 수사기관<sup>71)</sup> 및 사법부에서는
  -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은 71.4경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한 당시 경북대 정의과 4년에 재학 중인 여정남을 포섭
  -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학생 조직을 결성해 민중봉기에 점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민자통 경희대 위원장 이수병과 전인민혁명 당원 김용원에게 인계
  - 이들은 다시 이철, 유인태, 안양로 등에게 여정남을 소개함으로써 전국민주청년총연맹 구성과 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거사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고 진술

71) 중정의 수사착수 경위를 보면 유인태를 체포하여 신문하던 중 “4.16 여정남이 ‘학생데모를 조종하는 문제는 내가 경험이 있으니 나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미래의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얻었고(중정수사상황보고), 4.17 이강철을 검거, 익일 여정남과 만나기로 한 사실을 진술 받아 4.18 여정남을 검거한 후, 여정남이 이수병·김용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4.18 두 사람을 검거, 이수병은 다시 도예중·서도원이 자신과 여정남을 배후 조종했다고 진술, 4.20 앞의 두 사람을 대구에서 체포해 진술을 받았다.

○ 중정조사에서 나타난 여정남의 활동을 보면

- 1974.4.18 중정 조사에서

- 김용원 · 이수병 등의 지령을 받아 이철 · 유인태 등과 민족적 연합전선 형성, 독재정부 타도, 노동자 · 농민을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등을 모의하고

- 김용원으로부터 18만원을 수령해 학생조직에 전달했고, 도피중 1974.4.15경 김용원의 지시로 이 철과의 접촉을 단절했다고 진술

- 1974.4.25 중정 조사에서는

- 하재완으로부터 북한 평양방송의 맑스주의 방송대학 강좌 청취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3단계 혁명론을 교양받고

\* 학생데모로 4.19와 같은 사태 조성 → 과도정부형태의 사태수습위 구성 → 노동자 · 농민 세력을 규합, 사회주의 혁명 완수

- 전국적 학생조직을 형성 · 강화하라는 하재완 · 이재문 · 서도원의 지령에 따라 1973.9-1974.4간 서울대 이철 · 유인태, 경북대 이강철 · 정화영 · 임규영 등을 포섭 조정하여

- 사상이념을 교양지도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민청학련을 구성하고 학생데모를 일으켜 민중의 자연발생적 참여로 전국규모의 데모를 유발하라고 지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검찰 공소장에서는 여정남이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간 연계와 민청학련내 각 지방대학 연계 역할 정황을 적시하고 있는데

- 여정남은 이철 · 유인태 등 학생운동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직 준비 상황 및 거사계획 등을 파악, 격려했고

- 이수병·김용원 등 소위 ‘인혁당 재건을 위한 서울지도부’ 인사들에게 거사준비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거사자금을 지원 받아 이철·유인태 등에게 전달했으며
- 하재완·서도원 등 대구 인사들에게 학생운동 지도자 및 서울 지도부 인사들과의 접촉 및 활동내용을 보고
- 한편, 하재완은 여정남과 관련 중정 조사시<sup>72)</sup>
  - 1973.10 자택에서 서도원을 접선, 대구 지방만의 산발적인 학생 데모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 여정남을 서울로 보내서 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확대하자고 합의
  - 서울대와의 연결방법은 삼락일어학원 강사 이수병에게 여정남을 동 학원 청강생으로 가장, 접선케 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3.12 하순 여정남을 상경시켜 이수병과 접선시켰다고 진술

【 민청학련 관련자 증언 】

- 여정남의 인혁당 배후조종 문제로 수사 초기 이철, 유인태가 여정남을 조종했다는 진술서 요구에 대해 “선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고 항의하자 이후 이철 등이 여정남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변경
  - “너희 서울대 애들이 다 해 놓고 뭐 얘기냐”며 추궁하던 것을 여정남의 배후조종을 받았다는 진술로 바꾸어 “나이도 한참 위고 하니 너희들이 지도받은 것으로 하자”는 선에서 수사 종결<sup>73)</sup>
  - 유인태는 「진실위」면담조사시(05.10.14) 「민청학련」의 이른바 배후세력에 대해 「통혁당 사건」의 영향으로 선배들의 관여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72) 중정수사상황보고(74.4.28)

73) 유인태, 앞의 글

- 「민청학련」 자체가 상하부 조직체계나 연대들을 체계적으로 갖춘 실체적 운동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며
- 1974년 봄 여정남을 제외하고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고, 여정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도 없으며
- 중정의 처음 조사는 여정남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었는데, 그 후 1974.4.19~20경부터는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꾸며졌고
- 여정남은 이론적인 사람은 아니며 같이 세미나를 한 적도 없고, ‘인혁당’ 관련자 가운데 1-2명 정도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 여정남은 공산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만들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이 진실임

- 이철은

- 여정남에게 교양을 받거나 조직, 시위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일도 일체 없고, 경북대 출신인 여정남이 서울에서 나나 다른 서울대 학생들을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sup>74)</sup>
- 인혁당이나 혁신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여정남도 우리들에게 지시를 할 입장도 아니었고 실제로 지시를 한 일이 없음

74) 「진실위」 면담(05.10.14) ; 의문사위원회 진술

- 서중석은

- 「인혁당재건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다만 이현배와 수회 접촉시 “서울과 경북지역의 선배그룹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일반적인 말만 들은 적은 있지만<sup>75)</sup>
- 「인혁당재건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10.2 데모」 때에도 여러 곳에서 선이 들어왔지만 혼선만 빚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도하에 학생들이 책임진다’는 대원칙을 세웠고
- 엘리트 의식을 포지한 서울대가 데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지역이 주도적으로 데모를 조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나병식은<sup>76)</sup>

- ‘인혁당 재건위’사건과 관련해 혁신계들은 개인적으로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과 재야 중심으로 반유신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 당시 고문은 받았으나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은 없었으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

- 안양로는

- 1969년부터 서울 문리대,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 등 씨클 연합회에서 전국 학술토론회를 진행하여왔는데 고려대 한맥회에서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여정남을 만났고

---

75) 「진실위」 면담(05.09.28)

76) 「진실위」 면담(05.10.11)



- 여정남은 민주화운동의 헌신적 선배로 인식하였으며 서로 지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sup>77)</sup>고 언급

○ 당시 수사관들의 의문사위원회 면담진술에서

- 중정 6국 계장 윤종원은

- 여정남의 진술내용 이외에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 「민청학련」은 유인태가 총괄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드하여 인혁당 재건위에서 배후조종하기는 어려웠다

- 사건 수사관인 손중덕은

- 의문사위원회 진술 당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한 것은 아니고<sup>78)</sup>
- 우리들은 중정에서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했다는 발표에 반발을 했으며 우리는 이 사건을 순수 대공사건으로 다루었다고 하였으나

\* 본 위원회 면담시, 의문사위원회에서 그런 의미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

- 당시 수사관인 임찬욱은 여정남이 여러 학생을 만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학생 한 명을 통해서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77) 「진실위」 면담(05.10.14)

78) 의문사위원회 손중덕 면담기록

## 【 판 단 】

- 당시의 문건과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의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판단할 때, 이들은 여정남의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라도 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
  - ‘학생들의 힘에 의한 학생들의 책임으로’, 내지 ‘주도권은 서울·서울대·서울대 문리대에 있다’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 「민청학련」 측은 공소내용과 같이 서도원, 도예종 등에 의한 「민청학련」 배후 조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 여정남과의 관계는 최소한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교류를 가지고 유신반대 전국동시다발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확인되나
  - 여정남의 활동과는 별도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민청학련」에 대한 개인적 활동내용 내지 동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상호간의 활동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로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확증은 당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5) 일본인 및 「조총련」 과의 연계성

### 【 수사기관 및 재판부 】

- 중앙정보부는 1974.4.25 「민청학련」 사건 발표시
    - 일본 좌익계의 교내 자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다찌가와가 조총련의 비밀조직원으로 재일 민단원을 자칭하고 있는 곽동희의 원조 아래 우리나라에 수차 드나들면서
    - 1966년 이후 일본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던 하야가와와 더불어 폭력혁명을 선동·금품제공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발표
  -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도 검찰관 진술(1974.7.9)에서
    - 1973.12.25~26 양일간 접촉에서 이철·유인태는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통해 투쟁한다고 하였고
    - 일본인들은 이철·유인태가 공산주의자로서 이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가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단정하였다고 적시
- \* 1974.7.13 두 일본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1975.2.17 형집행 정지 후 강제출국

### 【 사건 당사자 신문시 진술 】

- 조OO(이철의 경기중 4년 후배)는 1974.5.1 증인신문에서
  - 이철·유인태는 다찌가와와 회합시 ‘우리의 목적은 현제도를 무너뜨리고 노동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 다찌가와가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으로 찬성하는 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묻자 ‘전국 학생들을 조직해 일제히 봉기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

-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되는 부분 삭제”하라고 하고
  -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 모의과정, 목표배후, 자금, 활동, 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고
  - “太刀川(다찌가와), 早川(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을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 하여 早川(하야가와)과 함께 전하여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키로 하고”
  -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은 정부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는 되지 않으니 太刀川(다찌가와), 早川(하야가와)는 돈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등 선동하는 것은 뚜렷이 표시하도록 했다.

- 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00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 (1) 太刀川(다찌가와), 早川(하야가와) 등 두 일본인이 이철, 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 사주, 방조하였다는 점
  - (2) 太刀川(다찌가와), 早川(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 유인태가 공산주의였다는 점
  - (3) 太刀川(다찌가와), 早川(하야가와) 등이 이철, 유인태 등 학생 운동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직회와 접근한 상황
  - (4) 太刀川(다찌가와)가 이철, 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 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 함으로써 太刀川(다찌가와), 早川(하야가와) 등이 정부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임 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 중앙정보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으로 지목한 광동희는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김대중 구출운동의 핵심인물로서,

곽동희와 다찌가와는 서로의 관계가 취재원과 기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조○○의 진술은 1974.4.29(100보)자 중앙정보부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중정이 이철·유인태 등과 두 일본인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려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이철은 동일 증인신문에서

- 회합시 다찌가와가 ‘한국에 가서 학생지도자를 만나 격려하라는 곽동희의 부탁을 받고 찾아왔다’고 말했으며
- 유인태가 ‘정부가 학생데모를 무력으로 제압할 경우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북으로부터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보며 주선해 보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진술

○ 유인태의 경우

- 1973.12.28 다찌가와와 인터뷰시 이철이 가능하다면 무장까지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으나 자신이 삭제를 요청했으며
- 다찌가바로 부터 ‘바라는 이상사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서독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sup>79)</sup>

\* 이때 이철은 능력대로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라야 한다고 첨언

- 또한 다찌가와가 ‘이북방송이 남한의 현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있으니 정보 입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고
- 1974.4.2 다찌가와가 유인물 제공을 요청했으나 ‘각 대학별로 두사람

79) 중정수사상황보고(74.4.16)

정도밖에 모르는 것을 미리 줄 수 없으니 내일 오후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7매를 전달했다고 진술<sup>80)</sup>

- 하야가와와 다찌가와의 확실한 정체는 모르나, 광동의의 지령으로 데모 선동을 위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sup>81)</sup>
- 한편, 이철은 변호사 면담과 공판시 검찰관·변호사 신문 등에서
  - 일본인과 관련 외교적 문제가 있는데 17일 공판할 때 검찰 범죄대로 진술 나중에 사실대로 밝히자고 했고
  - '다찌가와 등이 무기는 이북에서 받는다 하기에 그렇지 않다. 일본을 통해서도 받지 않겠다'고 진술<sup>82)</sup>했으며
  - '다찌가나가 이북으로부터 무기를 받아들이겠느냐고 해서 학생운동의 함정이라고 했더니 원한다면 일본을 통해 받아주겠다며 일본 공산당 학생과의 연락을 제의했다'고 진술<sup>83)</sup>했고
  - 이북방송 청취얘기는 다찌가나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느냐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북방송을 들어 그것을 통해 안다고 했다고 진술<sup>84)</sup>
- 유인태도 다찌가나가 한국사정은 이북에서 정확하게 보도한다고 하며 북한방송 청취를 권유했고, 이북으로부터 무기 구입의사를 묻자 이철이 그 점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 했다고 진술<sup>85)</sup>

80)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증인신문(74.5.2)

81)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증인신문(74.5.2)

82) 이철 변호인 황인철 면담기록(74.6.14 15:40 - 16:40)

83) 1심 5차 공판

84) 1심 6차 황인철 변호사 반대신문

85) 1심 6차 홍성우 변호사 반대신문

【 광동의 면담조사(05.8.18) 】

- 다찌가와는 김대중에 대한 취재 문제로 안면 정도 있는 사이로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 보라는 등의 주문은 한 적이 없고
- 당시 다찌가와는 이철·유인태 등의 이름을 대면서 이들이 학생 운동의 리더인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 사건 당시 일본인 구속과 관련, 일본 TBS 방송에 출연해 이철·유인태의 이름을 아는 정도로 일상적 취재에 응한 것이며, 지시를 내리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

【 민청학련 관련자 주장 】

- 이철, 유인태 주장
  - 「조총련」 국제공산당을 배후로 끌어들이는데 이용된 다찌가와와 하야가와에게 자금을 받고 폭력혁명을 사주 받았다는 진술을 강요받았으나
  - 두 일본인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가들을 우호적으로 취재하는 외국인 기자로, 신학기 학원가의 투쟁계획에 대해 취재요청을 해와 어머니가 재일교포인 조○○의 통역으로 유인태와 이철을 인터뷰했는데
  - 이것은 조○○의 거짓 자백으로 인해, 우리가 두 일본인으로부터 폭력혁명을 사주 받았으며 자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각색되었고
  - 두 일본인은 일본공산당 내지 조총련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규정되고 「민청학련」의 배후라는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한일간의 외교문제까지 비화된 것이라고 주장



○ 유인태는

- 기자와 취재원으로서의 대화 외에 아무 말도 없었고, 다찌가와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다찌가와와의 사상이나 성향을 파악할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 다찌가와는 1993.11.3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결성식에서 당시 유인태를 만나 4.3프로그램을 취재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고생한다는 얘기에 동정과 공감이 가 7,500원을 준 것이 나중에 7만 5천원으로 변했고 그 성격도 공작금으로 변해 북한과 연결되었다는 각본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

- 회고록에서 ‘일본인들이 데모 무력진압에 대비해 무장의 필요성을 제기 하며 무기구입 주선을 얘기하기도 했으나 영향을 받거나 지원받은 것은 없었다고 주장<sup>86)</sup>

\* 그러나 동인은 05.10.13 면담에서는 당시 송종의 검사 등이 반일 감정 등을 들며 회유하여 애국적 차원에서 무기부분을 진술했다며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

【 판 단 】

- 일본인들이 유인태 등과의 접촉과정에서 ‘무장’ 운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한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 이철의 변호인 황인철과 접견기록에 일본인과 관련 외교적 문제가 있는데 17일 공판할 때 검찰 범죄대로 진술한 후 나중에 사실대로 밝히자고 황인철 변호사가 말한 사실로 보아 당시에 일본인과 관련한 부분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짐

---

86) 유인태, 앞의 글

- 광동의87)의 지시에 의해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다찌가와와의 폭력선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연결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 공소장상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만남 및 대화내용만으로, 광동을 통해 「조총련」이 「민청학련」의 배후조종했다라고 지목하기에는 제반증거 및 상황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 정문화는 1차 공판정에서

- 중정에서 1달 정도 수사를 했는데 잠을 안 재워서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고
- 매도 많이 맞고 물도 많이 먹었다. 검찰에서는 자유분위기였으나 중정에서 넘어와서 심리적 압박을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

#### ○ 이근성은 1차 공판정에서

- 중정에서 몸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

#### ○ 또한 상고이유서에, 신문할 때 언제나 정보부원이 동석하였고 검찰관 신문에 대하여 부인하면 정보부에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정윤광의 경우) 또한 실제로 정보부에 되돌려 보내고문을 받게 하기도 하였음(서중석, 김효순의 경우)

87) 광동의는 일본내에서 김대중구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반박정회운동과 민주회복운동을 한 민단 반주류파이고, 다찌가와는 광동의와의 관계에 대해 취재기자와 취재협력자의 관계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다찌가와는 광동의 관련 신문시 “민단 반주류파이기 때문에 한국의 박정희 정권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취재하는 동안에 중정의 해체와 민주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사회주의 용어를 들은 적은 없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자민당의 AA연구그룹의 우쯔노미야 의원 정도와 사상적으로 가깝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 상고이유서에서 황인성은 각 조서의 작성과정은 공갈, 불면, 매질, 고문 등의 강제수단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
- 피고인 등은 사법경찰관서에서 조사시 심한 고문을 당했거나 위계에 넘어가서 사실이나 본의 아닌 진술을 강요당했고
  - 검찰관의 조사단계에서도 그러한 공포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며
  - 민청학련 사건관련자들은 구타 송치 기관원의 입회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했으며 불러주는 대로 자필 진술서 작성하였다고 주장
- 검찰은
  - 피의자들이 수갑도 풀고 담배와 다과도 제공받으면서 극히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신문조서 작성시 전혀 인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sup>88)</sup>
- 피고인 공판정 진술
  - 이철은 검찰관이 “조사할 때 고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일 없다. 아주 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
  - 법무사는 이철, 유인태, 여정남 등 피고인 전원에게 “검찰관 앞에서 조사 받을 때 폭행이나 협박을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나”라고 묻자 피고인 공히 ‘예’라고 답변
- 피고인 증인신문서 진술(검찰, 변호인 동석)
  - 정찬용, 박형규, 유홍준 등 10여명 공히 검찰앞에서 자유로이 진술했다고 진술

---

88) 검찰의견(74.7.9)

o 사건관련자들의 고문 주장

- 1974.3.28·29 검거된 학생들이 많은 고문을 당함<sup>89)</sup>
- 서중석은 「진실위」 면담조사시(05. 9.28)
  - 수사초기 이철·유인태 등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타 피의자들이 진술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작업의 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취조관 4 - 5명으로부터 많은 가혹행위를 받았는데
  - 지금 생각해보면 중앙정보부가 수준에 맞추어 고문을 했다고 여겨지며 잠안채우기(7일여간)·손가락 비틀기·슬리퍼로 뺨때리기 등 육체적 고문을 당하였는바
  - 선배들로부터 “맞을 때에 등짝을 맞으면 아무리 맞아도 후유증이 없다”. “잠을 채우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눈을 감고 잠을 취하라”는 등 조언을 일찍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 전문적으로 나를 취조하던 수사관은 3-4회에 걸쳐 교체되었으며, 6국 지하층에서 발가벗겨져 물을 붓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물고문은 2회(1회 3분가량 소요) 당했는데
  - 취조관은 전국데모 및 ‘민족지도부’ 구성 문제와 화염병 투척을 통한 중앙청 장악과 정부전복, 그리고 이철, 유인태 등 관련자들의 은신처 및 음모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

89) 고문내용 : 밤낮으로 신발을 벗겨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찜질과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기, 몽둥이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몽개기,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흰벽만 쳐다 보기, 지하실에서 로프로 사정없이 등짝을 후려갈기기도 하고 며칠 지나면 친절하게 안티푸라민 같은 것을 발라주기, 밤새 내내 고문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나는데 실제 고문을 당하는 상황인지 녹음기 소리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포감 조성했다. 유인태, 앞의 글

- 수사말기에는 내가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자 지하방에 비치된 손목의 1/3 굵기의 쇠가 섞인 밧줄로 나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전기고문도 해야겠다”면서 협박하였으나, 당시 이미 이철·유인태가 체포된 후라서 그런지 조사의 혼선을 피해 그냥 넘어간 적도 있음
  - 검찰 조사시에는 담당 검사인 문호철로부터 슬리퍼로 뺨을 맞은 적이 있고 “다시 중정으로 보내야 되겠다”면서 차에다 태웠다가 도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중정까지 갔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진술
- 안양로는 면담조사시(05.10.14)
- 물·전기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수사 각본에 의하여 원하는 진술내용을 해주지 않을 때 몇 일을 잠을 재우지 않고 야전 침대목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
- 또한 대법원은 검찰 신문조서의 임의성 문제와 관련
-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것은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 뿐이라며 중정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서 등을 배제했고
  - 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고문 등이 없었고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서 등의 성립의 진정도 인정하였음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

## 【 판 단 】

-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수사관행화 된 가혹행위 등이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판단되는데

-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가혹행위(구타, 잠 안재우기 등)가 피의자의 진술 부인 및 여타관련자들에 대한 부인, 공소 내용 중 이적성 내지 공산주의적 사상과 활동 규명을 위한 무리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일관되게 주장
-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은 중립적인 당사자로서의 진술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을 개연성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고
-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은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권이 금지되는 정보부 건물이었다는 점도 가혹행위 실행의 개연성을 높여줌
- 당시 폭압적 유신체제 하에서 정보기관들이 광범위한 강압수사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는 점도 고려
- o 다만,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중정 수사관들과 경찰들의 경우 본 위원회 면담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문 사실을 부인

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면회 및 변호인 조력 금지 등)

- o 사건 관련자 및 교도관들은 의문사위원회와 본 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당시 공판정에서 사실관계 대하여 ‘예, 아니오’ 형식으로 답변토록 강요당하고, 헌병들이 도열해 있는 상황하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주장
- o 「민청학련」 사건 관련 김지하 피고인 11명을 변론하던 강신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이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에서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이고

-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않은 법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도 있다며
- 그 악법을 적용하여 다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후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sup>90)</sup>

\* 강 변호사는 1974.9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형이 확정되었다가 1988.3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한편, 1974.10 김종필 국무총리의 지시로 자리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 중 한사람에게만 방청이 허락되었고

- 1974.10 김종필 총리는 국회에 출석 “외신기자들의 경우 재판 내용을 잘못 이해해 보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방청이 불허됨

○ 재판부는 재판정 협소를 이유로 변호사 13명, 국방부 출입기자단, 주한일본대사관 일등 서기관 手島堅持, 사건 관련자 가족 등 50여명 등 소수인원만 공판을 방청토록 조치하였음(인혁당 구속자 가족 공판조서 변조 등 사실에 대한 내사결과보고 1977.12)

\* 군법회의 서기 조규철은 본 위원회 면담에서 당시 공판정의 인원수용 능력에 따라 방청객이나 기자 등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

○ 중정 수사상황보고<sup>91)</sup>에 의하면 1974.4.26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관할 관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중인 피의자 47명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제 245조 및 131조에 의거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접견 금지 결정을 받아 서울 구치소장에게 시행토록 조치했고

90) 이상우, “긴급조치- 그 발동과 도전.” 『사법살인』. 학민사. 2001

91) 중정수사상황보고(74.4.27)

- 이용택 6국장이 1974.4.26 17:30-18:30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의 분리수용현황(감방교환 등), 금지조치(접견·차입·통모 등)이행상태 등을 점검
- 1974.4.27부터 6국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에 고정 배치하여 피의자 감방분리 수용, 접견 및 물품 등 차입금지, 건강·급식 상태·통모 및 기타사고(자해 등)등에 대한 조정·감독 활동을 함
- 윤종원은 의문사위원회에서 이용택 국장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진술
- 당시 수사관 나OO은 의문사위원회에서 중정은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중정 6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
- 이OO(접견영치과 교도관)는 사상범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중정에서 면회금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지시에 따라 면회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
- 재판정의 방청인 제한 주장 당시 재판정이 협소함에 따라 부득이 가족과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 50여명으로 제한하였을 뿐 공개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음
- 재판정에서 증인채택 및 반대신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또한 재판자의 재량권 행사로 인정

## 【 판 단 】

- 중정은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려 가족, 변호인 접견권 등 피고자의 방어권을 침해함



- 재판과정은 자유심증주의 남용, 진술기회 제한, 가족의 접견금지, 외신기자 법정취재 금지, 공포분위기 조성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
  - 검찰과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수시로 제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음
  - 방청제한은 재판정의 수용규모, 질서 유지를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마 | 소 결

- 1974.4.5 문공부에서 발행된 “국가변란획책 전국청년학생총연맹의 불온상” 제하의 책자에 당시 유인물, 사건 내용 등 수록되었고
  - 중정의 3·30조치라는 수사상황보고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1974.4.3 박정희 담화문 발표 전부터 관련 사건을 인지,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전국 동시다발 시위의 필요성과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였고
  - 「민청학련」은 조직이 실재하였다기 보다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 주도세력들이 1974.4.3 전국동시다발 유신반대시위를 위한 준비모임으로 판단됨
- 유신헌법과 동법에 의한 긴급조치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징역 5년 이상 사형까지 명시하였고, 비상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규정

- 사법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체계하에서 「민청학련」이 반국가단체임을 최종 확인하였으나
  - 「민청학련」의 최종목표는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 건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목표를 두었고
  -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는 여정남과의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배후로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확증은 「인혁당 재건위」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 조총련과의 관계는 광동의의 지시에 의한 다찌가와와 폭력선동이라는 구체적인 연결점이 없고, 기자와 취재원과의 만남과 대화 내용만으로 조총련을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지목하기는 어렵고
  - 「민청학련」사건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 수사과정에서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접견 금지조치를 통하여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이 확인됨
  - 소위 「민청학련」사건은 폭압적인 유신정권에 반대하여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준비하고, ‘민족민주민중선언문’등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유신반대를 위한 활동으로써 이를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반국가용공단체로 규정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임

### 3 인혁당재건위 사건

#### 가 시대적 배경

- 1971년 선거와 정권의 정치적 위기감 고조
  - 1971.4.27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43.5%의 득표율로 서울에서만 58%의 지지를 얻어 39%를 얻는데 그친 박정희 후보를 압도
  - 5.25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44석에서 89석으로 의석이 증가한 반면, 공화당은 이효상·박준규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서울 이외의 주요 도시에서苦戰
  - 1971년의 양대 선거는 박정희에게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지지 철회를 확인시켜줌으로써 유신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1972.7.4 이후락 중정부장과 김영주 노동당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이 포함된 합의문 발표
  -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이후락이 1972.5.2-5.5간 북한을 방문 김영주·김일성과 회담하였고, 박성철은 5.29-6.1 서울을 방문, 이후락·박정희와 회담을 가져 7개항의 공동선언문에 합의
  - 7·4남북공동성명은 5·16 쿠데타 이후 인혁당·통혁당 사건 등 정권의 탄압으로 잠잠하던 혁신계 인사들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을 매개로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 7·4남북공동성명의 정치적 활용

- 박정희정권은 국제적 데탕트무드에서 국내의 정치적 도전과 압력에 밀려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취함(계엄령·유신개헌·긴급조치 등)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얼마 후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통해 국내정치의 위기상황을 돌파했고, 김일성은 1972.12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지배체제 강화

#### ○ 유신체제의 등장

- 1972.10.17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출판·방송의 사전검열, 대학의 휴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 박정희정권은 국가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국민총화론·민족주체론·한국적 민주주의 등의 수사를 통해 유신체제 수립을 정당화하면서 폭압적 지배체제 구축

#### ○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최소한의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1973.8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국내외에 박정권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목소리 고조
- 1973.10.2 서울 문리대 반유신 시위 촉발 이후 각 대학과 고등학교, 종교계, 재야,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반유신 시위 본격화
- 정치인·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유신 헌법 폐지를 위한 100만인 개헌서명운동 전개

## ○ 긴급조치 선포

- 1974년은 유신체제 출범 2년째로서 1.8 광주에서는 전남대생 1천여 명이 개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학원가의 반유신 시위가 잇따르자 1·8 긴급조치 1호(개헌논의 금지)와 2호(비상군법회의 설치) 선포
- 1974.4.3 민청학련 주도로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일제히 반정부시위가 전개되면서 4.3 22:00부로 긴급조치 제4호를 통해 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활동 불법으로 규정
  - ※ 당시 시위 주도 학생들은 1969년 3선 개헌 반대투쟁과 1971년 교련반대투쟁을 주도하거나 1973년 10월의 문리대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로 74년 시위 당시에는 각 대학간·지역간 연계 구축을 시도
- 민청학련의 ‘4·3시위’가 발생하자마자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이를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곧바로 긴급조치 4호를 선포

## ○ 혁신계의 활동 재개

- 1973.10.2 서울대 문리대 시위는 72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일시적 잠복상태에 있던 민주화운동에 물꼬를 텃던 사건으로
  - ※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혁신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과 즉각투쟁론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신중론은 운동의 방향을 학생운동에서 노동현장 쪽으로 전환시키려 했고, 즉각투쟁론은 서울대 문리대 시위를 계기로 촉발된 유신반대투쟁을 유신헌법철폐 및 개헌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함
- 당시 혁신계 인사들은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신헌법철폐, 개헌운동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던 인사들로서
- 공식적으로 통일촉진협의회를 통한 통일운동에 동참했고, 유신

헌법 개정청원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 운동과의 연계 형성 및 지원을 수행

○ 혁신계 내부의 논쟁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의 등장을 어떻게 인식 하느냐를 놓고 혁신계 내부에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 유신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변적 사건’으로서 혁신세력을 하나로 재규합하여 통일운동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한 입장과
- 7·4 남북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의 등장이 보여주듯 정권의 군부과소적 성격은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세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망하되 성급한 조직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 병존

나

사건 개요

【 사건 수사발표 】

○ 1974.4.3 대통령 박정희는 특별담화에서<sup>92)</sup>

-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
-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이 대두되고

92) “박대통령 특별담화.” 「조선일보」, 1974.4.4.

있음에 이 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며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 1974.4.25 중정 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sup>93)</sup>
  - 민청학련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 1974.4.3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 세력으로, 4단계  
혁명을 통해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권수립을 목표로 과도적 정치  
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고 발표
-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신직수는<sup>94)</sup>
  - 민청학련의 배후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고, 이들은 학생들에게 투쟁방법을 알려주고 거사  
자금을 제공했다고 언급

### 【 군법회의 재판결과 】

- 1974.5.27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이하, 검찰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 주동이 된 국가변란기도사건」 추가 발표에서<sup>95)</sup>
  - 서도원, 도예중 등은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
  - ※ 검찰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을 ‘인혁당 계열’ 에서 ‘인혁당 재건위’ 로 변경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23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

93) “민청학련사건 수사상황.” 「동아일보」. 1974.4.25.

94) 「조선일보」. 1974.4.26.

95) “비상군재 발표전문.” 「조선일보」. 1974.5.28.

- 1974.7.8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도원 · 도예중 · 하재완 · 송상진 · 이수병 · 우홍선 · 김용원 등 7명에게 사형, 김한덕 등 8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
- 1974.7.11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위’ 피고인 2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서도원 등 7명은 사형, 8명은 무기징역, 6명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며 관련자들은 항소

**\* 여정남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음**

- 1974.9.7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사실심리를 생략한 채 서도원 · 도예중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 1975.4.8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도원 등 8명 사형, 이성재 등 8명 무기징역, 김종대 등 4명 징역 20년, 황현승 등 3명은 징역 15년 형량을 확정

**【 형집행 및 재심 청구 】**

- 1975.4.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8명에 대해 사형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 1982.3.3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창일 등 7명은 20년형으로 감형되고, 8명은 형집행 정지로 석방

**\* 1982.12.24 전창일 등 사건관련자 전원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어 형집행 정지로 석방**

- 02.9.16 의문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의 변조가 있었다고 발표
- 02.12.10 사형수 8명의 유가족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재심 청구



## 1) 조직결성

## 가) ‘인혁당 재건위’ 실재 여부

## ○ ‘인혁당 재건위’ 실재여부와 관련하여

-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반국가단체 결성 및 국가전복기도를 위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명, 강령 및 규약, 조직체계, 조직활동 관련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 반국가단체로서 ‘인혁당 재건위’의 결성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고문을 통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나) ‘인혁당 재건위’ 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여부

- 박대통령은 4.3 특별담화에서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를 인민혁명의 수행을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으로 규정했으며
- 황산덕 법무장관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와 방침」을 밝히면서<sup>96)</sup>
  - ‘인혁당 재건위’가 1972년 7·4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그 지하활동을 더욱 강화해 왔으며 1973.10 이후 사회일각에 동요가 있자

96) 「조선일보」, 1975.2.24.

-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사건이라고 발표

○ 이에 대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 민청학련 자체가 상하부 조직체계나 연대들을 갖춘 운동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며
- 4·3시위는 “학생들의 주도 하에 학생들이 책임진다”는 대원칙 하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

**다) ‘인혁당 재건위’ 의 국가변란 기도 여부**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은 민청학련의 배후로서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반정부운동일 수는 있어도 폭력혁명을 통해 국가변란(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중정의 발표는 억측이며
-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활동내용은 반공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할 정도의 중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제기

**2) 수사과정**

**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체계와 중정의 역할**

○ 긴급조치 하의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는

- 중정이 전체 사건을 지휘·조정하는 가운데 경찰·보안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재규 중정 차장)에서 담당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북도경 파견경찰과 중정이 담당했음에도 당시 사건 수사서류(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명의로만 작성되어
  - 당시 중정이 1964년 인혁당 사건처럼 고문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수사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 제기
- 1974.5.24-25 이후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수사 초기 등장하지 않던 ‘인혁당 재건단체’, ‘공산비밀조직’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 이는 수사방향과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강압적인 수단(고문 등)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 당시 수사경찰 이덕삼은 중정의 윤종원으로부터 ‘물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의혹이 증폭

#### 나)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 중정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도예중·하재완·이수병·여정남·전창일 등 피의자들은 중정 수사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 당시 구치소 교도관은 하재완의 탈장 및 멍 자국, 하재완·우홍선·김용원 등이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때 업혀서 들어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

- 의문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물고문·전기 고문·몽둥이찜질·통닭구이 등)이 중정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자행되었다고 발표
- 피의자들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중정에서는 구타·물고문·전기 고문 등 육체적인 고문이 자행되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중정에 되돌려 보내겠다”는 등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 제기

### 3) 사형집행

#### 가) 전격적인 사형집행 이유

- 대법원 확정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은 사형집행이 통상 수년이 경과한 후 이뤄지는 관례를 깬 것으로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 공판조서 변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재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 이용택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국방부에 전달되어 있었을 것’ 이라고 언급, 전격적인 사형집행이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증폭

## 나) 최후진술(유언) 조작 여부

- 사형수 유가족들은 최후진술(유언)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 이정숙(이수병 처)은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내용은 당시 가톨릭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
  - 신동숙은 도예종이 교수형을 당하면서 “적화통일 만세”라고 외쳤다는 것에 대해, 그 말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중정에서 쓰는 말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하는 등 최후진술의 조작을 주장

## 다) 고문흔적 은폐를 위한 시신 탈취 여부

-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4.10 경찰은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을 홍제동 벽제화장터에서 직접 화장시켰는데 이는 시신에 남아 있던 고문 흔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제기

## 라 | 조사결과

### 1) 활동내용 및 조직결성 여부

#### 가) 중정의 수사착수 경위

- 중정은 유인태·정화영 등 민청학련 주모자들의 진술에 의해 서도원·여정남·이수병 등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이 배후조종하였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유인태 수사상황보고, 74.4.16; 여정남 수사상황보고, 74.4.18)

- 여정남 검거 후 5일이 지나기 전에 이수병·도예중 등의 진술에 따라 관련자 신원을 대부분 확인, 검거하는 등 수사가 급진전(서도원 수사상황보고, 74.4.20; 도예중 수사상황보고, 74.4.20)

<중정의 「수사상황보고서」 관련 내용 요약>

- 1974.4.14, 23:40 검거된 민청학련 유인태는
  - 경북대 학술토론회(71.4)를 계기로 안면이 있던 여정남이 74.1-3월간 시위준비상황을 묻고 격려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여 오더니
  - 74.3.27에는 시위경험이 많으면서 서울·경북대간 시위 이슈·구호가 일치되지 않으면 자신이 해결하겠으니 학생데모 조종상 문제는 자신과 상의하라고 제의하였고
  - \* 유인태 진술을 계기로 여정남이 민청학련 배후 인물로 대두
- 4.17 15:00, 이강철 접선 장소에서 검거된 여정남은
  - 이수병·김용원으로부터 민족적 연합전선 형성·독재정부 타도·노동자·농민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정부수립 등을 지도 받았으며
  - 김용원으로부터 자금 18만원을 지원받아 학생조직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들을 긴급 수배
- 이수병은 4.18 15:00 검거된 후 도예중·서도원이 자신과 여정남의 배후임을 진술
- 여정남은
  - 대구에서 정만진의 소개로 하재완집 가정교사로 입주하여 하재완과 이재문의 교양을 받았고
  -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학생데모를 전국화 하는 등 정부 타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고 진술
- 또한 이수병은 1973.12경 서도원으로부터 現정부 타도 투쟁방법으로 학생 이용문제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는 한편 상경한 여정남(하재완 소개)을 김용원에게 인계하였음을 시인
- \* 여정남 배후를 하재완·이재문 등으로 확대, 4.20 이들을 지명수배

- 4.20 검거된 도예종은
  - 1973.10 서도원·이수병과 함께 과거 혁신계 인사를 결속, 혁신정당 구성 및 대학가 반정부 데모를 조직화하기로 협의하였고
  - 서도원으로부터 인혁당 동지·동조자 포섭 추진 및 경북대생 상경 추진 계획을 득문했다고 언급
  - \* 중정, 민청학련 사건 1차 발표(4.25), 배후로 인혁당계를 지목
- 4.28 이수병(4.20, 진술서 제2회)·여정남(4.25 수사상황보고)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지명수배(4.20)된 하재완을 검거
  - \* 하재완 진술에 따라 전재권·임구호·이태환·조만호·나경일 등을 수배(5.2 대구 경찰의 범죄인지 보고)
- 5.1 이수병 진술에 의해 혁신계 ‘비밀지하망 조직 재건준비 위원회’ 관련자로 전창일 등 10명을 긴급수배

나) 「인혁당 재건위」 명칭 정립 과정

### 【 인혁당 재건’의 최초 등장 시점 】

- 박대통령은 1974.4.3 특별담화에서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등의 표현을 사용
- ‘인혁당 재건’이란 용어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도예종 진술서인데
  - 도예종은 “꼭 인혁당을 재건해야 되느냐, 이미 무섭게 알려진 어마어마한 정당이 아니고…과거 조직생활을 같이한 인혁의 인사를 한번 만나보자”고 했고(진술서 제4회, 74.4.22)
  - \* 도예종은 4월 22일 하루 동안 무려 5회에 걸쳐 자필 진술서를 작성
  - 또한 “본인이 생각한 것은 우선 내가 아는 내 들레에 있는 친구들(과거 혁신계)을 만나보는 작업, 그 다음은 어떤 식의 서클이라도 형성하여 그 다음 단계인 혁신정당의 결성이란 순서를 생각”했다고 진술(진술서 제4회, 74.4.22)

## 【 조직명칭의 변화과정 】

- 1974.5.3 수사상황보고에 ‘공산지하당 재건준비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데(수사상황보고 제104보)
  - 공산지하당 재건준비위 구성혐의로 74.5.2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관 문호철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산지하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우홍선과 박중기를 구속했고
  - 74.5.3 수사상황보고에는 동일 날짜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지하당 재건준비위와 공산지하당 재건위사건 등 명칭을 혼용
- 1974.5.6 수사상황보고에 따르면(수사상황보고 제107보)
  - 송상진은 용공지하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로 전재권·서도원·유한중 등과 경북 각지의 산을 등산하면서 인혁당 재건을 모의했으며
  - 전창일·김종대 수사상황보고에서도 이들을 용공지하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로 표기
- 1974.5.9 민청학련사건 송치기록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수사상황보고 제110보, 74.5.9)
  - 용공지하당 재건위 사건(김종대 수사상황보고), 민청 지하당 재건위 사건(강창덕 수사상황보고), 용공지하당 재건위 사건(나경일 수사상황보고)으로 혼용
- 1974.5.16 유진곤에 대한 수사상황보고에서 조직의 실체가 ‘인혁당 재건위’로 표기되기 시작
  - \* 이수병의 소개로 전 인혁당원이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서울지도부 학원담당 김종대 등을 접촉(수사상황보고 제118보)



- 이후에도 중정에서는 조직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데
  - 5.17 검찰에 보내는 송치 의견에 “혁신계의 지하조직을 재건” 또는 “인혁당을 재건해야”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 5.23 우홍선의 ‘가칭 인혁당 재건위’란 진술을 계기로 피의자들에게 ‘가칭 인혁당 재건위’라는 진술을 받아 5.25 추송하였음
-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도 사건 발표(5.27)시 사건체계도에 ‘인혁당 재건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시에는 서울·경북 지도부로 지칭하는 등 조직명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음
-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이들을 인혁당 재건을 위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인혁당 재건 단체’로 약칭하여 사용한다고 특정하였음

<인혁당 재건(위) 명칭 변화과정 요약>

- 74.4.3 박대통령 특별담화 : ‘인민혁명’ 언급
- 74.4.22 도예중 진술서 : 인혁당 재건(진술서 제4회)
- 74.4.25 수사상황발표 : 前 인혁당 출신 혁신계 인사
- 74.5.1 이수병 진술서 : 혁신계 비밀지하망조직 재건준비위원회
- 74.5.5 이재형수사상황보고 : 용공지하당 재건위 사건
- 74.5.15-6 유진곤수사상황보고 : 인혁당재건준비위/인혁당재건위
- 74.5.17 1차송치서 : 혁신정당재건준비위원회(이수병 피신 제7회), 인혁당을 재건하기 위한 지하조직(우홍선 진술서 제3회)
- 74.5.25 추송서 : 假稱 인혁당 재건위, 인혁당 형태의 재건위
- 74.5.27 비상군재 발표 : 인혁당계 공산세력(발표문), 인혁당 재건위(사건 체계도)
- 74.5.27 검찰 공소장 :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 지하조직
- 75.4.8 대법원 판결문 : 인혁당 재건단체

## 【 명칭변화의 의미(평가) 】

- 관련자 수사자료와 중정의 수사상황보고를 종합해 볼 때
  - ‘인혁당 재건’이란 용어는 도예종의 1974.4.22 진술서(제4회)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중정은 민청학련 배후를 前인혁당 출신 혁신계 인사들로 지목한 채 4.25 수사상황발표를 했고
  - 1974.4.25 수사상황발표 이전까지 사건의 중심이 민청학련이었던 관계로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실체에 대해 인지하거나 ‘인혁당 재건위’로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 윤종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수사는(윤종원 면담결과, 05.10.6)
  - 여정남이 마음을 열어 4.18 민청학련과의 연계 부분, 서도원 등에게 사상교양을 받은 사실, 상경 후 이수병·김용원의 지도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였다고 주장하였음
  - \* 여정남의 진술로 74.4.18 14:50 이수병·김용원 검거(검거상황, 74.4.18)
- 1974.5.8 검찰부의 검사들이 중정에 파견되면서 용공지하당 재건위, 용공지하당 재건준비위 등의 명칭이 등장하였고, 5.16 이후 ‘인혁당 재건위’라는 명칭으로 표기되기 시작
  - 조직명칭이 ‘용공지하당 재건준비위’→‘용공지하당 재건위’→‘인혁당 재건위’로 변경되었고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경북지도부와 서울지도부 중심의 국가 변란을 위한 조직사건으로 정리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는 중정의 주도하에서 경찰, 보안사 등의 지원을 받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채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었는데

- 1차 수사기관인 중정에 검찰부의 검찰관들이 조기에 투입되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 중정이 제기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빈약하여 다분히 임기응변적인 수사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다) 활동 내용 및 성격

#### 【 70년대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 내용 】

##### □ 공개자료 및 면담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은
  - 4·19 당시 혁신계 활동에 종사했고, 1964년에는 대일굴욕외교 반대운동을 전개하다 소위 인혁당사건에 연루되어 獄苦를 치른 전력이 있으며
  - 1967년에는 재야 대통령 단일후보 운동, 1969년에는 삼선개헌 반대운동, 1971년에는 김대중후보 지지운동 및 공정선거 감시운동, 유신 이후에는 유신반대운동을 전개
- 대구 지역에서는
  - 1969년 서도원·도예중·하재완·전재권·이태환·강창덕·나경일·임구호·이재형·여정남 등 다수가 삼선개헌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 삼선개헌 이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가 구성되어 경북 민수협에서는 서도원·도예중·하재완·송상진·전재권 등이 운영위원으로, 강창덕은 총무위원장, 이재문은 대변인으로 활동하였으며

- 정만진·임구호는 대구·경북지역 민주수호청년협의회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여정남·나경일 등도 경북 민수협에서 활동했음
- 또한 대구지역 혁신계 인사들은 대통령후보 단일화운동, 민수협 경북협의회를 중심으로 3선 개헌 저지운동, 반유신운동, 경북대학생운동활동가 지원 활동 전개하였음

○ 서울 지역에서는

- 우홍선·이수병·이성재 등은 서울에서 ‘민족통일촉진회’라는 공개 통일운동 단체에 관여하여 평화통일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전개했고
  - ※ 민족통일촉진회는 5·16 쿠데타에 의해 구속된 혁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60년대 후반에 조직된 통일운동단체로서 박정희의 삼선개헌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혁신계 인사들의 운동참여를 독려
- 여정남은 4.19와 같은 국면조성을 위해 이철·유인태 등이 관련된 1974년 3, 4월 학생시위 관련 활동에 동참하였음

○ 또한 서울지역 혁신계 인사인

- 이수병·우홍선 등은 7·4남북공동성명과 유신체제 등장 이후 혁신세력의 재규합이 시급하기 때문에 각 지방 혁신세력과 연대를 모색했으며
- 이성재·우홍선·전창일·이수병 등이 수시로 만나 국제정세, 학생시위 상황, 혁신계의 활동 전망 등을 토론했음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전창일에 따르면(2005.9.29 면담)

- 7·4 남북공동성명은 잠재되어 있던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 당시 남북공동성명과 유신헌법을 둘러싸고 혁신계 내부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 일부에서는 유신헌법과 관련하여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지만
-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는 유신체제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유신헌법을 철폐시키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결성했다고 진술하였음

## □ 수사·재판 자료상의 활동내용

### ○ 도예종은 혁신계 결집과 관련

- 서도원·송상진과 자신의 집에서 자주 만났고 서울 출장시 우홍선·이수병을 만나<sup>97)</sup> 의견교환 및 혁신계 세력규합에 대해 합의하는 등 비밀 지하조직 결성을 위해 활동<sup>98)</sup>

\* 서도원은 항소이유서에서 “72.9 이수병에게 7.4남북공동성명 후 4.19후와 같이 혁신계 활동이 용납되지 않겠는가 말한 적이 있다” 며 혁신계 규합활동 암시

### ○ 소위 ‘경북지도부’ 구성원들은 임무 분담에 따라 활동했는데

- 하재완은 조직원 교양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송상진과 함께 북한방송 녹취서를 만들어 혁신계 인사들에게 열람시키며 세력을 규합했으며

\* 이에 따라 하재완은 정만진(70.9)·조만호(72.10)·이재형(72.10)·임구호(73.3) 등을 규합(하재완 검찰 진술조서, 74.6.9)

97) 도예종 妻 신동숙, 의문사위 면담

98) 도예종 진술서 4회, 74.4.22

- 강창덕·나경일·이재문 등은 73.11중순-12월 중순간, 동조세력 규합을 위해 분야를 나눠 활동
- \* 이재문은 학원, 나경일은 노조, 강창덕은 정치·경제·언론계를 맡기로 합의 (강창덕은 의문사위 및 「진실위」 변담시 동 내용 인정)
- 송상진은 여정남을 지원하기 위해 전재권·이태환등으로부터 총 113,000원을 모금, 여정남에게 전달했고
- 여정남은 73.12 하재완의 지시로 상경, 이수병·김용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철·유인태 등과 전국적 학생 데모 조직화 활동 전개
-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이수병은 서도원의 지시에 따라
  - 1973.10초 이성재·전창일·우홍선 등과 접촉, 7.4 공동성명에 따른 해빙 분위기를 맞아 지하조직을 결성, 합법적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직을 확장기로 합의하고
  - 박중기·김용원·김정태·김달수·유진권·이창복·황현승·김한덕 등을 구성원으로 규합하는 한편 국제정세 및 학생 데모상황, 혁신계 활동 전망 등을 토론(이수병 진술서 6회, 74.5.4)
  - 특히 이들은 조직결성시 조직의 명칭·체계·규약 등 문안은 비밀을 위해 남기지 않고, 규합 대상은 각자 독자 추진하되 점 조직을 고수한다는 등 조직운영 원칙에 합의(공소장)
  - \* 우홍선도 혁신세력을 재규합 인혁당을 재건하기 위해 73.10초순 이성재·이수병·전창일 등과 함께 지하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진술(진술서 제3회, 74.5.12)
  - 우홍선은 조직확대 및 합법적 동지 규합을 위해 김한덕에게 비밀 지하조직(인혁당 재건위)에 가입할 것과 통촉에 들어갈 것을 권유
  - \* 우홍선은 1심 공판(74.6.19) 변호인 심문시 동 사실 인정

- 또한 이들은 서울 충무로에 지압교실로 위장한 사무실을 내고 학생들의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지원(학생운동은 이수병·김용원이 맡음)하였고, 여정남 지원을 위해 극비리에 모금활동도 전개<sup>99)</sup>

○ 한편 관련자 대부분은 중정·검찰에서

- 자신들은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주의자·민주사회주의자 라면서 유신체제 타도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면서도
- 수사과정에서 하재완 노트 탐독과 정부타도 및 체제 전복을 위해 여정남에게 3단계 혁명론을 교양시키고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중봉기를 추진했음도 시인<sup>100)</sup>

## □ 혁신계 활동 평가

-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反박정희 활동 내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반대활동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 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음
- 다만, 당시 중정 수사관들은 관련자들 중 일부가 북한 방송을 청취 하기도 했으며 학생시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가졌고, 뒷날 발간된 김세원의 자서전, 이수병의 전기 등에 서술된 바와 같이, 용공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했었다고 주장

99) 뉴스메이커, 05.8.2 ‘인혁당실체 이제는 말한다’ 전창일 인터뷰 내용

100) 여정남 수사보고 (74.4.25)

## 【 학생운동과의 연계 】

### □ 인혁당재건위 주요인물의 학생운동권 연계성(공소장 중심)

#### ○ 서도원은

- 1970.8 하재완의 소개로 여정남을 접촉, 이재문·송상진 등과 상의하여 학생운동이 잘 되도록 하라고 격려하고
- 1971.4-74.3 경북대 시위에 사용할 반독재구국선언문 등 유인물 3종을 초안 작성 후 하재완·여정남에게 제공

#### ○ 하재완은

- 1969.7 여정남을 가정교사로 채용시킨 후 이재문은 사상이론 교양, 하재완은 학생운동의 기술문제를 담당하여 분담 지도했고
- 1970.8 서도원을 하재완 자택으로 초청하고 여정남을 경북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지도교양을 부탁했으며
- 1971.4-74.3 서도원에게 반독재구국선언문 등 유인물 2종을 작성 의뢰 후 이를 여정남에게 제공하고
- 또한 1971.11경 서도원, 하재완, 여정남 등 3인이 만나 전태일 추도식의 추도사를 서도원의 주도하에 공동으로 작성함

#### ○ 이수병은

- 1974.1.5 김용원에게 3-4월 위기설에 국민이 동요되고 있으니 개혁기를 맞아 전국적인 데모를 유발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능한 학생 상경시 지도를 부탁하고
- 1974.3.22 김종대를 만나 경북대 반독재구국투위명의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1부를 제공



- 1974.4.6 야자수다방에서 김용원을 만나 민청학련 명의 민중민족 민주선언문 1부, 민중의 소리 1부, 지식인·언론인에게 드리는 글 1부 등 3종의 유인물을 수령한 후 익일 김종대에게 제공했음

#### ○ 김용원은

- 1973.11초순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유인곤 등과 접촉, 정세토론과 함께 학생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로 합의했고
- 1974.3.20 여정남을 만나 경북대학교에서 3.18 데모를 계획했다가 사전정보 누설로 실패하고 3.21에 실행키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 1974.3-74.4 여정남으로부터 제공받은 경북대 학생데모계획을 보고하면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및 민청학련 명의 유인물 3종을 이수병에게 제공
- 1974.3.22 이창복, 황현승 등과 만나 경북대 학생데모에 관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각 1부씩을 제공함

### □ 학생운동과의 연계에 대한 평가

####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과 학생운동과의 관계는

- 경북지역 혁신계 인사인 서도원, 하재완 등은 여정남을 통해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쳤고
- 서도원, 하재완 등이 여정남을 이수병에게 보내 서울지역 학생운동과의 횡적인 연대를 시도했음

#### ○ 민청학련과의 관계

- 민청학련 주도 학생들과 여정남이 몇 차례 교류와 접촉을 유지했지만 여정남이 민청학련 주도 학생들을 배후조종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정황과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음

- \* 윤종원은 여정남이 상경하여 이수병, 김용원을 만나 자금지원을 받아가며 학생들과 접촉한 상황 등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여 전모를 파악하였으나 “여정남의 진술내용 이외에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고 진술(윤종원 진실위 면담결과, 2005.10.6)
- 김용원이 여정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지만 액수 (185,000원)나 4·3시위 주도 학생들과 여정남과의 관계상 이를 배후조종의 근거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 하재완 · 송상진의 북한방송 청취 · 수록 】

#### □ 공소장의 범죄사실 요약

- 1972.2부터 20여일간 하재완은 송상진과 동지규합의 교양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청취 수록했는데
  - 하재완은 장남 하종배의 공부방에서 매일 05:00-06:30, 17:00- 18:30 2회씩 반복 방송되는 평양방송을 청취,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문” 전체를 수록했고
  - 1972.2-4 송상진은 매일 05:00-06:30과 17:00- 18:30 2회 반복으로 평양에서 방송되는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문”을 청취하여 노트에 필기 후 하재완에게 제공했음
- 하재완은 동 보고문 중
  -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내용 중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신에게 주는 지령으로 받아들이고

- 반국가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송상진과 같이 대학노트에 수록한 후 이를 서도원·이재문·여정남·조만호·강창덕 등에게 대여함
- 1972.10초 서도원은 하재완에게 동 보고문을 수록한 노트 1권을 서울에 보내 교양할 사람이 있다고 제공받아
  - 서울 응암동 이수병 家에서 동인에게 열람 후 동지들의 교양자료로 활용하라고 하면서 하재완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조선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보고문을 전달했고
  - 서도원으로부터 하재완 노트를 수령한 이수병은 이후 김종대·김용원 등에게 전달, 회람시킴
- 송상진 역시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북한이 ‘남한의 동조세력에게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라고 지령한다’는 것으로 인식함<sup>101)</sup>

## □ 판단

- 하재완·송상진·이수병의 평양방송 청취 및 하재완·송상진의 방송내용 녹취 사실은 당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품으로 제시된 이른바 ‘하재완 노트’를 통해 확인
- 하재완·송상진의 평양방송 김일성 보고내용 청취 및 방송내용 녹취·수록은
  - 실정법인 반공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101) 대구지역 거주자는 하재완 家를 방문 동 노트를 열람하였으며, 서울지역은 서도원이 72.10초 이수병에게 전달하여 회람했는데 총 13명이 열람함(하재완 진술서 2회, 74.4.30)

\* 하재완은 군 특무대 복무시 북한방송 청취·수록 임무를 담당한 바 있어 북한 방송 청취·수록은 익숙한 행위임

- 북한 인민과 노동당원을 대상으로 김일성이 행한 연설문의 내용을 남한 내의 자생적인 혁신계 인사가 지령으로 간주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수록한 노트→북한의 지령수수→대북연계 →용공지하당 결성 등의 성격규정에서 볼 수 있듯 최초 사실을 과장하여 여론공세용으로 활용

## 라) 조직결성 여부

### 【 ‘인혁당 재건위’ 결성 경위(공소장 및 판결문) 】

#### □ 소위 ‘경북지도부’

- 1970.8 하재완의 집에서 이재문, 송상진 등 3인이 접선, 하재완의 주재 하에 회합한 자리에서 가칭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키로 하고 우선 경북지도부를 결성함(하재완 추송서, 74.5.25)
- 1971.1 하재완은 서도원에게 가칭 ‘인혁당 재건위’ 결성 사실을 보고 하고 서도원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이재문 교양지도책, 하재완 조직책, 송상진 자금조달책, 여정남 학원조종책으로 분담함

#### □ 소위 ‘서울지도부’

- 1973.10초 서울 충무로 1가 소재 지다방에서 이수병, 우홍선, 전창일, 이성재 4인이 만나
- 가칭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한다는 원칙 하에 우선 서울 4인 지도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 도예중, 서도원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것 등을 합의·결정하는 등 서울지도부를 구성함
- 지하비밀조직을 재건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서는
  - 명칭은 가칭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서울지도부로 결정하고, 조직은 혁신계와 前인혁당원을 중심으로 이념이 같은 사람을 포섭하며
  - 조직은 점조직을 원칙으로 상호연락을 중단하며, 4인 지도부에서 조종·운영하고, 지도위원으로 도예중·서도원을 추대·합의했고
  - 정기회합은 매월 첫 일요일 10시로 정하고 연령순에 의하여 소집책이 되어 4인을 소집·사회를 담당 등의 내용을 합의 결정함
- 1973.12 중순 이수병은 도예중을 만나 서울의 4인 지도부 결성상황과 서도원·도예중의 지도위원 추대사실을 보고함

#### □ 소위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

- 1973.8 김용원은 야자수다방에서 이수병과 만나 사상적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조직을 구성하자고 합의함
- 1973.11초 김용원의 집에서 73.8부터 10여회에 걸쳐 황현승(광신상 교교사), 이창복(前국민대 강사), 김종대(삼락일어학원장) 등을 만나 교양함
- 1973.11초순 김용원은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유진곤 등 4인과 회합하여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을 구성(김용원 공소장)했는데
  - 조직활동의 비밀유지를 위해 1조에 김달수, 유진곤, 박중기, 2조에 김용원, 황현승, 이창복, 3조에 김용원, 김종대, 이창복 등 3인씩 나누어 회합기로 하고

- 월 1회씩 각기 사정을 참작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회합토록 결정함

## 【 ‘인혁당 재건위’ 조직 개요 】

### □ 대법원의 조직성격 규정

○ 대법원에서는 ‘인혁당 재건위’가 아닌 ‘인혁당 재건단체’로 배후조직의 성격을 규정하였고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
결성일자	1970.8	1973.10초	1973.11초
주도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참여자	이재문,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전창일, 이성재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유진곤
조직체계	지도위원: 서도원, 도예종 조직책: 하재완 교양책: 이재문 자금조달책: 송상진 학원조종책: 여정남	지도위원:서도원, 도예종 4인지도부:이수병, 우홍선, 전창일, 이성재 * 체계·명칭·규약 등은 갖 지 않으며 점조직 운영	1조:김달수, 유진곤, 박중기 2조:김용원, 황현승, 이창복 3조:김용원, 김종대, 이창복 * 보안상 조직명칭이 없으며 상호 모르게 운영

○ 2심 재판부는 ‘도예종 등은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와 서울지도부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 연락책임자, 자금조달책임자, 학원조종책임자 등을 정하는 등 부서를 결정한 후 빈번히 회합하면서 그 실행방법을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또한 인혁당 재건단체는 도예종·서도원 2인의 지도위원과 이수병·이성재·우홍선·전창일 등 4인의 지도요원이 조직활동을 주도하는 3개의 단위 조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함

## □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반론

- 상당수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증정 및 검찰에서 작성된 조직 결성관련 공소사실을 고문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부인함
- 경북지도부 결성과 관련
  - 1973.10 도예종은 서도원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자느니 현 정권을 타도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부인(도예종 공판조서, 74.6.19)
    - \* 도예종이 요통으로 누워 있을 때 주변 인사들의 권유로 침을 맞기 위해 서도원을 접촉했다고 주장
  - 서도원은 “4·19와 같은 조직적인 학생데모를 하여 민중의 호응을 얻어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 철폐를 위하여 투쟁”한 사실만 인정하고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의 필요성과 결성지령을 한 사실 부정함(서도원 공판조서, 74.6.19)<sup>102)</sup>
  - 하재완은 72.2-3간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청취 수록한 사실 및 송상진과 함께 수록문을 만든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였음(하재완 공판조서, 74.6.19)
  - 송상진은 공판과정에서(송상진 공판조서, 74.6.19)
    - 변호인 심문시 ‘8·15등산회’ 를 조직한 사실과 도예종·하재완·서도원 등과 자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여 대정부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자고 도예종 등과 논의한 사실은 부인<sup>103)</sup>

102) 서도원은 검찰관 심문시 71.1 하재완으로부터 경북지도부 구성상황을 보고받고 지도위원 추대 및 여정남의 지도를 부탁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103) 송상진은 검찰관이 ‘인혁당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시인했다.

- 1972.2-4간 자택에서 평양방송을 청취한 사실과 그 목적이 북한에 대한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내용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함
- 서울지도부 결성과 관련하여
  - 이수병은 검찰관 심문시(이수병 공판 조서, 74.6.19)
    - 1972.9 야자수다방에서 서도원으로부터 인혁당 재건을 위한 서울지도부 구성 지령을 받은 사실 부정한 반면
    - 1973.10초 지다방에서 우홍선, 이성재, 전창일 등과 만나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 투쟁에 합의하고 4인 지도부를 조직·구성”한 사실은 인정
    - \* 항소이유서에서 “인혁당 재건과 같은 일은 입 밖에 낸 일도 없으며, 서도원·도예종을 추대한 일도 없으며, 소위 ‘4인 지도부’ 란 조직도 전혀 상상한 일조차 없다”고 부인(이수병 항소이유서)
  - 우홍선은 1973.10 충무로 지다방에서 이수병, 전창일, 이성재 등과 회합하여 소위 서울지도부 구성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만나 회합한 사실은 있으나 정치적인 발언과 공산주의 국가건설 등과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우홍선 공판조서, 74.6.19)
  - 도예종·서도원 등은 검찰관 심문시 서울지도부의 지도위원에 취임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변호인 반대심문시 동 사실을 부인(도예종·서도원 공판조서, 74.6.19)<sup>104)</sup>

104) 서도원은 검찰관 심문시 이수병과의 접촉일자를 수정(72.9→10월)해주면서 서울지도부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 도예종은 1973.12 중순 이수병으로부터 “서울지도부를 지난 10월 구성”하고 지도위원으로 취임을 승낙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간부가 되어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부인하였음(도예종 공판조서, 74.6.19)

○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과 관련

- 이수병은 1973.4-7 김용원과 만나 “혁명역량 구축을 위해 흩어진 혁명인사들을 포섭·규합하여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부정하였으며(이수병 공판조서, 74.6.19)
- 김용원은 공판과정에서(김용원 공판조서, 74.6.19)
  - “이수병은 자주 만났으며 생활주변 이야기와 학원이야기 등은 한 사실이 있으나 전시의 진술은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공산비밀지하조직 결성 지령 수수 사실을 부정
  - 구성원들이 동시회합을 피하고 친분관계를 고려해 3인씩 나누어 월 1회씩 회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주 친분 있는 사람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민중봉기와 같은 내용의 회합을 갖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중정과 검찰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부분 부정하였는데
  - 인혁당 재건위 결성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중정과 검찰부에서 작성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유일하고
  - 검찰부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품목록에도 조직결성 사실을 직접 인정해줄 증거가 없고

- ‘인혁당 재건위’ 조직결성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하재완·송상진의 북한방송 청취 노트, 민주수호협의회 자료, 서도원이 초안·작성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제시함
-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서로 만나 국내외 정세와 통일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었지만 지하당이나 ‘인혁당 재건위’(혹은 재건단체)를 결성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 이수병은 진술서에서 “저는 인민혁명당 사건에 관여한 바 있는 도예종, 김용원 등과 같이…접촉, 모의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당 그 자체를 중심으로 모의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진술서 제3회, 74.4.26)함

#### 마) 조직 수준

#### 【 ‘인혁당 재건위’(재건준비위, 재건단체) 】

- 인혁당 재건위에 대한 검찰부의 기소내용은
  - 조직수준을 서울지도부와 경북지도부로 이원화되어 국가전복을 기도한 용공지하당인 인혁당 재건을 위한 비밀조직으로 규정함
-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 지하 전위당 수준은 아니더라도 혁신계 인사들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이 일체 불허되는 상황에서
  - 정세토론을 위한 서클과 같은 일정한 모임을 만들었던 것은 수사 자료와 관련자의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음

#### □ 판단

- 1974년 사건 당시 혁신계들의 모임이 인혁당 재건위라는 주장은

- 우선 재건의 대상으로서 인혁당이 실재했는가, 실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혁신계가 인혁당 재건을 시도했다는 재건활동의 근거 및 증거가 필요하나
- 혁신계 인사들이 정세토론을 위한 서클을 결성했다는 사실 이외에 체제전복이나 국가번복기도를 위한 인혁당 재건위 내지 재건단체를 결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 혁신세력의 정세토론을 위한 서클 】

#### □ 공개자료

- 김세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2차 인혁당 사건은 결코 당이란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비트』)
  - 이는 당이란 형식적 명칭을 보안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예비적 조직으로 위상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sup>105)</sup>
- 임구호 역시 서도원·도예종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일정 수준의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창당을 위한 당명이나 강령은 없었으며 입당원서나 자격을 정한 규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
- 전창일은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유신체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서클 수준이라고 주장함

105) 김세원은 자신의 회고록 『비트』에서 ‘당시 혁신계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도부 건설을 추진하여 경략연구회라는 지도부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였고, ‘서울·부산·대구·광주는 지역 분담’ 과 ‘지도부 지도력 상실’ 등을 언급, 지도부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정화영은<sup>106)</sup>

- 당시 대구지역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수호협의회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혁당 재건위와 같은 지하조직을 결성한 바는 없으며
- 전국 각지의 혁신계 인사들이 개인적인 인맥관계로 연결되어 정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

□ 수사자료

○ 당시 혁신계 인사들은 당 수준의 조직형태에 대해

- 1964년 인혁당 사건과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등으로 인해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거부감을 동시에 포지했고
- 1974년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역시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가보다는 유신체제라는 엄혹한 시기에 활동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논의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이수병은 74년의 정세와 관련하여 “몇 사람의 의도적 투쟁에 의해서 소위 결정적 투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고 보았고(진술서 제2회, 74.4.20)
  - \* 또한 “4월이 되자 곧 데모가 있을 것 같다고 하기에 우리는 계기 없는 데모, 자연발생성이 아닌 데모를 걱정하기 시작” 했다고 진술(이수병 진술서 제2회, 74.4.20)
- 김용원 역시 “3월에 데모를 일으키겠다는 것을 이수병과 토론하여 우리 혁신계가 분산되어 학생데모를 뒷받침할 힘이 없으니 시기가 아니”라고 보았음(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74.4.27)

106) 정화영. “인혁당 실체, 이제는 말한다.” 『뉴스메이커(2005.8.12)』

○ 도예종의 입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 도예종은 1964년 인혁당 사건의 오류를 자기비판하면서 인혁당이라는 당명의 채택, 정당조직 형성, 너무 많은 사람을 포섭하려 했던 판단착오 등을 오류로 지적하고(진술서 제4회, 74.4.22)
- 꼭 정당조직이 아니더라도 서클로서 얼마든지 이를 대치할 수 있다고 보았음<sup>107)</sup>

## □ 조직결성 여부에 대한 판단

○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일정하게 혁신계 인사들간의 접촉과 토의 활동이 존재했지만

- 반국가단체로 특정할만한 조직을 결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강령, 규약, 조직문서 등의 증거가 필요하나 그러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 1970.3.24 중정의 내사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집중 감시대상이었던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내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 검찰부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라디오, 출판 서적, 학생들의 선언문,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관련자료, 하재완과 송상진이 작성한 방송청취노트에 불과함

---

107) 관련자 대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조직실체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수병은 자필진술서(74.5.4, 6회)에서 서울지역 조직에 대해 서도원을 정점으로 4인지도부, 10여명의 구성원과 함께 체계도를 직접 그려 설명하면서 비밀·점조직의 조직운영 방침 등을 진술하였으며, 우홍선은 73.10경 혁신세력의 재규합체인 비밀지하조직에 가담하여 4인 지도부를 구성하였고(인원: 10여명), 상부선은 이수병이 말아서 구체적인 연계활동은 모른다고 진술(진술서 2회, 74.5.4), 하재완은 변호인 접견시 공소장 내용을 “거의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지하전위조직의 결성사실은 부인하지만, 정세토론을 위한 서클 결성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1974년 당시 중정, 검찰, 사법부는 혁신계 인사들의 반정부 투쟁을 국가전복기도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서클 수준의 소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부당하게 규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당시 혁신계가 결성한 조직의 수준은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신체제의 등장을 전후하여 정세인식과 통일운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서클수준으로 판단됨

## 2) 수사과정

### 가) 수사체계

#### 【 법적 근거 】

-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 제10항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감독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중정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
- 중정의 지휘 하에 군·경을 망라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수사

※ 당시 중정에는 헌병 21명, 경찰관 38명이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위해 파견근무(수사상황보고 제125보, 74.5.27)

#### 【 중정 수사상황 】

-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파견 경찰들이 담당했는데

- 민청학련 사건은 서울 시경 소속 경찰들이 조사에 참여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최초 조직사건 혐의를 인정한 경북도경 소속 파견경찰 7명이 수사 전담
- 구속영장 발부와 사건 송치 및 의견서 작성은 서울시경 소속 파견경찰(총경 이○○)이 담당
  - ※ 이에 대해 이용택은 중정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대공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인력이 주로 피의자 신문을 담당했지만 경찰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모든 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답변(이용택 면담결과, 2005.9.22)
- 검찰관 수사는 검찰부에서 전담을 했으나 문호철·이재명 검사가 검찰부에서 중정으로 파견되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검토

### 【 검찰 수사상황 】

- 검찰관 수사 역시 중정 6국에서 대부분 진행
  - 1974.5.8-11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대령 김기형 외 검찰관 11명이 민청학련 관련 사건 피의자 78명에 대한 조사기록을 8개조로 분담하여 검토(수사상황보고 제112보, 74.5.11)
  - 1974.5.11-12 2일간에 걸쳐서 중정 5국에서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관 문호철 검사 외 10명이 민청학련 관련 피의자 서도원 등 68명에 대한 의견서 초안 검토를 완료하고 74.5.12 16:00부터 의견서 인쇄작업을 진행(수사상황보고 제114보, 74.5.13)
  - 1974.5.27 검찰부에서 구속기소한 54명중 도예종 등 23명에 대하여는 5.28 10:00 중정과 검찰부 간에 5.28-6.3까지 공소보완 수사키로 합의하고 수사에 착수(수사상황보고 제127보, 74.5.29)

- 중정 수사계장이었던 윤종원에 따르면(윤종원 면담결과, 2005.10.6)
  - 김○○ 수사과장 주재 하에 수사과장실이나 보안차장보실에서 그동안 진술 받은 범죄사실 등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사는 경북도경이 주도했고, 일일수사상황을 경찰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취합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
- 경북도경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주도하고, 수사 장소가 주로 서울중부서 등으로 기재된 이유는(윤종원 면담결과, 2005.10.6)
  - 긴급조치 위반사건(4호)은 중정에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이 주도했지만, 민청학련 사건의 규모가 전국적이어서 수사효율을 위해 주요 피의자들을 중정에 모아 조사했고
  - 경찰 주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유치했던 중부서 등을 조사장소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고
  - 의견서도 경찰 명의로 이루어졌고, 중정에서 사건 전반을 개입하거나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서 내용이 많은 부분 허술하였다고 진술

## 【 판 단 】

- 중정 내부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중정 6국에서 조사한 것은 확실하며
  - 중정 직원은 민청학련, 파견경찰은 인혁당 재건위 조사를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 수사장소 임의기재와 관련 중정직원, 경찰 공히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지만,



- 중정 관계자들이 수사를 조정·감독했음을 시인하고 있어 사건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음
- \* 다만, 긴급조치 하에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이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장소를 중부경찰서 등으로 임의 기재한 것으로 추론

## 나) 검찰관 조사의 임의성 문제

### 【 조사 내용 】

- 의문사위 면담조사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 수사경찰이 검찰조사 때 입회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전창일, 이재형, 나경일, 황현승, 김한덕), 혐의를 부인하면 지하 보일러실로 끌고 가서 협박했으며(김종대, 이창복, 강창덕),
  - 서울구치소에서 수사관 없이 조사를 하다가 부인하면 다음 날 중정으로 돌려보내서 고문(이강철, 정만진) 혹은 협박(임구호)을 받은 후 다시 검찰관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
- 유진곤 변호인 함정호, 김종대 변호인 박승서 또한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이 검찰관 앞에서 부인을 하면 정보부로 되돌려져서 고문을 받는 공포분위기 아래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의문사위 장석구사건 보고서)
- 당시 검찰수사에 입회한 서기 중
  - 이상대는 의문사위에서 문호철 검사가 조사를 할 때 수사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수사팀장인 윤종원과 수시로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 김강진과 김태근은 검찰관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경찰을 잠깐 부르는 경우는 있었으나, 조사실에는 검찰관과 피의자, 본인 등 세 명만 있었으며 중정 수사관이나 경찰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
  - 또한 당시 인혁당 재건위 수사 검찰관이었던 이원무와 전세봉은 의문사위와 「진실위」 면담에서
    - 중정에서 조사시 중정이나 수사경찰이 입회하지 않았다고 주장
  - 당시 성북서 파견경찰 나갑열은
    - 의문사위 조사에서 검찰조사가 중정에서 이루어졌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팀이 함께 조사를 했으며 그 목적은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진실위」 면담시 검찰과 경북도경 수사팀이 함께 수사했다는 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검찰과 경북도경이 담당했다는 내용이었으며
    - 검찰관 조사시 수사경찰이 입회한 것을 본 적은 없다면서 의문사위 면담내용이 발언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
  - 한편 경북도경 파견경찰 이덕삼은 의문사위에서 검찰관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 \* 「진실위」 면담시에는 의문사위 진술내용을 부인하였음**

## 【 판 단 】

- 검찰관 조사시 수사관이 입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 당시 검찰서기 김강진 등이 중정 수사관의 입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의자·검찰서기·수사경찰 등 다수가 입회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검찰관 조사시 중정 수사관 입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 고문의 정의 및 관련 법률 】

- 고문이란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위협, 제지, 징벌과 같은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UNCAT)

※ 고문의 정의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 제1조에 규정

- 고문과 관련한 법률
  - 유신헌법 제10조(1972. 12. 27. 헌법 제8호) 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고문여부의 판단 기준 】

-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의 고문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30년이 지났고, 핵심 피해자 8명이 상고기각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 중정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자기고백 없이 당시의 고문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고문 여부를 물리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문 여부는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막연하게 고문을 받았다는 진술보다는 고문 주체, 장소, 방법,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가(‘진술의 구체성’)
    - 고문 현장 및 고문으로 생긴 상처 목격, 고문 가해자들로부터의 득문한 사실 등 피해자가 고문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기준임
- ※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중정 등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수사의 관행’ 역시 고려 필요

## 【 인혁당 관련자들의 고문 주장 】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현장 수사를 주도한 중정이 피의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는 의혹 제기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 당시 중정이 고문을 가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하여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됨

- 한편 당시 중정에는 고문금지에 대한 지휘부의 단호한 지시가 내려졌는데
  - 1973.10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검찰실에 의한 민간인 조사 · 고문사건(청와대 특별조사) 등으로 인해
  - 부장 특별지시에 의거 검찰실 주관으로 수사기능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수사관으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 고문근절을 강력 지시<sup>108)</sup>

<공판조서의 고문 관련 진술>

피고인	일시	고 문 주 장
김용원	74.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에서는) 부득이 허위 진술한 것입니다.</li> <li>■ 검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일부를 부인하려고 하니 수사기관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li> </ul>
김종대	74.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에서는) 장소가 장소이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li> </ul>
김한덕	74.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보부 수사국에서 조사 받은 것은 자의가 아니다. 검찰관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li> </ul>
도예중	74.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에게는) 무형적인 위압감 때문에 공소장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li> </ul>
서도원	74.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 앞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는 줄로 알고 검찰관 물음에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li> </ul>
이재형	74.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소사실은) 불기피한 사실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li> </ul>
하재완	74.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할 수 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진술 하였습니다.</li> </ul>
황현승	74.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에게 진술을 할 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진술입니다.</li> </ul>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무형적 위압감과 중정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위협에 의해 허위로 진술된 것임을 주장

108) 중정 검찰실. “수사기능부서 점검결과 보고(73.11.3).” 한편 수사계장 윤종원은 05.10.6 「진실위」 면담에서 ‘사건 직전 검찰실 조사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박대통령에게 알려져 수사관들이 각서를 쓰는 등 경각심이 높은 상태여서 고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

- 공판조서 내용은 고문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으나 고문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들에게 정신적 위협(위압감, 협박 등)을 가하는 고문이 있었음을 시사

<사형수 8인의 고문 주장(항소·상고 이유서)>

피고인	내 용
도예종	<p>&lt;항소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소장 1-6번까지의 범죄사실은 허위조작되었으며 검사조서 작성시 4.20-25 철야취조를 받고 4-5일에 걸쳐 고문당함(311호실)</li> </ul>
	<p>&lt;상고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4.20-6.8(50일간) 중정 조사에서 4-5차에 걸쳐 고문을 당함(6국 311호)</li> <li>■ 중정 취조시에 협심증까지 일으켜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때 중정에서 사준 외제응급 협심증 치료제인 설하정, 리트로그리셀린정을 먹고 회복이 되었는데 약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li> </ul>
서도원	<p>&lt;상고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 및 검찰관 작성의 조서 및 자필진술서는 고문과 협박 하에서 강요에 의해 작성, 증거능력이 없음</li> </ul>
이수병	<p>&lt;항소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문과 일주일에 걸친 주야 연속심문 등 위협과 회유를 겸한 정신적 위축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없었음</li> </ul>
	<p>&lt;상고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첩과의 관계를 추궁하려 무턱대고 가해지는 목불인건의 고문을 당했다.</li> <li>■ 고문과 협박 속에서 수사관과 검찰관이 동일 장소에서 조서가 작성되었고 조작된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제 손으로 무인을 찍어야만 했음</li> </ul>
김용원	<p>&lt;상고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정조서와 진술서는 심한 몽둥이질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통해서 꾸며진 것이며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폭력으로 무인</li> <li>■ 중정에서 몽둥이질을 해서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음</li> </ul>
하재완	<p>&lt;항소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소내용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혹독한 고문과 협박 등으로 사전에 작성된 각본에 의한 것임</li> </ul>
	<p>&lt;상고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8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탈흉이 되고, 폐농양이 생겨 취조관이 시키는 대로 조서가 작성</li> </ul>
우홍선	<p>&lt;항소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전투 중 부상을 입어 반불구자로 후송되었고 생혈이 심해 전신이 약화되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음</li> </ul>
	<p>&lt;상고이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 및 검찰관 작성 조서 및 진술서는 중정 지하실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강요되어 불가항력으로 허위 진술한 것임</li> </ul>

피고인	내 용
송상진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는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서가 아니고 청사진에 본을 박아 놓고 강요 필기 무인케 한 것이다</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8구속되어 4.30부터 본인의 소신을 적으라고 하여 몇 가지를 적은 후 오후부터 고문이 시작</li> <li>■ 6.7 21시경부터 중정 지하실에서 김상희수사관으로부터 고문하겠다는 협박 하에 인혁당재건에 대한 조직을 부르는 대로 쓴 것임</li> </ul>
여정남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조과정 중 잠을 깨우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전기, 물고문, 심한 매질 등으로 인한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주사를 맞아가며 재판에 임했다</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종일관 고문, 공갈, 협박으로 강제 조작 허위 진술된 기록임</li> </ul>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1심 공판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했던 수사과정에서의 육체적 고통을 당했던 고문사실을 주장

- 항소 및 상고이유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고문 유형이 등장하고 있고 도예중,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 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생존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

피고인	내 용
황현승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 작성의 기타 조서는 피고인이 가혹한 고문을 받은 중앙정보부 옥내에서 정보부 수사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협과 강압에 의해 작성</li> </ul>
김종대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 혹독한 고문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 범죄사실이 되었음</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 작성의 조서는 중앙정보부 옥내에서 더구나 수사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협과 강압으로 작성</li> </ul>
전창일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서내용을 부인했다하여 검찰관이 없는 사이에 또다시 악몽 같은 공포의 지하실에 끌려 내려가서 고문을 받았음</li> <li>※ 「진실위」 면담시에는 무차별 구타가 아니라 옆드린 채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li> </ul>

피고인	내 용
임구호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 노트 관련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가하였음</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측 조서는 74.5.25이후 작성된 것으로 이는 구속기간 장기화, 고문, 폭행, 협박, 기망 등 불법행위에 견디지 못하여 작성된 것임</li> </ul>
이창복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부터 7월초순간의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및 검찰관 작성 공소장 및 진술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과 회유에 의해 작성됨</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비명소리가 나면 인혁당재건 서울지부부원이 되고 또 한번의 비명소리에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고 간헐적인 비명소리에 결국 대역죄가 나왔다.</li> </ul>
유진곤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미상경 운운하면서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은 허위 조작이며 고문 및 위협에 의한 강요로 시인한 것임</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허위 조작에 의해 작성한 것을 고문, 구타, 위협에 의한 강요로 시인케 한 것이며 모두 날조된 것</li> </ul>
김한덕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전의 전과(인혁당)가 밝혀지자 갖은 고문(물, 전기 등)을 자행하고 공소사실을 강압적으로 허위 조작</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을 면하고 싶거든 부르는 대로 쓰라고 강요하였고 그 죽음의 고문은 물과 전기 몽둥이 등이었음</li> </ul>
정만진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고문과 구타를 어떻게 당했는지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으며 구치소에서 피소변을 5일간 누는 등 무자비한 고문을 당함</li> <li>■ 5.17 정보부에 보내 검사에게 조서대로 시인하지 않았다고 지하실에서 3시간 동안 갖가지 고문을 당하고 전기고문기를 옆에 놓고 손목을 묶고 고문</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 노트관련 무조건 노트를 보았다고 시인하라면서 지하실에서 물고문과 구타를 어떻게 당했는지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음</li> </ul>
강창덕	<항소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 조사 받을 때 정보부 취조관들이 입회도 하고, 검찰심문에 순종치 않으면 지하고문실에 끌고 가서 뼈다귀를 훑어버린다고 위협</li> </ul>
	<상고이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5.6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수갑으로 손과 발을 묶고 경찰봉으로 전신을 구타한 후 긴 벤치에 눕히고 물고문을 하여 정신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후 자백하라고 진술을 강요</li> </ul>



○ 황현승(전기고문), 전창일(구타·전기고문), 임구호(구타), 유진곤(구타), 김한덕(물고문·전기고문), 정만진(구타·물고문), 강창덕(구타) 등이 구체적인 고문유형을 진술

- 전창일, 이재형, 정만진, 강창덕 등은 고문의 상처 및 후유증을 진술하고 있는데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생존자들은 가혹한 고문을 통해 작성된 증정 및 검찰에서의 조서가 조작임을 일관되게 주장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변호인 접견 기록>

성명	변호대상	접견내용
황규룡	도예중변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고문당한 일이 있습니까?</li> <li>■ 도예중 : (씩 웃으면서) 대우 잘 받았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2심이 중요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li> <li>■ 도예중 : 검사조서 작성 시에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항소 이유서에 했습니다.</li> </ul>
김종길	우홍선변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몸은 괜찮으신지요?</li> <li>■ 우홍선 : 몸은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매를 맞아 하 지부정증이라고 진단을 받아 누워 있어도 좋다고 하며 몹시 아픕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구속된 경위</li> <li>■ 피고인 : 검사조서도 정보부에서 몽둥이찜질을 해가며 작성했기 때문에 임의진술 아닌 강제진술인데 증거가 안 된다고 좀 어렵겠지요.</li> </ul>
김종길	전창일변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자술서를 썼는가요?</li> <li>■ 전창일 : 자술서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부른 대로 쓰지 않으면 지하실로 내려가 고문하고 하여 수사관이 쓰라는 대로 쓴 것입니다.</li> </ul>
윤의준	김용원변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뭐 내일 공판시 변호인이 물어볼 사항 있어요?</li> <li>■ 김용원 :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과 관련된 것을 자세히 물어 주세요. 인혁당 지도부 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세요. 정보부에서는 고문에 의한 것이예요.</li> </ul>
함정호	유진곤변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 (기소장을 내어 보이며) 읽어보세요</li> <li>■ 유진곤 : 조사관이 몽둥이로 때려 전부 기소장을 날조한 것입니다</li> </ul>

○ 도예종·우홍선·전창일·김용원 등은 변호인과의 접견시 중정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고문을 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 이러한 내용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 작성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됨

\* 이들 대부분은 고문에 대한 진술로 몽둥이에 의한 구타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가족들의 주장>

	목적·특문장소	내 용
배수자 (서도원 처)	변호인 접견시	■ 서도원이 “이렇게 당했다”면서 무릎에 남아 있는 고문 자국을 보여줌
신동숙 (도예종 처)	재판정 진술	■ 3일 동안 잠을 못자고 앓았다 일어났다를 반복 ■ 밤잠 안재우고 고문을 했다
이영교 (하재완 처)	재판정 진술	■ 지하실에 갇힌 채 3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심한 고문을 해서 항문도 빠지고 탈장 109) ■ 고문을 받아서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구두선 (이태환 처)	재판정 진술	■ 그 놈들은 백정이다 ■ 하도 심하게 전기고문을 하여서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점매 (전재권 처)	재판정 진술	■ 고문을 많이 받아서 육신이 아프다
추국향 (정만진 처)	항소·상고이유서	■ 남편이 구타를 많이 당했고 물고문도 심하게 당했다고 기록한 글을 보았다

\* 공판조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sup>110)</sup>

109) 한편 이들은 「진실위」 면담에서는 ‘신체검사시 흉터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자 서울구치소 입감시 작성한 신분장에도 점·흉터·화상 등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명·상처 등 고문으로 생겼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110) 교도관 이정희의 ‘하재완 탈장’ 언급에 대해 당시 과견경찰 손중덕은 ‘하재완 탈장은 유아시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 이라고 증언(손중덕 면담결과, 05.9.28)

<교도관 진술내용(의문사위 조사)>

	내 용
이정희 (하재완 사방 담당 교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이 고문으로 탈장되었다는 얘기를 했고, 아랫배가 불룩한 채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으며, 의무과로 치료받으러 갈 때도 부축을 해서 걸어 나간 것 같음</li> <li>■ 하재완과 우홍선이 조사를 받고 새벽에 업혀 돌아올 때가 여러 차례 있었고</li> <li>■ 우홍선은 아프다고 해서 의무과 진찰을 여러 차례 받았고 몸이 아파서 사방에 자주 누워 있었음</li> </ul>
전병용 (보안과 교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진곤은 손과 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li> <li>■ 김용원은 맥이 풀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li> <li>■ 하재완은 탈장이 되었고, 물고문에 의한 폐농양증으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배어 나옴</li> </ul>
이택모 (보안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은 고문을 받아서 탈장이 되었고, 전기고문을 받아서 경련을 일으킴</li> <li>■ 김용원은 항상 멍하고 눈에 초점이 없는 모습이었음</li> </ul>
김상규 (영치과교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가거나 복귀할 때 소제들에게 업히거나 부축 받은 사람들이 있었음</li> </ul>
박형식 (보안과교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상처를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고문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함</li> </ul>
송혼규 (보안과교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오는 사람 많았음(인혁당 관련자들인지는 불확실)</li> </ul>
임창대 (보안과교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벽 2-3시 정도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주 피곤한 모습이었음(이재형)</li> </ul>

○ 교도관들은 의문사위 진술에서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하재완 탈장, 유진곤 손목 붕대, 우홍선 와허증, 김용원 몽롱한 눈빛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 교도관들의 진술은 고문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이해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sup>111)</sup>

○ 다만, 일부 교도관들이 고문흔적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도관 이정희·전병용 등 고문에 대해 언급

111) 한편 이들은 「진실위」 면담에서는 ‘신체검사시 흉터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자 서울구치소 입감시 작성한 신분장에도 점·흉터·화상 등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명·상처 등 고문으로 생겼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파견경찰 및 검찰서기 의문사위 진술내용>

	내 용
신흥수 (파견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중정에서 고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li> <li>■ 고문은 아마 윤종원의 부하들이 했을 것임</li> <li>■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 별로 저항하지 않았고, 중정 사람들이 고문을 하는 등 따로 처리하는 것 같음</li> </ul>
이덕삼 (파견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계장, 박수사관, 김사무관 등 고문하는 팀이 따로 있었음</li> <li>■ 6국 지하보일러실에서 고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물고문 장면을 목격</li> <li>■ 고문은 중정 수사관이 주도했고, 경북도경 수사관들은 중정 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조</li> </ul>
전재팔 (성북서 파견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팀 4명이 피의자를 전기고문하고 있었음</li> <li>■ 전기고문 장소는 6국 건물 밖 남산방향으로 들어간 곳으로 기억함</li> <li>■ 박재명의 얼굴이 낮이 익음</li> <li>■ 손잡이를 돌리고 나서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수사관이 기대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또 손잡이를 돌렸음</li> </ul>
나갑열 (영등포서 파견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창일과 대화도중 대구팀에 전기고문 기술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중정에서 고문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li> </ul>
이상대 (검사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자들 모두가 풀이 죽어 있었고 문검사가 질문을 하면 부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며 아마 고문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함</li> </ul>

○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경북도경 파견경찰들은 고문사실을 부인하면서 고문은 중정 수사관이 전담했다고 주장하고

- 서울 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경북도경의 파견경찰 4명이 피의자를 전기고문한 사실을 증언했는데, 특히 박재명의 얼굴이 낮이 익다고 진술하면서
- 특히 황현승을 조사하던 6국 보일러실에서 목격한 전기고문 사실을 진술했는데, 군용전화기 손잡이를 돌려 전기고문을 실시했다고 증언(전재팔 면담 2005.11.2)

<「진실위」 면담결과>

	면담일자	면담내용
송중의 (검사)	05.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검찰로 송치 받은 피의자들 중에서 상처가 있던지 고문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은 없었음</li> <li>■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음</li> </ul>
이용택 (중정6국장)	05.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이 고문에 의해 탈장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장 당한 사람이 병원을 안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음</li> </ul> </li> <li>■ 中情 조사실에 물고문을 하기위한 욕조가 있었다는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건물 전체에 화장실의 세면대 외에 욕조는 없었음</li> </ul> </li> </ul>
윤종원 (중정 계장)	05.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산 6국 건물 1층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방이 다 민가여서 큰 소리라도 나면 다 들리는 곳이었고, 보일러실은 매우 협소한 장소이고 욕조 같은 것도 없음</li> </ul>
이희원 (의무과교도관)	05.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예중은 평소 몸이 약해서 관구부장·교도관 등과 함께 의무실을 자주 찾아와 의무관이 처방을 해주었는데 본인 기억으로는 소화불량에 대한 처방이었음</li> </ul>
이정희 (보안과교도관)	05.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탈장 때문에 치료가 잦았고, 새벽에도 조사를 받기 위해 연출되기도 하고 밤늦게 들어온 적도 있었으며 중정에서 직접 구치소로 와 2층 접견실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음</li> <li>■ 하재완 고문과 관련한 얘기를 하거나 명 자국을 본 적은 없었으나 하재완은 몸이 불편해 사방에 누워 있었음</li> <li>■ 하지부정증이라는 말을 모르겠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음</li> </ul>
이강준 (명적과교도관)	05.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위 관련자들이 고문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중정에서 심하게 고문당해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면 구치소에 소문이 짝 났을 것임</li> </ul>
박형식 (보안과교도관)	05.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혁당 재건위’ 재소자들과 고문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상처를 본 적은 없었음</li> </ul>
손중덕 (경북도경 파견경찰)	05.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 탈장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재완은 “서울에서 포경수술을 했다” 고 하기에 부위를 보았는데 고환은 짝고환이더라</li> <li>- 하재완이 고문당해 탈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윤계장도 고문 여부를 다그치기에 병원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건네줌</li> </ul> </li> <li>■ 지하실은 보일러실로 이용하고 있고 매우 협소했던 곳이라 지하실에서 고문은커녕 조사 한번 하지 않았음</li> </ul>
박재명 (경북도경 파견경찰)	05.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정 6국 지하실은 큼지막한 보일러 기계가 짝 차 있었던 곳인데 그곳까지 내려가 조사할 일도 없었고 고문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li> </ul>
신흥수 (경북도경 파견경찰)	05.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실에 내려간 적이 없으며, 파견 나온 상황에서 무슨 고문을 했겠는가?</li> </ul>

	면담일자	면담내용
이덕삼 (경북도경 파견경찰)	05.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만진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조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뺨 한번 때리지 않았음</li> <li>■ 6국에서는 2-3층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하였음. 보일러실에서 조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li> <li>■ 물고문은 본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음. 조사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정도였음.</li> </ul>
임찬욱 (경북도경 파견경찰)	05.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국 건물 지하 조사실을 가보거나 본 사실이 없음</li> <li>- 고문에 사용한다는 전화기를 본 기억이 없고</li> <li>- 하재완이 탈장되었다면 병원에 다니거나 의사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li> </ul>

- 당시 담당검사 송중의를 비롯하여, 중정의 이용택·윤종원, 파견경찰 손중덕·박재명·신홍수 등은 의문사위 진술내용과 달리 고문수사에 대한 주장을 부정

\* 특히 이정희 등 교도관들은 의문사위 면담조사에서 고문상처 및 후유증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부인 혹은 반복

- 대표적인 고문사례로 거론되던 하재완의 “탈장” 및 우홍선의 “하지부정증”과 관련해서도

- 하재완은 검거(4.28)되기 전인 1974.4.16 포경수술시 탈장 증세가 있어 의사의 수술을 권유받고도 거절한 사실이 있고 (국방부 국회 답변자료)

- 우홍선은 ‘6.25 전쟁 중 부상을 입어 반불구자로 호송되었고 생혈이 상해 전신이 약화되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 고 호소(항소이유서)

- 또한 전창일의 경우, 고문당한 사실을 변호사 접견기록·항소이유서와 의문사위 면담(무차별 구타, 물·전기고문을 당함)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 시간이 경과될수록 고문의 강도가 높아가고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다, 몇몇 부분에서 진술내용이 상치
- o 당시 파견경찰 중 전재팔만이 이전의 진술(황현승 전기고문 목격)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 황현승은 02년 의문사위 조사에서 1974.5.7과 5.13 피의자 신문 조서(총 2회)를 작성하면서 5.7경 하루만 박재명과 노량진 파견 경찰로부터 집중적으로 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 파견경찰 전재팔은 02.9 의문사위 조사에서 5.13 황현승의 2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입회하여 경북경찰 4명이 전기고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문일자와 고문주체, 고문 장소 등은 상이
- o 경북도경 파견경찰들은 의문사위에서의 “중정에서 고문을 주도하고 자신들은 보조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위」 면담에서는 이를 부인
  -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대부분은 고문주체를 파견 나온 경북도경으로 지목

### 【 고문여부의 판단 】

- o 고문 관련 진술의 일관성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의자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중정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을 일관되게 주장
    - ※ 항소 및 상고 이유서에서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중정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심한 몽둥이질(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 다만, 공판과정에서는 검찰에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중정 수사과정으로 질문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는 불가피하게 혹은 부득이하게 진술했다’ 며 중정에서의 고문을 암시

- 중정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주장은 재건위 사건 관련 사형수, 생존자, 가족, 변호인, 파견 경찰, 구치소 교도관, 검찰 서기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

○ 중정 수사 당시 고문에 대한 구체적 진술

- 도예중은 “중정 취조시에 협심증까지 일으켜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때 중정에서 사준 외제응급 협심증 치료제인 설하정, 리트로그리셀린정을 먹고 회복이 되었는데 약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등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진술(상고이유서)

- 김용원은 “중정에서 진술서를 수사관들이 꾸민 원본을 베껴 쓰라고 하여 거부했더니 몽둥이질을 해서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다”고 주장(상고이유서)

※ 또한 “시인해라,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부인하면 재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처치해 버리겠다” 등 당시 수사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상고이유서)

-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탈흉이 되고, 폐농양이 생겨 취조관이 시키는 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상고이유서)

※ 이택모(당시 서울구치소 보안분실장)은 “하재완은 고문을 받아서 탈장이 되었고, 전기고문을 받아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재완의 진술을 확인해줌(의문사위 진술조서)

- 우홍선은 중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는 중정 지하실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강요되어 불가항력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서 “서울 구치소 처방전(와허증에 대한 구치소 처방전)”은 고문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진술(상고이유서)



- 송상진은 중정에서의 수사가 피의자의 의사를 물어서가 아니라 각본에 따라 고문, 협박 및 공포 속에서 강제로 필기 무인케 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주장(항소·상고이유서)

※ 송상진은 고문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4.28 구속되어 ‘4.30부터’ 본인의 소신을 적으라고 하여 몇 가지를 적은 후 오후부터 고문이 시작” 되었으며, “ ‘6.7 21시경부터’ 중정 지하실에서 ‘김상희 수사관’ 으로부터 고문하겠다는 협박 하에”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상고이유서)

- 여정남은 장기간에 걸친 취조 과정에서 잠 안재우기 고문과 구타·전기고문·물고문 등 각종 고문이 본인에게 가해졌으며,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주사를 맞아가며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

※ 여정남은 ‘노동당 사업총화 보고문’ 을 보지도 않았는데, 공갈 협박과 심한 매질에 시인해야만 했다(항소이유서)

- 전창일은 당시 중정 밀실에서 행해진 가혹한 물고문·전기고문·잠 안 재우기·몽둥이찜질 등 온갖 비인간적 만행으로 하재완은 탈장이 되고 항문이 빠지며 폐종양에 시달렸고, 서도원·이수병·김용원은 혼절한 채 업혀 나오고 업혀 들어오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주장(『말』, 1994.5)

#### o 고문 실행의 개연성

-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진술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의 진술로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이정희는 하재완의 탈장·멍 자국, 우홍선의 고문으로 인한 와허증 등을 증언했고, 전병용은 유진곤 손과 목의 충대, 김용원의 맥이 풀린 상태, 하재완의 탈장 및 폐농양증·복부 출혈 등을 상세하게 증언

- 당시 중정에서의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파견경찰들의 고문 사실 인정 역시 중정의 조직적인 고문이 있었음을 뒷받침
  - ※ 경북도경 파견경찰이었던 신흥수는 중정 윤종원 부하들의 고문 사실을 증언했고, 이덕삼은 중정 6국 지하보일러실에서의 고문 사실을 증언했으며, 전재팔은 경북도경 파견경찰 4명이 전기고문했던 사실을 증언(경북도경 파견경찰 박재명 지목)
- 주로 고문이 자행되는 현장은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부정되는 정보부 건물이었다는 점도 고문 실행의 개연성을 높여줌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강압수사 등 폭넓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는데
  - 고문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중정 관련자들과 경북도경 파견경찰들은 본 위원회 면담과정에서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때로는 주체(박재명 등)를 지목하고 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교도관, 파견경찰, 검찰 서기 등이 고문 사실을 부분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중정에서의 고문 실행의 개연성을 뒷받침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사형수 및 생존자), 관련자 가족, 변호인, 파견경찰, 이해당사자가 아닌 교도관 및 검찰 서기 등 중정에서의 고문사실에 대한 증언은 구체적임
    - ※ 의문사위는 장석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고문(물고문, 전기고문, 몽둥이찜질, 통닭구이 등)은 중정과 검찰의 조사에서 수시로 자행되었던 것으로 결론 내림
  - 당시 폭압적인 유신체제 하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광범위한 고문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사형집행

#### 가) 전격적 사형집행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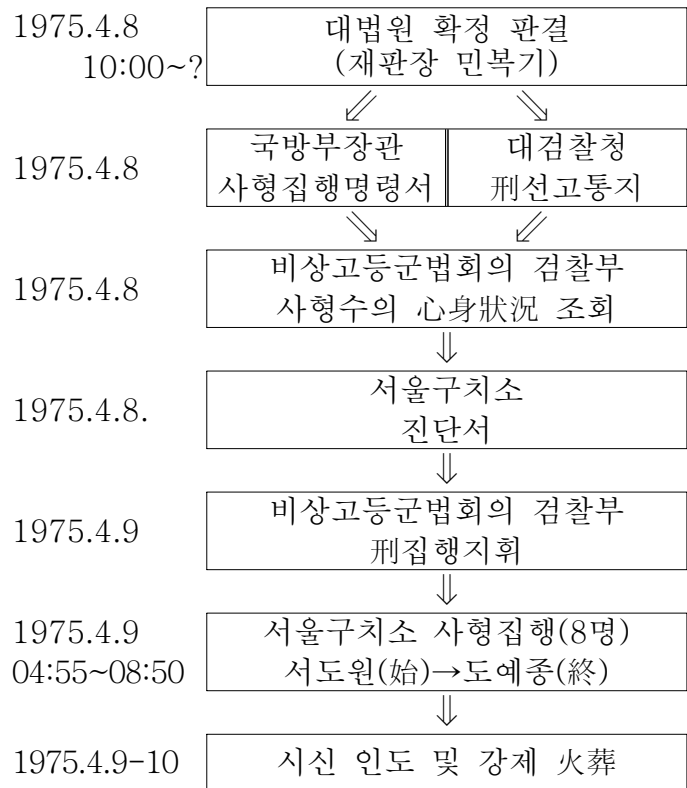
##### 【 법률적 근거 】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1974.4.3)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제9항)
-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1974.1.8)
  -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제8항).
- 군법회의법(1973.10.10 법률 제2630)
  - 제494조(집행지휘)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 제497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제499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하여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00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 의혹 내용 】

-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자
  -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형수 8명에 대한 사형집행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 제기
  - 유인태에 따르면, 1975.4.8 12시에서 13시 사이에 10분가량 운동을 하면서 김용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오전에 수정을 미제 수정으로 바꿨다. 아무래도 내일 처형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 확정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것은 통상 수년이 경과한 후 집행되는 관행을 깬 전격적인 것이었고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고문에 의한 조작, 공판조서 변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재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 ※ 군법회의법 제499조 2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군법회의법 <1973.10.10 법률 제2630호>)
-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사형집행까지의 과정
  - 1975.4.8 10시 대법원(재판장 민복기)은 피고인 및 변호사조차 출석하지 않은 채 준비된 판결문을 10분 동안 읽은 후 상고를 기각
  -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국방부 장관 서종철은 「사형 집행명령서」를 작성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로 송부

-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가 서울구치소에 「사형수의 심신상황」을 조회하자 서울구치소는 의사의 「진단서」(사형수 8명 이상무)를 회신
- 1975.4.9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담당 송중의)는 「형집행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송부
- 1975.4.9 04:55 형확정 18시간 만에 서도원을 시작으로 사형 집행이 진행되어 08:50 도예종을 끝으로 형집행 종료



## 【 조사 내용 】

- 당시 중정 6국장 이용택은 전격적인 사형집행 이유에 대해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국방부에 전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월간중앙, 89년 2월호)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 05년 「진실위」 면담에서는 월간중앙 기사에 대해 “당시 사형 집행은 대통령의 최종허가가 있어야 집행된다”는 말을 기자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
- 당시 교도관들은 의문사위 면담에서 사형수들이 살아 있으면 고문 등 문제가 제기되고 시끄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 【 판 단 】

- 전격적인 사형집행 경위 관련
  -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 \* 1975.2.21 박정희는 문공부 순시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했다면 내란음모죄가 되고 내란음모죄는 어느 나라 법에 서든지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는 등 스피커 없는 뒷좌석 까지 들릴 정도로 격앙된 발언 태도를 보였음(조선일보, 75.2.22; 중앙일보, 75.2.22)
  - 이용택은 “통치권자나 집권세력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여겨 이 불씨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큰 사건의 판결이 났으니 법무부장관이 빨리 보고하자 조기 집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이용택 면담결과, 05.9.22)

- 교도관 김용표 역시 “사형 전달 퇴근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언급(김용표 면담결과, 05.10.18)
- 따라서 권력 최상층부의 사전 지시에 의해 사형준비는 물론 집행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나) 최후진술(유언) 조작

### 【 의혹 내용 】

- 사형수들은 사형장에서 최후진술을 할 수 있고, 사형수의 최후진술은 사형집행명령부 비고란에 기재되는데
  - \* 유언보다는 사형집행명령부 상의 최후진술이 정확한 명칭
  - 도예종의 경우 “조국이 하루 속히 적화통일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기록되어 있고
  -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형수 8명의 ‘최후진술’란 맨 아래에는 모두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라고 기록

	사형수	집행일시	최 후 진 술
1	서도원	1975.4.9 04:55-0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세 막내가 보고 싶다</li> <li>■ 통일된 조국을 염원한다</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2	김용원	1975.4.9 05:30-0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생계비가 걱정되니 학교에서 지급될 것이 있으면 반도록 조치 바람</li> <li>■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부탁</li> <li>■ 가족에게 돌보지 못해 죄송하다</li> <li>■ 여동생을 사랑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게 지내주기 바란다</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3	이수병	1975.4.9 06:05-0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얼굴 한번 보고 싶다</li> <li>■ 더할 말 없다</li> <li>■ 종교의식 거부한다</li> </ul>



	사형수	집행일시	최 후 진 술
4	우홍선	1975.4.9 06:35-0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쉽다</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5	송상진	1975.4.9 07:02-0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내 생애가 가련하다</li> <li>■ 가장으로서 할일 못하고 죽는 것이 부끄럽다</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6	여정남	1975.4.9 07:35-0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는 것이 억울하다</li> <li>■ 채소 중 소장 이하 전 교도관에게 신세 많이 끼쳐 죄송하다</li> <li>■ 담배 한대만 피고 싶다(허락)</li> <li>■ 물 한잔 마시게 해주면 좋겠다(허락)</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7	하재완	1975.4.9 08:05-0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싶은 말이 없다</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8	도예종	1975.4.9 08:30-0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국이 하루 속히 적화통일 되기를 바랄 뿐이다</li> <li>■ 종교의식을 거부한다</li> </ul>

○ 사형수 유가족들은 최후진술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 이수병의 처 이정숙은 시신을 인수할 때 받은 ‘유언’이 원본이 아니고 16절지 종이에 각각 한 장씩 정리한 것이며,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내용은 당시 가톨릭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
- 도예종의 처 신동숙은 남편이 교수형을 당하면서 “적화통일 만세”라고 외쳤다는 것에 대해 그 말은 중정에서 쓰는 말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당치 않다고 주장

### 【조사 내용】

○ 당시 사형장면을 목격했던 교도관들에 대한 면담결과(의문사위장석구 사건기록)

- 김판근에 따르면, 도예종은 “통일을 못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단 한마디만 했으며, ‘적화통일’이란 표현은 사용한 일이 없고,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말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
  - 사형장에 입회했던 이정희·안종율·김용표는 8명의 사형수들이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
  - 사형집행명령부를 작성한 이강준은 “공산주의자가 ‘통일’이라 하면 적화통일이라고 생각해 기재”했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진술
-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 대한 위원회 재면담에서(교도관 5인 면담 결과, 05.10.18)
- 노병한(당시 명적과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통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 사형수 가족들에게 유언을 통보치 않았으며
  - 최형식(교도관, 사형집행 입회) 역시 “사형 집행 후 소장실에서 간부들이 모여 유언내용을 가족에게 통보할 것인가를 협의”했는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언내용을 가족에게 통보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
- 의문사위 조사 당시 종교의식 거부 및 최후진술의 허위조작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던 이강준은(이강준 면담결과, 05.10.5)
- 의문사위 진술과는 달리 당시 “사형수 거의 대부분이 종교의식을 거부했다”고 진술한데 이어

- “사형수들을 상대하면서 양심상 유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의역할 수는 없고, 액면 그대로 유언내용을 적었다”고 진술 반복

※ 이강준은 사형수 도예종의 ‘적화통일 운운’ 유언에 대해 도예종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언을 내 임의로 쓴 사실은 없고, 도예종이 분명 적화통일이라고 했을 것” 이라고 답변

### 【 최후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 】

#### ○ 사형집행명령부를 작성한 이강준은

- 의문사위 진술조서에서 최후진술 조작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지만 본 위원회 면담에서 “유언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진술을 반복하였지만

- 도예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도예종이 분명히 적화통일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 이강준은 의문사위 진술조서에서 “도예종 이름은 들은 것 같다” 고 진술한 바 있음(의문사위 이강준 진술조서)

#### ○ 사형수들의 최후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바

-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의도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 최후진술 조작 의도 유무와 상관없이 조작된 최후진술이 언론에 공개되어 인혁당과 북한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공세의 근거로 활용

※ 도예종이 “조국의 적화통일을 기원한다” 는 등 사실과 다른 최후진술 내용이 당시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됨으로써 처형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함(중앙일보, 75.4.10; 조선일보, 75.4.11)

## 다) 시신 탈취 및 강제 이송

### 【 의혹 내용 】

- 경찰은 고문은폐를 위해
  -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4.10 경찰은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을 홍제동 벽제화장터에서 가족들이 동의 없이 직접 화장시켰는데
  - 이는 시체에 남아 있던 고문 흔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제기
- 유가족들 역시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 김진생(송상진 처)은 시신을 경찰이 탈취해서 벽제 화장터에서 바로 화장을 시켜서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이소선씨가 남편의 관을 열어 보았는데,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고 주장
  - 배수자(서도원 처)는 원래 함세웅 신부가 있는 응암동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남편의 관을 실은 차가 창녕까지 갔으며
  - 이정숙(이수병 처)은 함세웅신부와 함께 남편의 시신을 살펴보니 손톱, 발톱, 발뒤꿈치와 등에서 시커멓게 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고문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

\* 함세웅 신부는 이수병의 시신사진을 흑백으로 촬영 언론에 공개

### 【 판 단 】

- 고문은폐를 위한 시신탈취
  - 사건 수사가 종료 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탈취하고 강제로 화장했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이수병 시신사진 및 송상진 시신의 상처흔적 등은 교수형 시신에서 발견되는 시반(屍斑)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 송상진·여정남 시신의 강제 火葬

-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처리된 것은 응암동 성당 등에서 천주교 장례를 치를 경우 전격적 사형집행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 국가기관(경찰)이 가족의 의사에 반해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임
- \* 4.10 경찰은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응암동 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유가족들과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을 동원하여 영구차를 벽제화장장으로 강제 이송 후 火葬 처리(조선일보, 75.4.11)

마 | 소 결

○ ‘인혁당 재건위’ 조직결성 여부와 관련

- ‘인혁당 재건위’의 조직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지역지도부 간의 위상 및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는 증명 불가능
- 다만,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토론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졌음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
-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중정의 주장의 증거는 하재완 노트 정도이고 평양방송의 내용을 지령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문·강압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 다만, 중정이 초기부터 ‘인혁당 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 74.4.3 대통령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했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으나
  - 초기에 행해진 중정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 종결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함
-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고
  - 조작된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용공성 부각 등 언론의 여론조작에 동원되었고
  - 경찰이 송상진 등 시신을 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신에 남아 있던 고문흔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장례미사 과정에서 발생할 항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4 유신체제와 군사법정

### 가 군사법정의 구성

#### 【 법률적 근거 】

-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1974.1.8)
  -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거 비상군법회의(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설치
  -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심판
  - 비상군법회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임명
  - 중정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감독함

#### 【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

- 유신헌법 제정 이후는 긴급조치의 시대로서
  - 제1호 발표 이래 제9호까지 발표되었는데, 긴급조치를 통해 유신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그런 비판이 있으면 사형까지 처하게 하는 조치였음
  - 74.1.8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는 개헌주장, 비방, 유언비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하고 15년 이하의 형을 부과
  - 경제안정을 명목으로 긴급조치 제3호에 이어 74.4.3 긴급조치 제4호가 발동되어 민청학련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됨

○ 긴급조치 제4호는(1974.4.3)

- 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군사법원의 구성 】**

- 긴급조치에 의거 민청학련 사건과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
- 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구성되었는데
  -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로 나뉘어 보통군법회의는 3개의 심판부, 고등군법회의는 1개의 심판부로 구성
  -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부 심판관은 박희동 중장, 제2부 심판관은 박현식 중장, 제3부 심판관은 유병현 중장이었고, 비상고등군법회의 심판관은 이세호 대장이었음
  -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 구성



·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7.11)

■ 재판장 육군중장 박현식	■ 심판관 육군소장 이희성
■ 심판관 판사 권중근	■ 심판관 검사 김진석
■ 법무사 육군중령 신복현	

· 민청학련 사건(1974.7.13)

■ 재판장 육군중장 박희동	■ 심판관 육군소장 신현수
■ 심판관 판사 박천식	■ 심판관 검사 김태원
■ 법무사 육군중령 김영범	

-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부(1974.9.7)

■ 재판장 대장 이세호	■ 심판관 소장 윤성민
■ 심판관 소장 차규현	■ 심판관 소장 문영국
■ 심판관 판사 문영극	■ 심판관 판사 박정근
■ 심판관 검사 정태균	■ 법무사 대령 이진우

- 대법원 재판부(1975.4.8)

■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 대법원판사 홍순엽
■ 대법원판사 이영섭	■ 대법원판사 주재황
■ 대법원판사 김영세	■ 대법원판사 민문기
■ 대법원판사 양병호	■ 대법원판사 한환진
■ 대법원판사 임항준	■ 대법원판사 안병수
■ 대법원판사 김윤행	■ 대법원판사 이일규

## ○ 유신헌법의 문제점

- 유신헌법은 헌법 이론상 자유민주주의를 정지하고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점에서 헌법의 동질성을 파괴하여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한 악법임
- 특히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게 규정한 점에서 그 불법성은 명백함
-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일 수 없고, 하나의 수단 내지 방법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하의 긴급 조치는 기본권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오용된 국가긴급권의 발동임

## ○ 당시 대법원은

- 헌법상 명문의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저항권의 행사는 불가피 하나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조치의 위법성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음
- 수사 및 재판과정은 명백하게 당시의 실정법을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판의 절차상 문제로는

- 공판이 있기 2, 3일전까지도 변호인들은 진술서의 사본을 접할 수 없었고,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진술서 사본만을 볼 수 있었음
-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허용되지 않았음

- 검찰 측 증인들은 변호인들이 가택 연금상태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증언함
-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외신기자의 방청은 금지되었음(1심과 2심)
- 증거는 고문을 통해 조작한 것들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였음
- 재판부는 공식적인 재판기록의 공개를 거부했고, 공판조서는 변조되었음
- 피고인들은 “접견금지”로 분류되어 수감 중 가족의 면회를 금지당했고, 변호인들의 면회도 불법적으로 제한되었음

## 다

###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군사법정

#### 1) 쟁점 및 의혹사항

##### 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여부

#####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변호사들은

- 군사법정의 심리절차가 위법했으며, 채증 법칙을 위반한 만큼 위법한 재판이었고
-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 검찰은 물론 재판관들도 피고의 발언을 수시로 제지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 사건 관련자 및 교도관들은

- 당시 공판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 아니오’ 형식으로 답변토록 강요하고
- 헌병들이 도열해 있는 상황 하의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주장

나) 공판조서 변조 여부

○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유가족 및 변호인들은

- 당시 변호인들은 공판조서(이수병 등)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_\_\_” “×” 표시를 하여 공판조서 내용과 피고인 진술내용의 상이점 주장
- 하재완·도예중·이수병·우홍선 등의 유가족 역시 남편들이 법정에서 분명히 부인한 공소사실의 내용 등이 공판조서에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며 공판조서의 변조 주장

2) 조사결과

가) 피고인 방어권 침해

**【 관련자 및 시민단체 주장내용 】**

○ 군법회의법 제340조는

-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주의적 소송형태 채용했으므로

- 방어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충분히 증명력을 다룰 권리 즉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서 반대신문의 실질적인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 위반임을 주장

○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 변호인들도

- 군사법정의 심리절차가 위법했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 만큼 위법한 재판이었고
-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검찰관은 물론 재판관들도 피고인들의 발언을 수시로 제지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 피고인이었던 임구호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직후 검찰관실로 불려가 문호철, 이규명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 조사 내용 】

○ 민청학련 사건 관련 김지하 피고인 11명을 변론하던 강신옥 변호사가 법정에서

-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이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에서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이고
-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
-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않은 법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도 있다며
- 그 악법을 적용하여 다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후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sup>112)</sup>

112) 이상우. “긴급조치- 그 발동과 도전.” 『사법살인』. 학민사. 2001

\* 강변호사는 74.9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형이 확정되었다가 88.3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김종필 국무총리의 지시로 자리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 중 한사람에게만 방청이 허락되었는데

- 74. 10 김종필 총리는 국회에 출석 “외신기자들의 경우 재판내용을 잘못 이해해 보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방청 불허를 정당화

○ 당시 중정은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조치를 내렸는데(수사상황보고 제45호)

- 군법회의법 제245조 및 제131조와 긴급조치 규정에 의거,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접근 금지결정을 받아 서울 구치소장에게 시행토록 조치했고

- 이용택 6국장이 74.4.26 17:30-18:30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의 분리수용현황(감방교환 등), 금지조치(접견·차입·통모 등)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고

- 74.4.27부터 6국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에 고정 배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감방분리 수용배치, 접근 및 물품 등 차입 금지와 감시, 통모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함

○ 한편 재판부는 재판정 협소를 이유로 변호사 13명, 국방부 출입기자단, 주한일본대사관 일등 서기관 手島堅持, 인혁당사건 관련자 가족 등 50여명 등 소수인원만 공판을 방청토록 조치하였음(인혁당 구속자 가족 공판조서 변조 등 사실에 대한 내사 결과보고 77.12)

\* 군법회의 서기 조규철은 공판정의 인원수용 능력에 따라 (좌석이 약 50 여석으로 기억) 방청객이나 기자 등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은 사실 이라고 진술(05.10.6 면담)

- 가족 및 변호인 접견금지조치도 엄격히 이행되었는데
  - 황현승, 나경일 등은 대법원 재판 이전에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고
  - 전창일은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 일주일 전에서야 김종길 변호사를 접견했으며
  - 구두선, 정점매 등 역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가족들과의 면회가 허용되었다고 진술함
-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장에는 “접견금지”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
  -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었고, 형이 확정된 후 교도관 등이 중정 담당관에게 전화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말한 후 면회를 허락해 주었음(이두범 서울구치소 교도관 진술)
- 재판정의 방청인 제한에 대한 주장은
  - 당시 재판정이 협소함에 따라 부득이 가족과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 50여명으로 제한하였을 뿐 공개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되었음

## 【 판 단 】

- 공판과정은
  -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당시의 군법회의법 제340조의 규정마저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 검찰관과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발언마저 수시로 제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였고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의 진술기회 제한, 가족 접견금지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나) 공판조서 변조

### ○ 인혁당 재건위 사건 변호인 김종길은

- 1974.9말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피고인 전창일, 우홍선, 김한덕, 이성재, 강창덕 등의 공판조서를 열람한 결과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판조서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 1974.10 중순 사무실을 내방한 전창일의 처 임인영, 우홍선의 처 강순희 등에게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김종길을 조사한 1977년 중앙정보부 문건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조사」에 따르면 이는 ‘무죄의 핵심의 반영이 아니고 접촉과정 및 정황기록의 충분한 반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공판조서에 반영이 안 되고,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상호 접촉과정이나 정황 등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뜻임

### ○ 이수병, 김용원의 변호인 조승각은

- 1975.2 초순 이수병·김용원 등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열람을 대법원에 신청하여 타자로 된 공판조서 등본 1통을 교부받아 검토한 결과



- 많은 부분이 자신이 공판정에서 직접 들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 1975.2 중순 경 사무실을 방문한 이수병의 처 이정숙, 김용원의 처 유승옥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공판조서의 예로 1심 2회 공판조서 401, 402, 403, 405쪽 이수병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 부분에 흑색볼펜으로 “\_\_”와 “X”로 표시하여 피고인 가족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음

〈조승각 변호사가 표기한 공판조서 변조 부분〉

- 이수병, 김용원 등이 공산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하여 결의하지 않았는데 결의한 양 기재된 부분(401항 1-4행)
- 비밀조직은 구성치 않았다고 부인한 것을 시인한 양 기재된 부분(401항 13행)
- 이성재가 전창일과 혁신세력구성에 합의치 않은 것을 합의한 양 기재된 부분(402항 4행)
- 4인지도부(대정부투쟁목적)조직구성을 부인한 것을 시인한 양 기재된 부분(403항 2-3행)
- 도예종 서도원이 지도위원에 추대되지 않은 것을 추대된 양 기재된 부분(403항 7행)
- 공산지하비밀조직 구성모의를 부인한 것을 시인한 양 기재된 부분(405항 5행)
- 동 목적을 위하여 3인식 회합을 결의치 않은 것을 결의한 양 기재된 부분(405항 11행)

○ 1975.2.2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sup>113)</sup>

- 피고인에 대한 접견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가족조차 구속 이래 한번의 접견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13)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사법살인』. 학민사. 2001

-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형사기록·재판기록 열람에 대한 거부는 가족들이 주장하는 재판기록 변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 공판조서 변조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주요 의혹을 살펴보면
  - 당시 재판을 지켜 본 부인들은 “남편들이 분명히 법정에서 피의 사실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공판조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피의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전혀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다”고 증언
  - 전창일의 부인 임인영은 중정 수사관이 “당신 남편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시인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며 공판기록을 펼쳐 보여주었는데 남편이 부인한 것이 모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증언<sup>114)</sup>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석구사건」 조사과정에서
  - 당시 민청학련 사건 변호인이었던 한승헌은 “피고인들은 1심 재판 때에도…모두가 검찰관과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 및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진술했고
  - 박승서(김종대 변호인) 또한 “김종대를 비롯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인혁당’은 물론 어떠한 이름의 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결성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판 조서의 신뢰성을 부인했고

114) 맹찬영·이충원, “인혁당사건의 재조명.”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사법살인』, p.194.

- 함정호(유진곤 변호인)는 이수병이 전재권 가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을 구성하라는 지령을 모의 여부에 대해 “네, 만나 모의한 바 있습니다”라는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
  - ※ 또한 함정호는 “하재완 등 일부 피고인이 북한 방송을 청취 수록한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혁당은 물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유혈폭동으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모두가 부정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진술함
- 김광식(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은 재판정에서 지하 비밀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변란시키고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시인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함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러한 진술과 다른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결론지음
- 「진실위」에서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서기 조규철(68세)을 면담한 결과(조규철 면담결과, 05.10.6)
  - 공판조서는 검찰관 및 변호인의 심문 및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등을 김권욱 상사(비상보통군법회의 서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와 함께 조서용지 등에 기록하였다가 공판이 끝난 후 사무실 등에서 기록내용을 서로 비교해 가며 정리한 후 주로 자신이 공판조서를 작성했는데
  - 물리적으로 전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어 검찰관의 심문 내용은 공소장을 참조하였으며 피고인의 답변여부에 따라 ○(是認) 또는 △(否認)등의 약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진술은 직접 기록

- 공판조서가 작성된 후 同 조서를 심판부장인 김영범 소령에게 보고했고 동인이 검토 후 서명
- 조규철이 진술한 공판조서의 작성방식에 따르면 공판조서는 녹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법정에서의 검찰관의 질문과 피고인의 진술이 오고간 문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 비록 조규철은 “공판정에서의 검사나 변호인의 심문 내용이나 피고인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판조서는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조규철 면담결과, 2005.10.6)
  - 비상군법회의의 공판조서가 설령 조규철의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유가족들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고, 때로 정반대로 기재되거나,
  - 중심적인 내용은 생략된 채 진술이 요약되어 기재됨으로써 서기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진실위」는 공판조서 변조 의혹과 관련하여 중정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공판조서의 허위작성을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 당시 수십 명의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입회 서기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공판조서 작성에서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높았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 공판조서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또한 반국가단체 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대목에서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이는 것은 아님
- 한편 중정은 1977년 11월 21일 “세칭 인혁당 사건 15명 아내 일동”의 명의로 공판조서의 변조 등을 이유로 청와대에 재심탄원서가 제출되자 구속자 가족 대표 임인영 등과 김종길·조승각 변호사 등을 조사하였는데
  - 연행조사의 목적은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으며
  - 조사결과 보고서(「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조사」, 1977년 12월 29일)에는 청와대에 보낸 재심탄원서와 함께 조승각 변호사가 직접 변조 부분을 밑줄과 X 표 등으로 표시한 공판조서 복사본이 첨부됨
  -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조사」의 내용을 보면 조승각·김종길 변호사는 중정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음
  -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정 변론을 이유로 변호사가 구속되기까지 하는 엄혹한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 아래서, 변호사가 당국에 의해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판조서에 표시하여 가족들에게 배포하고, 나중에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은 공판조서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 공판조서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행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함
- 대법원 판결문 74 - 77 쪽의 <4. 피고인 이수병에 대한 부분> 항목에 인용하고 있는 내용 중

(나) 동 공판조서 제 402면 내지 403면에는

문 : 피고인 등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

답 :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 투쟁에 합의하고 4인지도부를 조직구성한 활동상황을 조정 한다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다) 동 공판조서 제 405면에는

문 : 피고인은 상피고인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유진곤 등 5인과 같이 목적달성을 북조선에 의존치 말고, 우리들끼리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 세력을 규합하여 학생데모 등 제반 목적달성을 꾀하고, 월 1회 씩 1조에 김달수, 유진곤, 박중기, 2조에 김용원, 황현승, 이창복, 3조에 김용원, 김종대, 이창복 등으로 3인 씩 나누어 각기 회합하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답 : 네, 그런 사실은 있으나 누구를 꼬집어서 각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 이상의 부분은 바로 조승각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으로서
  - 이는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임

## 【 판 단 】

- 공판조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주장처럼 실제 답변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는데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같은 공안사건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특히 중요한데
  -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진술이 동그라미, 세모와 같은 단순화된 기호로 분류된 후 서기에 의해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심각한 문제
- 공판조서 변조 의혹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1심 공판조서를 인용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변조된 공판조서가 사형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고
  - 공판조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조승각, 김종길) 및 관련자 가족(임인영 등 15명)을 중정에서 연행 조사하는 등 중정이 권한을 남용한 측면과
  - 8명이 사형된 공안사건의 공판조서가 피고인의 실제 진술(조직 결성 및 진술의 임의성 등 관련)과 다르게 기재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당시 재판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음

- 관련자들을 부당한 군사법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처단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용납될 수 없는 국가폭력행위임
- 공판과정에서
  -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고
  - 공판조서는 실제 진술내용과 다르게 조작되었고
  - 당시 중정은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함



## IV 結論 및 意見

### 1 결론

- 1964년의 「인혁당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 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음
- 이들 사건은 학생데모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또는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고
- 일단 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맞추기가 진행되어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임
-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종종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를 이룬 사건이고

-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데모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명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였으며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과 10년 이상의 장기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며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과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임
- 결국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서클 수준의 조직에까지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사건들을 만들어 내 민주화운동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음
-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 역시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는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율한다 해도 최고 징역 1-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

-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씩이나 사형에 처한 행동은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음
- 국가정보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롯하여 「민청학련 사건」, 1964년의 「인혁당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자행된 권력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바이다.

## 2 의 견

-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국정원과 다른 국가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한민국이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적 권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는데, 이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민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함
- 「인혁당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지만,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보부 윗선에서 사건의 성격이 규정되고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지시됨으로써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안팎의 개혁이 필요함

-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만이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체계 전체가 가동되어 벌어진 일이다. 물론 그 국가체계 핵심과 정점에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보부는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트 한 권을 돌려 본 사람 8명을 사형에 처해 버리는 강압통치는 결코 하루 아침에 중앙정보부에 의해서만 구축된 것은 아니다. 증거의 부족, 고문 의혹, 심지어 공판조서의 변조 의혹 등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의혹들은 검찰과 사법체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언론 역시 자유 언론 실천을 선언한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몰아내 버리고 정권의 요구에 맞춰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법과 상식과 양심, 그 어느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잘못된 국가운영의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함



## 67.7 I

### 동백림 사건



공판장에서 변호가  
위한 용이

### 선정사유

- 인권탄압인 동시에 반정부 활동 탄압
- 국내의 정치적 탄압이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

### 조사방향

-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와의 연계 및 불법 납치 등 외교상의 문제 조사
- 사건관계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어 실제 파악이 가능

### 조사활동 중간보고와 사진조사에 관한 설명회





---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차례** CONTENTS

**I. 개 요**

---

- 1. 시대적 배경 · 296
  - 2. 사건 개요 · 297
- 

**II. 조사 경과**

---

- 1. 조사 일정 · 300
  - 2. 조사 내용 · 300
- 

**III. 조사 결과**

---

- 1. 사건 발생 및 전개과정 · 304
- 

- 가. 유럽거주 한국인들의 對北 접촉 / 304
  - 나. 중앙정보부의 내사 및 수사 착수 / 306
  - 다. 국내외 혐의자 체포 및 연행 / 308
  - 라. 중앙정보부의 수사 및 발표 / 310
  - 마. 검찰의 수사 / 315
  - 바. 재판 / 317
  - 사. 국제 외교 마찰 및 해결 / 321
- 

- 2. 疑惑別 조사 결과 · 327
- 

- 가. 동백림 사건의 실체 조작·확대 / 327
  - 1) 의혹 내용 / 327
  - 2) 조사 결과 / 330
  - 3) 평 가 / 347

- 
- 나. 민비연 사건의 실체 조작·확대 / 349
    - 1) 의혹 내용 / 349
    - 2) 조사 결과 / 351
    - 3) 평 가 / 364
  - 다. 해외 관계자들의 강제 귀국 / 365
    - 1) 의혹 내용 / 365
    - 2) 조사 결과 / 368
    - 3) 평 가 / 381
  - 라.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 / 383
    - 1) 의혹 내용 / 383
    - 2) 조사 결과 / 385
    - 3) 평 가 / 397
  - 마.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 400
    - 1) 의혹 내용 / 400
    - 2) 조사 결과 / 401
    - 3) 평 가 / 409
  - 바. ‘동백림 사건의 상징인물’ 윤이상의 경우 / 411
    - 1) 해외에서의 연행과정 / 411
    - 2) 중앙정보부의 조사경과 / 413
    - 3) 독일로의 귀환 및 그 이후 / 422

#### IV. 결론 및 의견

---

##### 1. 결 론 · 424

---

가. 동백림 사건 평가 / 424

나. 파급 효과 / 427

---

##### 2. 위원회 의견 · 429

---



# I 概 要

##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후반부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동백림 사건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당대의 명망있는 지식인들이 관련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이 일어난 1960년대 후반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에 의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이며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다.
- 한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서독에 광부(1963년12월)와 간호사(1966년10월)를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학생들과 더불어 재유럽 한인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1967년7월 기준으로 유럽내 한국인은 4,800여명에 달했다.)
- 당시 한국유학생들은 본국의 어려운 형편과 정부의 엄격한 송금 제한<sup>1)</sup>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 당시 체제우위에 대한 자신감<sup>2)</sup>을 바탕으로 유럽 거주 한국인 및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선전공세를 벌였다.

1) 자유당시절부터 1967년7월18까지 유학생 1인당 월 150불까지 송금이 허용되었으나 4.19 및 5.16 직후 기금 고갈 등의 사유로 환금 자체가 중단 내지 제한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외 유학생의 완전 또는 부분적 고향이 불가피해짐.(이상 조선일보 1956년9월14일)

2) 북한은 1960년대 초반 1인당 GNP가 137弗로 남한의 3.5배에 달했음.

- 1960년대 후반은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베트남 전투병 파병 등을 통해 한국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 이 때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국내정치 상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1971년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이와 관련 1967년 6.8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3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야당과 대학생들이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를 전개하자, 정부는 6.16일 기준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키는 등 우리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둘러싼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

## 2 사건 내용

-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1967년7월8일-17일간 7차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제하로 동백림 사건을 발표
  -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권의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sup>3)</sup>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으며
  - 사건 관계자들은 1958년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 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발표

3) 중앙정보부는 발표 이후 1967년7월14일 기준 총 수사대상 인원이 203명으로 검찰 송치 66명, 수사 중 138명으로 집계함.

○ 이에 대해 검찰은 1967년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4회에 걸쳐 공소를 제기

- 북한은 남한에 비해 여유 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1957년부터 비교적 통행이 자유로운 동백림에 거점을 두고 전문 공작관인 박일영을 동독 大使에 임명하는 외에 조선노동당 연락부 對유럽 공작총책임 이원찬을 상주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유럽내 한국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들을<sup>4)</sup> 대상으로 회유·포섭을 시도 하였고
- 다수의 한국인들이 북측 공작에 넘어가 회유·포섭을 당하고, 일부는 국내외에서 북측 지령이행 등 간첩활동을 수행하다가 적발하였다고 발표

**< 사건 관련자 현황 >**

구분	총계	국내	서독	프랑스	미국	영국	기타	비고
입 건	기소	44	26	11	3	3	1	국외 18명
	불기소	22	13	3	4		2	국외 9명
	계	66	39	14	7	3	2	1
혐의자	61	20	26	7	2	3	3	
포섭 대상자	76	53	17	2	1		3	
계	203	112	57	16	6	5	7	

○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비연<sup>5)</sup> 사건을 별도 심리기로 결정하고 1967년11월9일-1969년3월3일간 동백림(34명) 및 민비연(7명) 사건 관련 각 재상고심 및 재항소심까지의 재판을 완료

- 동백림 사건 최종심(재상고심) 판결내용 : 사형(정규명,정하룡), 무기징역(조영수), 유기징역(어준,임석훈:15년, 천병희,강빈구,윤이상,최정길:10년, 김종환, 정상구 등 6명:7년 이하), 집행유예 7명, 선고유예 1명, 형면제 3명

4) 한국정부의 광부 파독은 1963년12월(247명)-1964년(806명)-1965년(1,180명) 등 1977년까지 총 7,936명에 이르며, 간호사의 경우 1966년1월 최초 시작된 이후 1968년6월30일 기준 1,733명에 이르는 등 1976년까지 총 1만30여명이 독일에서 취업함.

5) 민족주의비교연구회(약칭 민비연)는 황성모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후진국의 민족주의를 비교 연구하는 서울대 사회대생들의 학술단체로서 1963년9월경 발족. 1964년에 회장을 역임한 김종태 및 현승일은 1964년에 전개된 각종 한일회담반대 학생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지시에 따라 1965년 9월 해체됨.

- 민비연 사건 최종심(재항소심) 판결내용 : 유기징역(황성모, 김중태 : 2년, 현승일 : 1년 6개월) 및 무죄(김도현 등 4명)
- o 우리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마찰 해소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 정규명·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
- o 同 사건은 당시까지 있었던 공안사건중 최대의 「공작단」 사건으로
  - 「6.8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국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 수사과정상의 가혹행위 및 사법부의 독립권 침해설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 확산되어 왔고
  - 기타 중정요원들이 독일 등에서 관련자들을 직접 체포해 오는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

## II 調査 經過

### 1 調査 일정

- 2005년 2월 3일 本 위원회에서 동백림 사건을 1차 조사대상 사건 (7건) 중 1개로 선정, 담당 조사위원 및 조사관 배치 완료
  - 2005년 2-3월간 조사 로드맵 확정 및 공개자료 수집·분석
  - 2005년 4-7월간 院 및 他 기관 보유 관련 기록 수집·분석
  - 2005년 7-10월간 국내외 사건 참고인 섭외 및 면담
- \* 해외 직간접 면담조사의 경우 중국, 유럽, 미국지역에서 실시

### 2 調査 내용

#### 가 자료 조사

- 국정원 보유자료 : 총 3만 4,169매
  - 동백림 사건 해외 관계자 연행(「GK-공작계획」 등) 및 수사(「V-318 수사계획」, 「민비연 재수사계획」) 자료
  - 동백림 사건 수사의 발단 및 전개과정, 해외 관계자 연행에 대한 의혹 해소에 참고할 만한 자료 다수
  - 다만, 6.8 선거 관련 중정의 대응 지침 등과 관련된 자료는 未발견
- 他 기관 보유자료 : 4만 3,529여매
  - 국가기록원 자료로서 「동백림 사건을 위요(圍繞)한 한독간 제 문체」 및 「수용자 신분장」 등 3,781매

- 서울지검 자료로서 「동백림 및 민비연 사건 관련 중정 의견서 · 공판조서 · 논고문 · 판결문」 등 3만 1,700매
- 외교통상부 자료로서 「동백림 사건 관련 한독 및 한불간 협상 동향」 등 1,098매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로서 「독일 외교부 생산 동백림 사건 관계자 국내 이송 경위 조사결과」 등 獨文 7,000매
- 일반자료 : 『김형욱 회고록』 등 동백림 사건 관련 공개자료 30여종 및 사건 전후 언론 보도내용 등

## 나

### 면담 조사 : 총 46회, 47명 면담

- 2005년 3-11월간 당시 사건 관련자 및 유족(26명) · 변호사(2) · 검사(1) · 판사(1), 중정 · 軍 방첩대 직원(12), 기타(5) 등 총 47명 면담
- 사건 관련자의 경우 최초 자수자인 임석진 및 故 윤이상 · 이응로의 미망인 등 총 26명을 면담하였으나, 일부 관련자의 경우 면담을 거부
- 당시 중정직원 및 방첩대 · 경찰 출신 수사관중 총 12명을 면담하였으나 사건 당시 주독 중정거점장 · 해외 파견 특수팀장 등은 면담을 거부
- 그러나 本 위원회는 舊동독문제 전문가와 함께 당시 사건 주변인물 (5명) 등으로의 면담 확대와 동서베를린간 분단현장 답사 등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 제고에 최대한의 노력 경주

< 일자별 참고인 면담 현황 >

번호	면담일자	성명	사건 관련성	비고
1	05.3.18, 10.1	임석훈	유학생/사건관련자	서울/독일(2차)
2	05.3.24	장영철/임성택	윤이상 평화재단 관계자	서울
3	05.5.6	김중태	사건관련자	서울
4	05.5.11	김도현	사건관련자	서울
5	05.5.12	유경숙	前 신민당 당수 유진오의 딸	유선
6	05.5.13	김학준	사건관련자	서울
7	05.5.23	천병희	사건관련자	서울
8	05.6.1	박지동	사건관련자	광주
9	05.6.3	김종대	사건관련자	경기 과천
10	05.6.10	김택환	사건관련자	서울
11	05.6.15	방○○	당시 중정 감찰실장	미국
12	05.6.15	목순옥	故 천상병의 처	서울
13	05.6.17	최창진	사건관련자	강원 춘천
14	05.6.18	성두영	사건관련자	유선
15	05.6.28	조봉계	사건관련자	서울
16	05.6.30	배준상	사건관련자	유선
17	05.7.14	한승헌	故 천상병·이용로의 변호인	서면
18	05.7.26	이○○	당시 중정 수사과장	서울
19	05.9.6	박승서	조영수·김옥희의 변호인	서울
20	05.9.7	임석진	사건관련자/사건 제보자	서울
21	05.9.8	김영준	1심 재판장	서울
22	05.9.10	이수자	사건관련자/故 윤이상의 처	중국 베이징
23	05.9.14	이준승	사건 담당 검사	유선
24	05.9.15	이○○	당시 중정 해외담당 국장	서울
25	05.9.30	하태규	사건관련자	스위스 취히리

번호	면담일자	성명	사건 관련성	비고
26	05.10.1	이수길	사건관련자	독일 마인츠
27	05.10.3	빌 케	통독전문가, 베를린자유대학교수	독일 베를린
28	05.10.4	태용운/정선수	베를린 거주 교민	독일 베를린
29	05.10.5	조명훈	사건관련자	독일 함부르크
30	05.10.5	최○○	당시 중정 수사관	서울
31	05.10.6	김진택	사건관련자	독일 두이스부르크
32	05.10.6	신○○	당시 중정 수사관	서울
33	05.10.7	박인경	사건관련자/故 이용로의 처	서울
34	05.10.8	박성욱	사건관련자	독일 본
35	05.10.8	김복순	사건관련자	독일 본
36	05.10.8	김성철	사건관련자	독일 뒤셀도르프
37	05.10.9	정성배	사건관련자	프랑스 파리
38	05.10.10	이희세	사건관련자/故 이용로의 조카	프랑스 파리
39	05.10.11	김○○	당시 중정 수사관	경기 평택
40	05.10.13	이○○	당시 중정 수사관	전북 전주
41	05.10.20	김○○	당시 중정 수사관, 해외체포조	충남 아산
42	05.10.27	이○○	당시 방첩대원/중정과견	인천
43	05.11.08	정○○	당시 중정 수사관, 해외체포조	서울
44	05.11.10	모○○	당시 중정 수사계장, 해외체포조	미국(간접면담)
45	05.11.17	백○○	당시 방첩대원/중정과견	유선



### Ⅲ 調査 結果

#### 1 사건 발생 및 전개과정

##### 가 유럽거주 한국인들의 對北 접촉

- 1950년대 후반 유럽거주 한국인들은 대부분 1950년대에 한국을 떠난 지식인들로서
  - 한국을 떠나올 당시 고국의 부정부패 및 政爭 격화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던 중
  -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정부의 외환송금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고, 한국에 대한 정보부족 및 한국 공관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직면, 고국현실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이 확산
- 특히 당시 독일 및 프랑스 등지의 海外 한국대사관은
  -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남북분단의 현실 및 한국의 발전상 등에 대한 홍보업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 대사관의 여권 연장 수속기간이 최대 1년까지 소요되는 등 교민 지원 체계 미비로 대다수 교민들로부터 불신 및 반발을 자초<sup>6)</sup>
- 또한 당시 동서백림간에는 상당 수준 자유왕래가 이루어졌고<sup>7)</sup>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독일 소재 일부 교민과 유학생들은 별다른 의식없이<sup>8)</sup>

6) 2005년9월29일 하태규 면담내용

7) 1945년5월8일 독일의 패전이후 수도 베를린을 전승 4개국(美, 蘇, 英, 法)이 분할 점거한 상태에서 동서베를린간 자유왕래가 허용되었으나, 서방 3개국과 소련간 의견대립의 격화로 1948년3월20일 소련이 독일관리위원회(Allied Control Council)에서 탈퇴한 것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서방측 점령지역으로부터 베를린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1961년 동독정부가 베를린장벽을 쌓은 이후 브란덴부르크문 등을 통해서만 베를린 거주 및 내외국인 여부 등의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왕래가 허용되었음.

8) 윤이상 등은 동백림 출입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1967년12월 1심법원 9차 공판조서)한 반면, 임석훈 등은 소정의 절차 이외에 한국인으로서 공산권 지역 출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컸다고 증언함(2005년10월 면담내용)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료품 및 서적 구입 등의 이유로 공산권 지역인 동백림을 출입

○ 이에 반해 북한은 1957년부터 동서통행이 용이한 동백림을 물색, 거점화 하였는데

- 초기에는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화보, 평화통일 방안 선언문, 최고회의 연설문 등의 선전물을 우송

- 곧이어 동독대사관에 對南 활동 실무자를 파견하여 한국인들을 직접 접촉,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북한방문을 권유 및 주선<sup>9)</sup>

\* 북한은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온 한국인들에게 친절한 태도와 푸짐한 한국음식 제공 등으로 호감을 유도하고, 여비·생활비 등 일정 금품을 제공

○ 그 결과 유럽거주 한국인들이 북한의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선전에 무방비하게 노출됨으로써<sup>10)</sup> 한인사회내 남북 대치상황을 망각 내지 무시하는 성향이 확산

○ 이 같은 상황에서 1958년9월 윤이상이 한국전쟁시 월북한 친구의 소식 탐문 차 최초 동백림에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sup>11)</sup> 동백림 북한공작원과 한국인과의 직접 접촉이 여러 경로를 통해 급속 확산되었는데

- 다수의 한국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음식 접대 등 북측의 관심 및 환대에 대한 기대, 在北가족 소식 탐문, 북측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동백림을 왕래하기 시작했으며

- 일부는 訪北·노동당 입당·특수교육 이수 내지 북측 요청사항을 이행

9)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1993년6월, 도서출판 글)중 ‘제 6장 동백림 사건’. 이 글에서 언급되는 증인자 K는 前 북한 고위간부 출신 박병엽(일명 신경완)으로 알려져 있음.

10) 아침에 우체통에 가면 북괴 선전 책자며 화보가 3-4일만에 한번씩 가득가득 들어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선전이 맞을까 의문을 갖기 시작하며 남편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북괴 유인에 한발짝씩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 1967년7월14일 이수자 진술서 내용

11) 당시 未체포된 사람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최초로 동백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사람을 윤이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1966년 여름 서독거주 鄭某 여인(파독 간호원)의 유고 국적 남자와의 결혼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을 계기로 한국당국은 우리 국민의 공산권 출입현황에 대한 점점 필요성을 비로소 인식
- 1967년2월 駐獨 한국대사관은 광부 2명을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 발견에 실패하였으나 한국일보는 “서독거주 유학생·광부들이 동백림을 왕래하는데 대사관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식으로 대서 특필<sup>12)</sup>,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
- 1967년4월14일 서독주재 조선일보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 프라하 개최 「제 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취재차 체코 입국 이후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 중정은 1967년4월24일 한국여자농구선수단 이재학감독을 통하여 최초로李기자 실종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 李기자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프라하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으나<sup>13)</sup>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음

12) 1967년2월23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내용

- 정부는 재외국민이 정부의 승인없이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서독에 파견된 일부광부들이 주서독대사관과는 아무런 사전 연락이나 신고도 없이 공산권인 동부 베를린에 관광을 이유로 은밀히 왕래하고 있다는 정보와 지난 여름 간호원 정모양 등이 유고슬라비아를 여행한 뒤에야 비로소 대사관이 알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 해외공관이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본부에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 외무당국자들은 여행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고 있는 서구에 주서독대사관의 능력으로선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며, 공산지역을 여행했다 해도 여권에 찍힌 적성국가 비자를 말소함으로써 은폐할 수 있어 많은 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인 여권법 제13조의 적용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정부가 여행금지지역인 공산지역여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재독광부 및 간호원들의 여권을 여권관리관이 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법규위반자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13) 1967년4월27일자 중정 주독거점의 「공작활동보고서」 중 ‘이기양 기자의 행방불명 경위’ 보고 문건내용

- 한편, 서독 유학 후 국내 대학교수로 활동 중이던 임석진은 **李** 기자의 실종사건이 국내신문에 보도(1967년5월14일)되자
  - 북한이 **李** 기자를 납치한 것으로 확신, 자신에게도 납치 등 위해가 가해질 것을 염려하고 자신의 대북접촉 전력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으며
  - 독일 유학시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홍세표**<sup>14)</sup>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정부 주요인사와의 접촉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홍세표**는 **박정희**에게 관련사실을 제보한 뒤 임석진과의 면담을 약속받았으며, 5월17일 임석진에게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만 언급하고 **林**교수를 청와대로 안내
- 임석진은 1967년5월1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홍씨**의 배석하에 대통령을 면담하고 유럽 유학생들의 對北 접촉상황을 직접 진술
- 대통령은 **林**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신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중정 수사에 협조해라”고 언급하고 진술내용을 서면 제출토록 요구하여 임석진은 5월22일 원고지 200매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홍세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sup>15)</sup>
- 박대통령은 **김형욱** 중정부장에게 **林**교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중정은 임석진을 조사하여 일명 「V-318」 수사를 시작
- 중정은 임석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공 혐의자 40여명의 명단 및 對北 접촉내용을 파악, 대통령에게 보고(5월24일)하였으며 대통령은 “잘 되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히 수사해라”고 지시<sup>16)</sup>

14) 박대통령의 처조카이며, 프랑크푸르트 한국은행 주재원 시절 임석진과 개인적 친분을 쌓은 관계임.  
 15) 임석진은 **홍세표**를 거치면 대통령에게 연결될 것으로 짐작은 했으나 5월17일 **홍세표**와 청와대로 가는 승용차안에서야 비로소 대통령과의 면담이 약속되었음을 확신했다 함(이상 2005년9월7일 임석진 면담내용)  
 16) 이상 이○○(2005년7월26일), 임석진(2005년9월7일), 이철희(2005년9월15일) 등에 대한 면담내용

- 이후 중정은 임석진 및 「임」의 제보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자수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 하에
  - 해외 거점에서 역공작하는 방안과 수사관들을 해외에 파견, 일망 타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다가
  - 6월초에 이르러 국내외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 계획 (일명 「V-318 공작」)을 수립<sup>17)</sup>
- 또한 중정은 6월7일 해외 혐의자 23명을 체포, 국내 연행하기 위한 「GK-6717 공작계획」 (일명 「GK-공작」)을 수립<sup>18)</sup>
- 이후 6월5일부터 국내 거주 사건 관계자를 연행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20일 이후 독일 등지의 해외 혐의자에 대한 소환을 시작<sup>19)</sup>
- 6월19일부터 중정뿐만 아니라 검찰·경찰·軍 방첩대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발족, 운영<sup>20)</sup>

## 다 | 국내외 혐의자 체포 및 연행

### 國內<sup>21)</sup>

- 국내 입건자는 총 39명으로 구속(26), 불구속(2), 무혐의(10), 未체포 (1명) 등
- 임석진의 자수(5월17일)이후 약 2주일이 지난 6월5일 김중환이 최초 연행

17) 1967년6월5일 중정에서 「V-318 공작 및 수사계획 추가보고」 제하 작성한 문건

18) 1967년6월7일 중정에서 「GK-6717 공작계획」 제하 작성한 문건

19) 1967년6월24일-7월14일간 중정에서 작성한 「일일수사상황보고」 문건

20) 1967년6월19일 중정에서 작성한 「V-318 합동수사계획」 문건

21) 주 19번 참고

- 동백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우선 실시되었으며, 민비연 사건 연루자의 경우 최초로 황성모<sup>22)</sup>가 6월15일 소환되었음
- 강빈구 부부의 경우 사전에 당국의 수사정보를 듣고 도피했다가 6월29일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밀 누설 건으로 중앙정보부 직원 1명 및 외부 연루자 3명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실시

**國 外<sup>23)</sup>**

- 해외 연행자는 총 30명으로 서독(16)·불란서(8)·미국(3)·영국(2명) 등

**< 해외 입국자 처리 현황 >**

구분	총계	서독	불란서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비고
입 건	구속	18	11	3	3	1	
	불구속	2	1			1	
	무혐의	7	2	4		1	
	계	27					
불입건	3	2	1				
계	30	16	8	3	2	1	

- 중앙정보부는 「GK-공작계획」(6월7일)에 의해 본부 파견인원(19명), 현지파견관(8명) 등 총 49명을 동원, 해외 혐의자 23명을 구라파 5개진, 미국 1개진으로 분리 국내 호송하려고 계획
- 공작진행은 사전교육<sup>24)</sup>에 의해

22)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였고 6.25 전쟁시 강제로 인민의용군에서 복무. 1957년 서독으로 유학, 1960년에 뮌스터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1961년 5.16이후 김종필의 권유로 공화당 사전 조직에서 활동. 동백림 사건으로 구속된 뒤 서울대에서 사퇴하였고, 5공 시절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을 지냄.

23) 1967년6월7일자 중정 작성 「GK-공작계획」 문건

24) 해외공작국 주관 하에 호송요령, 감시미행, 연락수단, 검거요령, 현지정세 등 14시간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함.

- 외교통신망·외교파우치·암호통화 등을 연락방법으로 사용하고
  - 비상대비책으로 대상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완력행사의 우려가 있을 시 마취제를 이용, 환자를 가장하여 강제 호송시키려 했으며
  - 주재국 당국의 감시·검문을 피하기 위해 외교관 차량 등을 활용하고 공항<sup>25)</sup>내 출입수속도 현지 외교관이 대행토록 조치
- 한편, 「GK-공작」은 최초 임석진의 진술을 토대로 수립, 시행되다가 혐의자 추가 파악 등으로 기본계획이 수차 수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최종 대상자 48명에 대해 39명의 본부직원을 파견, 서독(16)·불란서(8)·미국(3)·영국(2명)·오스트리아(1명) 등에서 총 30명을 연행
- 또한 중정은 「GK-공작」시행 과정에서 현지 한국공관원 및 일반 교포들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았는 바,
- 일반교포들의 경우 서독(15)·프랑스(4)·영국(1)·미국(1)·스위스(1명) 등 총 22명이 공작 협조자로 활동하였으며
  - 공관원들의 경우도 사후 조치로서 서독대사관(5명) 및 함부르크 총영사관(2명) 소속 외교관들이 유공자로 포상되었던 점에서 同 공작을 측면 지원<sup>26)</sup>

## 라 중앙정보부의 수사 및 발표

- 동백림 사건 수사는 67년5월23일자 「V-318 특수수사비 신청」 제하 문건 상에 임석진 및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예산이 상신된 것으로 보아 임석진의 자수(5월17일) 직후 시작
- 중앙정보부는

25) 공작 보안 유지를 위해 본대사관 근처 쾰른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함부르크 공항을 이용함.

26) 일자 미상 중정 작성 「GK-공작 협조 유공자」 제하 문건

- 임석진의 자수 이후 약 2주일간 「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거주 혐의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 등 내사를 진행하면서
- 6월3일에서 6월22일사이에 국내외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V-318 수사계획 후보」(6월5일)에 이어 해외 관계자 체포·연행을 위한 「GK-공작계획」(6월7일)을 수립하는 등 6월초에 수사를 본격화
- 6월5일 김중환을 최초 소환한 데 이어 6월19일까지 황성모·천병희·정하룡 등 국내 거주 주요 혐의자 약 15명을 소환, 수사 개시
- 6월20일 해외 혐의자 소환이 시작되었으며, 6월19일부터 「V-318 합동 수사계획」에 의해 중앙정보부 주관<sup>27)</sup> 하에 검찰·경찰·軍방첩대 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발족, 사건 수사가 확대되었는데
- 同 합수부에는 중앙정보부(50명)·軍방첩대(10명)·경찰(15명)·검찰 등 총 75명이 참여, 실무자급 중심으로 매일 합동회의가 개최되었고
- 본부장(중정 차장) - 보좌관(중정 수사국장) 휘하에 통제반·지원반 및 수사 1·2·3반의 편제로 운영

**합동수사본부 각 반별 임무<sup>28)</sup>**

- 통제반 : 본부장과 보좌관을 보좌하며 각반의 수사진전을 파악하고 각반간 유기적으로 결속시키며 수사 지도조정 업무를 담당
- 제 1 반 : 국외에서 검거한자와 국외 수사업무를 담당
- 제 2 반 : 국내 일반인 및 군인의 수사업무를 담당
- 제 3 반 : 학원 및 언론계 관련자의 수사업무를 담당
- 지원반 : 법률자문 및 검찰과 법원에 제 업무에 대하여 지원하고, 국외 수사 시 외국공관과의 협조업무와 함께 기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

27) 당시 중정보보다 방첩대의 수사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 즉 해외 피의자 연행이나 제보자 조사 등은 중정에서 담당했고, 중요피의자는 방첩부대에서 담당했다. (이상 2005년10월17일 군 방첩대 수사계장 백○○ 면담내용)

28) 1967년6월7일 중정에서 「V-318 합동수사계획」 제하로 작성한 문건



- 그 결과 합동수사본부는 입건자(66)·혐의자(61)·포섭대상자(76명) 등 총 203명에 대해 본부·지부·해외거점 등의 조직을 동원하여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실시
- 「V-318 수사」는 최대 125명(지원 및 파견요원 포함)을 동원, 약 43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
- 한편, 중정부장은 7월8일부터 7월17일까지 7차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을 발표
  - 7월8일(1차) : “주로 과거 유럽에서 유학한 바 있는 현역 대학교수와 현재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 사건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발표
  - 7월11일(2차) : “독일 유학생이었던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지도교수 황성모와 초대회장 이종률, 초대총무 박범진, 2대회장 김중태, 3대회장 현승일과 간부 김도현, 5대 회장 박지동을 동백림 사건과 관련,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
  - 7월12일(3차) : 작곡가 윤이상, 그의 妻 이수자, 서독 기센대학생 최정길, 전북대 조교수 최창진 등에 대한 혐의내용 발표
  - 7월13일(4차) : 서독 프랑크푸르트大 이론물리학연구원 정규명과 그의 妻 강혜순, 광부 박성옥·김성철에 대한 혐의내용 발표
  - 7월14일(5차) : 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 주석균, 하이델베르크大 강사 김종대, 「노트르담」大 화학연구원 강계호, 서울상대 조교수 강빈구와 그의 妻 서강대 독어강사 「강 하이드론」 및 이국종의 간첩활동과 이들의 활동을 불고지한 시인 천상병 등의 혐의사실을 발표

- 7월15일(6차) : 在佛 화가 이응로와 그의 妻 박인경 및 서백림 공대 임석훈, 기타 김광옥 · 어준 · 황춘성 · 어원 · 어정희 · 권태숙 등의 혐의사실 발표
- 7월17일(7차) : 공광덕 · 정상구 · 하태규 · 정성배 · 김진택 · 배준상에 대한 혐의사실 발표

### 사건 성격(발표문)<sup>29)</sup>

- 북괴는 6.25 사변때 궤멸되었던 남한내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대남공작기구를 정비 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적 침투를 기도하여 1957년부터 비교적 동서통행이 용이한 동백림에 공작거점을 설치하고 북괴 동독대사에 대남공작경험자인 박일영을 임명하였고 대사관원은 대부분 훈련된 공작요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남공작을 벌여왔다.
- 이 같은 북괴의 대남공작은 1958년부터 서독을 위시한 서구각국에서 재학중인 유학생과 渡歐중인 각종의 장기체류자들에게 심리전 공작을 전개하면서 서서히 마수를 뻗히기 시작하였다.
- 그들은 우선 초단계 공작으로 공산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북괴의 발전상에 대한 선전문구로서 이들을 현혹시킬 뿐 아니라 당시 북괴보다 산업건설이 뒤지고 정치적·사회적 불안정 상태의 조국현실에 대한 실망과 또한 이역에서의 심리적 부동상태에 있는 유학생·장기체류자들의 사상적 경향을 포착하여 공작망을 통해 평화통일선전을 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변화를 싹트게 하였고 동백림 관광유혹과 재북 가족 소식 전언 및 상봉추선 제언과 경제난의 약점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모든 물질적·심리적인 공작수단을 다하여 이들의 사상적 부동을 더욱 자극하였다.
- 북한의 공작에 경사된 이들은 1958년9월 교양 및 지령 수령차 명지대 조교수 임모가 동백림에 잠행하여 박일영 대사 등을 접선한 것을 비롯 1967년6월까지 주로 당시의 유학생 및 현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황모 등 15명의 현 대학교수 · 의사 · 예술인 및 공무원 등이 수차 동백림을 왕래하면서 박일영 대사 및 대구라과 공작총책 이원찬 등을 접선하고 수일간 우대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사상무장과

29) 1967년7월8일자 동아일보

- 적화통일의 초보 단계인 서신·문화·주민의 교류와 미군철수·연립정부 수립·평화통일 불가능시 무력남침 등에 대한 교육과 난수조립·암호해독·A-3 통신 청취 등의 연락방법에 대한 간첩교육을 받은 후 해외유학생·광부·간호원 등의 명단 입수·평화통일 방안 선전·학원내 지하당 조직공작·정계요인 포섭·혁신정당 조직·반공법의 개정·선거기간중 야당 및 혁신계 인사지지·소위 혁명조건 미성숙시 지하세력을 총동원한 남한정권의 전복활동 등에 관한 지령과 미화 200 내지 2,000 불씩의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였다.
- 더욱이 임모·조모·윤모 등 7명은 북괴의 지령에 의해 1961년 8월부터 1965년 8월간 1차 내지 2차 소련 등을 경유 입북하여 1-4주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노동당 부위원장 겸 대남사업총국장인 이효순 및 기타 간부의 환대와 더욱 철저한 밀봉교육을 받고 북괴의 선전농장과 공업지대 등을 관람하고 북괴 사회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혔고 당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귀로에는 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의 서방국에 이르러 수일간 체류함으로써 합법귀환을 가장하였다.
- 이 같이 북괴로부터 철저한 교육과 지령을 받은 이들은 점에서 점으로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포섭상황과 북괴지령에 의한 서구내 유학생·간호원 등이 명단과 동향 등 정보수집 보고는 물론 북괴와 접선되어 있는 국내 저명인사의 명단과 동정보고를 하였는데 이들이 서구에서 간첩활동중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은 전후 연 20회에 걸쳐 미화 총액 10만여불에 달하며 또한 간첩통신용 문건 및 물품도 대량 받았다. 계속하여 이들은 북괴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그들의 지령에 의한 대남공작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962년 이후 계속 귀환하였고 간첩 김모·이모의 경우 입국시 난수표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 그리하여 귀국 후 이들은 합법토대를 무난하게 구축하여 공작활동을 하였으며 조모의 경우 감도불량으로 A-3 지령의 청취가 곤란하자 북괴지령의 수령과 지령에 의한 정보수집내용과 공작상황 보고차 1967년2월18일 다시 도불, 동백림을 거쳐 입북하여 노동당 부위원장 이효순에게 보고하였고 공작금 미화 2,000불을 수취 귀국하였고 김모 등은 국내 관공서 등 기관에서 합법을 쟁취하고 국가기밀을 수집중이었고 황박사는 학계 및 정계에 구축된 합법적 토대를 이용하여 1963년 9월경 남한의 민주주의 제도를 변혁하고 북괴가 주장하는 적화통일의 실현을 기도하고 당시 서울대생이며 현 모신문사 기자 이모 외 20여명과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는 비합법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은 지도교수로서 암암리에 반식민·반보수·반매관·반외압 등을 내세우고 불온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북괴 지령을 수행하였고 전 민비연 회장 겸 모 정당 운영위원인 김모 외 6명은 황박사와 내란 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써 정부전복을 꾀한 사실이 밝혀졌다.

- 중앙정보부는 사건 관계자 총 203명중 66명을 4회(7월3일, 7월6일, 7월10일, 7월14일)에 걸쳐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외환 관리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 44명·불구속 21명·軍검찰송치 1명 등의 의견을 제시
  - 형법 98조<sup>30)</sup> 및 국가보안법 2조<sup>31)</sup> 상의 간첩죄를 정하룡·조영수·천병희·김중환·윤이상 등 총 23명에 대해 적용
  - 임석진·홍성희·임애자·이수길 등 4명에게 범증이 충분하나 자수하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공소보류 의견
  - 서경옥·원윤수·김웅·김택환·김상봉에 대해서는 범증 확보시까지 기소중지(5명)하고 한봉흠·호기준·문한규·김도정·신윤경·정종화·문수득·한철수·김석연·성두영·심상필 등에게는 증거 불충분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11명) 의견 제시
  - \* 중정은 1967년9월 김복순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1967년10월26일 추가로 북한 탈출자(노봉유, 박협, 방준, 조상권 등 4명) 및 유럽 거주중이나 未체포자(박영, 이기양, 조명훈, 최기항, 황지현, 김희수, 김영상, 김영철, 이창화, 박일진, 김진현, 정현룡 등 12명) 등 16명에 대해 귀국 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을, 추가 자수자(어근 1명)에 대해 공소유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 마

### 검찰의 수사

-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 송치를 받은 서울지검 공안부(담당:한옥신 검사)는 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4회에 걸쳐 공소 제기
  - 7월22일 정하룡·이순자 등 6명을 구속 기소, 손영옥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석진 등 7명은 기소 보류

30) 형법 제 98조(간첩) :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1) 당시 국가보안법 제 2조(군사목적 수행)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형법 제 92조 내지 제 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 7월25일 민비연 관계자 8명중 김학준을 제외한 황성모 교수 등 7명을 구속 기소
  - 7월29일 윤이상 등 18명을 구속 기소, 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로 22명을 기소하고 배준상 등 5명은 불기소 처분
  - 8월2일 공광덕·김진택 등 4명을 구속 기소, 임석진·홍성희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
- 서울지검은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에 대해 4차에 걸쳐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외환관리법 등의 위반죄로 41명(구속 35, 불구속 6)을 기소하고, 24명을 불기소, 1명을 軍 검찰에 이첩
- 특히 정하룡·김중환·윤이상·황성모 등 23명에게 형법 98조 및 국가보안법 2조 상의 간첩죄 및 간첩미수죄<sup>32)</sup>로 기소
- \* 간첩죄 적용 대상자는 중정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23명으로 동일하나 중정의견서상의 「강하이드론」, 김진택, 하태규, 정성배, 김복순 등은 제외되고 검찰에서 이응로, 박인경, 김광옥, 김성철, 최창진을 추가

< 검찰의 피의자 처리 현황 >

구분		대상자
기소	구속 (35명)	· 동백림사건 : 정하룡, 이순자, 조영수, 김옥희, 김중환, 천병희, 윤이상, 이수자, 최정길, 정규명, 강혜순, 박성욱, 김성철, 김종대, 어준, 강빈구, 이국중, 천상병, 임석훈, 이응로, 박인경, 주석균, 김광옥, 최창진, 공광덕, 김진택, 정상구, 정성배 · 민비연사건 : 황성모,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이종률, 박범진, 박지동
	불구속 (6명)	· 손영욱, 어원, 어정희, 황춘성, 권태숙, 김복순
불기소(24명)		· 배준상, 임애자, 임석진(공소보류), 홍성희(공소보류), 서경옥, 김도정, 원윤수, 신윤경, 정종화, 이수길, 김웅, 김택환, 한봉흡, 호기준, 문한규, 김상봉, 한철수, 김석연, 성두영, 심상필, 문수득, 「강 하이드론」, 강성종, 하태규
軍검찰이첩(1명)		· 조봉계

32) 김광옥에 대해서만 간첩미수죄를 적용함.

## 바 재판

- 서울형사지법 제 3부(재판장 : 김영준 판사)는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이유로 동백림(구속 26명, 불구속 7명 등 총 33명) 및 민비연 사건(구속 7명)을 별도로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
- 동백림 사건은 1967년11월9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1심(34명, 1967년12월13일) - 2심(22명, 1968년4월13일) - 3심(21명, 1968년7월30일) - 파기환송심(12명, 1968년12월5일) - 재상고심(8명, 1969년3월31일)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sup>33)</sup>
  - 실형 15명(사형 2명, 무기징역 1명, 징역 15년 2명, 징역 10년 4명, 징역 7년 1명, 징역 5년 1명, 징역 3년6개월 3명, 징역 3년 1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면제 3명
- 민비연 사건은 1967년11월16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1심(7명, 1967년12월16일) - 2심(7명, 1968년4월17일) - 3심(7명, 1968년7월30일) - 파기환송심(4명, 1968년11월26일) 까지 약 1년간 진행<sup>34)</sup>
  - 7명 전원이 최초 공소 제기내용인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만 이적단체 구성 예비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는 2년을, 현승일은 1년6개월을 선고받음

### 동백림 사건 재판

- 1967년12월6일 검찰은 1심 구형공판에서 41명중 윤이상·정규명·정하룡 등 6명에게 사형을, 임석훈·이응로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기타 피고인들에게도 최하 징역 1년 이상을 구형

33)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조치한 12명에 대해 재항소심이 열렸는데, 이 중 8명이 다시 상고한 것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상고심이 실시됨.

34) 대법원에서 환송조치한 4명에 대해 재항소심이 실시됨.

- 1967년12월13일 1심(재판장 : 김영준 판사) 선고공판에서 41명중 정규명 · 조영수에게 사형, 윤이상 · 정하룡 · 강빈구 · 어준 등 4명에게 무기징역, 임석훈 등 13명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그리고 11명에게 집행유예, 1명에게 선고유예, 3명에게 형면제가 선고
- 1968년4월13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 정태원 판사), 22명중 정규명 · 정하룡 · 임석훈 등 3명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윤이상 · 어준 등 11명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1968년7월30일 대법원(재판장 : 김치걸 판사), 21명중 이응로 등 9명의 형량을 확정하고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 정하룡 · 임석훈 등 3명을 포함한 피고인 12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에서 재심리토록 환송
- \* 상고기각(9명) : 박성옥, 공광덕, 이응로, 이순자, 김옥희, 강혜순, 김광옥, 주석균, 최창진
- \* 파기환송(12명) : 정규명, 정하룡, 임석훈, 조영수, 윤이상, 어준, 강빈구, 천병희, 최정길, 김중환, 정상구, 김성철

#### 대법원의 주요 판시내용

- 반공법 6조 4항의 잠입 탈출죄를 적용하려면 지령을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간첩활동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해야 함
- 국보법 2조는 형법 98조 1항의 군사기밀 탐지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남한의 실태를 제보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
- 임석훈 등이 사실상의 자수를 한 점에 비추어 과다 형량이 선고됨

- 상기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에 대해 1968년8월1일 대검(담당 : 한옥신 검사)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보법과 형법에 규정된 간첩죄의 군사기밀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 북한의 對南 공작역량에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발표

- 이와 함께 上記 대법원 판결을 비난·반대하는 뼈라·괴벽보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 1968년8월1에서 2일 사이에 국회의사당앞 등 4곳에서 「애국시민회」 명의의 “동백림사건 주범들에게 증거가 없어 유죄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김일성의 판사를 잡아내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뼈라(167매)가 살포되었고
  - 8월3일 반도호텔 등 서울시내 5곳에 「애국시민회」 명의로 “김일성의 앞잡이 김치걸·주운화 판사 등을 처단하라”는 등의 내용의 괴벽보(5매)가 나붙었으며
  - 8월3일에서 27일까지 대법원 판사 김치걸 등과 언론인·정당인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및 「애국시민회」 명의의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 말라. 당신들도 테러를 당하고 싶은가” 등의 서신이 우송
- 同 사건은 당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해당 대법관 1명이 임기도중 사임하는 한편, 국회 등의 진상조사가 추진
  - 1968년8월6일 신민당 지도부, 대법원 판사들을 비판하는 괴벽보 사태에 대해 “사법부를 모살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범인 색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
  - 1968년8월12일 동백림사건을 심리한 최윤모 대법원 판사, 임기 만료 3년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 제출
  - 1968년8월21일 종로에서 대법원을 비난하는 뼈라를 살포하던 청년 2명이 체포되고 배후인물로 前 민중일보 사장 김우정이 체포
  - 1968년9월13일 국회내 「괴벽보사건 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오치성)」는 발족 2개월 20일 만에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철저수사 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 종료



- 재항소심 재판부(재판장 : 송명관 판사), 1968년11월18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sup>35)</sup>을 허가한 데 이어, 12월5일 12명중 정규명·정하룡 사형, 조영수 무기, 임석훈·어준 등 9명에게 징역 3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 1969년3월31일 재상고심 재판부(재판장 : 방순원 판사), 8명중 정규명·정하룡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어준(15)·강빈구(10)·천병희(10)·김중환(7)·정상구(3년 6개월)등의 형을 최종 확정
- \* 1969년 2-3월간 윤이상, 김성철, 임석훈, 박성욱, 최정길, 이응로 등은 검찰의 형 집행정지로 석방
- 한국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분쟁을 완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 12월23일 사형이 확정되었던 정규명·정하룡까지 모두 석방

### 민비연 사건 재판

- 1967년12월7일 서울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구성 및 가입죄로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 반공법 제4조 1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를 예비적 공소사실<sup>36)</sup>로 추가 제기
- 1967년12월16일 서울형사지법 3부(재판장 : 김영준 판사)는
  - 민비연을 순수 학술단체로 인정하고 황성모에 대한 간첩죄와 피고인 7명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 무죄 판결
  - 다만, 황성모·김중태에게는 “합법적 선을 넘어 데모를 벌이고 복귀를 찬양, 이롭게 할 단체 구성을 예비 음모했다”는 점을

35) 동백림의 북한 대사관과 직원 숙소를 ‘북괴대사관지배하 지역’으로 해석, 이들 장소를 방문한 행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반공법 제6조1항(탈출) 또는 3항(지령수수 탈출)을 적용. 이와 관련 재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함.

36) 위원회 면담시 김영준 재판장에 따르면 검찰에서 민비연 피고인들에 대해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 먼저 판단을 요청한 다음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함.

인정, 반공법 제4조1항의 이적단체 구성 예비 음모죄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

- 1968년4월17일 서울고법(재판장 : 정태원 판사)은 황성모에 대한 간첩죄와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
  - 반공법 제 4조 1항의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김도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1968년7월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 손동욱 판사)는 민비연 사건관련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종률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유죄를 받은 황성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없는 범죄 사실을 심리, 판결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파기 환송
- 1968년11월26일 서울고법, 이적단체 구성 예비 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판 종결

## 사 | 국제 외교마찰 및 해결<sup>37)</sup>

- 1967년6월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루트샤우」 紙의 하이델베르크大 유학생 김중대의 실종 사실 보도 이후 독일내 한국인들의 실종설이 보도되었고 관련 내용이 프랑스에까지 전파
- 이후 독일 및 프랑스는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정부가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음을 지적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하면서 7월초부터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

37) 국가기록원이 청와대비서실로부터 전달받은 동백림사건 발생이후 한독 및 한불간 외교관계 문건 수록내용 및 외교부 존안문서 내용을 요약 정리함.

- 독일은 7월6일 및 7월14일 사전 승인 없는 한국관헌의 활동을 주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한국인들의 출국일자·경로 및 귀국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사건관계자의 원상회복, 한국공관원 3명의 소환을 주독 한국대사관을 통해 요청

**독일측 요구사항**

**< 7월6일 >**

- 서독내 한국인들이 갑자기 귀국한 사유와 독일 출국경로 및 출국일자 해명
- 귀국과정상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해명
- 독일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한국 관헌이 활동한 것은 독일의 주권 침해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항의
- 관련 한국대사관원 3명의 즉시 소환 및 한국인 전원의 즉시 독일 귀환

**< 7월14일 >**

- 국제법에 위반하여 독일의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해 엄중 항의하며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
- 사건에 연루된 양○○·이○○·최○○가 1주일내 독일을 떠나도록 훈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관련사실이 판명되면 기타 공관 직원에게도 조치를 취할 권리를 요구
- 비밀기관원에 의해 돌아간 전원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귀국한 한국인에 대해 소추를 위한 형사소송 절차를 취할 사유가 있는 지를 검토키 위해 법적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 프랑스는 7월21일 한국인들의 귀국과정에 한국공관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서 자국의 주권과 외교관계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해라고 주불 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를 제기

**프랑스측 요구사항**

- 수명의 한국인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란서를 떠난 사실에 주목
- 이들의 출발이 한국 비밀기관원의 사촉에 발단하고 한국공관이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남(윤○○ 공사, 윤○○ 서기관)
- 한국당국의 행동은 불국의 주권과 외교관계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해
- 불 정부는 공식 항의를 제기하며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의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보유

- 우리 정부는 독일(7월23일) 및 프랑스 측(8월3일)에 사건관계자들이 설득에 의해 자유의사로 귀국한 것이며 정당한 경로와 수속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각서 통보

- 독일 :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공관원 3명 출국조치 등

#### 獨逸에 대한 해명

- 북괴간첩 및 전복활동을 분쇄키 위한 긴급하고도 부득이한 조치였음
- 관련인들은 설득에 의해 자유의사로 귀국한 것이며 정당한 경로와 수속을 취하였음
- 독일당국의 사전 승인없는 한국관헌의 활동에 대해 유감의 표시와 장래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
- 대사관원 3명은 이미 독일을 출국하였음
- 관련 한국인들의 독일귀환 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가 경미한 자 5명은 이미 독일로 향발하였음

- 프랑스 : 공식유감 표시, 재발방지 약속, 공관원 2명 출국조치 등

#### 프랑스에 대한 해명

- 최근 한국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가장 가공스러운 공산 음모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불란서 영토내에서 취한 조치는 결코 불란서 정부를 당혹시키거나 도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사관 직원 2명이 불란서를 떠났음
- 한국정부는 계속 조속한 시일안에 불란서를 떠난 본건 관련자들이 불란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
-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문제 종결을 조속히 짓기 위한 한국정부의 진실성을 표시하는 것임

○ 우리 측의 각서 전달과 사건관계자가 일부 석방 귀환<sup>38)</sup>한 것을 계기로 한독 및 한불간 외교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상호 ‘조용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

- 우리 정부, 9월16일 해외 공관장 인사에서 주독 대사를 최덕신에서 김영주 외교부 차관으로 교체

38) 7월21일 무혐의로 이수길, 박성조, 피추자, 김웅, 김택환 등이 서독으로 한철수, 심상필, 성두영, 김석연, 윤재운 등이 프랑스로 출국함.

- 한편, 독일연방검찰도 자체 수사결과 한국 관헌의 활동을 도와준 구속자(김○○, 박○○ 2명)들의 혐의를 발견치 못했으며 한국인들의 귀국이 강제에 의한 납치라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발표
- 그러나 독일은 여론의 再경화 및 야당의 對韓 외교관계 단절 요청 등을 계기로 3,4명의 추가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추가 방면을 위한 ‘필요한 고려’를 하겠다고 약속
- 한편 同 시기에 독일 정부가 재판진행 참관차 본 대학 법학과 교수 「그린발트」를 派韓한 데 이어 국제적십자사도 프랑스정부의 관여 하에 「앙드레 두랑」극동 파견관을 한국에 파견하였던 한편 우리정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안호상 박사를 독일로 파견
- 1심 재판(1967년12월13일)이후 주요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 독일은 ‘집행유예자의 조속 귀독→2심의 조속 개정과 형량 감소→재판 후 관용조치 및 사형 선고자에 대한 특사 조치 사전 보장’을 요청하였으며<sup>39)</sup>
  - 프랑스도 1심 재판 시 선고유예자 정성배 등의 불란서 귀환을 요구
- 한편 독일 「뤼프케」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에 미칠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형선고자에 대한 관용조치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한국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1968년2월1일)하는 친서를 송부하였으며
  - 이에 대해朴대통령은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재판 후 사형선고자에 대해 가능한 고려를 할 용의를 표시”하는 회답(3월21일)을 송부

39) 독일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정부는 “일반적인 경우, 집행유예자의 해외여행은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本 문제 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정부의 특별 사면조치라고 인정되며, 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음은 한국정부의 특별고려이다”고 설명함.

- 2심(1968년4월13일)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자 독일정부는 전원 귀환 요구·駐韓 大使 소환시사·경협관계 동결 등으로 태도를 급선회 하였으며 프랑스측도 이응로에 대한 형량에 실망하였다는 의사를 표명
- 朴대통령은 주독 김영주 대사를 귀국시켜 정부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친한인사인 「켈슈텐마이어」獨 하원의장 앞으로 영향력 행사를 요청 하는 친서를 전달
- 6월 이후 양국정부는 강경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정부는 집행 유예자의 歸獨을 허용하고 독일정부는 영남화전 차관을 상업차관으로 전환한 데 이어 시범 낙농장을 위한 기술 원조협정에 서명하는 등의 상호조치에 대한 非공식 합의에 도달
- 그 후 독일정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7월30일)이후 조용히 사태개선을 기대하는 태도를 유지다가 재항소심(11월21일)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동해화전 차관 승인 보류 등 강경입장으로 선화하였던 한편 독일 시위대 200여명이 한국대사관에 난입하는 사태 발생<sup>40)</sup>
- 이후 서독 측의 제의로 독일대통령 특사 「프랑크」가 방한(1969년1월) 하여 사건관계자 6명에 대한 조속 및 단계적 석방 등에 합의하고 1969년 2월10일 서독정부의 동해화전 차관 승인으로 양국관계는 정상화

**韓獨間 합의 및 조치내용<sup>41)</sup>**

**< 한국측이 취할 조치 >**

- 관련자 4명이 계류되어 있는 재판을 가능한 조속히 종결하도록 법원에 권유함
-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인 2명을 조속 석방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歸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 재판중인 4명을 재판종결 후 형이 확정되면 점차적으로 감형하고 1969년까지의 석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1-2명은 1970년말까지 석방하며 만약 사형 확정자가 있을 시 점차적으로 형을 감하고 동인도 1971년말까지는 석방함. 이들에게도 자유의사에 따라 歸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40) 우리 외교부가 12월6일 대사관이 불법 침입을 받은 사실과 독일경찰의 출동 지연에 대해 항의하고 유사한 행위가 장래 재발치 않도록 보장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요구한 데 대해 독일측은 12월7일 정부차원의 유감 표시와 장래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유감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책임질 용의를 표명함.

41) 구두로 통보하고 백지에 서명 없이 수교한 oral statement 형식으로 작성됨.

### < 獨逸 側이 취할 조치 >

- 獨 정부는 한국과의 정치·경제·문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일반 독일국민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오해를 해소하는데 진력할 것임
- 독일정부는 북한이 국제적 승인 획득, 공관설치 등을 획책하며 기타 국제적 접촉을 가지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정부를 지지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 특히 獨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해가 미치는 어떠한 대외차관 보증 승인요청도 허가하지 않을 것임
- 독일정부는 북괴의 계속적인 위협하에 한국이 처해있는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나아가 동백림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의 동기를 납득함
- 독일정부는 관련자가 취한 태도나 행위사실 자체를 용납하지 않음. 독일정부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양 우호국간의 국제적 관계에 관한 문제임
- 독일정부는 독일내 한국인이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獨 정부는 한국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특히 독일정부는 독일로 귀환한 관련자들이 북괴에 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 공동 발표문 >

- 독일특사는 한국정세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 同 특사는 외무장관 및 한국 고위관리들과 양국의 공동 관심사 및 상호 이해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우호리에 매우 진지하고 솔직한 회담을 가졌는바 그러한 회담은 양측에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었음
- 양국 대통령 각하의 상호 방문으로 굳어진 양국의 우호관계는 계속되어야 하며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 정치·경제·문화면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확대시키는데 합의하였음
- 한국 외무부 장관은 독일외상을 방한토록 초청하였으며 독일 특사는 외상을 대신 同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였음
- 독일특사는 한국정부가 그의 방한 중 베푼 따뜻한 환대에 감사함

## 2 疑惑別 조사 결과

### 가 동백림 사건의 실체 조작·확대

#### 1) 의혹내용

#### 【 정치적 기획·조작 】

1967년6월 학원·야당을 중심으로 6.8 총선이 대규모 부정선거라는 비판 여론 및 시위가 급속 확산되자,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함으로써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 윤이상의 妻 이수자는

- “1967년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적 책략으로 이루어져 야당에서도 항의가 계속되었다”
- “KCIA는 정권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 착수하였으며 동백림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간첩단 조작 사건은 국내 투쟁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sup>42)</sup>

#### ○ 사건 당시 駐서독 한국대사 최덕신은

- “동백림 사건은 7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행위를 견책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국민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꾸며낸 비열한 음모라고 본다”
- “이것은 김형욱이 미국 측과 박정희의 의도를 간파하고 꾸민 일이었다”고 주장<sup>43)</sup>

42)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43) 『옵저버』 (1991년4월호)



- 특히 언론인 전진우는 동백림 사건을 취재 보도하면서 관련자 진술 등에 의거해 “임석진이朴대통령에게 자수한 후 1개월이 지난 6월16일 중앙정보부 공작반이 사건관계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발하는 등 사건 수사가 6.8 선거가 끝난 1주일 후 즉 데모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되었다”라고 의혹을 정리해 제기<sup>44)</sup>
- 담당 검사였던 이종원도 “당시 검찰은 실정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이나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언급<sup>45)</sup>
- 그러나,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7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 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를 무마하고 국민에게 겁을 주기 위해 사건을 터뜨렸다고 하나 동백림 사건은 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어 추진되었다”고 주장<sup>46)</sup>

## 【 사건 실체 확대 】

부정선거 규탄국면 전환 차원에서 사건 실체를 확대 발표했다는 의혹

- 朴대통령이 1969년10월 3선 개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자 사건 관계자 전원을 형 집행정지로 석방한 것을 보면 동백림 사건은 다름 아닌 3선 개헌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극으로서 별것도 아닌 사건을 일부로 과장했다고 주장<sup>47)</sup>
- 사건 피의자중 1명인 김종대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그로테스크한 코미디였다”고 주장<sup>48)</sup>

44) 『신동아』(1989.4월호)중 ‘동백림 사건과 6.8 부정선거’ 제하 기사 내용

45) 『신동아』(1989년4월호)

46) 김형욱·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1977년11월, 성도문화사)

47) 『신동아』(1989년4월호)

48) 『뉴스플러스』(1997년7월3일자)

- 강준만 교수는 “윤이상이 예술가로서 호의로 받은 돈을 공작금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술하여 의혹을 제기<sup>49)</sup>
- 사건 제보자인 임석진도 “면담 시朴 대통령의 태도와 말(진상파악 후 사회활동 보장)에 비해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놀랐다”고 언급<sup>50)</sup>
- 또한 당시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서구주재 유학생들이 동서독간의 활발한 교류 분위기에 편승, 동백림 및 북한에 가서 북한인들과 단순 접촉한 것을 무분별하게 간첩으로 처벌했다고 하소연<sup>51)</sup>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은 “일부가 북과 접촉했으나 간첩행위는 없었던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분단된 어느 한쪽의 눈에서 보면 영원히 풀리지 않은 사건”으로 결론<sup>52)</sup>
- 이수자는 “진정 모두 훈련받은 간첩이라면 그리 순순히 어린양 처럼 그 많은 나라들의 공항을 거쳐 서울까지 연행되어 갈 수 있었을까”라고 주장<sup>53)</sup>
- 북한 노동당 부부장 출신 박병엽은
  - “(유럽 주재 한인들에게 준 돈은) 공작금이 아니라 유럽생활에 돈이 궁할테니 생활비에 보태 쓰라는 것이었다. 이 생활비가 뒷날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공작금 수수죄’로 기록되었다”면서
  - “이들에게 바란 것은 말이나 글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파자적 역할을 기대하는 정도였다. 같은 시기의 통혁당과는 달리 이들에게 처음부터 조직자적 역할을 부여할 생각을 갖지 않았다.

49)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60년대편 3권』

50) 『신동아』 (1989년4월호)

51) 중앙정보부는 1967년7월8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삼아 북한에 드나들면서 간첩 활동을 한 문화계 등의 인사들이 109명에 이른다고 발표함.

52) 2003년9월19일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 제하로 방영함.

53)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 다녀와서 조직을 만들거나 이를 위해 사람을 포섭한 일이 없었다”고 언급<sup>54)</sup>

○ 그러나, 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과장은

- 주요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법원에서 뒤바꾸어 진술하고 구두진술 이외에 실체적 증거자료가 미비, 사건 조작설이 확대되었을 뿐이며
- 유학생들의 단순한 동독·북한방문을 대형 간첩단 사건으로 확대했다는 의혹 제기에 관련자들의 엄연한 실정법 위반사실을 거론<sup>55)</sup>

## 2) 조사 결과

### 【 정치적 기획·조작 】

당시 수사계획<sup>56)</sup>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중앙정보부의 수사착수 동기는 6.8 부정선거 규탄 시위 무마 차원이 아니라 임석진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파악됨

○ 임석진의 자수(1967년5월17일)이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를 위임받은 중앙정보부는 5월22일경부터 약 1주일간 林교수에 대한 초기 심문을 실시

54)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1993년6월, 도서출판 글)중 ‘제 6장 동백림 사건’. 이 글에서 언급되는 증언자는 前 북한 고위간부 출신 박병엽(일명 신경완)으로 알려져 있음.

55) 『월간 조선』(2004년4월호)

56) 1967년5월23일 중앙정보부 5국에서 ‘V-318 특수수사비 신청’ 제하 문건과 1967년6월5일자 ‘V-318 공작 및 수사계획 추가보고’ 제하 문건

- 林교수 및 「林」이 제보한 인물(36명)들의 동백림 및 북한 왕래 등 대략적인 對北 접촉 혐의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 「林」의 자수내용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거점에서 역공작하는 방안과 수사관들을 해외에 파견, 일망타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 중앙정보부의 임석진 수사 결과

- 당시 중정이 작성한 임석진에 대한 문건은 수사기록(3건)과 자수조서(6건)·진술서(7건)·피의자 신문조서(1건)이 존재
- 임석진은 조명훈으로부터 동백림에서 북한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북접촉을 시작하였는데
  - 방북(2회), 공작금(1만 3,000불 수수), 노동당 입당(1964년8월) 및 이기양외 9명을 이원찬에게 소개하고, 한국유학생 등 26명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 북한으로부터 서독유학중인 학생·광부·간호원 명단입수와 성분조사 및 포섭, 한국 대사관 직원상하 알력관계 조사, 서독여행중인 한국 저명인사 동정 파악, 광부 집단내 지하당 조직과 고용기간 만료시 집단적 국내 침투에 대비한 활동 전개 등의 지령을 수수
- 한편, 중정은 임석진의 자수내용을 본명 및 가족들의 죄상까지 밝히는 것으로 보아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국내 혐의자 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수사관들을 현지에 출장, 일망타진하는 방안과 「임」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중정거점에서 역공작을 실시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 「임」의 진술에 근거한 혐의자 및 포섭대상자는 총 60여명으로 추정
  - 주요 혐의자 : 정규명, 임석훈, 임○○, 이기양, 이응로, 강성중, 김광옥, 정상구, 하태규, 조명훈, 황성모, 윤이상, 김○○, 최○○, 주○○, 이○○, 이수길, 서○○ 등 총 30명
  - 주요 포섭대상자 : 김웅, 이○○ 등 총 30명

- 원내 동백림 및 민비연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작계획 문건(총 12건)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林교수의 자수 직후부터 개시되어 6월 초에 본격화된 것으로 조사

- 5월23일 「V-318 특별수사비 신청」 제하 문건에 임석진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예산이 상신
- 6월5일에 이르러 국내외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V-318 수사계획 추가보고」를 수립한 데 이어 6월7일 해외 혐의자 23명을 체포·연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

**「V-318」 수사계획 요약**

- 상황 : 임석진을 중심으로 수사자료를 수집한바 국내 관련자 약 40명의 신원을 파악
- 목적 : 신원이 밝혀진 국내외 암약 북한간첩 일망타진 및 기도 분쇄
- 목표 : 임석진에 포섭된 자로서 국내에서 암약중인 간첩을 검거하고 국외에서 암약중인 간첩에 대하여는 출장 검거
- 지역 : 국외 및 서울특별시 일원
- 수사공작 요령(관련자 국내외 36명)
  - V-318에 대한 보안조치와 국내 저명인사 접선여부에 대한 자료 수집 지속
  - 해외 교포들에 대한 접선 여부에 대한 자료 지속 수집
  - 국내 거주 접선 혐의자에 대한 체포 및 증거 수집
  - 해외교포 중 접선자에 대한 수사 및 증거 수집
  - 참고인 소환조사
- 기간 : 1967년6월3일-22일(20일간)

- 또한 「동백림사건 수사 결과 및 교훈」<sup>57)</sup>상에도 중앙정보부의 수사 단서는 ①해외거주 교포 실태파악(1967년2월)<sup>58)</sup> ②조선일보 이기양 기자 행방불명 사건(1967년4월) ③임석진의 자수 및 조사(1967년5월) 등으로 확인
- 이를 감안, “6.8선거 1주일 후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확산되자 대규모 공안사건을 기획, 수사를 추진하였다”는 의혹은 잘못된 것이며, 사건 수사는 6월8일 이전부터 계획, 추진되었다고 판단

57) 1967년 일자미상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문건

58) 중앙정보부 독일거점에서 1967년2월9일 파우치로 본부 보고한 문건에 의하면 “1967년2월3일 이효석 노무관의 박성욱 및 김성철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이 북한공관과 연계되었다는 의심은 하였으나 해당인들의否認 진술 및 입증자료 미비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박대통령은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 약속을 한 바 없으며, 단지 제보자인 林교수에게는 신분보장을 약속함

- 1967년5월17일 박대통령은 임석진 교수로부터 유럽거주 한국인들의 대북 접촉실태를 제보 받는 자리에서
  -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비치지 않고
  - 林 교수에게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분보장을 해주겠다. 중앙정보부 수사에 협조해라. 이야기한 내용을 글로 써서 제출해 달라”고 지시<sup>59)</sup>
- 이후 대통령은 김형욱 부장에게 林교수의 자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
- 한편, 임석진은 약 200매의 원고를 작성,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는데 “同 원고가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정보부장에게 넘어 갔을 것이며 그 이후 金부장이 사건 파일을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sup>60)</sup>
- 김형욱의 지시로 이○○ 수사과장은 林교수를 조사 후 5월24일 金부장과 함께 청와대에 가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 대통령은 “조사가 잘 되었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북과 접촉후 학원까지 침투했다니 문제가 있다. 확실히 조사하여 뿌리를 없애라”고 지시하였으나

59) 2005년9월7일 임석진 면담내용

60) 2005년9월7일 임석진 면담내용

-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유학까지 다녀온 지성인들이 북한에 포섭되어 지하당을 만들려고 했더니 창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정보부의 사전 대처 미흡에 대해 책망<sup>61)</sup>

참고인 면담결과, 수사관계자 및 관련 범조인들도 동백림 사건이 6.8 총선에 따라 기획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진술함

- o 당시 중앙정보부 및 수사 관계자들의 경우 동백림 사건은 임석진의 자수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으로서 6.8 부정선거에 따라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진술

**< 중앙정보부 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당시 직책	면담요지
이○○	해외담당 국장	·동백림사건은 순수하게 출발된 것으로서 6.8 선거 후유증 타개 내지 수사진행과정에서의 정치적 확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치 않은 이야기임
이○○	수사과장	·6.8 선거 시위국면 돌파용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임
모○○	수사계장	·수사과정중 6.8 선거 이후 대통령의 지시방향이 달라진 적이 없고 수사일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최○○	수사관	·동백림 사건은 중정에서 최초 인지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명지대 교수 임석진이 청와대에 자수하여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6.8 선거 시위를 와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님
신○○	수사관	·정치적 의도 및 사건 조작이 없었던 정당한 간첩단 사건으로 6.8 부정선거를 와해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것은 전혀 무근임
이○○	수사관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와해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임
김○○	수사관	·서독 유학생들이 동백림을 방문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생활하다가 제보자가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결코 정치적 쇼이거나 조작극이 아님
이○○	軍방첩대 수사관	·동백림사건이 6.8부정선거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작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간첩사건은 절대 조작이 불가함
백○○	軍방첩대 수사계장	·이○○ 수사과장이 일일이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엉터리 같은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담당할 수사는 과장되거나 허위 조작된 점이 전혀 없음

61) 2005년7월26일 이○○ 면담내용

○ 또한 김영준 등 당시 범조인도 동백림 사건의 완전 조작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였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

- 김영준(1심 재판장) : “중앙정보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미리 인지했는데도 그 시점에 터트렸거나 사건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박승서(변호인) : (동백림 사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지도 모르지”

동백림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나 중앙정보부는 무리하게 민비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7차에 걸쳐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냉각시킴

○ 중앙정보부가 동백림에 유학을 다녀온 지도교수 황성모를 연결 고리로 학생운동의 지도그룹이었던 민비연에 대해서까지 동백림 공작단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6.8 부정선거 규탄시위의 주력인 학생운동의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알려 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됨(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

○ 중앙정보부의 이례적인 7차에 걸친 발표는 부정선거 시위 분위기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등 사회적 관심분야 전환에 일조하여 정치적 부수효과가 발생

- 6.8 선거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6월16일 30개 대학, 148개 고교에 휴업 조치를 하였으나 시위가 지속되었던 한편, 신민당도 부정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며 7월3일 개최된 국회출석을 거부



- 중앙정보부는 수사가 진행중이던 7월8일 제 1차 발표이후 7월11일-15일 및 7월17일 매일 한차례씩 추가로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부정 선거 규탄시위는 거의 중단<sup>62)</sup>
- o 이와 관련, 중앙정보부가 당시 대규모 수사에 따른 대상자별 검거 및 수사일정의 차이, 발표 직전 독일 및 프랑스 정부의 공식 항의 등에 따라 여러 차례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수도 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7차에 걸친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
- o 또한 중앙정보부는 7월16일 「신민당 6.8 총선 무효화투쟁위집행위」 소속 장준하(당시 국회의원)·부완혁 집행위원을 동백림 사건과 관련하여 연행
- 신민당은 “16일 오전 10시 합의하에 출두한 장씨를 증인신문으로 14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부완혁씨는 17일 오후 2시에 자진 출두하기로 합의했음에도 16일 오전 11시 강제 연행했다”고 비난(7월17일)하면서
- “야당 중진을 강제 연행한 것은朴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시국 수습에 성의를 다하는 양하면서 일방으로는 중앙정보부를 시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다”고 발표하고 7월18일 정일권 총리를 항의 방문<sup>63)</sup>
- \* 중앙정보부의 「동백림 사건 주요 혐의자 명단」<sup>64)</sup>에 김대중 및 장준하가 포섭대상자(「김」-정○○의 포섭대상자, 「장」-조○○의 포섭대상자)로 기록되어 있는 한편, 연행되었던 장준하 및 부완혁에 대한 수사기록은 未발견

62) 당시 일간지에는 7월4일 대학생들 630여명 시위 중 연행, 『7월5일 5,000여명의 대학생들 경찰과 충돌, 7월6일 부산대생 2,000명, 7월 6-7일 경북대생 300명 시위로 경찰과 충돌』 등이 보도되는 등 부정선거 관련 시위가 지속. 그러나 7월8일 (1차 발표) 이후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관련 규탄시위 관련 보도가 전혀 없음.

63) 이후 신민당은 7월19일 및 7월21일 동백림 사건 관련 성명 발표, 이에 중앙정보부는 7월20일 및 7월22일 반박 성명과 담화문 발표로 대응함.

64) 1967년 일자 미상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문건

- 수사 대상자 또는 피의자들도 대부분 동백림 사건은 완전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일부는 정치적 부수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

< 정치적 부수효과 관련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임석진	자수자	·민비연은 그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동백림 사건의 경우는 결코 문제의 시발이 6.8 선거가 아니나 당시 권력자들에게 부수적인 효과를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임석훈	독일 연행자	·6.8 선거로 인해 강경수사로 선회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한국 당국이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사안이었음
이수길	독일 연행자	·동백림 사건은 결코 정치적 쇼이거나 조작극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백림 사건 수사발표로 인해 부정선거 규탄데모가 잠잠해진 것은 사실임
하태규	미국 연행자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사건으로 그냥 놔두었다면 수습이 어려워서 당국으로서는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임
김학준	민비연 연행자	·수사의 발단은 임석진의 자수(1967년5월) 이전 서독거주 정모 여인의 유고남자와의 결혼과동(1967년2월) 등을 통해 당국이 해외교포에 대한 동향감시를 강화했던 가운데 이기양기자의 체코 실종사건으로 서독유학생에 대한 조사 등에 기인함
조명훈	독일 연행 대상자	·당시 중정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로서 그 때 안했다면 너무 늦었을 것임
최창진	국내 연행자	·박정희의 좌익전력으로 인한 과도한 반공시책, 이기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임석진 형제에 대한 수사 착수, 당시 유진오 총재의 부정선거 항의 명목의 국회 불출석 등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 시 정치적 수사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함
김중태	민비연 연행자	·동백림 사건의 조작 여부와 관련 구체적 입증 방식보다는 당시 정보부에서 사건 조작을 일상적으로 했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임
김진택	독일 연행자	·6.8 부정선거에 따른 조작극이라는 의혹에 대해 당시 신문 기사를 읽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음
박성욱	독일 연행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반공 위주였으니 그런 사건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며 당시 동백림 사건은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임
김성철	독일 연행자	·동백림 사건과 6.8 부정선거 규탄시위 같은 정치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함

## 【 사건 실체 확대 】

조사 결과 동백림 사건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금품수수·특수교육 이수·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sup>65)</sup>

- 1959년 윤이상이 6.25시 월북한 친구의 소식 탐문차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과 최초 접촉한 이후 50여명의 한국 국적자들이 동백림을 출입했으며, 임○○·정○○ 등은 10회 이상 방문
  - \* 대부분 북한에 대한 호기심, 평화통일론에 대한 관심, 在北가족 소식 탐문 등을 이유로 동백림을 최초 방문했다가 금품수수 유흥 등으로 재차 방문
- 이중 12명(3명은 2회 반복) 이상이 북측의 권유 및 강요 등에 따라 訪北한 데 이어 26명 이상이 각각 100불에서 1만 5,000불 정도의 금품을 수수
  - 최초 동백림 왕래 여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1회 이상 금품을 수수한 대부분은 북한의 속셈을 안 상태에서도 경제난 때문에 북측 금품에 의존했던 것으로 추정
  - 당시 학생들의 1개월 생활비가 200마르크(약 50불) 정도임에 비추어 임○○, 윤○○·정○○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수수
- 임○○ 등 7명 이상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17명 이상이 암호조립·해독법·무인포스트 설치 등 특수교육을 수수
  - 다만 대부분이 자진해서 입당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성과만들기식 관료주의에 의해 희생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
  - 특수교육의 경우도 자진해서 받았다고보다는 다소 강요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65) 각종 수치는 당시 검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미검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

- 임○○·정○○ 등 비교적 상당액의 금품을 수수한 인물들은 주변인물 근황 제보 및 대동 입동·在北 가족 서신 전달 등 북측의 요구 사항을 적극 이행했던 것으로 조사
- 북한은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남한내 지하조직 구축·합법 신분 획득 등의 지령을 주었으나 대부분이 국내 귀국후 지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한편, 약 3-4명이 호기심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 발송 및 A-3 방송을 청취
  - 북한은 귀국자 대부분에게 본인의 수용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적 시기를 대비한 공작 토대 구축 등의 지령을 전달하였으나 정○○ 등 일부는 지령 이행을 듣는 즉시 거부
  - 안착신호 발송 및 A-3 방송 청취자의 경우 북한의 지령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방송을 들은 사람은 없으며 호기심 내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청취했던 것으로 조사
- 그러나 국내귀국자중 3명 정도는 적극적인 지령 수행 의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북측 지령대로 동생의 渡佛 유학을 주선, 북측과 再접촉 및 암호통신, 국내 주변인물 포섭 시도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
- 한편, 사건 참고인 면담 결과 당시 중앙정보부 및 사법부 관련자, 일부 피의자들도 동백림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언급
  - 모○○(중정 수사계장) : “외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무마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서 일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름”
  - 임석진(자수자) : “당시 북한 고위층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북측은 남조선 적화혁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포섭하고 다시 이들을 남한으로 들여보내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노렸다고 할 수 있음”<sup>66)</sup>

66) 임석진은 “당시 북한을 다녀왔던 사람들이라면 북측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당시 북측과 연계된 인사들은 대개 순종형 서생으로서 이원찬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기를 들거나 이탈이 없어 자기들의 공작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함.

- 임석훈(사건 관련자) :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과를 치른 사건으로서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 판결내용상 하지 않은 범죄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음”
  - 김영준(재판장) : “동백림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며 피고들도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고 다만 정상참작에 관한 진술이 많았음”
  - 이수길(독일연행자) : “결코 정치적 쇼이거나 조작극이 아니며 윤○○ 등의 통일을 위한 전초활동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으로 진짜 동백림 사건은 있는 것임”
- 또한 법정에 제출된 중앙정보부의 일일정보통신문<sup>67)</sup>에 의하면 당시 북한은 유럽에서 접촉이 심화된 후 국내에 들어온 조○○·정○○ 등에게 아래와 같이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
- 조○○(1966년11월3일 착신) : “오선생에게 보낸 편지 받았음. 나오는 문제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는 오는 구실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에는 적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나오지 말고 이런 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나와도 좋겠음”
  - 정○○(1966년6월8일 착신) : “같이 사업하기로 한 그 동지와 정식 연계를 맺는 것은 중앙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지할 것. 일정 기간 만 사업은 하지 말고 적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정세와 대상자들을 료해하는데 주력할 것. 안착신호는 보았음”
- \* 북한의 지시사항 하달과 무관하게 조○○와 정○○은 방송 청취를 시도하였으나 감도 불량으로 전달사항을 수신하지 못했고<sup>68)</sup>, 특히 조○○는 난수표가 압수 당시 개폐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방송내용의 해독 시도가 전무함이 입증<sup>69)</sup>

67) 북한의 A-3 방송 내용을 압수된 난수표로 해독한 것임.

68) 정○○, 조○○에 대한 중앙정보부 의견서 참조

69) 중앙정보부 수사관 황○○ 작성의 검증조서, 항소심 판결문의 ‘무죄부분’ 중 조영수 관련사항 참조

- 한편 북한은 1967년2월 유럽내 한국대사관의 교민관리 강화<sup>70)</sup>에 맞추어 정○○ 라인에 활동 자제를 지시한 데 이어
  - 중정의 체포가 시작된 후 독일에서는 김성철·김복순을 피신시키려 하다가 실패하였고<sup>71)</sup>
  - 프랑스에서는 실제 노봉유·박협 등 수명을 동백림 내지 북한으로 도주시키는 데 성공
- 이와 관련 노동당 고위간부 출신 박병엽은 북한은 1967년6월 한국 정부의 동백림 관계자에 대한 일제 검거 정보를 입수하고 중앙정보부의 수사상 혼선 및 지장 초래를 위해 역공작을 실시했다고 주장<sup>72)</sup>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국가보안법 2조·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 관련자들의 對北 접촉 및 동조 행위까지도 간첩행위로 일반국민들에게 확대 오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중앙정보부는 1967년7월3일-9월22일간 사건관련자 총 203명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정하룡·조영수·윤이상 등 총 23명에 대해 형법 98조 및 국보법 2조의 간첩죄를 적용
  - \* 간첩죄 적용 대상자(중앙정보부) : 정하룡, 이순자, 조영수, 김옥희, 천병희, 김종환, 윤이상, 이수자, 최정길, 강혜순, 정규명, 박성욱, 어준, 강빈규, 「강 하이드론」, 임석훈, 공광덕, 김진택, 정상구, 하태규, 정성배, 김복순, 황성모

70) 1967년2월 주독 한국대사관 이효석 노무관 등은 재독 광부 박성욱, 김성철 등을 통해 당시 교포 사회내 일부 한국인들의 동백림 출입 등이 사실인지를 조사하였으나 별무 성과 없이 조사를 종료함.

71) 1967년6월21일 동백림 북한대사관에서 보낸 독일인이 김복순 및 김성철을 찾아와 공산권내로 빨리 도망하라는 서신을 전달하고 소정의 여비를 전달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음.

72) 유영구,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도서출판 글, 1993년6월, 351-352쪽). 1967년6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에서 공작조를 급파하여 들쭉시키고 조사하려 다닌다는 소식이 동백림 거점에 전해졌다. 북측은 수사상 혼선을 조성하기 위해 역공작을 실시했다. 첫째, 중정공작조가 유럽지역의 한국인은 누구냐 의심하도록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포명의로 본의 한국대사관에 ‘북한 측이 마련한 어느 자리에 교포 몇 명이 참가했다’는 식의 투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역정보 유포공작을 위해 사회안전부 계통의 여론관계 전문가팀이 동베를린으로 급파되었다. 둘째, 남한교포나 유학생들로 하여금 남한정부의 납치행위를 규탄하도록 유도했고,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도 했다. 셋째, 서독과 프랑스의 공산당 및 사회당계열 사람들과 접촉하여 이들의 협조로 외국인 학생 등을 동원, 중정의 납치사건을 규탄하도록 했다. (이상 북한 고위간부 출신 박병엽의 진술내용)

-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7월22일-8월2일간 41명을 기소하고, 24명을 불기소, 1명을 軍 검찰에 이첩하면서 총 23명에게 형법 98조 및 국보법 2조상의 간첩 및 간첩 미수죄로 기소
  - \* 간첩죄 적용과 관련 중앙정보부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강하이드론」, 김진택, 하래규, 정성배, 김복순 등은 제외되고 이응로, 박인경, 김광옥, 최창진, 김성칠 등이 추가됨으로써 총 적용 수는 23명으로 동일
- 1심 법원은 1967년12월13일 정하룡·조영수·김중환·천병희·윤이상·최정길·정규명·김성칠·어준·강빈구·임석훈·김광옥·정상구 등 총 13명(검찰 간첩죄 기소자중 57%)에게 국보법 2조 및 형법 98조를 적용
- 2심 법원은 1968년4월13일 간첩죄를 협의로 해석, 천병희·정규명·김성칠·어준·임석훈·김광옥·정상구 등 총 7명에게만 간첩죄를 적용하고 기타 피고인들에게는 원심의 간첩죄 대신 반공법상의 동조죄 등을 적용
-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1968년7월30일)이후 4심 및 5심을 거치는 동안 국보법 2조·형법 98조상의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의자는 전혀 없었음
- 상기 최종심 결과가 반영하듯이 중앙정보부는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했고, 이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관 등도 “실제 간첩활동이 없는 간첩 사건으로 여타 공안사건과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 이○○(수사관) : “동백림 사건은 무지막지한 사건이 아닌 무난한 간첩사건으로 서독 등 해외 유학생들이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간첩활동을 한 사실은 없었음”

- 이○○(수사관) : “대다수 피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신봉하거나 김일성을 찬양하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간첩활동이 없는 단순한 사건임”
  - 박승서(변호인) : “조영수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용돈을 주니까 끌려 다니다가 난수표 주니까 집에 물어놓는 등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무슨 간첩활동하고 한 것이 아니야”
  - 이수길(독일연행자) : “사건의 본질은 돈을 받고 동백림 및 북한을 왕래하고 돈 받은 대가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켰던 것이 팩트로서 간첩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음”
  - 김택환(피의자) : “서독에 사는 사람들이 간첩질을 할 건덕지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김형욱이 과잉충성을 한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조사는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 이수자(피의자) : “외국생활을 하다보니 적막하고 그쪽은 잘해주고 하니까 찾아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온 것이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간첩행위를 하고 북의 앞잡이로 그런 사람은 없었으나 난수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다”고 진술
- 이에 따라 일부 사건 관련자들은 공판과정에서 간첩죄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인이 간첩으로 판결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윤이상(피의자) : “(부부조로 간첩활동을 하려고 모의했다는 데 대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간첩이라는 말은 싫은 말이고 억울합니다”<sup>73)</sup>
  - 김진택(피의자) : “지금까지 내가 반공법상의 동조죄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내가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는 점을 원상회복시켜 주기 바람.”<sup>74)</sup>

73) 1967년12월2일 서울지법 공판조서 내용

74) 2005년10월6일 김진택 면담내용



〈 피의자별 간첩죄 적용 기관 및 행위 〉

성명	행위 개요	적용기관
정하룡	재북 유학생들의 동태 제보	중정~1심
이순자	동백림에 가서 시부·친부 등 국내 인사들의 동향을 제보	중정~검찰
조영수	1967년2월 평양 3차 방문시 사업 경과 및 남한 정세 보고	중정~1심
김옥희	남편 조영수에게 청와대 동향을 탐지 제보, 조영수가 북측에 전달	중정~검찰
천병희	방북시 한국정부의 재독교민 대책·남한어민의 실태 등 보고	중정~2심
윤이상	이원찬의 지시로 재독 유학생·광부·간호원들의 실태를 파악·제보	중정~1심
김중환	‘처가 입덧하여 입맛이 없다’라는 암호편지를 발송	중정~1심
이수자	월북가족자중 청년을 선발, 과독입동시키라는 지령과 공작금 수수	중정~검찰
최정길	방북시 남한의 경제형편 제보, 동백림에서 유학생 명단·동향제보	중정~1심
강혜순	전영희의 포섭을 기도하는 등 북한 공작사항을 수행	중정~검찰
정규명	포섭대상자로 안석교 등의 명단을 작성, 제출	중정~2심
박성욱	김성철을 입동시켜 귀환지령을 받는 등 각종 지령사항을 수행	중정~검찰
어준	직장동료에게 북한 공업발전상을 찬양, 포섭 기도하여 간첩미수	중정~2심
강빈구	처에게 동백림에 가서 이국종 등의 포섭상황을 보고하도록 전달	중정~1심
강하이드론	강빈구로부터 암호문건을 받아 동백림의 이원찬에게 전달	중정
임석훈	동백림에 가서 김광옥·어준 등의 동향 제보	중정~2심
공광덕	평양입북 준비, 개인용 사서함 설치 등 지령사항을 수행	중정~검찰
김진택	동백림 방문, 선전교양을 받고 동료광부들에게 평화통일 방안선전	중정
정상구	김은영 등 재독 유학생의 동향을 파악 제보	중정~2심
하태규	임애자와의 결혼 지령 수행을 시도하는 등 지령사항 실천	중정
정성배	암호문 수령시 지시경로로 입북하라는 박협의 지시를 수락	중정
김복순	북한 동독인 공작원을 김성철의 집에 안내하는 등 편의제공	중정
황성모	북한공작원 김종근에게 유학생 명단을 우송	중정~검찰
김성철	친구 중 포섭대상자 명단 및 카스트롬 지구 한국광부 실태 제보	검찰~2심
이용로	이원찬과 포섭결과나 학교설립 기금 요청 등의 암호통신(7회)	검찰
박인경	이희세의 포섭공작상황을 암호로 보고(6회)하는 등 지령사항 수행	검찰
김광옥	귀국후 북측의 지령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검거됨으로써 간첩미수	검찰~2심
최창진	윤이상에게 과독시킬 학생을 아직 물색치 못했다는 편지를 우송	검찰

중앙정보부는 무리한 간첩죄 적용 이외에도 사건 외연 및 범죄 사실을 확대함(혐의가 미미하고 범의도 없었던 자에 대한 범죄혐의 확대, 귀국 후 對北 접촉 활동 과장, 특정사실 적용 왜곡)

- 주로 혐의가 미미한 대상자들에게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 또는 강요(기소중지 처리 및 무혐의 판결)
  - 공광덕 : 김웅·배준상·한의영 등을 포섭 기도
  - 이수길 : 주변 인물들에게 동독의 발전상을 찬양 선전
  - 김택환 : 북측 지령대로 권영훈을 포섭
  - 김웅 : 이기양으로부터 배준상의 수명을 포섭하여 이원찬에게 인계하라는 지령을 수수
  - 김성철 : 친구중 포섭대상자 5명을 보고하고 카스트롭 지구 서독 광부 실태를 보고
- 귀국 후 국내 활동부분을 증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북측과 연계된 것으로 과장·확대(최종심결과 대부분 증거미비로 무죄 판결)
  - 정하룡 : 국내 잠입 후 축소필름 제조 기도
  - 조영수 : 국내 귀국 후 妻 김옥희로부터 지득한 청와대 동향 등의 수집정보와 공작상황 보고 차 다시 渡佛, 동백림을 거쳐 再입북
  - 천병희 : 귀국 후 강두식 외 16명을 포섭하려고 기도
  - 강빈구 : 법대생 6명에게 ‘인류의 장래’라는 책으로 佛語 강의를 하면서 포섭 기도, 천상병에게 동백림 왕래사실을 발설함으로써 포섭 기도

- 김종환 : 공작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후 주거지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북괴의 활동에 동조
- 최창진 : 귀국 후 윤이상에게 서신 연락한 것을 통신연락죄를 적용
- 동백림 관련자들과의 단순 친교유지·금품 수수 등 犯意가 없었던 경미한 실정법 위반자들로의 사건 외연을 확대
  - 천상병 : 강빈구가 동백림에 다녀온 사실은 들었던 것을 가지고 암약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송치
- 북한 및 김일성에 대한 충성서약을 노동당 입당으로 해석하는 등 특정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추정
  - 강○○·김○○·박○○ :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선서, 임무수행 및 비밀엄수 선서를 노동당 가입으로 해석
  - 정상구 : 渡美후 임석훈에게 편지한 것을 안착신호로 해석
  - 윤이상 : 최창진에게 귀국여비를 보조한 것을 지령을 주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
  - 김진택 : 약 2시간 동백림 북한대사관을 다녀와서 동료 광부들에게 “동백림보다 서백림은 펍 발전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동구권을 찬양한 것으로 송치
  - 정성배 : 박협과의 친교관계 및 사적 금전거래를 “박협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았다”로 송치
  - 김종대 : 하이델베르크大 동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북측 평화 통일론을 선전(실제 이승만의 북침 통일론을 반대하던 소신을 피력한 것에 불과)

- 호기준·배준상 : 술좌석에서 북괴 적기가 합창 및 시국 비관을 북괴를 찬양한 것으로 해석
- 상기 내용을 반영, 당시 사건 담당 변호인 및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 확대되었다는 의견을 개진
  - 한승헌(변호인) : “박정희 정권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강경책으로 인해 수사발표와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
  - 박승서(변호인) : “사건 실체가 개념적으로 크게 과장이 되었는데 단순히 북한 사람 만나서 대화한 것 가지고 정보를 제공했고, 그러니 간첩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서 사건 피의자들이 북한의 입장에 신념을 갖고 동의해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 배준상(독일연행자) : “북과 연계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반면 관련 없는 사람들이 10명중 3-4명 정도 억울하게 포함되었다”

### 3) 평 가

- 중앙정보부의 수사계획서 등을 검토결과 수사착수 동기는 6.8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아니라 林교수의 자수에 따라 내사단계(67.5월하순)를 거쳐 6월초부터 본격화된 바, 기획 수사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수사발표가 이례적으로 7차에 걸쳐 실시되고 무리하게 민비연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을 두고 볼 때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수사결과 및 발표에 따라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냉각되었던 것으로 확인

- 한편, 기록검토 및 면담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사건 관련자들은
  - 동백림(50명) 및 북한방문(12명)·금품수수(26명, 각 100불~1만5,000불씩)·암호조립 등 특수교육 이수(17명)·주변인물 근황제보 및 대북접촉 주선(12명)에 이어
  - 귀국 후 안착신호 발송(3명)·A-3방송 청취(4명)·對北 再접촉(2명) 및 암호통신(2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sup>75)</sup>

○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 검찰 송치자 66명중 23명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 사건관련자들의 단순 對北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 2심 이후 간첩죄를 혐의로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공판진행에 따라 간첩죄 적용 대상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최종심 결과 적용대상자는 全無(중앙정보부 ; 23명→검찰 ; 23명→1심 ; 13명→ 2심 ; 7명→3심 이후 ; 0명)
- 기타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도 없었던 자에 대한 범죄혐의 확대·국내에서의 대북 접촉 활동부분 부각 및 특정사실 적용 왜곡 등을 통해 사건 외연 및 범죄사실에 대한 확대를 시도했던 것으로 분석

---

75) 괄호안에 통계수치는 각 범죄사실별 대상자들의 수를 합계한 것으로서 특정인이 2-3개의 범죄사실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음.

## 1) 의혹내용

6.8 부정선거에 대해 학원 등의 비판이 커지자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비연 사건을 무리하게 동백림 사건의 한 갈래로서 발표했다는 의혹

- 황성모는 “동백림 사건의 핵심은 민비연 사건에 있었으며,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작이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sup>76)</sup>

**황성모 언급내용**

- 동백림사건의 근원은 당시의 6.8 부정선거에 있었음. 물론 동백림 사건이 100% 조작된 것은 아니나 사건 관련자가 주로 유럽에 나가있는 인텔리라는 점을 고려, 처음 당국은 엄중한 경고선에서 뒤처리를 하려고 계획함
-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데모가 확산되자 정부는 방침을 급선회하여 사건을 확대, 과대 포장하기로 결정하고 민비연을 동백림 사건에 묶으려고 기도함
- 즉 “대학생데모의 배후조종을 민비연이 한다 → 민비연의 지도교수 황성모는 동백림에 다녀온 간첩이다 → 따라서 데모행위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임

※ 상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및 평가는 뒷부분 참조

- 민비연 사건 관계자 김학준은 “7대 총선 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각종 부정이 자행되어 전국적인 규탄시위가 계속되고, 특히 대학가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비연을 동백림 사건의 한 갈래로 덮어 씌었다”고 주장<sup>77)</sup>
- 언론인 전진우도 “6.8 부정선거 이후 학원 데모가 전면화 되던

76) 『신동아』 (1989년4월호)

77) 김학준, 「최종길 교수에 대한 추억」,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 - 아! 최종길 교수여』, (2002년 ‘공동선’)

시점에 민비연이 동백림 사건의 한 갈래로서 발표됨으로써 데모 분위기가 생각되었다”고 서술<sup>78)</sup>

#### 전진우 기사내용

- 6월10일 서울법대생들이 부정선거규탄데모를 벌였고, 학원데모는 곧 전면화 되었는데 신민당은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고 박정희는 대학교 고등학교의 문을 닫아 데모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으나 시위는 서울과 지방에서 재발됐음
- 동백림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이 무렵으로서 시점 상 우연의 일치라는 면도 없지 않으나 사회 지도층과 해외 유학생 등 인텔리 계층이 대거 포함된 간첩단 사건은 곧 부정선거 규탄으로 들끓던 사회분위기를 급속도로 냉각시켰고 특히 데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민비연 사건이었음
- 중정 공작반이 사건관련자를 연행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발한 것은 임씨가 박대통령을 만난 1967년5월19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6월16일이었고, 황성모의 경우 6월15일에 중정으로 연행됐는데, 이 같은 사실은 동백림 사건의 수사가 6.8 부정선거가 끝난 1주일 후, 즉 데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입증함
- 동백림사건에 대한 중정의 발표는 1967년7월8일부터 17일까지 7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음

- 북한 고위직 출신 박병엽은 “동백림 사건이 터진 뒤 진행된 총결에서 김중근이 黃교수와 만나려고 약속했다가 대상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탓에 몇 차례 실패한 사실도 검토됐다”면서 “黃교수의 對北 접촉은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sup>79)</sup>

78) 『신동아』 (1989년4월호)

79)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1993년6월, 도서출판 글)

- 그러나 이○○ 수사과장은 “황교수의 주장 등을 일축하면서 시점이 우연히 맞물렸을 뿐 동백림 사건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용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sup>80)</sup>

\*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1967년6월16일 현재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교시켰으나 6.8 부정선거 규탄데모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고 기술<sup>81)</sup>

## 2) 조사결과

### 【 政治的 기획 · 조작 】

김중태 등 민비연 회원들은 1964년, 1965년에 전개된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를 주도, 당국의 주시를 받은 한편 국민들에게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 민비연은 1963년9월경 이종률(초대회장) · 박범진 · 김경재 · 김중태 (2대회장), 현승일(3대회장) 등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후진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연구를 표방하며 발족하였고, 사회학과 황성모를 지도교수로 위촉
-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문리대의 활동적인 학생운동가들을 거의 망라했다”며 “대부분 요시찰 학생 명부에 올라있던 학생들이 조직한 단체여서 중정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다”고 기술
- 민비연은 1963년11월5일 서울대 정치학과와 김종필 사이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주도함. 당시 토론은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서 전면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주목을 끌었음<sup>82)</sup>

80) 『월간조선』 (2004년4월호)

81) 김형욱 · 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 (1977년11월, 성도문화사)

82) 김형욱 · 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 (1977년11월, 성도문화사)



- 김종태·현승일·김도현 등 민비연 회원들은 1964년에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강행에 맞서 3.24시위를 시작으로 6.3시위에서 절정을 이룬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일명 6.3학생운동)’를 주도<sup>83)</sup>
  - 1964년3월24일 서울대·연대 등을 중심으로 수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최초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개최한 것이 전국으로 파급되며 약 10일 동안 총 8만여명이 참가하였는데, 이 시위는 서울 문리대의 ‘對日 굴욕회담반대 투쟁위원회’에서 주도
  - 이 조직의 구성원은 위원장인 김종태를 비롯해 주도자 현승일, 김도현 등 관련자 상당수가 민비연의 회원이었음
  - 김도현에 따르면, 1964,65년에 이들에 대한 기사가 자주 신문에 나서 국민들에게 학생운동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함
- 1963년5월20일 서울시내 대학생과 시민 4,000여명이 모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잇달아 발생한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6월3일에 서울에서 1만2,000명의 대학생들이 박정희의 하야를 요구하며 폭발<sup>84)</sup>,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
  - 내무부장관 양찬우는 5월20일 데모의 주동은 용공적 색채가 농후한 서울문리대 씨클 민비연이 주도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배후를 혁신계 인물들이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sup>85)</sup>

83) 6.3 동지회 저, 『6.3 학생운동사』(역사비평사) 94면 및 251면 ; 김형욱·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1977년11월, 성도문화사)

84) 6.3 동지회 저, 『6.3 학생운동사』(역사비평사) 101-115면

85) 김형욱·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1977년11월, 성도문화사)

- 김종태·현승일·김도현은 6월초 치안국에 의해 구속, 내란·소요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을 인정,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민비연은 1965년8월23일 한일협정 체결 무효화를 요구하며 1만여 대학생들이 데모에 돌입, 위수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학원내 씨클을 해체시키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체<sup>86)</sup>
- 김종태 등 민비연 회원 10여명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 내란 음모·선동죄로 기소되었으나 1967년 서울고법에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 당시 지도교수 황성모도 연행되었는데,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명분은 정부전복 기도혐의였으나 실은 학생데모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술<sup>87)</sup>

기록 조사 결과 황성모에 대한 수사는 임석진 등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기타 민비연 회원에 대한 수사 개시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음

- 사건 기록에 의하면 중앙정보부의 황성모에 대한 연행조사는 임석진의 진술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판단
- 임석진은 “1961년5월23일경 북한대사관 이원찬으로부터 5.16이 일어나면서 많은 혁신계 인사가 수감되었으니 우리와 관계된 황성모가 수감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서 入東하라는 서신을 받고”
- “그 뒤에 이원찬을 만나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표정이나 태도로 보아 황성모가 이원찬과 직접 연계된 사람이 아니고 상부선과 접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sup>88)</sup>

86) 6.3 동지회 저, 『6.3 학생운동사』(역사비평사) 251면

87) 김형욱·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1977년11월, 성도문화사)

88) 1967년11월30일 1심 3차공판시 임석진 진술내용

- 그러나 기타 김중태 등 민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착수 단서는 기록상 부재
- 단지 1심 재판장 김영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검찰에서 조○○의 진술을 근거로 북측의 민비연에 대한 호감을 민비연 회원들에 대한 수사단서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상존
  - “조○○가 북한에 가니까 민비연 사람들에 대해 애국자이고 주석님의 품에 안길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 증언하자”
  - “검찰에서 이를 두고 민비연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그건 북한에서 자기들끼리 얘기 한거지 그걸 갖고 연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sup>89)</sup>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 민비연 사건은 동백림 사건과 달리 당시 학원가를 중심으로 6.8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확산된 데 따른 당국의 대응 차원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함

- 당시 구속·조사받은 민비연 관련자 대부분은 당국이 정치적 목적에서 민비연을 동백림 사건의 한 갈래로서 포함했다고 주장
  - 이종률 : “黃교수가 간첩혐의로 구속되고, 저희 민비연 간부들이 일제히 구속되었을 때 6.8 부정선거로 인한 시국경화를 수습하기 위해 또 다시 정치적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생각했다”<sup>90)</sup>
  - 김중태 : “김형욱이 박정희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학생운동이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꾸며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함임”

89) 2005년9월8일 김영준 면담내용

90) 1심 법원 제출 진술서(1967년11월28일) 내용

- 김도현 : “①황교수가 이후락 몰래 대통령을 독대한 것을 계기로 권력층 내부의 세력다툼 확대 ②민비연의 내란음모 사건이후 자신과 김종태가 윤보선의 측근이 된 점 ③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주도하는 학생운동을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몰아 약화시키기 위함임”
- 김학준 : “중앙정보부에서는 ‘황교수가 북괴의 지령으로 만든 민비연이 남한적화를 위해 각종 시위를 주도했다’며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3선 개헌을 반대하던 김종필계인 황성모를 연루시켜 김종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박지동 : “학생데모도 막고 학생데모를 보도하는 언론도 통제 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학한 黃교수를 연결고리로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민비연을 엮어 놓았다”
- 조봉계 : “동백림 피의자들이 국내에서 실제 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비연을 하부조직으로 끌어들이 필요성을 느낀 것”
- 사건의 최초 제보자 임석진도 “민비연을 그렇게 까지 다룰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나 정치적 수사였다면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김형욱의 작품일 것”이라고 진술
- 1심 재판장 김영준도 “중앙정보부에서 黃교수가 독일에서 북한 공무원에게 포섭되어 간첩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린 점에 대해 고의가 없이 수사관의 열의만을 가지고 그 같은 가공의 사건을 만들 수 있겠냐 하고 당시에도 생각했다” 진술
- 한편 황성모의 중앙정보부 1차 진술서(1967년6월16일)는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민비연의 결성·운영·해체경위를, 2차 진술서(6월16일)는 「現 학생데모 사태에 대해」 제하로 서울대 부정선거 규탄시위의 주도세력·양태·향후 예상에 대해 서술

- 이에 대해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은 민비연 및 회원에 대한 수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언급
  - 이○○(수사과장) : “조사결과 황성모는 북한과 관련이 없었는데 민비연회원을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나, 추측컨대 「黃」이 혐의를 받았으니 회원들을 조사할 수도 있었으되, 기억이 없음”
  - 김○○·이○○·모○○(수사관) : “민비연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다”

### 【 사건 實體 확대 】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 및 검찰의 공소 제기내용은 증거가 미미한 상태에서 범죄 실체를 확대·조작한 것으로 확인함

- 중앙정보부는 1967년7월11일 동백림 사건 제 2차 수사발표에서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발표<sup>91)</sup>
  - 지도교수 황성모는 독일 유학 당시 동독주재 북한대사관 요원인 김종근으로부터 북괴 찬양선전 및 교양훈련을 받고 공작금을 받는 등 북괴간첩으로 활약했고
  - 국내 귀국 후 1963년9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들을 모아 민비연을 발족시켜 북괴가 지령하는 공작사명을 수행
  - 박범진·현승일·김중태 등 20여명은 제 3공화국의 타도를 기도했으며, 1964년의 3.24, 5.20, 6.3 등 한일협정반대 불법시위를 주도함으로써 黃교수와의 모의사항을 실천
- 공소사실중 황성모의 북한공작원 김종근과의 회합·지령수수·간첩행위 여부와 관련, 「黃」이 북한인을 우연히 만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아래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91) 동아일보, 1967년7월11일자

- 황성모가 검찰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약 열흘 동안 10회가 넘는 진술서와 6회에 걸친 진술조서에서 범죄 혐의가 조금씩 덧붙여지고 내용이 바뀐 점으로 보아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황성모의 북한공작원 접촉관련 기록 검토내용**

**< 중정 수사 >**

- 6월15일 연행된 황성모는 2회 진술서(6월18일)까지는 “1958년3월경 흠볼트재단의 초대로 한달가량 서독을 여행시 동·서백림을 방문했으며, 1959년 초 동백림에서 발송인이 김중서라고 쓰여진 북한 선전물이 도달되었다”라고 진술
- 그런데 6회 진술서(6월19일)부터 “서백림 여행시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원인 김중서라는 사람과 우연히 만나 남북평화통일문제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진술
- 8-1회 진술서(6월19일)에서는 김중서의 요청으로 한국인 유학생의 실태를 보고했고 200불을 받았다고 진술
  - “구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 문제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중서는 나에게 한국인 유학생의 실태보고를 해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200불을 주었다.”
  - “1958년4월(30명), 1959년7월(10명), 1959년8월(6명) 한국학생의 성분분석과 실태를 작성,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 김중서에게 편지로 발송하였다”
- 이어서 1회 진술조서(6월22일)에서는 귀국 후 학생조직을 만들어 앞날에 대비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
- 또한, 1회 피의자 신문조서(6월24일)에서는 “김중서를 전에 알지 못하였고 처음 만났다”는 1회 진술조서(6월22일)와 달리 “김중서는 1.4 후퇴 당시 월북한 배정숙의 장남이다”고 진술

**< 검찰 수사 >**

- 황성모는 검찰에서 김중근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시종일관 부인하며, 동백림에서 발송된 북한선전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중정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교양과 지령을 받은 것으로 꾸몄다고 진술
- 황성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귀국하면 지식인, 학생층에 평화통일운동을 전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중정의견서에 대해 “지하당을 조직하여 대비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추가, 공소 제기

**< 재판결과 >**

- 김중근과 회합하고, 지령 및 금품수수, 그리고 유학생 실태를 제보했다는 혐의사실은 ‘증거 없음’으로 1,2,3,4심 모두 무죄 판결

- 또 다른 공소내용으로 황성모가 북한의 지령 실천을 위해 민비연을 조직하고 정부전복 후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기도했으며 1964년 3.24 시위 등을 조종했는지 여부와 관련, 아래 이유로 회의적으로 판단
  - 민비연은 이종률 등이 당시 이슈가 되었던 민족주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구서클이며, 최초 김영국 교수에게 지도교수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황성모를 3차례 방문하여 승낙을 얻었음이 확인
  - 황교수가 민비연 토론회에 2-3회 참석, 5-10분간 학생들의 토론에 강평을 한 것 외에 민비연을 적극적으로 지도했다는 관련 진술 미비

**북한지령에 의한 민비연 창설관련 기록 검토내용**

**< 중정 수사 >**

- 황성모는 5-1회 진술서(6월18일)에서는 1964년2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김중태가 ‘한일회담반대와 박정권 퇴진, 신정부 수립, 혁신정권의 성격’에 대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 5-2회 진술서(6월18일)에서는 “김중태와 정부수립에 관해 함께 논의했다”고 진술 방향을 조금 바꾸었으며, 6회 진술서(6월19일)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반역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 방향을 완전히 변경
- 다시 7회 진술서(6월19일)에서는 김중태를 통하여 “3.24, 6.3데모를 조종하였다”고 고백하였으며, 8-1회 진술서(6월19일)에서는 “국가전복을 기도하였으며, 본인이 기도하는 대한민국 와해공작이 어느 선까지 발전하면 북괴로부터 연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
- 1회 진술조서(6월22일)에서는 “북괴요원 김중서의 지령인 평화통일을 수행하기 위한 학생조직으로서 합법적인 투쟁을 생각하던 중 민비연을 조직토록 지도하였다”고 진술
- 한편, 6월19일에 연행된 김중태는 조사초기에는 시위 제안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 후반기에 “한일회담 반대를 위해 학생들도 현실참여의 방법으로 데모를 해야 하겠다고 한 즉, 황교수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진술(6월29일 중정 피의자 신문조서 1회)

**< 검찰 수사 >**

- 황성모는 김중태가 1964년2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데모를 통한 정권교체와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 자신은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
- 김중태는 “황교수에게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투쟁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박희범·유원식·유대명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한 것뿐이다”고 진술

- 한편, 검찰은 황성모가 “북한공작원 김종근의 지령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중략)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에 부합 동조하는 지하당으로서 (중략) 민비연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으며 다른 민비연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민비연을 함께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했다”며 7명<sup>92)</sup>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sup>93)</sup>로 공소 제기

**< 재판 결과 >**

- 민비연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이적단체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국가단체(또는 이적단체)구성,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 다만, 황성모, 김종태, 현승일에 대해서는 “민비연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선을 넘어선 과격한 데모 등을 주동하게 하여 당시의 집권세력을 타도하고 보수, 혁신,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모의함으로써 민비연을 변질시켜 반국가단체인 북괴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로 구성할 것을 모의하였다”면서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를 적용

○ 이와 관련 중앙정보부 직원 포함,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당시 민비연 사건의 실체는 없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

- 김형욱(중정부장) : “동백림사건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가 있다면 민비연을 동백림 간첩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었다. 지도교수 황성모가 독일 유학생이었다는 점에서 그랬던 것이나 전체적으로 민비연은 동백림 사건과 관계가 없었다.”<sup>94)</sup>
- 이○○(중정 수사과장) : “林교수가 말한 사람중 서울대 黃교수도 있었는데, 조사결과 황성모는 북한에 포섭되지 않았고 동백림에 여행 다녀온 것뿐이었으며”
- 김영준(1심 재판장) : “황성모가 만났다는 북한공작원은 정체불명이고 가공 공작원이어서, 중앙정보부에서 사건을 너무 가공·확대하였으며 소설처럼 만들었다”

92)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민비연 관계자 총 9명중 조봉계는 당시 현역군인으로서 군 검찰에 이첩되었고, 김학준은 기소유예로 처리됨.

93) 검찰은 1심 공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를 제기함.

94) 김형욱·박사월 공저, 『김형욱 회고록』(1977년11월, 성도문화사)



- 황성모(피의자) : “6월17일 밤, 요구에 따라 진술하는 인형으로 만들어 졌음. 북한공작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때마다 바게쓰 물과 노끈으로 위협하였고, 변소까지 끌고 가서 바게쓰에 물을 퍼 담는 것을 보고 병신이 될 것 같아서 요구대로 진술”<sup>95)</sup>
- 김중태(피의자) :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자마자 황성모가 간첩임을 다 인정했으니 너도 빨갱이라고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
- 박지동(피의자) : “이문동에 연행되자마자 황성모가 간첩인 것을 인정하라고 추궁하면서 황성모를 간첩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黃교수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추궁함”
- 김도현(피의자) : “수사관이 黃선생이 간첩이고 민비연을 조직한 사실을 「黃」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했으니 자신도 인정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르는 대로 썼음”
- 김학준(연행자) : “법원은 민비연을 순수 학술단체로 인정했고 최초 민비연 회원들이 김영국 교수를 추대하려고 했던 점으로 보아 간첩 황성모가 북한 지령대로 이적단체 민비연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주장은 결국 사실이 아님”

중앙정보부는 민비연 사건 실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에 공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강 및 再수사계획 등을 추진함

- 「일일수사상황보고」<sup>96)</sup>등의 문건 검토 결과 중앙정보부는 민비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에 고심했던 것으로 판단

95) 황성모의 1심 법원제출 진술서(1967년11월26일) 내용

96) 중앙정보부 5국에서 6월24일-7월14일간 수사상황을 일지형태로 기록한 문건

-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중 민비연 관계자 7명 전원의 구속기간이 1회 이상 연장
- 황성모의 경우 6월18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후 구속기간이 1회 연장되다가 7월6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거의 매일 심문이 실시되었고 이수길 등 10여명에 대한 비교적 많은 수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
- 또한 중앙정보부는 1심 판결 이후 「민비연 再수사계획」(1967년12월16일-1968년2월28일), 「민비연 보강수사계획」(1968년2월18일-1968년3월20일), 「증거보강수사계획」(1968년11월1일-30일) 등을 수립, 민비연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을 위해 노력
- 「민비연 再수사계획」 97)은
  - 황성모가 북괴 간첩으로서 학술 단체를 가장한 반국가단체 내지 불법단체 민비연을 구성케 하였으며
  - 민비연이 3.24 이후 학생 데모를 주도하면서 정권을 타도하고 북괴와 영합할 수 있는 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보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한편 「증거보강 수사 계획」 98)상의 조사 요령에 따르면
  - 조사대상자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추궁해야 할 사항으로 “민비연은 민족주의를 비교 연구한다는 구실 하에 발족된 이래 3.24 이후 6.3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시

97) 민비연 1심 판결이후 중앙정보부 5국에서 작성(1967년12월27일)한 문건

98) 민비연 1심 판결이후 중앙정보부 5국에서 작성(구체 일자 미상)한 문건

- 또한 보강수사 목표중 하나가 “6.3 데모는 합법 시위선을 넘어 정부 전복 위기상황이었으므로 軍이 출동하지 않고서는 사태수습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의 규명”인 점으로 보아 민비연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수사초점은 민비연과 6.3 데모와의 연계고리 파악으로 추정

중앙정보부는 민비연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기소 3일전 협박·가혹행위(2명) 등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7명)토록 하여 검찰에 추송자료로 제출함

- 7월6일에 검찰에 송치된 이종률·박지동 등 민비연 관련자 7명은 검찰이 기소하기 3일전인 7월22일에 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불려가서 “황성모가 사회주의자이고, 간첩이다”는 등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들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강제수단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 7월22일 중앙정보부 조사 관련 언급내용 >

성명	강요 수단	진술 내용
황성모	강요, 협박	· (1967년7월22일 사법경찰관에게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조서는 사실과 상이한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본인 자필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상 자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님 <sup>99)</sup>
김중태	강요, 협박	· (7월22일자 중정 진술서에 대해) 중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함 · (동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문을 당한 일이 있는가요)고문 당한 사실은 없고, 강요내지 협박에 의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썼을 뿐임 <sup>100)</sup>
현승일	강압 분위기	· (7월22자 중정 제출 자술서에 대해) 본인이 중정에서 자필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중정 수사관이 그렇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화가 미칠까봐 그렇게 기재하였음 <sup>101)</sup>

99) 1967년7월24일 검찰 신문조서 내용

100) 1967년7월25일 검찰 신문조서 내용

101) 1967년7월25일 검찰 신문조서 내용

성명	강요 수단	진술 내용
이종률	강압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22일 밤에 남산으로 끌려갔는데, 수사관 3명이 ‘시국이 경화되어서 당신들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수는 간첩인데, 간첩을 잡는데 협조해라’ ‘고문을 당하고야 쓰겠느냐’고 협박하면서 준비한 메모를 받아쓰라고 강요하여 불러주는 대로 작성<sup>102)</sup></li> <li>· (진술서를 폭력이나 고문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가요) 직접 폭력이나 고문을 당한 사실은 없으나, 분위기가 살벌하기 때문에 묻는 내용대로 따라서 진술했을 뿐임<sup>103)</sup></li> </ul>
박지동	뺨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산 조사실에 가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밤 12시가 지나서 자기들 과장에게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황교수를 간첩이고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한 내용을 쓰라고 하여 받아썼음<sup>104)</sup></li> </ul>
김도현	강요,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22일자 자술서에 대해) 증정에서 강요하여 작성한 것임</li> <li>· (진술서 작성 시 고문을 당했는지) 고문받은 사실은 없음</li> <li>· (그렇다면 강요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본인 생각에 상당히 불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음<sup>105)</sup></li> </ul>
김학준	신체적 가혹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에 남산 조사실로 옮겨진후 수사관 2명이 미리 작성한 자술서를 내밀면서 “당신 손으로 베껴서 제출하라”고 요구, 베껴쓰기를 거부하자 발가벗긴채 비행기 타기 등의 고문을 받아 허위진술서를 작성했음<sup>106)</sup></li> </ul>

- 민비연 관계자들의 위 7월22일 진술서는 신체적 가혹행위(2명) 및 협박 등에 의한 허위진술로 판단되며, 중앙정보부는 황성모 등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연계와 국가전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자, 공소 제기를 위해 강압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102) 1심 법원 제출 진술서(1967년11월28일), 이종률은 1심 4차 공판(1967년12월7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

103) 1967년7월25일 검찰 신문조서 내용

104) 1심법원 제4차 공판(1967년12월7일). 박지동은 위원회 면담조사(2005년6월1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

105) 1967년7월24일 검찰 신문조서 내용

106) 2005년5월13일 김학준 면담내용

### 3) 평 가

- 황성모 등 민비연 관계자에 대한 공소사실,
  - 즉 황성모가 독일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수수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점, 귀국후 북한의 지령 실천을 위해 민비연을 조직하고 정부전복 후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는 점, 또한 민비연이 황성모의 지시에 따라 1964년 3.24, 6.3시위 등을 일으켜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 중앙정보부가 협박 및 신체적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을 강요, 혐의내용을 확대 조작한 것으로 판단
- 황성모에 대한 수사는 黃교수와 북측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임석진의 진술로 착수된 것으로 판단되나
  - 중앙정보부에서 황성모의 범죄사실을 강압수단으로 왜곡조작한 점, 민비연과 그 회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 점, 민비연을 동백림 사건에 포함시켜 발표한 점은
  -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대학생들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
- 민비연 회원들이 1964년 3.24, 5.20 등 주요한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했으며 김종태·현승일·김도현은 당시 국민들에게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감안,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한다면 6.8 부정선거 규탄데모를 주도하는 학생운동에 큰 타격을 주는 소재였을 것으로 판단

## 1) 의혹 내용

## 【 불법 납치 】

해당국과의 외교마찰을 사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프랑스 등에서 혐의자들을 무리한 방법으로 국내 연행했다는 의혹

- 중앙정보부가 서독·프랑스 등 해당국과의 외교마찰을 사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건 관계자들을 국내 연행
  - 강준만은 “서독과 프랑스 정부가 한국정부의 강제연행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영토주권의 침해이자 납치행위라고 비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기술<sup>107)</sup>
  - 전진우는 “서독에서는 한국유학생과 이에 합세한 서독대학생들이 한국 정보기관의 유학생 납치에 항의하는 데모를 벌였으며, 서독 경찰은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한국인 태권도 사범 김某와 광부 박某를 체포했다”고 소개<sup>108)</sup>
- 당시 중앙정보부 관련자 등도 8.15 경축행사 참석 권유 등의 거짓말로 해외 혐의자들을 국내 연행해왔다고 언급
  - 이○○은 “8.15 경축행사에 동포들을 초청한다면서 외무부 장관 명의의 초청장으로 유인해 왔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고 회고<sup>109)</sup>

107)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60년대 제 3권』 (2004.9월, 「인물과 사상사」)

108) 『신동아』 (1989년4월호)

109) 『월간 조선』 (2004년4월호)

- 변호사 한승헌은 “이응로 화백이朴대통령 재선행사에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한 유공자로 초청한다기에 따라왔는데, 것처럼 대통령의 이름까지 판 속임수가 더욱 꾀뽀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언급<sup>110)</sup>
- 당시 해외에서 연행된 이수길 등은 연행과정에서 폭력·마취제 등 강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증언
  - 이수길은 “당장 국내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수사관이 내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와 등을 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지팡이가 부러져 나는 한국에 갈 것이니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다”고 진술<sup>111)</sup>
  - 이수자는 윤이상의 연행에 대해 “함부르크 공항에서 그들이 먹인 약물의 영향인지 모르나 이미 정신이 몽롱해진 남편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행기에 탔다”고 전언<sup>112)</sup>
- 한편, 언론인 조갑제는 “임석진 교수에 의해 신고된 23명이 194명으로 확대되는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고 소개<sup>113)</sup>하는 등 연행 대상자를 엄선하지 않고 체포해왔다고 주장
- 그러나 김형욱은 1차 수사 발표시 “서독과는 범인 인도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못하므로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려왔다”고 주장

## 【 海外 기관과의 협력 】

해외기관과의 사전 제보 내지 협조 하에 연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110) 한승헌, 『불행한 조국의 임상노트 - 한승헌 변호사 회고록』 (1997년6월, 일요신문사)

111) 이수길, 『한강과 라인강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 (1997년11월, 지식산업사)

112)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113)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8권』 (조선일보사, 2001년12월)

- 윤이상의 妻 이수자는 “한국정보부원 50여명이 독일에 들어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독일기관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독일 기관의 공동작업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주장<sup>114)</sup>
- 독일인 「하노버」 변호사도 “독일내 한국인 연행에 대해 독일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독일 검찰의 사후 조사도 형식적이었다”고 주장<sup>115)</sup>

**「하노버」 변호사 주장내용**

- 함부르크로 가는 편을 서술하겠는데, 거기서도 여권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공항의 출국통제를 지나쳐서 일본항공(JAL) 기내에 올랐음
- 다른 보도에 따르면, 독일기관의 도움으로 납치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확인되었다는 정보도 들렸으며 중정요원들이 한국인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경계감시하는 것이 독일측 임무였다는 것임
- 주검찰이 주도하던 수사활동을 모두 끌어간 연방검찰은 빠른 속도로 “독일기관은 이번 납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또한 납치사건과 관련된 연방검찰청과 외무부의 모든 사항을 최고의 비밀사항으로 분류, 보호케 했음
- 윤이상의 친구 「트라비스」는 속달편지로 연방검찰청에 윤이상의 ‘자발적 여행’에 반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연방검찰로부터 답신도 받지 못했음

- 최덕신은 “자동차로 프랑스에서 본까지 압송한다 해도 스위스·룩셈부르크 등 몇몇 나라의 국경을 지나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 외교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서 서독, 나아가 다른 나라 기관의 협조와 묵인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언급<sup>116)</sup>

114)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115) 하인리히 하노버, 『법정안에 선 공화국-1954-57년』 (2001년, Aufbau Taschenbuch 출판사)

116) 『옵저버』 (1991년4월)



- 이수자는 “그때 일본 기관이 이 사건에 관계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왜냐하면 동경에 착륙했을 때도 여권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일본 기관의 협조설을 제기<sup>117)</sup>
- 그러나 이○○은 “그쪽 나라 경찰에 의뢰를 안 한 것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고 언급<sup>118)</sup>

## 2) 조사결과

### 【 海外 여행계획 수립·실행 】

朴대통령이 해외 관련자 여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하자 중앙정보부에서 외교문제 등을 간과하고 해외 불법여행을 결행함

- 임석진의 자수 이후朴대통령은 김형욱 등 중앙정보부 지휘부에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를 없애라”고 지시<sup>119)</sup>
- 이후 중앙정보부는 국내외 관련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V-318 수사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6월7일 해외 혐의자 23명을 체포·여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 실행에 착수
- 이와 관련 일부 사건 관련자들은 해외 혐의자 체포 여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김형욱을 지목
  - 임석진(자수자)은 “당시 대통령의 신중한 경청 자세로 보아 설마 유럽까지 가서 관계자들을 잡아올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117)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118) 『신동아』 (1989년4월호)

119) 2005년7월23일 이○○ 면담내용

이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위임을 받은 김형욱 부장의 소치였다”고 진술

- 이○○(해외담당 국장)는 “나는 파견관이 해외연행에 동원되는 것은 신분노출로 해외활동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반대했으나 김형욱은 간첩단 사건이니 일망타진해서 모두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언급
- 당시 중앙정보부는 해외에서의 수사활동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
  - 공작 계획서<sup>120</sup>)에 주재국 당국의 감시·검문을 피하기 위해 외교관 차량, 해외 주재 공관을 활용하고 공항내 여행수속도 현지 외교관이 대행토록 조치
  - 주불 파견관앞 지시전문에서 “「GK-공작」에 대한 물의야기가 예상되고 있어 주재국 기관이나 적들에게 물적 증거가 포착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할 것”을 지시<sup>121</sup>)
- 당시 중앙정보부의 해외 연행 필요성 및 연행대상자 선정에 대해 외교문제 발생 소지를 간과했다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정보수사 기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는 시각이 대립
  - 이○○(해외담당 국장) : “대규모 해외연행은 정보사에도 없는 일로서 문제발생 소지를 알면서도 다 잡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박승서(변호인) : “그들의 행동에 비해서 너무 삼엄하게 처리했다. 특히 절차적으로 볼 때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들의 잘못이 그렇게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120) 1967년6월7일 중앙정보부 작성 「GK-6717 공작계획」 내용

121) WFR-704(1967년7월1일) 지시전문

- 조명훈(독일 연행대상자) : “동백림 사건에 대한 평가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한마디로 유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 중앙정보부로서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그때 안했으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함”

중앙정보부는 독일·프랑스 등에서 관련자들을 불법 연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엄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대함

- o 당시 사법처리 경과를 살펴보면, 해외 연행자 30명중 검찰에 의해 16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9명만이 실형을 살았던 점을 감안할 때 해외연행자 선정상의 적합성이 문제점으로 대두

**< 해외연행자 사법처리 현황 >**

구 분	대상자 성명	
	실형(9명)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7명)
기소자(16명)	정규명, 정상구, 윤이상, 최정길, 임석훈, 김성칠, 이웅로, 박성욱, 공광덕	강혜순, 김종대, 이수자, 박인경, 김복순, 김진택, 정성배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14명)	배준상, 김택환, 김웅, 이수길, 피추자, 박성조, 김석연, 한철수, 심상필, 성두영, 윤재은, 하태규, 문수득, 정종화, 임현정	

- o 이와 관련 임석진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단 1명이라도 구제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한 반면, 이○○은 “연행 대상자를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더 이상 뺄 것도 보탬 것도 없었다”고 주장<sup>122)</sup>

중앙정보부는 「GK-공작계획」에 의거 국내 수사관들을 해외에 파견, 필요시 해외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한 채, 유인 또는 설득불가시 강제수단까지 사용하면서 국내 연행하려고 계획함

<sup>122)</sup> 임석진(2005년9월7일) 및 이○○(2005년7월26일) 면담내용

- 중앙정보부는 「GK-공작계획」에 의해 당초 본부 파견인원·현지 파견관·협조자 등 총 49명을 동원, 해외 혐의자 23명을 구라파 5개진, 미국 1개진으로 나누어 국내 호송하려고 시도
- 중앙정보부는 연행 대상자를 혐의정도에 따라 X, Y 망원으로 분리<sup>123)</sup> 하고 연행 대상자별 성분에 따라 A, B, C, D급<sup>124)</sup>으로 구분

**「GK 공작계획」 - ①목표 및 임무**

- 목적 : 북괴의 X, Y를 압송 호송
- 상황
  - 1959-66년간 임석진은 재독기간중 동생 임석훈을 비롯하여 그의 망내에 이기양 등 17명(귀국 4명, 불란서 2명, 미국 3명, 영국 1명, 스위스 1명 거주)을 포섭하여 공작망을 조직, X활동을 계속
  - 임석진은 자신이 직접 포섭한 X망외에 또 다른 공작망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추측되는 서독내 김희수 등 7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
  - 임석진은 상기 북괴 X 및 Y외에 국내거주자 11명이 X 또는 Y로 판단된다고 진술
- 목표
  - 서독지역 : X망원(조명훈, 공○○, 이기양, 김종대, 정○○, 강○○, 임석훈, 윤이상, 김택환, 김○○ 등 10명), Y망원(이○○, 권○○, 강○○, 이수길, 박○○, 김○○ 등 7명)
  - 불란서(X) : 이용로, 박인경 2명
  - 영국(X) : 임○○ 1명
  - 스위스(X) : 최○○ 1명
  - 미국(X) : 강○○, 하태규, 정○○ 3명
- 임무 : 공작관은 현지 파견관과 대사관의 협조 하에 목표인물들을 검거 호송
- 공작망 편성 : 본부 파견 직원(19명), 현지파견관(8명), 현지협조자(22명)

- 同 공작 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D-9일부터 본부인원을 유럽 지역에 3진으로 나누어 파견,
  - D-데이<sup>125)</sup> H시를 기해 일제히 검거를 개시, 유인 또는 강제수단 등으로 대상자들을 독일 본 및 함부르크로 집결시키며

123) 임석진의 진술에 의거 X망원(임석진이 직접 포섭한 자 : 17명), Y망원(다른 공작망에 포섭된 자 : 7명)으로 구분, X망원을 우선 송환하고 Y망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현지 파견관으로 내사케 한다’는 방침 하에 진행함.

124) 피의자별 성분조사 결과를 토대로 A(설득불능, 강제송환이 요구되는 자), B(설득여지가 있으나 강제송환을 필요로 하는 자), C(설득귀국이 가능한 자), D급(대체적으로 설득 귀국할 수 있는 자)으로 구분함.

125) D-day는 6월19일

- 필요시 서독 기관과의 협조까지도 계획

「GK 공작계획」 - ②공작요령

- 파견 및 협조
  - 파견 : 선발대는 D-9에 4명이 출발하여 D-7에 목적지에 도착하며 제 2진은 D-7, 3진은 D-6에 출발, 목적지에 도착
  - 협조
    - 서독주재 파견관은 주재국과의 협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강구
    - D-10까지 공작수행의 필요한 사항(여건분석, 설득 유인에 필요한 부모친지의 사신 등)의 제반 준비를 완료
    - D-5까지 주독 파견관은 목표인물들을 수행키 위한 공관사용 문제와 적절한 안가 1동을 하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 인원배치
  - D-5에 현지 도착한 파견관들은 현황과약후 협조자들과 같이 D-4에 예정된 지역에 배치
  - D-3~D-1에 파견관 및 협조자는 목표인물에 대한 주소 및 일상 근무코스를 확인 하고 D일에 접촉할 장소와 연행 예정지를 선정
- 일제 검거 : D데이 H시를 기해 파견관은 일제히 검거를 개시, 유인 또는 강제수단 등으로 이들을 본으로 집결
- 수용
  - 수용 배치(함부르크총영사관 1, 안가 3, 한국대사관 9명)
  - 함부르크 총영사관에는 조명훈을 수용
  - 안가에는 각 지역 집결자중 협조적인 자 3명을 수용하고 한국대사관에는 잔여 인원을 수용

○ 「GK-공작계획」에 의한 수송요령 및 비상시 대책을 살펴보면

- 각 지역-중간 집결지간, 서독-서울간, 미국-서울간 차량 및 항공기를 통한 수송계획에 대해 발생 가능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 형태로 준비
- 특히 비상시 대책으로 대상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폭력 사용 시 대응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전 준비토록 계획

「GK 공작계획」 - ③호송 및 비상책

- 각 지역 - 집결지간 호송요령
  - 각 지역내 목표인물을 집결지로 호송시 차내에서 연행을 거부하고 완력행사의 우려가 있을 시 사전 준비한 마취제를 이용, 환자를 가장시킨 후 강제호송
  - 차량 운송중 교통사고 또는 소동 등으로 현지경찰관이 접근시 차내에서 친우간에 과격한 언동을 하는 것 같이 가장, 마취제를 쓰고 운전수는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 위기를 모면
  - 항공편을 이용 수송시 완강히 탑승을 거절할 우려가 있는 자는 알콜 또는 마취제로 신경을 마취시키거나 또는 환자로 가장하여 각기 분리 탑승(현지 실정에 따라 변경)
  - 불란서에서는 목표인물 2명을 차량 2대(필히 외교관차)로 각각 분승 호송하고 독불 국경선 인근에서는 알콜 또는 마취제를 이용 환자를 가장시켜 본으로 압송
  - 미국에서도 서독에서와 동일한 요령으로 뉴욕 총영사관으로 호송
- 서독 - 서울간 호송
  - 수송경로 : 함부르크-앵커리지-동경-서울
  - 항공기 탑승요령 및 기내 감시
    - . 소동야기에 대비하여 모든 여행수속은 현지 공관원이 대행하고 항공기 출발직전에 공항에 도착, 탑승
    - . 피호송자들을 탑승시킨 후 기체 내에서 각종 위험물을 확인 제거하고 특히 기내 포크 및 나이프 등에 유의
- 미국 - 서울간 호송
  - 수송경로 : 뉴욕-동경-서울
  - 항공기 탑승요령 및 기내 감시 : 상동
- 비상대비책
  - 피의자를 압송 시 반항 또는 폭력행위에 대비하여 호송관들은 마취약 취급요령과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마취제를 준비
  - 함부르크 공항에서 서울로 호송시 각종 사고로 호송이 불가능하게 될 시에는 피의자들을 아국 공관 또는 안가로 수용하여 장기적으로 송환설득 공작을 실시
  - 지휘본부에는 만약에 대비하여 권총 3정과 수갑 20개를 준비

○ 한편, 유럽파견 특수 공작팀에 대한 교육자료가 상기 공작계획의 별첨자료로 작성

- 호송요령 · 미행감시 · 연락수단 · 검거요령 · 현지정세 등을 상세히 강의
- 「호송 및 검거 요령」 항목에 호송관의 신분 및 활동가장 방법과 유인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상시 강제수단으로 호송 장구 및 약품 등의 사용법까지 교육

- 또한 「GK-공작」은 최초 임석진의 진술을 토대로 수립, 시행되다가 혐의자 추가 파악 등으로 기본계획이 수차 수정되었는데,
  - 북괴 X망원 증가(12명)를 감안, 본부직원 4명을 서독에 2차(6월19일) 파견한 데 이어, 3차(X 12명 증가, 4명 追派) 및 4차(X 13명 증가, 12명 追派) 등 북괴 X망원 48명에 대해 39명의 본부직원을 파견하였고
  - 이 과정에서 未체포 8명·중도 無혐의 증명으로 검거 취소자 10명이 발생

< 담당관 파견 및 X 증가 일람표 >

구 분	본부직원 증가	X 증가
1 차	19	23
2 차	4	-
3 차	4	12
4 차	12	13
계	39명	48명

대부분 거짓말 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으나 일부 대상자의 경우 대사관에서의 감금 및 폭력 등을 통해 강제 연행함

- 사건 관련 중앙정보부 등의 존안 문서 검토 결과, 대부분의 귀국자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귀국하였고 이응로 부부 등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써서 귀국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
  - 외교부 존안문서<sup>126)</sup>에 의하면 독일에서 귀국한 17명 전원이 자의로 귀국하였고 특히 임석훈(친형의 권유)·강혜순 및 이수자(남편의 권유)는 제 3자를 통한 권유에 의해 귀국한 것으로 기록

<sup>126)</sup> 외교부 생산 ‘재판관계 전문철’에 ‘GK 사건 서독귀국자명단’제하 도표 형태로 작성됨.

- 중앙정보부 본부-해외거점간 전문 상에 이수길<sup>127)</sup> 및 이응로 부부<sup>128)</sup>가 정부초청 형식으로 국내 귀국하였다는 기록이 존재

○ 또한 1967년 일자미상 주독거점에서 작성한 「서독지역 파견관 활동내용」에 의하면 서독지역 귀국자(16명) 모두가 자진 귀국하였다고 기록

< 서독지역 대상자별 귀국 경위 >

대상자	활동내용	출국일자
임석훈	·형의 서신을 보고 귀국할 것에 동의, 자진 귀국케 함	67.6.18
윤이상 이수자	·유명한 음악가로 본국에서 숭배되고 있는 인물이므로 전과를 뉘우치고 조국에 봉사를 권유, 본인 동의 하에 자진 귀국케 함	67.6.19
정규명 강혜순	·학자로서 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유, 자진 귀국기로 함	67.6.18
김종대	·북괴와 접선사실을 시인하나 이론투쟁을 전개했으므로 본국에 자진 해명하겠다고 주장, 귀국함	67.6.19
김택환	·자진귀국 해명하겠다고 자유의사 표시함	67.6.19
김용	·범죄사실 부인, 결백함으로 자진 귀국 해명기로 함	67.6.18
배준상	·본인은 결백함으로 해명키 위해 자진 귀국함	67.6.21
이수길	·범죄사실을 부인, 국가유공자라고 자부, 당장 귀국 해명하겠다고 나섬	67.6.21
최정길	·범죄사실 시인하나 본국에 가서 심판받겠다고 자진 귀국함	67.6.21
박성옥	·귀국권유에 순응, 자진 귀국함	67.6.22
김성철	·귀국권유에 순응, 자진 귀국함	67.6.28
김진택	·귀국권유에 순응, 자진 귀국함	67.6.27
피추자	·귀국권유에 순응, 자진 귀국함	67.6.26
박성조	·귀국권유에 순응, 가족동의 하에 귀국함	67.6.29

○ 당시 중앙정보부 관련자들은 해외에서의 혐의자 연행은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였다고 인정한 반면, 폭력·마취제 등을 동원한 불법 납치는 없었다고 주장

127) 1967년6월17일자 WGE-652 지시전문

128) 1967년6월18일자 WJA-6228 지시전문



< 중앙정보부 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이○○	수사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국에서 외교부와 협조하여 8.15 광복절<sup>129</sup>에 해외 동포들을 초청한다는 명목하에 데려왔는데 유인 납치다, 주권 침해다 하며 문제가 되었으나 사술이긴 하지만 자의에 의해 귀국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li> <li>·모두 자기 발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강제 및 불법납치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설득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았음</li> <li>·완력이나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음</li> </ul>
이○○	해외담당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행사 초청 등 거짓말을 해서라도 연루자들을 일단 국내에 데리고 들어온 후 체포 및 수사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 최대한 조용하게 관련자들의 국내 입국 작업을 지원함</li> <li>·납치는 절대 불가한 실정이었고 독일공항에서 1명이 고함을 치며 도망친 것 말고는 소동이 없었고 폭력·마취제는 사용되지 않음</li> <li>·거짓말을 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연행자들이 서울에 와서야 자신이 체포되고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깜짝 놀랐음</li> </ul>
최○○	수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정직원을 서독 등으로 파견하여 현지 파견관과 합동으로 대상자들을 접촉하여 국내 8.15 경축행사에 참석하라고 속여 연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신○○	수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8.15 경축행사에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하라고 속여 연행함</li> </ul>
김○○	수사관 해외파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이상, 이응로·박인경 등은 8.15 경축행사 참석초청이라고 속여 연행하였고 그 외 다수 유학생들은 대사관에서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속여 연행한 후 駐서독 한국대사관에서 2-3일 신문 후 국내로 호송함</li> </ul>
모○○	수사관 해외파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연행시 강제성을 띠었다거나 문제소지는 없었고 이응로 같은 분을 속여서 데려왔음</li> </ul>
정○○	수사관 해외파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명 체포 시 노무관의 협조로 대사관에서 확인 사항이 있다고 속여 대사관으로 연행하였고 저항 없이 자진 귀국의사를 표명함</li> <li>·윤이상은 대사관에 연행된 후 밀입북, 지령수수, 유학생 포섭 사실 등 범죄사실 일체 확인 후 국내 호송함</li> <li>·윤이상에게 북측과 관련된 일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이 얼마나 걸릴거냐고 물어서 열흘 정도 걸릴거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윤이상이 가겠다고 답변함</li> <li>·윤은 음악가로서 자신의 불명예를 염려하여 함부르크공항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별다른 저항은 없었음</li> <li>·불란서 체류 피의자 정성배 체포·연행시 저항은 없었으며 술도 함께 마시는 등 임의동행이었다고 언급함</li> <li>·서독, 불란서 등 해외체류 대상자 체포·연행시 피의자들에게 대사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속여 연행한 사실 이외 수감, 마취제 등을 휴대,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li> </ul>

- 당시 연행대상자(총 14명)에 대한 면담 결과, 거짓말을 포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식으로 귀국했으며 일부는 한국대사관에 연행된 상태에서 폭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한국행에 동의했었다고 주장
  - 임석훈 등 8명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현장에서 ‘동백림사건 등과 관련 문의할 게 있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귀국
  - 반면, 윤이상 및 이응로 부부는 8.15 경축행사 초청 등 거짓말에 넘어갔으며, 김택환·이수길·김종대 등은 식사초대 등으로 유인되어 연행
  - 특히 이수길·박성옥은 대사관에서 한국행을 거부한 탓에 폭력으로 위협을 받은 끝에 귀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 연행대상자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임석훈	독일연행자	·서구 민주국가에서 체포는 불가능하며 본인은 사전 동의하에 즉 임의동행 형식으로 한국에 왔음 ·다른 사람들도 불법 체포를 당해서 강제 연행당한 것 같지는 않으며 김영철의 경우 공항에서 도망을 쳤는데 이는 불법 연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
김종대	독일연행자	·하이델베르크 소재 유학생이 자가에서 오찬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던 중 동향출신의 관광객이라고 신분을 위장한 중정요원이 차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제안에 넘어가 탑승하자, 잠복한 3명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한국대사관으로 연행됨 ·본인의 경우 거부하지 않은 탓인지 특별히 폭력이나 마취제가 사용되지 않았음 <sup>130)</sup>
김택환	독일연행자	·뮌헨대 박사과정 논문 구두시험을 앞두고 한국에서 온 손님이 점심을 사준다고 대사관으로 유인, 동백림 방문경위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함 ·대사관에서 김택환에게 유학생 가운데 지도자급이므로 한국에 가야 한다고 달래서 흔쾌히 승낙함
성두영	불란서 연행자	·대사관에서 왔다며 가자고 하여 대사관에서 하룻밤 잔 뒤 김석연·심상필 등 3명과 함께 입국함

129) 사건 관련자들은 ‘8.15 경축행사 초청’ 등의 거짓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연행시점 및 1967년6월 17일자 중앙정보부의 주독과건관앞 지시전문 등을 감안시 1967년7월1일 개최된 ‘박정희 대통령 재선 축하행사 초청’ 명목으로 유인된 것으로 판단됨.

130) 이수자는 김종대의 연행과정에 대해 “말을 듣지 않자 안내인이 태권도 실력을 발휘, 하이델베르크 역전에서 옆차기로 그를 제압하는 과정을 수많은 독일인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종대 본인은 “그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배준상	독일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 알고 있던 양○○ 참사관이 찾아와 ‘맥주 한잔하자’고 하여 양참사관이 타고 온 차에 동승했더니, 2명이 함께 있었고 ‘본대사관에 가서 물어볼게 있다’며 본대사관으로 데리고 갔음</li> <li>·본대사관에서는 본국에서 나온 중정 수사관임을 밝힌 사람이 ‘조사할게 있다, 일주일이면 된다’고 귀국을 요구하여 승낙함</li> <li>·강제귀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정의 요구를 거절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압박도 느꼈기 때문에,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승낙한 것임</li> </ul>
이수자	독일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편 윤이상이 납치된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 새 문화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인들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간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한다는 전화를 받아서 이튿날 대사관에 갔음</li> <li>·대사관에서 수사관이 “닷새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할 테니 가자”고 하여 따라나섰으나 강압은 없었음</li> </ul>
박인경	프랑스 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사관 공사가 찾아와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 축하연을 여는데 외국에서 공로가 많은 분들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해서 따라 감</li> <li>·공항에서 가족을 상봉하고 집으로 가는 줄 알았으나 공식 행사가 끝나야 한다고 해서 가족과 헤어지고 곧바로 남산을 돌아서 이문동으로 갔음</li> <li>·연행과정에서 마취 등 폭력은 없었으나 영문도 모르고 왔음</li> </ul>
김성철	독일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무관과 중정직원 2사람이 와서 “동백림에 갔다 왔지 않냐”고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다음날 함부르크로 데려 가서 도쿄를 거쳐 귀국함</li> </ul>
정성배	프랑스 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공사가 중정직원을 안내했으며, 이들이 보자마자 잡아서 차에 태우고 대사관으로 데리고 갔음</li> <li>·수사관이 박협과 어떤 짓을 했냐는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질문에 부인하면 손으로 적당히 때리기도 했고, 하룻밤을 자고 본과 함부르크 공항을 거쳐 귀국함</li> </ul>
하태규	미국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싱턴 대사관의 최모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7대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니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 달라”면서 한국에 가자고 해서 응낙했음</li> <li>·자신은 적성국가 대사관을 간 것 말고는 활동한 게 없어서 죄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귀국을 흔쾌히 수락했으나, 미국에서 출국할 때와는 달리 동경에 가서 잡혀간다는 분위기를 느꼈음</li> </ul>
이수길	독일연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참사관, 황모 부국장, 수사관 1명이 자택으로 찾아와 밥을 먹고 카지노로 가자고 속임수를 써서 대사관으로 연행됨</li> <li>·대사관에 도착하자 3층 노무관실로 안내되어 동백림 출입건으로 인한 한국행을 권유받고 거부한 탓에 결혼반지가 튕겨 나갈 정도로 지팡이로 얻어맞고 한국행에 동의하였음.</li> <li>·강제로 붙들려 간 것으로 대사관에서 데리고 가니까 안갈 수 없었음</li> <li>·박성조는 대사관 사람이 찾아가 혐의를 설명하고 한국행을 권유하자 자진 동의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간 것임</li> </ul>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김진택	독일연행자	·최모 노무관이 숙소로 찾아와서 차에 탔더니 “동백림에 다녀 온 것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고 대사관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가야 한다”는 말에 특별히 지은 죄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한국행을 결심함 ·공항에서 마음만 먹었다면 도망갈 수 있었으나 특별히 도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함
박성옥	독일연행자	·1967년6월 광산에 찾아온 이모 노무관 등이 맥주 집에 가자고 해서 차에 탔더니 “정규명이 이미 실토했다. 협조해라”면서 대사관으로 데려감. ·본인의 경우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연행되었던 점에서 강제 연행이라고 생각함 ·대사관에 연행된 후 수사관으로부터 북한대사관에 다녀왔는 지를 집중 탐문받았으나 부인하였던 탓에 발로 채이고 야전 침대다리(목재)로 구타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토함 ·함부르크 공항에서 공항 안전요원에게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수사관이 옆에 붙어 있어 기회를 놓쳤고 결국 일본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들어옴
김복순	독일연행자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독일정부에서 물으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는 부탁을 받아 실제 독일정부에 아무 이야기도 안했으며, 대사관에서 한국에 갈 의향을 묻자 독일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음

## 【 해외 기관과의 協力 여부 】

연행과정에서의 獨·佛 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함

- 1967년6월15일 주독 거점의 보고문건<sup>131)</sup>상에 “독일기관 및 경찰협조 불가함으로 은밀 활동 전개, 현지경찰과 마찰시 case by case로 해결” 문구로 보아 「GK-공작」 초기단계에서 獨 기관과의 협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6월20일 중앙정보부 본부의 서독파견 특수공작팀장 앞 “모든 검거 호송은 극비리에 진행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독일

131) 1967년6월15일 GEW-0662 보고전문

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는 지시내용<sup>132)</sup>으로 볼 때 공작 진행과정에서 독일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은 제기

- 그러나 7월4일 중앙정보부 본부는 주독파견관에게 “서독거주 교포와 유학생이 권유에 의해 자의로 합법적으로 출국하였다”는 내용을 독일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전달하라고 지시<sup>133)</sup>한 것으로 보아 중앙정보부·독일 기관간 협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이를 반영 일부에서 함부르크 공항에서의 물의 없는 출국과정 등을 근거로 독일기관의 협력 개연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관계자들은 협력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

< 사건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이○○	해외담당 국장	·독일기관에 사전에 제보한 적도 협조를 받은 적도 없으며 만약 그랬었다면 독일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용인했었겠는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다른나라 기관이 그렇게 하려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용인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
김○○	중정 수사관 (독일파견자)	·당시 해외 체류 대상자들의 연행은 남의 나라에 가서 수사행위를 하는 불법행위이니까 서독기관에 발각될 가능성이 있어 서독 기관 모르게 비밀리에 실시하였음
이수길	독일 연행자	·공항에서 출국수속시 여러명의 독일사람들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독일 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행했던 수사관이 “입을 열지 말라”고 하여 묵묵히 탑승함

- 한편 1967년7월1일 중앙정보부 본부의 주불파견관앞 지시전문<sup>134)</sup>상의 “파견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에 물적증거가 포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라는 문구로 보아 프랑스 측과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132) 1967년6월20일 WGE-660 지시전문

133) 1967년7월4일 WGE-714 지시전문

134) 1967년7월1일 WFR-704 지시전문

### 3) 평 가

- 중앙정보부의 해외 관계자(30명) 연행은 당시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朴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결행한 것으로 추정
- 중앙정보부의 해외연행은 실정법 위반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국의 주권침해 소지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강행된 불법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獨·佛과의 외교마찰까지 초래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중앙정보부는 해외 연행자 30명중 16명이 기소되었고 9명이 실형을 받았던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행 규모를 확대했던 것으로 평가
- 한편 중앙정보부는 「GK-공작계획」에 따라 수사관들을 해외에 파견, 필요시 해당국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한 채 유인 또는 설득불가 시 강압수단을 사용, 강제 연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
- 그러나 실제 연행과정을 살펴보면
  - 현재 보존된 기록상으로는 독일연행자 전원이 자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보부 관계자들도 폭력·마취제 등을 사용한 강제 연행설을 부인하는 등 형식상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 여타 기록 및 당시 연행대상자 14명에 대한 면담 결과, 국내 초청 (이수자, 박인경 2명) 및 식사초대(이수길, 김종대 등 4명) 등의 거짓말에 의해 대사관으로 유인된 후 일부는 폭력 등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행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마취제 등으로 불법납치된 것은 아니나, 실제로 강제 연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
  
- o 해외 기관과의 협력 의혹과 관련, 독일 및 프랑스 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됨

## 1) 의혹내용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

- 언론인 조갑제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은 194명 중에는 고문과 관련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
  - “임석진과 그의 동생들처럼 당국에 자수하여 조사에 순순히 응했던 사람들과 청와대 등 상부 요인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거의 고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 “반면, 윤이상처럼 혐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고문의 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35)</sup>
- 최덕신은 “朴 정권은 납치해온 지식인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재판에 회부, 사형을 포함한 각종 형벌을 안겼다.”고 주장<sup>136)</sup>
- 윤이상은 1989년3월 남북음악축전을 계기로 귀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여년전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해 한국정부의 사과를 요구
  - “지은 죄를 자백할 테냐. 나는 죄지은 바가 없다. 이렇게 물고문이 6,7차례 계속 될 때마다 주사를 맞았다”

135)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8권』 (『동백림 사건의 진실』, 조선일보사 2001년12월)

136) 『읍저버』 (1991년4월)



- “2일째 고문을 받던 날 밤 남편은 불현듯 귀에 익은 독일에서 본 최대사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도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sup>137)</sup>
- 김학준은 “가족면회와 변호사 접견 등이 모두 금지된 상태에서 밤이면 교도소로부터 남산으로 끌려가 반죽음을 당했다.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해 기절도 하고 허위자백도 했다”고 언급<sup>138)</sup>
  - 천상병 시인은 “정보부에서는 나를 3번씩이나 전기고문하며 서독 유학생 친구와의 관계를 자백하라고 했지만 몇 차례 까무러치면서도 끝내 살아났다. 지금도 몸서리가 처진다. 고문한 놈을 찾아 죽이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었다”고 주장<sup>139)</sup>
  - 이수길은 “1967년6월27일 수사관들은 다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자정까지 계속하였다. 이날 고문이 지금까지 받은 고문 중 가장 가혹하였으며, 고문이 끝날 때 나는 이미 의식불명이었고 드디어 죽음을 이긴 것 같은 환상을 느꼈다”고 소개<sup>140)</sup>
  - 그러나 이○○은 “관련자가 거의 인텔리인데다 워낙 증거가 뚜렷해 가혹행위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수사관 일부의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이 시킨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sup>141)</sup>

137)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138) 『월간조선』 (2004년4월)

139) 강준만, 『희생양과 죄의식』 (1989년9월, 개마고원)

140) 이수길, 『한강과 라인강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 (1997년11월, 지식산업사)

141) 『신동아』 (1989년4월호)

## 2) 조사결과

### 【 수사관 주장 】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욕설 및 일부 구타 등은 있을 수 있었으나 혐의가 워낙 뚜렷하고 순순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심한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함

- 수사관들은 심한 신체적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당시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및 약간의 구타 등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

#### < 중앙정보부 관련자들의 면담내용 >

면담인	관련성 (형태)	면담요지
이○○	수사과장 (非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하는데 정보부에서 조사받고 나간 사람중 고문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 회의시마다 가혹행위를 하지 말고 심복을 시켜야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모두를 밝힐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키고 다짐을 받음</li> <li>·황성모 교수와 관련 황교수가 산업은행 총재 문모 및 조흥은행장 오모를 통해 본인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김성곤을 통해 대통령에게 말을 했는지 대통령은 김부장에게 황교수를 직접 만나보라고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황을 김부장에게 데려가면서 누런 속옷을 새로 갈아입힌 적이 있는데 재판중에 황교수가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나를 증인으로 채택, 법정에서 갔더니 황교수는 김부장을 만나기 전 이과장이 고문으로 더러워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게 했다고 해서, 나는 옷이 더러워서 갈아입힌 거라고 대답함</li> <li>- 재판후 복도에서 황교수를 만나 “황교수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당신 처남도 있고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는데 우리가 당신을 고문했겠냐”고 했더니 황교수가 “사실 뺨 몇 대 맞았습니다” 하고 말했음</li> </ul> </li> </ul>
신○○	중정수사관 (非고문 잠안재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백림 때는 고문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제가 듣기로는 인혁당 때는 일부 고문이 있었다고 동료들로부터 들었음</li> <li>·이용로 부부는 조사시 불만토로나 저항이 전혀 없었고 순순히 자백하였기에 고문·허위진술 강요 등이 없었으며 단지, 학교 기숙사 벽에 하얀 벽지를 붙여 조사실로 사용하면서 피의자가 조사시 잠을 못자도록 하였을 것임</li> </ul>

면담인	관련성 (형태)	면담요지
최○○	중정수사관 (일부구타)	·윤이상 조사시 물·전기 고문 등은 없었고 여타 수사관들이 고문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으며 사실 조사실이 3평 정도의 기숙사였기 때문에 고문을 할 시설이 아니었음 ·그러나 당시 일반적으로 배를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정도는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일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등 수사 절차상 문제는 있었을 것임 ·고문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해, 인혁당 사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동백림은 별 문제 없었음
김○○	중정수사관 (非고문)	·고문을 한 적은 결코 없음 ·보통 피의자 신문은 밤 9-10경에 종료된 후 피의자 신병관리를 위해 피의자와 함께 조사실에서 취침하였고 밤 12시를 넘겨 수사한 적은 없음
이○○	중정수사관 (非고문)	·윤이상, 이응로부부 조사 시 물·전기고문 등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뭐 잘 못 했느냐”는 정도의 불만토로는 있었음 ·학교 기숙사를 조사실로 임시 사용하였기에 고문장비를 설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중 고문 기술자도 없었고 다만, 조사중 뺨을 때리는 정도의 구타는 있었을 수 있음 ·남산에도 고문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의자들이 거짓말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생각 ·동백림 사건은 피의자들이 복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뿐으로 기밀을 송신한다던가 하는 진짜 간첩행위를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고문을 할 이유가 없었음
정○○	중정수사관 (非고문)	·자수자(임석진)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를 검거, 범죄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당시 피의자들의 저항도 없었고 이에 따라 고문도 없었음
모○○	중정수사관 (非고문)	·천상병 시인과 조영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당시 중정에 서는 고문 및 강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상부의 엄한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확신함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주 극소수 단순 가담자의 경우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부분 확실한 증거에 따라 수사를 했음
김○○	중정수사관 (일부구타)	·이미 임석진 교수의 자수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기에 고문은 절대 없었을 것이고, 고문할 필요도 없었음 ·그러나 당시 중정에 들어오면 누구나 한 대씩은 맞고 나갔을 수는 있음

○ 軍 방첩대 관계자로서 면담을 실시한 2명도 일체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언급

**< 軍 방첩대 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관련성 (형태)	면담요지
이○○	군 방첩대 수사관 (非고문)	·천병희·강하이드론 조사시 고문 등은 없었고 천상병이 전기 고문을 3번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함 ·사건관련 고문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고문 행위는 수사능력이 없는 수사관들의 행위임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조사실로 사용한 이문동 정보학교 기숙사에는 고문장비를 설치할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피의자 조사시 고문을 할 필요도 없었음
백○○	군 방첩대 수사계장 (非고문)	·구타나 강압수사를 한 적은 없는데 방첩대는 중정에서 1차 조사한 것 가지고 보완조사를 했고, 또한 동백림사건 피의자들은 지식인들이어서 순순히 진술을 잘 했기 때문에 강압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

**【 사건 관련자 주장 】**

기소된 41명<sup>142)</sup>에 대한 재판기록 검토결과, 총 8명이 중앙정보부에서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함

- 동백림 사건의 경우 1심 단계에서 조영수·박성옥·김성철·공광덕 등 4명, 2심에서 어준 1명 등 총 5명이 구타·비행기 타기·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진술

**< 동백림사건 관련자의 가혹행위 주장 >(당시 기록을 중심으로)**

성명	최 초 진술시점	주장내용
박성옥	1심 (구타)	·당초 제가 독일에서 중정에 연행되어 와 취조를 시작하자 수사관의 심문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평양 갔다 왔지, 입당 했지 하는 터무니없는 추궁으로 인해 인간이하의 구타를 받았음 <sup>143)</sup> ·본 피고가 노동당 가입, 금품수수, 망원포섭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전연 사실을 왜곡한 터무니없는 중정의 허위 조작 내용이며 본 피고가 당시 중정에서 조사받을 때 실로 인간이하의 혹독한 구타 및 고문으로서 담당수사관의 술책에 의하여 날조된 것임 <sup>144)</sup>

142) 중앙정보부에서 검찰에 송치한 66명 중 기소 처분된 41명(군 검찰 기소 1명 포함)에 대해서만 탄원서 등 재판과정상의 기록이 존재함.

성명	최 초 진술시점	주장내용
조영수	1심 (전기고문 비행기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7년2월 평양에 갔다는 것과 관련 증정에서 갔다고 진술한 것은 고문을 해서 그런 것임<sup>145)</sup></li> <li>·귀국후인 1967년2월 평양에 3번째 방문했다는 것과 관련 조영수가 증정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서 평양에서 2주간 체재하면서 중간보고를 했다고 기재되었음은 수사관의 공갈·협박·고문·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sup>146)</sup></li> <li>·증정에서 혹독한 위협과 고문을 당한 바 있는데 그 사실로는 ①전기용구 등을 이용한 고문 ②런닝샤스를 탈의시켜서 입에다가 매고 주먹으로 때리고(황모 수사관) ③엎드려 뺨쳐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④비행기를 태우고 기타 온갖 위협을 가하면서 각본대로 강제 자백을 시켜서 취조했음<sup>147)</sup></li> </ul>
공광덕	1심 (전기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자술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집필하였고, 2차는 압력이 가해진 유도심문, 3차는 전기고문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2차 자술서중 일부와 3차 자술서는 적어도 처음부터 전부를 고백해버린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함<sup>148)</sup></li> <li>·당초 취조관에게 내가 받은 학비보조금을 한 푼도 속임없이 자백했음에도 그 분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므로 전기고문에 의해 하나의 범죄극을 창작하도록 강요되었으며 그 허구의 범죄 작품이 본인에 대한 유죄의 유일한 기억물이 되고 말았던 것임<sup>149)</sup></li> </ul>
어준	2심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술서를 쓰기전 수사관이 구타하면서 말하기를 본인에게 교양을 주었던 사람이 자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li> <li>·증정에서 3박 4일간 취조받는 동안 고문도 당하여 심한 공포를 느꼈으나 특히 잠을 자지 못해 견딜 수가 없었으며 더욱이 본인의 대답이 수사관의 취조의도와 배타될 때에는 본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음<sup>150)</sup></li> <li>·연행된 곳이 놀랍게도 증정이었으며 방에 안내되자마자 구타를 당해 심한 공포를 느꼈음<sup>151)</sup></li> </ul>

143) 1967년12월8일 박성옥의 1심법원 탄원서 내용

144) 1968년2월29일 박성옥의 항소이유서 내용

145) 1967년11월9일 1심 공판조서 내용

146) 1968년3월4일 조영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내용

147) 1968년3월18일 조영수의 2심 법원 탄원서 내용

148) 1967년12월6일 공광덕의 1심법원 진술서 내용

149) 1968년3월13일 공광덕의 2심법원 탄원서 내용

150) 1968년3월12일 어준의 항소이유보충서 내용

151) 1968년3월25일 어준의 2심법원 탄원서 내용

성명	최초 진술시점	주장내용
김성철	1심 (목나무대 및 전기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섭대상자로 5명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사실이 없고 증정에서 전기고문을 하면서 대라고 하기에 아무나 불러대고 국내친구도 5명을 말한 사실이 있음<sup>152)</sup></li> <li>·1차 자술서가 완료된 후 신某 수사관이 최某, 주某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만 사람들은 포섭대상자를 보고했는데 너는 없느냐면서 목나무대 고문을 하면서 말하라고 했음</li> <li>·무수히 고문을 당한후에도 부인하니 야전용 무전기를 가져와서 양쪽 엄지손가락에 전기줄을 끼우더니 최某가 스위치를 돌리고 주某는 고문을 시작하는데 신某는 전기가 잘 통하도록 주전자의 물을 내 손에 부었던 것임<sup>153)</sup></li> <li>·수사도중 높은 사람이 오면 멀리서 헌병이 알리기 때문에 높은 사람은 고문사실을 모르고 걱정말라고 안심만 시키고 돌아갔으므로 신某, 최某, 주某를 대질시켜 주시기 바람<sup>154)</sup></li> <li>·피고인이 5명의 포섭대상자를 구두 보고하였다는 말은 증정의 엄문에 부득이 허위진술 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외의 신문에서는 일절 그를 부인하고 있음을 보더라도<sup>155)</sup></li> </ul>

○ 민비연 사건의 경우, 1심에서부터 황성모·현승일·박지동 등 3명이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 민비연사건 관련자의 가혹행위 주장 >(당시 기록을 중심으로)

성명	최초 진술시점	주장내용
황성모	1심 (구타·물 고문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15일에 진행된 후 17일 야반까지 휴식없이 억압적 심문을 당해오다가 17일 야반에서 18일 새벽에 걸쳐 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인형으로 만들어졌음.</li> <li>· 그 날 저녁의 결과로서 육체적 원상회복을 하기 시작한 것이 7월 하순경이었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음</li> <li>· 김종서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바케쓰 물과 노끈으로 위협했으며 언젠가 증정부장이 찾아와 솔직히 자술서를 쓰라고 하면서 야구글러브처럼 부어있던 본인의 왼손을 외면 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함</li> </ul>

152) 1967년11월26일 김성철의 1심 진술서 내용

153) 1968년1월10일 김성철의 2심 법원 탄원서 내용

154) 1968년2월19일 김성철의 항소이유서 내용

155) 1968년4월1일 김성철 변호인의 2심 변론요지

성명	최초 진술시점	주장내용
황성모	1심 (구타·물 고문협박)	·한 번 더 부인하자 이번에는 정말로 변소까지 끌려가서 바깥에 물을 퍼 담은 것을 보고 정말로 병신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요구대로 진술을 계속하였음 <sup>156)</sup> ·(증인 이○○에게) 6월15일에서 6월17일까지 잠을 자게 한 적이 있는가요. 6월17일 야반에서 6월18일 새벽까지 저는 나체로 고문당했는데 아는 가요 <sup>157)</sup>
현승일	1심 (구타)	·(증인 이○○에게) “7월1일자 자술서를 쓸 때 수사관이 나를 몽둥이로 때렸는데 목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고 묻자 이○○은 “조사실에 몽둥이는 두지 않습니다”고 답변 <sup>158)</sup>
박지동	1심 (구타)	·“황교수는 사회주의자이며 김중태가 1964년5월경 민비회장이었다”고 구타하면서 쓰게 하였는데, 이를 이겨내지 못한 것은 본인 잘못도 있습니다만 폭력 앞에 무모히 맞서기보다 검찰이나 공판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음 <sup>159)</sup> ·7월22일 자술서 작성과 관련 그 날 자고 있는데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음 <sup>160)</sup>

위원회 면담시 사건관련자(총22명)중 11명이 가혹행위 피해를 진술하였고 나머지 11명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동백림사건 피의자로서 本 위원회에서 면담한 17명 중 7명(천병희, 김택환, 정성배, 김성철, 이수길, 김진택, 박성옥)<sup>161)</sup>은 구타 및 물·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156) 1967년11월26일 황성모의 1심 법원 진술서

157) 1967년12월14일 1심 5차 공판조서 내용

158) 1967년12월14일 1심 5차 공판조서 내용

159) 1967년11월28일 박지동의 1심법원 진술서 내용

160) 1967년12월7일 박지동의 1심 4차 공판조서 내용

161) 이 가운데 김택환, 이수길은 불기소 처리되어 재판을 받지 않음.

< 동백림사건 관련자의 가혹행위 주장 >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인	유형	면담요지
천병희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가 난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하자, 두 사람이 번갈아 각목으로 저를 엎드려뺨쳐 상태에서 20-30대 때렸음</li> <li>·이 때 말고 구타를 당한 거로는 무슨 이야기 끝에 수사관이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2-3대 가격했는데 거의 죽을 뻔했음</li> <li>·조사실에 있을 때 김형욱이 들어왔고 수사관이 '새로 알아낸 게 별로 없다'고 하자 김부장이 '좀 짜야지'라고 했는데 고문 하라는 뜻으로 들렸음</li> </ul>
김택환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문동 기숙사의 어느 방에 몽둥이가 2개 있었으며, 취조관 3명이 종이와 불펜을 주고 동백림에 왜 갔는지를 쓰라고 해서 '가면 어떻습니까'라고 답변했더니 몽둥이로 때렸음</li> <li>·취조관은 3인 1조 교대로 모두 6명이었고, 고문을 담당하는 사람은 모두 12명이었는데, 통상 취조관 3인과 고문을 담당하는 사람 2명 등 4-5명이 조사실에 있었음</li> <li>·밀걸레 대보다 큰 몽둥이로 수십대씩 때렸는데 엎어놓고도 때리고 세워놓고도 때렸으며,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음</li> <li>·몽둥이 구타는 매일같이 있었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은 며칠에 걸쳐 각각 여러 차례 받았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고문은 양팔을 교차되게 들어올리게 해서 닭을 매달듯이 팔목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었으며</li> <li>-전기고문은 의자에 묶지는 않고 앉힌 뒤 한 사람이 전기장치를 돌리고, 다른 사람이 전기자극의 끝부분을 온몸 여기저기에 대었음</li> </ul> </li> <li>·이 같은 고문후유증으로 왼쪽 팔뚝에 살이 짓물러져 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으며, 그 상처의 흔적으로 왼쪽 팔의 뼈 부위에 1cm 정도의 흉이 있음</li> </ul>
정성배	구타 물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산 콘센트막사에 들어가자마자 물고문을 당했는데 묶어서 거꾸로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따랐으며 할 말이 있으면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했음</li> <li>·물고문을 받은 장소는 조사를 받은 바로 같은 방이었는데 전부 4일 정도 조사받으면서 물고문은 이틀날까지 받았음</li> <li>·그외 밤에 몽둥이로 맞았는데 밤에 때린 사람은 낮에 물고문 한 사람과 달리 경찰이었고 나중에 목욕하는데 누군가 씻어준다고 엉덩이 쪽을 보더니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이 맞았음</li> </ul>
김진택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문동에서 약 4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동백림에 한번밖에 갔을 리가 없다면서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몽둥이로 1회 10대 정도로 3회 동안 엉덩이를 맞았음</li> </ul>
박성욱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문동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고등계 형사출신의 수사관이 내가 완강히 혐의내용을 부인하자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갓 수술을 받은 나의 복부를 치려고 하였음</li> </ul>



면담인	유형	면담요지
김성철	구타 전기고문 초산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술서를 쓴 뒤 취조과정에서 때리고 전기고문하고 얼굴에 초산 뿌린다고 시범적으로 무릎아래에 뿌려 화상입은 것처럼 껌질이 벗겨졌음</li> <li>·* 김성철은 초산고문의 흔적으로 한 쪽 무릎 바로 밑에 지름 15cm가량의 화상을 입은 듯한 흉터를 제시</li> <li>·양쪽 어깨를 때리고 동료 광부들을 포섭하지 않았냐고 묻더니 자술서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 각목인지 목도인지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당시 수사관 3명중 1명은 서있고 1명은 몽둥이로 때리고 1명은 발로 찼음</li> <li>·전기고문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같은 방에서 의자에 앉혀 전극을 몸에 댄데, 전화기를 빨리 돌리면 전기가 더 세졌음</li> <li>·서대문형무소로 이감전, 4일간 조사받으면서 맞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전기고문은 2번 받았는데, 초산을 뿌린 날과 나중에 조사받다가 또 한번 받았음</li> </ul>
이수길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대사관에서 갑작스런 한국행을 거부하자 수사관이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고 내 지팡이로 때리려하여 손을 올려서 막았더니 반지가 빠져 나갔으며 지금도 손가락에 상처가 남아있음</li> <li>·(한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무서운 남영감 등 3명으로부터 온갖 고문을 당했는데 1명은 물을 먹이면서 전화선을 손가락, 발가락 내지 성기에다 꽂고 전화선을 돌리는 식으로 전기를 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5-6번 기절하였음.</li> <li>·내가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된 이유는 윤이상 등은 실제 동백림과 북한에 다녀와서 그냥 불으면 되지만 나는 실제로 갔다 오지 않아서 불 것이 없어서 당했으며 나의 연행을 제기한 수사과장이 체면 때문에 결사적으로 대응했던 때문임</li> <li>·이문동 숙소에서는 고문을 하지 않았고 물고문실 및 전기고문실이 따로 있었으며 남산 지하 고문실에서도 이문동과 똑 같은 수사관에 의해 고문을 당했음</li> </ul>

○ 본 위원회에서 면담한 민비연 사건 피의자 5명 중 4명(김중태, 김학준<sup>162</sup>), 조봉계, 박지동)은 구타·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 민비연 사건 관련자의 가혹행위 주장 >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인	유형	면담요지
조봉계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교수에 대해 서독에서 유학했고, 존경할 만한 학자라는 것 외에 아는 바 없고 민비연은 이념싸움이 아니고 연구모임이라고 답변하자 수사관은 꿇어앉은 상태에서 군화발로 무릎을 짓이기고,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여러 번 때렸음</li> </ul>

162) 검찰에 송치된 민비연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기소 처리됨.

면담인	유형	면담요지
김중태	구타 물고문	·체포되자마자 “황성모가 간첩임을 다 인정했으니 너도 빨갱이라고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아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음 ·그 다음 수사관들이 남영동 분실로 데려가서 수사관 3-4명이 의자에 눕히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 물을 붓는 고문을 15분 정도 하여 기절 후 깨어났음 ·남영동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대문 운동장 인근으로 끌려갔는데 가자마자 “너 빨갱이 아니냐”며 두드려 췌고, 그 충격에 마룻바닥에 엎어졌음
김학준	자전거타기 비행기타기 구타	·어느 밤 남산 조사실로 갔더니, 수사관들은 미리 작성된 자술서를 베껴쓰라고 강요했으나 거부, 2일간 발가벗겨서 수취심을 자극하고 잠안재우기, 자전거 및 비행기 타기, 원산폭격,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고 전기고문 협박까지 받았음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중에도 관 모양에 세워놓기, 백열 등 비추기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음 * 김학준은 “당시 자살충동까지 느꼈으며 한국을 떠날 것을 결심했다”고 감정에 폭발쳐서 언급
박지동	뺨때리기	·이문동에서 수사관이 “너 이 새끼,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하고 협박을 했으며 따귀를 몇 번 맞고, 엉덩이도 몇 번 맞았으며, 잠을 재우지 않았음 ·이문동에서 조사시 옆방에서 여자가 당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여자간첩이 호되게 당하는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겁주기 위해 녹음기를 틀어놓고 조작한 것 같았음 ·어느 날 밤 남산으로 갔는데 수사관 몇명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오과장이 대학생 때 데모를 왜 했는지 물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한 것이라고 했더니, 뒤에서 1명이 귀뺨을 때리면서 “이 새끼야, 재벌이 너에게 떡을 달라고 했냐, 밥을 달라고 했냐”고 소리쳤음

○ 사건 관련자들은 동백림(천상병, 조영수, 강빈구, 김택환, 한봉흠, 이수길, 정성배, 김웅, 김도정, 공광덕, 정하룡, 강성종, 김성철, 윤이상) 13명 및 민비연(조봉계, 황성모) 2명 등 총 15명에 대한 가혹행위 간접 인지사실을 언급

#### < 기타 가혹행위 관련 면담내용 >

면담인	대상자	면담요지
천병희	조영수 강빈구	·조영수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었음 ·강빈구도 난수표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고 들었음
김중태	김택환	·김택환의 경우 서대문 형무소에서 벗은 몸을 본 적이 있는데 밧줄 등을 이용하여 타격을 가한 것 같은 선혈 흔적을 목격한 바 있는데 아마도 김택환이 혐의를 부정해서 많이 맞았을 것으로 생각됨

면담인	대상자	면담요지
김택환	한봉흠	·한봉흠이 구타를 당하면서 취조관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음
배준상	김웅 김도정	·김웅과 김도정이 중정조사 시 엉덩이를 몽둥이로 맞았다는 말을 형무소 출감 이후 들었음
임석진	정하룡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정하룡에 대해 여권 상에 이상한 흔적이 나타나서 평양에 다녀왔는지를 추궁하니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고문을 했더니 순순히 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하태규	강성중	·강성중이 많이는 안 맞고 뺨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몇 대 맞은 것 같은데 사건 이후에 들었음
박성옥	김성철	·김성철이 고문을 받았음
최창진	정성배 천상병	·정성배는 서대문에서 석방되는 날 “맞아서 헝끼가 끊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고 천상병은 본인이 이문동 취조실에서 화장실에 가는 동안 천상병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숨넘어가는 소리를 들은 바 있고, 법정으로 가는 버스에서 천으로부터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들은 바 있음
김중태	조봉계	·조봉계가 군 수사기관에서 심하게 당했음
박지동	황성모	·이문동에서 황교수를 보았는데, 얼굴이 쪽 빠지고 반쪽이 된 모습이어서 크게 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음
김도현	정하룡 조영수 공광덕 황성모	·서대문 형무소에서 통방을 통해 정하룡·조영수가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멀리서 들어서 자세히는 모름 ·공광덕은 짜장면 먹고 돈 200불정도 받은 것이 전부인데 고문을 조금 당한 것으로 기억함 ·황선생은 많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았는데 혼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였고 외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재판정에서 우는 등 교수로서의 체모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목순옥 (천상병의 妻)	천상병	·천상병으로부터 양손에 전기를 통하는 고문을 3번 받았다는 말을 들었음 ·강빈구가 빨갱이인지 묻는데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서 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소이후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음 ·시립정신병원 퇴원 뒤에도 정신불안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음
이수자 (윤이상의 妻)	윤이상	·처음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니 의자를 발로 차버려서 넘어지는 것을 되풀이했다함 ·땅바닥에 꿰어 앉혀놓고 다리사이에 나무를 박아놓은 뒤 손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부어 실신하면 의사가 와서 주사 놓았다 함
박승서 (변호인)	조영수	·고문당해서 허위자백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남. 어떻게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귀국 후인 1967년2월 평양 재방문)을 작성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고문을 당해서 그랬다고 했음
한승헌 (변호인)	천상병	·천상병이 서울상대 친구 강빈구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의 행적을 대라고 추궁받는 과정에서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했음

- 한편, 本 위원회에서 면담한 사건관련자 22명중 11명은 다소의 협박 등은 있었으나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언급

〈 사건관련자의 「가혹행위 없었다」는 언급 〉

면담인	사건 관계성	면담요지
임석진	자수자	·중정의 협박이나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강요당한 바 없음· 동백림 사건의 경우 없는 것을 고문을 통해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없는 것을 완전 날조하기 위한 고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임석훈	독일연행자	·본인의 경우 뺨 한대라도 맞아본 적은 없음
김종대	독일연행자	·본인의 경우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던 것이 곤혹이었으나 특별한 가혹행위를 당한 적은 없음
최창진	국내연행자	·중정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고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이는 당시 담당 수사관과 서로 대화가 통하였던 때문으로 생각됨 ·수사관은 내가 진술한 내용이외의 내용을 조서에 기입하여 간첩으로 몰려고 본인에게 서명을 강요했으나 “안한 것을 했다고 수는 없다”고 강변하여 지문을 찍고 해당내용을 수정하였음
성두영	프랑스 연행자	·윤이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심하게 추궁 받지 않았으며, 구타 등 가혹행위도 당하지 않았음
배준상	독일연행자	·옆방에서 남자의 비명소리를 한 번 들었으며, 수사관들로 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은 받았지만, 실제로 구타, 고문을 받은 적은 없음 ·출소 이후 구속자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비명소리는 중정 에서 쇼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음
이수자	독일연행자	·육체적인 고문은 없었음
박인경	프랑스 연행자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조사를 받았으며 녹음소리인지는 모르 지만 비명소리가 들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나 육체적인 고문은 없었음
하태규	미국연행자	·수사관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고문 구타를 당한 적은 없으며 중정에서 미리 다 알고 있었음
김복순	독일연행자	·돈받은 것을 시인하지 않아서 하룻밤동안 옥설을 들으면서 조사받았으나 고문은 없었고 다음날 언니 집으로 갈 수 있었음
김도현	민비연 피의자	·고문을 받은 적은 없음

수용자 신분장<sup>163)</sup> 검토결과 김종태·조영수가 변호사 접견시 가혹 행위에 관한 언급을 했고, 신체검사 결과 박성욱 등 3명에게 다친 흔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됨

- 김종태·조영수 2명은 각각 중앙정보부 조사 시 구타 및 고문 위협 등을 담당 변호사에게 주장
  - 김종태 : “정보부에 가서 6월19일 새벽에 구금되고 6월25일 영장이 나오는 동안 몹시 구타를 당함”
  - 조영수 : (3번째 평양에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자백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정보부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달라면서 불란서에 갔다가 북한에 안갈 리가 없다고 하면서 고문까지 하려고 하는 등 공갈조로 나오니까 공포심에 못 이겨 가지 않은 것을 간 것으로 진술했음”
-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신체적 특이사항 검토 결과, 어준·박성욱·김성철 3명에게 다친 흔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

< 수용자 신분장내 신체 특이사항 >

성명	특이사항
박성욱	·얼굴 눈 부분에 검은 점 있으며 허벅지에 다친자리가 있고 종아리에 종기자리가 있음
김성철	·손목 및 허벅지에 다친자리가 있고 아랫배부분에 종기자리가 있음
강빈구	·엉덩이 부근 및 허벅지 부근에 종기자리가 있고 치아 1개 보철함
황성모	·목 부분에 검은 사마귀가 있고 옆구리 및 앞가슴과 등 뒤에 종기자리가 있음
김중태	·종기 및 다친자리 없음
공광덕	·엉덩이 및 허벅지에 검은 사마귀가 있고 코밑에 종기자리가 있으며 의치 6개와 얼굴에 검은 점 있음

163)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박성욱, 김성철, 강빈구, 황성모, 최정길, 정하룡, 조영수, 어준, 김종태, 공광덕, 정규명, 천병희 등 총 14명에 대한 약 4,000매의 수용장 사본을 입수, 검토함.

성명	특이사항
최정길	·검은 점이 있고 허리 쪽에 종기자리가 있으며 백금으로 치아 2개 보철함
정하룡	·목 뒷덜미 및 얼굴에 검은 점이 있고 엉덩이에 검은 사마귀가 있으며 무릎에 종기자리가 있음
조영수	·엉덩이 및 뒷목과 등허리부근 종기자리가 있으며 치아 2개 보철을 했고 얼굴에 검은 점이 많은 편임
어준	·엉덩이 및 허벅지·얼굴·사타구니·종아리에 다친자리 있음

### 3) 평가

-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관(12명) 및 피의자(22명) 등 총 34명을 면담조사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년이 지났고 당사자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명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
- 본 위원회에서 면담한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수사관련자들은
  - 동백림 사건은 자수자의 진술 등에 의해 실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충분하여 피의자들이 순순히 실토함으로써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고 상부의 가혹행위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일부 수사관들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위협·잠안재우기·구타 등은 있을 수 있었다고 증언
- 한편, UNCAT<sup>164)</sup>는 고문이란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위협·제지·징벌과 같은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sup>165)</sup>하고 있는데

164) “UN Committee Against Torture”(UN 고문방지위원회)의 약칭

165) 1975년12월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법 방지에 관한 선언 1조에 규정됨.

- 일부 수사관들도 수사기법중 하나로서 위협 등 심리적 제재수단을 거론하고 있고 민비연 사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위협 등에 의한 허위진술 강요사례가 확인되었음을 감안, 당시 심리적 위협 등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
- o 이밖에 신체적 징벌을 가하는 가혹행위의 경우 사건 피의자들이 구타를 포함 전기고문(천상병, 김성철, 조영수, 공광덕, 이수길, 김택환) · 물고문(정성배, 이수길, 김택환) · 비행기타기(김학준, 조영수) 등의 신체적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아래 서술된 가혹행위 주장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으로 미루어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구타 · 물고문 · 전기고문 등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

#### < 동백림 사건 >

- ① 김성철 : 1심 부터 전기고문 · 목나무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수회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박성옥의 간접진술(형태 미상)<sup>166</sup> · 수용장내 손목 · 허벅지 다친 상처<sup>167</sup>의 기록이 있는 외에 면담시에도 주장
- ② 어준 : 2심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수용장에도 다친 상처가 존재
- ③ 박성옥 : 1심 법원 탄원서 및 위원회 면담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수용장에도 다친 상처가 존재
- ④ 천상병 : 사건 당시 담당 변호사에게 전기고문 피해를 주장한 바 있고, 가족 외에 최창진 · 김종대 · 천병희 등도 간접 증언
- ⑤ 조영수 : 1심부터 전기고문 · 비행기타기 · 구타 피해를 주장하였고 천병희에 의한 간접 증언(형태 미상)도 있고, 수용장내 고문 위협 주장 및 담당 변호사의 고문 인지 진술도 청취

166)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구체적인 신체적 가혹행위 종류를 거명하지 않음.

167) 수용장상에 '다친 상처'가 직접적인 가혹행위의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⑥ 공광덕 : 1심에서 전기고문 피해를 주장했다으며 김도현에 의한 간접 증언(형태 미상)도 존재
- ⑦ 정성배 : 면담시 구타,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최창진에 의한 구타 증언도 확보
- ⑧ 이수길 : 사건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아 재판기간의 진술 및 기록은 없으나 면담시 구타, 물·전기고문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김택환에 의한 간접 증언(형태 미상)도 청취
- ⑨ 김택환 : 사건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아 재판기간의 진술 및 기록은 없으나 면담시 구타, 물·전기고문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김종태에 의한 간접증언(구타)도 확보

#### < 민비연 사건 >

- ① 박지동 : 1심 공판시 및 면담시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종태에 의한 간접증거(형태 미상)도 확보
- ② 조봉계 : 사건 당시 軍검찰 및 법원에 의해 심리되어 해당진술 유무는 미지수이나 면담시 구타 피해를 주장하였고 김종태에 의한 간접 진술(형태 미상) 청취
- ③ 황성모 : 1심에서 구타 및 물고문 협박 주장이 있었으며 박지동·김도현에 의해 추정 증언(형태 미상)도 존재
- ④ 김학준 : 면담시 자전거·비행기타기 고문 및 구타 피해를 감정에 복받쳐서 상세하게 진술
- ⑤ 김종태 : 면담시 구타·물고문을 주장했다으며 수용장내 변호사에게 구타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추정



1) 의혹내용

당시 권력구조상 중앙정보부가 검찰 및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됨

- 일부는 동백림 사건이 4.19 재판이후 최초로 법정애 마이크까지 설치하면서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김신조(1968년1월) 및 이수근 위장 귀순사건(1969년2월) 등이 구형 및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sup>168)</sup>
- 검찰이나 사법부도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의 힘에 눌려 구형과 언도가 일종의 코미디로 전락했다고 의혹 제기
  - 이수자는 “1심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2심에서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은 있었으나 사법부의 객관적인 의사가 다소 반영되었다”면서
  - “중앙정보부는 재판관과 검사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재판관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3일간 호텔에서 감금되다시피 했다”고 주장<sup>169)</sup>
- 한편 일부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조치(1968년7월30일)이후 대법원 판사를 비판하는 괴벽보 사건의 배후로서 중앙정보부를 지목
  - 언론인 이상우는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법관 협박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사법권에 대한 압력치고는 아직 거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배후에 통치 권력기관의 개재혐의가 농후했었다”

168) 1967년12월6일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6.25때 헤어진 뒤 15년 만에 이북에 있는 남편의 소식을 들었으나 이것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고 논고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평양을 방문했거나 난수표를 소지했던 피고인 6명에게 사형을 구형함.

169)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1998년9월, 창작과 비평사)

-“얼마 안되어 재판에 관여했던 최윤모 판사가 들인 사표를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백림 사건의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의 항의와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인지 모르나 당시 고위층으로부터 범인 색출지시가 내려갔고 그 결과 某 기관의 중견간부가 직위해제 당한 일이 있었다”고 소개<sup>170)</sup>

## 2) 조사결과

### 【 재판절차의 공정성 및 형량의 적정성 】

당시 1심 재판장인 김영준은 동백림 사건 재판이 외국 방청객들의 참관 등으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함

#### ○ 김영준은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독일 정부대표 「그린발트」(Bonn大 법학교수), 주한 독일 및 프랑스 大使, 獨 TV 방송국 등 외신기자들이 매번 참관, 재판 절차면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고, 당대 유명 변호사들의 입회하에 피고인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1심 판결 후 「그린발트」 교수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실망했으나 절차 면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진술

#### ○ 당시 법정 분위기 및 피고인들이 위압을 느낄 만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170) 『신동아』(1985년8월호)

-“법정에 독일과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외국 기자들이 방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 당사 기사가 나오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며”

-“오히려 나이 많은 피고인들은 앞에 앉히고, 수감도 풀어주었으며 이응로 화백의 경우 평소 습관대로 다리를 꼬고 앉은 것까지 허용했다”고 언급

김영준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적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무거웠으며 특히 민비연 관련자들은 판결 내용이 부당했다고 주장함

○ 김영준은 양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휴전선내 100만군 대치 등 남북대립 상황을 고려할 때 일례로 북한이 돈을 주는 의미에 대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관례에 따라 소신 있게 판결했으며”

-“이응로·임석훈 등 전체적으로 재외공관의 유학생 처리 방식 미흡 등을 감안, 정상참작을 하여 작량 감경을 실시했다”고 언급

○ 그러나 동백림 사건 피의자 및 담당 변호사 등은 피의자들의 자유진술이 허용되는 등 재판 진행절차상 문제소지는 별로 없었으나 범죄사실 대비 형량이 과중했다고 진술

< 동백림 사건 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박승서	변호사	·외국기자들이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감시함 ·그러나 피의자들의 행동에 비해 너무 삼엄하게 처리함
임석진	자수자	·공판중 증언했던 내용은 임의에 의한 진술이었음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임석훈	피의자	·판결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였으며 증거도 있고 피고인들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됨 ·당시 중정이 판사들을 호텔에 머물게 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 없음
최창진	피의자	·김영준 재판장은 공화당 정권에서 소신있게 판결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함 ·중정의 법원에 대한 압력설에 대해 들어본 바는 없으나 중정 직원들로 보이는 6-7명이 자유복장 차림에 권총을 차고 좌우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방청도 가족·친지 등으로 제한됨 ·피의자들은 공소사실중 안한 일을 했다고 추궁을 당할 때 항의성 진술을 하였는데 이용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너털웃음을 터뜨린 다음 “육신의 자식을 만나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책상을 뒤집으며 검사에게 항의함
박인경	피의자	·사법부의 형량은 범죄사실보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았음
이수자	피의자	·법정에 중정직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형량은 범죄사실보다 무거웠음 ·윤이상에 대한 재판은 중정과 독일정부의 압력 등이 작용하는 등 사법부가 독립성을 갖고 판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김중대	피의자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으나 본인은 “승산이 없다. 진술하면 더 손해다”는 절망감과 “조만간 돌아갈 것이다”는 희망으로 공소내용을 강하게 부정하지 않음 ·검찰 및 사법부가 동서독간 분단 및 교류실태 등 국제적 안목이 없어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재판장은 모 피의자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였음
천병희	피의자	·1심 선고일에 검은 양복과 검은 코트, 흰마우라를 착용한 20-30명이 법정에 있어서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졌음 ·그렇게까지 중형을 내릴 사건이 아니었음
김진택	피의자	·다른 사람들은 반공법에 비추어 판결이 비교적 공정했으나 나의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어야 할 사안이었음 ·재판과정에서 중정직원을 본 바는 없으나 나 스스로 겁을 먹고 있었고 방청석의 분위기가 무거웠음
박성욱	피의자	·중정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법정에 중정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판사는 의문되는 점만 몇 가지 물어보았으며 재판 종료 시점에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느낀 바를 부당하다는 식으로 하소연함
김성철	피의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나 채택이 되지 않았음

- 민비연 사건 피의자들은 공판 시 자유진술은 허용되었으나 재판부가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진술

**< 민비연 사건 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김중태	피의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나 법원의 판결문은 중정에서 써준 것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독립적이지 못했음
박지동	피의자	·재판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나 사법부의 판결은 독립성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시국 분위기를 고려하면, 민비연 관계자의 일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판사를 원망할 것도 없지만, 반공성향의 현승일이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는가, 황교수가 동백림에 다녀온 것이 빌미가 되어 유죄를 받은 것은 부당함
김도현	피의자	·유죄로 하기엔 간첩이 아니고 무죄로 하는 건 정부 쪽에 타격이 크니까 법원에서 고심이 많았겠지만,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음 ·1964년 시위에 대해 이미 처벌한 것을 갖고 다시 처벌한 것임
김학준	피의자	·당시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죄목을 낮추고 3명만 유죄판결을 하는 등 어느 정도 할일을 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국과 타협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음

**【 裁判의 독립성 】**

김영준 및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은 재판이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함

- 김영준은 공판정내 중앙정보부 직원의 입회 여부와 관련
  - “소법정에서 진행된 민비연 사건의 경우 방청권을 발급하지 않아 주로 가족들이 참석했던 반면, 대법정을 사용한 동백림은 피고인 가족 · 외국공관원 · 법원 출입기자 · 일반인 순으로 방청권을 발급 하여 중앙정보부 직원이 들어왔을 수는 있으나”

- “중앙정보부 직원 입회 등으로 법정 분위기가 삼엄하여 피고인들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로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10여명)이 눈에 띠게 검은 정장차림으로 앉아 있었거나 권총차림으로 참관했다는 의혹<sup>171)</sup>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
- 중앙정보부에서 1심 기간중 판사들을 특정 호텔에 집단 투숙시키면서, 판결문을 특정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sup>172)</sup>에 대해서도
  - “심리가 끝나고 판결문을 작성하려면 판사들이 기록을 돌려보면서 의논을 하는 것이 관례로서”
  - “기록이 방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나중에는 호텔에 숙박하면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중앙정보부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다”고 확인
- 판결 시 검찰·중앙정보부·청와대·외교부 및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압력이나 협조 요청,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 “외부의 영향 없이 배석판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면서
  - 다만, “검사로서 중앙정보부에 파견 근무중이던 박某 부국장이 민비연 사건으로 찾아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형소법 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며, 이후 연락한 일이 없다”고 진술
- 한편, 중앙정보부 관계자의 경우 사법부에 대한 압력설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권력구조상 중앙정보부의 권한이 막강했다는 점은 인정

171) 천병희(2005년5월23일) 및 최창진(2005년6월17일) 면담내용

172) 이수자(2005년9월10일) 면담내용

< 중앙정보부 관련자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이○○	수사과장	·20-30명이 방청했다거나 권총을 차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됨. 권총차고 들어가려고 하면 법원에서 들여보내 줬겠나. ·교도관들도 권총을 가지고 입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수사국에서 법원을 담당하는 직원(사무관급)이 재판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방청했을 것임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3권이 분리된 민주공화정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실제 판사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음
김○○	수사관	·검찰조사나 법원 공판과정에서 중정의 압력행사는 전혀 없었으며 만약 압력행사가 있었다면 고위 간부급에서나 가능했을 것임
김○○	수사관	·그 당시는 중정의 권력이 가장 세서 검찰이고 법원이고 중정이 요구한대로 안 해 줄 수 없었을 것임

院 보유 자료에서 검사 및 판사에 대한 지원비 명목의 예산이 청구된 기록을 발견한 바, 검찰 및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보부는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1968년7월30일)한 이후 자백 이외에 물증을 제시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검찰 및 재판부 지원명목의 예산을 신청
  - 「동백림 사건 등 증거보강 수사계획」 173)에 의하면, 검찰지원비(6명× 50,000원)와 재판부지원비(4명× 50,000원)가 소요예산으로 신청
  - 또한, 「동백림 사건 등 증거보강 추가수사계획」 174)에서도 검찰지원비 추가분(5명× 50,000원)과 재판부 지원비 추가분(5명× 50,000원)이 소요예산 추가분으로 신청

173) 1968년11월11일 중앙정보부 5국에서 작성하여 기초실로 소요예산을 신청한 문건

174) 1968년11월15일 위 계획에 따른 「추가 수사계획」 문건

### 동백림 및 통혁당사건 증거보강 수사계획

- 기간 및 동원 수사관 : 1968년11월1일 ~11월30일 (1개월간), 총 10명
- 상황
  -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적화 공작단사건은 7월30일 상고심에서 조영수 등에 대해 2심이 간첩죄와 잠입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용에 잘못이 있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 환송
  - 대법원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사범 등을 하나하나 그들의 자백을 밀받침해주는 보안 증거를 가지고 다루어 왔는지가 의심스러움
- 목적 : 사건 심리와 선고 공판에 있어 법관의 심중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범증 보강을 하여서 형의 언도에 차질이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가를 보위
- 공판일자 : 동백림 사건 사실심리(1968년11월14일), 민비연 사건 언도공판(1968년 11월26일), 통혁당 사건 1차 공판(1968년11월22일)
- 증거수사 요청
  - 민비연 사건 : 민비연 회원 재조사, 북괴 관련 여부 및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 내란 음모 배후 관계, 정부전복을 위한 데모 배후조종관계, 정부전복 선전 선동, 북괴 선전 선동에 동조 사실
  - 동백림 사건 : 조영수에 대한 입북 지령 수행사항, 국내 정보수집 제보관계 등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방증 수집
- 소요예산
  - 검찰 지원비 : 검사 3명, 검사서기 3명 1인당 5만원씩 총 30만원
  - 재판부 지원비 : 판사 4명 5만원씩 총 20만원

- 상기 예산은 중앙정보부 예산 담당부서에 신청되었으나,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장부를 찾지 못해 실제 집행여부는 확인 불가
- 이에 대해 이○○은 검·판사들에 대한 밥값과 교통비·유흥집대비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sup>175)</sup>, 1968년 당시 부장판사의 월급이 5만6,000원임을 감안, 1인당 10만원 정도의 금품이 단순 밥값 및 유흥비라고 인정하기 곤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대법원 판사를 비난하는 괴벽보 사건이 발생, 그 배후로서 중앙정보부가 의심을 받았으나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 진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175) 2005년7월26일 이○○ 면담내용



- 대법원 판결직후인 8월3일경 서소문 법원청사 주변에는 「애국시민회」 이름으로 “김일성의 앞잡이인 김치걸·주운화 등 용공판사를 처단하라” 등의 내용이 실린 괴벽보와 삐라가 뿌려지고, 대법원판사들에게 용공판사 퇴진 내용의 등기우편이 배달<sup>176)</sup>
  -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항의성명을 발표했고, 조진만 대법원장은 차대통령에게 주모자의 색출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
- 1968년9월13일 국회내 「괴벽보사건 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발족 2개월 20일 만에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철저 수사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를 종료했던 것으로 확인
- 이에 대해 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판사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판결에 이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고 언급
  - 법원이야말로 주요 협조 대상기관중 하나인데 용공판사 물러가라고 괴벽보를 붙였다면 추후 업무협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중앙정보부의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 언론인 이상우가 제기한 괴벽보사건 이후 某 기관 간부 해위설에 대해서도 “당시 그 건으로 직위 해제된 간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 \* 실제 院 직원 인사자료 조회 결과 1968년 7-9월간 중앙정보부에서 직위해제된 고위간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
- 한편 괴벽보 사건으로 동백림사건 상고심 판사 4명 중 최윤모·주운화 대법관이 임기 중 사직
  - 이에 대해 박승서 변호사는 면담시 “朱대법관이 화가 나서 그만 두어야겠다고 하기에 ‘지금 그만두면 모양이 우스워지니 한해 넘겨서 그만두라’고 말려서 그 이듬해에 사직했으며, 괴벽보 사건이 사법부의 공안사건 소신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176) 이상우 「박정권하의 사법부수난」(이상우, 『신동아 85년 8월호』) 중 ‘괴벽보사건과 졸렬한 압력사태’

### 3) 평가

#### ○ 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 외국 공판관계자 및 기자들이 매 공판마다 참관하는 등 재판 자체가 국제재판 성격이었으며, 독일 정부대표도 재판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보며
- 특히 해당 재판관 및 변호사를 비롯, 동백림 및 민비연 사건 피고인들까지 재판절차 면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 ○ 또한 당시 재판부가 공판 진행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및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는 바,

- 법정에 소수 중앙정보부 직원이 참관했을 수는 있으나 피의자들에게 위협을 줄만큼 중앙정보부 직원 10여명의 검은 정장 차림 및 권총 휴대 참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중앙정보부가 판사들을 특정호텔에 투숙시켜 판결문 작성을 배후 조종했다는 說도 당시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호텔에 모여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院 기록상에 중앙정보부가 재판 진행 중 검찰 및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하였음이 확인된 것과 관련, 실제 집행 여부는 미지수이나

-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자백 이외에 물증을 제시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 중앙정보부는 일정 금품 제공을 통해 검찰 및 재판부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
- 대법원의 파기환송이후 발생한 괴벽보 사건과 관련, 당시 「국회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 노력한 바 있으나 밝혀내지 못했고 본 위원회도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서 진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1) 해외에서의 여행과정

- 윤이상은 베를린에서朴대통령의 친서 전달이라는 거짓말로 본 대사관으로 유인된 후 감금된 상태에서 소음 고문 등을 통해 한국행에 불가피하게 동의했었다고 주장

윤이상 주장 - 강제연행·소음고문(178)

- 1967년6월17일 박대통령의 개인비서가 대통령의 친서전달을 위해 만나자고 전화, 약속된 호텔로 가서 친서를 달라고 했더니 대사관의 최덕신 대사가 편지를 가지고 있어 함께 본으로 가자는 권유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최덕신 대사의 “독일을 떠나기 전에 꼭 해둘 말이 있다”는 편지가 제시되었음
- 이렇게 하여 나는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 루르지방의 광부가 운전하는 큰 차에 올라 쾰른을 거쳐 본으로 갔는데 대사관에 도착, 지붕 밑 다락방에 감금되었음
- 경비를 맡은 광부 2명은 라디오의 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고문의 1단계인 소음고문을 하였고 저녁식사 후 아래층 방에서 한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심문을 받은 끝에 “1963년 북한에 갔다”는 것까지 말했더니 수사관은 말한 것을 쓰라고 하였음
- 이후 다락방에서 살인적인 라디오 고문을 만 하루 동안 듣고 나서 다시 한밤중에 심문을 받았는데 수사관은 “중정부장이 당신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만 다녀오시지요”라고 권유하여 일단 거절하였음
- 이후 양참사관 방에서 “중정부장이 한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해 당신에게 정보를 듣고 싶어한다”고 하여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고 요청, 그들의 말대로 “중대한 용건으로 스위스에 간다”고 통화하였음
- 이후 함부르크까지 자동차로 이동한 후 함부르크 공항에서 한국 총영사와 일본 JAL 지점장의 정중한 인사를 받았으나 식사에 탄 약물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비행기로 올라탔음

177) 윤이상은 1917년9월17일 경남 산청 출생으로 1957년7월-1959년7월간 독일 서베를린 음대에서 유학하였으며 1967년 6월17일 동백림사건과 관련되어 한국으로 연행된 후 1968년12월5일 재향소심에서 반공법상 탈출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어 복역하다가 1969년2월24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고 1970년8월15일 대통령 특사로 잔형이 면제되어 독일로 귀환하여 생활하다가 1995년 11월3일 베를린에서 사망함.

178) 윤이상 및 「루이제 린저」, 『윤이상 상처입은 용』 (05.3.2, 랜덤하우스중앙)

- 중앙정보부는 자수자 임석진의 “1959년2월 조명훈을 이원찬에게 접선 시키고 북괴대사관 문정관과 친교관계에 있으며 자동차 구입자금 출처 의심”이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윤이상을 1차 연행대상자에 포함
- 윤이상은 「GK-공작」에 의거, 1967년6월17일 독일로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3명에 의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이라는 거짓말로 본소재 한국대사관에 유인된 후, 6월19일 함부르크 공항을 통해 6월21일 한국에 도착
- 윤이상은 한국대사관 지붕 밑 다락방에 감금되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음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미약함
  - 다만 대사관에서 단순히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을 가지고 소리에 예민한 음악가로서 이를 소음고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윤이상의 한국행은 2박 3일간 한국대사관에 수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임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임의동행은 아니었으며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음
  - 윤이상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윤이상이 정부초청으로 알고 귀국했는데 (조사에 대해) 이게 뭐가”라며 항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
- 다만, 독일에서의 연행과 귀국 시 폭력 및 마취제 등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및 주변 인물들은 “거짓말에 의해 대사관으로 유인 후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한국행에 동의하였고, 비행기 탑승 시 마취제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증언

< 윤이상의 한국행 관련 면담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정○○	수사관 독일과견자	·윤이상은 다른 수사관들이 대사관에 연행해 왔는데 본인이 국내에서 자수자(임석진)를 조사, 사건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던 터라 윤이상 신문을 담당하여 밀입북·지령수수·유학생 포섭 사실 등 범죄사실을 확인 ·윤이상에 대해 복측과 관련된 일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이상이 얼마나 걸릴거냐고 물어서 열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하자, 윤이상이 가겠다고 답변 ·윤이상은 음악가로서 자신의 불명예를 염려하여 국내호송시 함부르크공항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
최○○	수사관	·강제소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해외 연행대상자들을 접촉하여 8.15 경축행사에 초청되었다고 속여서 국내에 연행되었다고 들었음 ·윤이상은 국내로 연행되어 이문동 정보학교 기숙사(3평정도)에 수용되어 더운 여름에 이틀간 철야 조사를 받았는데, “8.15 행사에 참석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항의한 적이 있음
김○○	수사관	·윤이상, 이응로부부는 다른 유학생들과는 달리 8.15 경축행사 참석초청이라고 속여 연행한 것으로 기억남 ·권총이나 마취제 등은 지급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김택환	독일연행자	·본 대사관에 유인된 다음날 윤이상이 연행되어 왔는데 윤은 연행된 그 다음날인가 집에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 서독에 왔는데 당분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통화 ·윤이상·김종대와 함께 함부르크 공항에서 일본을 거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직접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함부르크 총영사관측에서 제반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됨

2) 중앙정보부의 조사 경과

【 윤이상의 혐의 사실179) 】

- 윤이상은 6.25시 월북한 친구 최상한의 소식을 듣고자 동백림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이래 동백림소재 북한 공관 및 안가를 12회 이상 방문

179) 검찰에서 공소 제기되어 재판부에서 최종 유죄 판결된 내용임.

- 이수자는 “북한과 계속 접촉한 주원인이 남편 친구의 소식에서 부터 시작하여 저희 살기가 어려워져 생활비 보조를 받고 보니 그에 걸린 의리에 차츰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sup>180)</sup>
  - 윤이상은 “북한과의 접촉 심화 사유로서 ①특별한 친절에 넘어가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한 것 ②예술가의 생활을 도와준다는 말에 속아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 ③작곡가로서 창작생활 이외 여타 사생활에 공허점이 많았으므로 이원찬에게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sup>181)</sup>
- 1963년4월 이원찬의 권유를 수락, 부인 이수자와 함께 아무 조건 없이 다녀온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방문
- 윤이상은 “제가 극히 생활에 곤란을 느낄 때 마지못해 그들의 돈을 받았고 이 약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이 보여주는 사회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북한의 선전대로 실제 발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갔다”<sup>182)</sup>
  - “평양에서 지하당 조직 교육을 하자 지하당 만드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지를 따지면서 듣는 시늉만 하였으며, 노동당 가입 권유를 받고 일인지하에 거절했다”고 진술<sup>183)</sup><sup>184)</sup>
- 약 9회에 걸쳐 5,000불 정도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이수자는 위원회 면담시 돈의 성격은 공작금이 아닌 여비 및 생활보조금이었다고 주장

180) 1967년7월14일 이수자 서울지검 진술조서 내용

181) 1967년12월1일 윤이상의 김영준 재판장앞 「현재의 심경」 제하 내용

182) 이수자는 위원회 면담시 “남편의 방북동기는 강서고분 벽화를 보기 위함이었으나 벽화만 보자고 할 경우 북에서 용인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진술

183) 1967년12월1일 윤이상의 김영준 재판장앞 「현재의 심경」 제하 내용

184) 1967년11월11일 이수자 서울지법 공판조서 내용

- 이수자는 “틈틈이 북괴들은 서백림으로 넘어와서 전화, 잠깐 와 달라고 하고 하니 2년간 생활비 보조받아 얻어 쓴 의리가 남아 남편은 전화가 오면 몸서리를 치면서도 찾아갔고 다녀와서는 ‘내가 백림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고 진술<sup>185)</sup>
- 위원회 면담시에는 “먼 데서 온 사람에게는 여비를 준다”는 식으로 언급
- 조명훈 등 유럽거주 한국인 5명을 동백림으로 데리고 가서 이원찬과의 접촉을 주선
  - 그러나 “최정길의 유학을 주선한 것은 이원찬의 흥계를 모르고 친구 아들 유학시켜준다는 것만을 생각했고 이원찬의 속셈을 의심하게 될 때는 벌써 독일로 와서 돌이킬 수 없었다”<sup>186)</sup>고 진술하는 등 “북괴 정체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절대로 공작원을 만들기 위해 데려간 것은 아니다”<sup>187)</sup>라고 주장
- 기타 이원찬의 지시에 따라 독일 각 지역 또는 불란서·벨기에·덴마크 등에 직접 가서 7회 정도 한국인들을 직접 접촉한 바 있고 국내 거주 지인에게도 서신으로 연락<sup>188)</sup>
  - 그러나 “몇 차례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약간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 했을 뿐 실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진술<sup>189)</sup>

185) 1967년7월14일 이수자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

186) 1967년7월15일 윤이상의 검찰 진술서 내용

187) 1967년12월1일 윤이상의 김영준 재판장앞 「현재의 심경」 제하 내용

188) “발목이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는데 이원찬은 부산국제신문사장 서정귀와 자기공장을 하는 김영호를 데리고 와서 통일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1964년10월경 편지를 했더니 김영호는 올 수가 없다고 답신이 왔음”, 이상 1967년7월26일 윤이상의 검찰 조서 내용

189) 1967년7월15일 윤이상의 검찰 진술서 내용



○ 윤이상은 중앙정보부 및 검찰의 수사 또는 공판기간 중 간첩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 내지 반박

- 윤이상은 “과거 북괴와의 접촉은 사상의 동조도 아니고, 초기 한국인이라면 막연히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의식이 있는 국토통일에 대한 희망도 아니며 또한 그들을 방조하는 공작활동이나 간첩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sup>190)</sup>고 진술

- 또한 “부부조로 간첩활동을 하려고 모의했다는데”라는 판사의 질문에 “정말 간첩이라는 말은 싫은 말이고 억울합니다”라고 답변<sup>191)</sup>

○ 사건 기록 검토 결과

- 윤이상은 방북은 했으나 방북 당시에 다른 방북자들과 달리 노동당 입당을 거부하고 지하당 조직교육에 반발했으며

- 나아가 일정 시점부터 북측으로부터의 전화조차 진저리를 칠 만큼 꺼려하면서 북측과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으며

-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 및 대동 입동 요청을 받고 몇 차례 거부하다가 일부 요청을 들어주는 척 움직이면서도 주변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 윤이상이 최창진에게 전별금을 준 것을 공작금을 준 것으로 적용한 것은 법원의 무죄판결에서도 보여주듯이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범죄 실체 확대였다고 인정됨

190) 1967년12월1일 윤이상의 김영준 재판장앞 「현재의 심경」 제하 내용

191) 1967년12월2일 윤이상 서울지법 공판 조서 내용

- 중앙정보부는 이원찬의 지시로 유학생·광부·간호원들의 실태를 파악·제보한 점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고, “부부 공히 간첩할 의사가 있었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 결과 간첩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2심 이후 동조죄 적용)

## 【 가혹행위 여부】

- 윤이상은 중앙정보부에서 구타·물고문 등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되었으며 주독 한국 최덕신 대사가 고문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

### 윤이상 주장 - 고문으로 간첩 조작<sup>192)</sup>

- 중정 본부로 끌려가 본부에서 떨어진 단층의 고문실이 모여있는 건물내 고문실로 옮겨졌는데 2 사람이 피곤한 듯이 의자에 앉는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내가 반항을 하자 그들은 발로 차며 꿇어앉을 때까지 밟았음
- 그들은 내가 저지른 일을 쓰라고 해서 썼더니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너는 북조선의 거물간첩이고 공산주의자이다”고 하여 내가 부인했더니 두꺼운 각목으로 내대퇴부를 후려쳤으며 이런 고문은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계속되었음
- 그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고문에 착수했는데 내 손발을 통나무에 매달고 내 얼굴 위에 흠뻑 젖은 천을 놓고 그 위에 물뿌리개로 물을 뿌렸는데 그러면 천이 입과 코에 달라붙어 질식할 것 같았음
- 내가 정신을 잃으면 그들은 묶은 것을 풀고 의사를 불러와 주사를 놓고 또 물고문을 했으며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자 고문은 밤새 계속되었고 심문, 물, 주사... 여섯 번인가 그 이상 주사를 맞았을 때 나는 죽음을 예감하였음
- 그들은 몇시간 나를 쉬게 했는데 옷이 젖어 알몸으로 누워있었으며 몇 시간 뒤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되풀이되었음. 쓰는 일, 구타, 쓰는 일이 반복되다가 또 고문이 시작되었는데 낮익은 최대사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는 조금 떨어진 방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음

192) 윤이상 및 「루이제 린저」, 『윤이상 상처입은 용』 (05.3.2, 랜덤하우스중앙)

- 중정은 이중 고문을 통해 두 사람중 하나가 고문으로 약해져서 공산주의자이고 간첩이란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대사도 나도 자백을 하지 않았음
- 나는 힘이 떨어졌고 그들이 내민 백지에 “나는 북한에 봉사하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썼으며 최대사가 정부타도를 계획하고 있음을 덧붙여 쓰라고 요구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끝까지 반대했음. 그들은 나를 최덕신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으며 이렇게 나는 진짜 합법적인 죄인이 된 것임
- 그러나 나는 실제 재독한국인을 돕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유럽지역내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고 도와주었으나 정치적인 문제를 나눌 기회는 전혀 없었으며 내가 그들에게 북한을 이롭게 선전을 했다는 것은 중정이 만들어낸 조작임
- 또한 내가 북한을 다녀온 건 사실이지만 그 여행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북한 여행은 검찰의 기소장에서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 동조자, 간첩 두목으로 북한에 간 것이 아님

○ 중앙정보부 수사관 및 주변인물 면담 결과, 윤이상이 중앙정보부 수사중 폭언 및 구타 등으로 모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6-7차례의 물고문 등에 대한 증언이 없고 다만, 「윤」의 자해 흔적을 보고 고문후유증으로 오인한 증언은 청취함

< 윤이상의 가혹행위 관련 진술내용 >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최○○	수사관 윤이상의 신병관리	· 윤이상 조사시 물·전기고문 등은 없었으나, 당시 일반적으로 배를 (발로) 차고 뒤통수를 때리는 정도는 있었을 수 있음
이○○	수사관	· 윤이상, 이응로 조사시 물·전기고문 등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뭐 잘 못 했느냐”는 정도의 불만 토로는 있었음 · 당시 조사실은 정보학교 기숙사를 임시로 사용하였기에 고문 장비를 설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정직원들 중 고문 기술자도 없었고 다만, 조사 중 뺨을 때리는 정도의 구타 행위는 있었을 수도 있음
김종대	독일연행자	· 윤이상이 고문을 당했는지 잘 모르나 여타 피의자들과 달리 특별 감호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 등으로 인해 유명 예술가로서 심적고통이 컸었던 탓에 수차 자살 시도를 했다고 들었음

면담인	사건 관련성	면담요지
임석훈	독일연행자	· 당시 윤이상이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공판과정에서 이를 들은 바 없음 · 언젠가 윤이상이 자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고 추측컨대 자기로 인해 몇 사람이 끌려들어 왔다는 책임의식과 옛날식 공산주의자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음
이수길	독일연행자	· 「윤」의 고문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옆방에 수감된 한봉흡으로 부터 “「윤」이 최덕신대사와의 연계성 때문에 많이 당하지는 않았으나 약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음 · 그러나 사실 최덕신은 당시 중정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음
하태규	미국연행자	· 윤이상은 머리에 상처가 나서 병원에 실려 갔기 때문에 크게 당했다고 생각했음
박성욱	독일연행자	· 윤이상도 당시 머리에 붕대를 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었음

- 한편, 최덕신대사가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윤이상의 주장과 관련 각종 원내외 자료 검토결과, 최대사는 윤이상의 중앙정보부 조사기간(6월22일-7월9일)중 한국에 연행되지 않았고 서독 대사관에서 한국대사로서 사건 수습에 진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sup>193)</sup>
- 또한 윤이상은 공판과정에서 가혹행위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1977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와의 대화 시에 최초 제기
  - 1심 재판장 김영준은 윤이상의 고문주장에 대해 “공판 시 「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주저 없이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라고 진술한 반면

193) 최덕신은 7월5일에야 외교부 본부에 외교마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13일 재차 사임의사를 표명, 8월18일경 독일을 떠나 8월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됨.

- 이수자는 “(고문 등으로) 자존심에 참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중앙정보부로부터 (고문 등의 내용) 발설 시 살아날 길이 없다고 느꼈으며 빨리 독일로 돌아가려는 생각만이 있어서 실제 고문은 많이 당했으나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
- 이로 볼 때 윤이상의 물고문 관련 주장은 주장내용의 구체성·지식인으로서의 위상·자해소동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고문 피해자와 달리 공판과정에서 주장한 적이 없는 등 입증할 근거가 없어 판단 불가
- 다만,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진술과 윤이상의 자해 사실로 판단할 때, 한국에 들어가 잠깐 조사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중앙정보부 조사 시 폭언 및 구타 등으로 크게 어긋나자 심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

## 【 자해 사건 】

- 윤이상이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머리를 재떨이로 내려쳐 자해한 사건이 발생

### 윤이상 담당 수사관 진술내용

- 윤이상이 조사 3일째 평소 심장병과 정신 불안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여 새벽 1시경 윤이상을 취침시키고 자신도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경 윤이상이 자신을 깨워 일어나 보니 머리에 피가 범벅이 된 채였음
- 윤이상은 본인이 잠든 사이 조사실에 비치된 네모난 유리 재떨이로 자신의 귀 뒷편을 자해하여 1cm가량 상처가 났고 피 묻은 손가락으로 조사실 벽에 약 1m정도 길이의 글자를 썼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 윤이상의 자해사건과 관련 과거의 잘못에 대한 수취심 또는 수사관의 간첩혐의 진술 강요에 대한 항의차원 등 2가지로 추측이 가능

① 중앙정보부의 수사도중 과거 잘못에 대한 수치심으로 자해했을 가능성

- 윤이상은 검찰에 제출한 1967년7월15일 자술서에서 “과거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참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정보부에서 수사 받을 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결까지 감행했다”고 기록

② 본인 및 최덕신 대사의 간첩혐의 진술 강요에 대한 항의차원일 가능성

- 담당 수사관은 위원회 면담시 “「윤」이 자해한 후 조사실 벽에 ‘나는 공산당이 아니다’고 쓴 혈서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수자는 “중앙정보부 수사시 도저히 고문과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 유리재떨이로 머리를 깨서 흐르는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벽에 ‘아이들아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쓴 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

- 수사과장 이○○은 언론 인터뷰<sup>194)</sup>에서 “담당 계장이 「윤」에게 최덕신에 관한 심문을 하는 장면을 관찰하다가 2층에서 쉬고 있었다. 새벽에 담당 계장이 보고해서 갔더니 「윤」이 네모난 재떨이로 머리 오른쪽을 몇 차례나 찍었으며, 4평정도 되는 취조실 바닥이 피로 물들었다. 벽에는 ‘최덕신은 결백하다’는 글이 있어 현장보존을 지시하고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증언

194)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8권」 p.97 (「동백림 사건의 진실」, 조선일보사 2001년12월)

### 3) 독일로의 귀환 및 그 이후

- 윤이상은 당시 법원이 중앙정보부의 각본에 따라 판결했으며 최종심 이후 수감생활을 하다가 완전 무죄가 아닌 대통령 특사 형태로 석방됨으로써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

#### 윤이상 주장 - 중정의 영향으로 무죄석방에 실패<sup>195)</sup>

- 내가 투옥되고 한국의 모든 신문이 내가 체포된 간첩의 우두머리이고 국가반역자라고 보도했다고 들었는데 중정의 교묘한 공작에 국민들 대부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실로 믿어버렸고 이러한 사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보다도 훨씬 충격적인 일이었음. 이후 학생들의 데모도 그치고 신문들도 아무 것도 쓰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음
- 1심재판관들은 당초 나의 사형 판결에 반대했는데 중정은 재판관을 3일간 호텔에 가둬놓고 재판관과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나에게 씌워진 간첩활동의 죄가 증명된 것으로 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재판관들을 설득했음
- 이에 따라 판결은 중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판결 언도 시 거기에 있던 중정요원 몇명이 뛰어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면서 환성을 질렀던 것을 직접 들었음
- 당시 1심 판결관은 중정의 집행기관이었고 2심은 중정이 압력을 행사하지만 정당한 사법 언어가 어느 정도 남아있었으며 대법원은 비교적 자유로웠음
- 나의 석방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무죄판결을 받아 완전하게 명예회복을 해서 나간 것도 아닌 대통령 특사 형태였음

- 윤이상은 석방 후 1969년3월29일 독일로 돌아간 뒤 1970년8월15일 대통령 특사로 잔형이 면제되었으나, 1989년3월 남북음악축전을 계기로 귀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여년전 자신이 당했던 가혹 행위와 관련 한국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1994년 한국 음악계에서 「윤이상 음악축제」를 기획, 귀국을 추진했으나, 한국정부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무산됨<sup>196)</sup>

195) 윤이상 및 「루이제 린저」, 『윤이상 상처입은 용』(05.3.2, 랜덤하우스중앙)

- 한편,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는 위원회 면담에서
  - “당시 남편은 국내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서독간 교류를 보고 동백림을 왕래해서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사전에 한국대사관이 경고라도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 “남편에게 찍힌 반한인사의 낙인을 벗겨주기 바란다”고 언급
- 법원이 최종판결(재항소심)에서 “(간첩죄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하고 탈출죄에 의해 경합 가중하여 징역 10, 자격정지 10년형”으로 판결함으로써 윤이상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정보부에서 윤이상을 간첩으로 발표함
- 이에 따라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불법 연행되어온 뒤 일부 강압 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 동백림 사건 이후의 해외 활동부분은 本 위원회의 조사영역에서 제외

196) <http://www.isangyun.org> 내용



## IV 結論 및 意見

### 1 結 論

#### 가 동백림 사건 評價

○ 동백림 사건은

- 1967년6월8일 제7대 총선이후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정희 정부가 대규모 공안사건을 기획, 조작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 자수자의 진술에 따라 6.8 선거이전인 6월 초에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수사계획서에 부정선거 대응차원임을 입증할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전 기획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실제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지의 유럽거주 한국인들은 동서독간의 교류 분위기 속에서

- 현지 대사관의 관심부족과는 대조적인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동백림 및 북한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주변인물 근황제보, 대북접촉 주선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 이중 3-4명은 국내 귀국후 1-2회 정도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3 방송을 청취했음(다만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 당시의 남북간의 대립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보부가 이를 심각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건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프랑스·미국·오스트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음

- 주권 침해 등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외거주 관련자들의 경우 사법적 처벌보다는 관련자들의 협조에 기초한 현지 공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교포사회에 이 같은 접촉의 불법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그렇지 못했음
-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불법연행은 독일 등 해당국과의 외교문제를 초래했으며 특히 해외 연행자중 53%만이 기소되고 30%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연행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했던 것으로 평가됨

○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는

- 동백림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 송치자 66명 중 23명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귀국 후 활동부분을 과장함은 물론 혐의가 미미한 사람들에 대해 범죄사실을 과장하는 등 사건 외연 및 범죄사실의 확대를 시도한데 이어
- 당시 6.8 부정선거 비판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10일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 특히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 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당시 수사과정에서 위협 등 심리적 강압수단이 다수 있었던 외에도 구타, 물·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중앙정보부는 연행과정에서 강제수단 사용 및 해외기관과의 협조까지 계획하였는데
  - 대부분 임의동행이나 거짓말로 대사관을 거쳐 국내로 연행했던 반면, 일부는 대사관에서의 감금·폭력 등을 사용하여 강제 연행하였고
  - 해외기관과는 독일·프랑스 측과의 협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당시 재판은 국제재판 성격으로 절차상 문제소지는 없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중앙정보부는 판·검사들에게 일정 금품 제공을 통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됨(이는 역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법원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함)
- 동백림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윤이상과 관련
  - 베를린에서 본으로 국내초청 거짓말에 의해 유인된 후, 대사관에서 단기간 국내조사 설득에 한국행을 수락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철야조사·폭언 및 일부 구타 등의 개연성은 있으나, 물고문설은 관련 증거 및 진술미비로 현 단계에서는 확인 불가함
  - 또 그가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방북한 데 이어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인사들의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 방문을 주선하는 등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독일에서 불법 연행해 온 것은 잘못이며,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잡아온 뒤 일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이라는 오명을 받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1967년 6.8 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학생들과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3선 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음
-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sup>197)</sup>을 만들 수 있었지만
  - 독일·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되고 윤이상·이응로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음
-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는, 당시 부장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sup>198)</sup>· 해외 방첩기관으로부터 집중 견제<sup>199)</sup>· 해외 교민사회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으로 전반적인 해외정보력의 약화를 초래했고

197) 1969년1월17일 우리정부와 서독 「프랑크」 특사간 합의내용에 의하면 서독정부는 북한이 국제적 승인 획득, 공관설치 등을 획책하며 기타 국제적 접촉을 가지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정부를 지지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독일내 한국인이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

198) 2005년9월15일 위원회에서 면담한 이철희 전 해외공작국장은 “동백림 사건이후 00국 협력기관은 만나주기는커녕 우리측의 전화조차 받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함.

199) 독일 내무성은 1967년7월27일 외국정보기관의 활동 통제조치를 새로이 강구, 시행함. 이상 주독 대사관의 1967년7월27일 보고 전문임.

- 또 유럽 거주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작전의 성공은 김대중 납치사건·김형욱 실종사건 등 중앙정보부에 의한 1970년대의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부추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됨
- 해외 교포사회와 관련해서 사건 이후 중정 주도로 공관관계, 교민 관계, 유학생관계, 보안관계 등의 대책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었고<sup>200)</sup>
  - 동백림 사건 이후 유럽 등 해외 교포사회가 동백림 사건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친정부 및 반정부인사 등으로 갈려 분열과 반목이 첨예하게 나타났고, 해외 거주 일부 지식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급증하였음<sup>201)</sup>
-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바, 19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됨
- 이 점에서 동백림사건의 최대 피해자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여준 사법부라고 할 수 있음

200) 1967년8월7일 중정 OO국에서 '동백림사건을 계기로 한 문제점 및 대책'제하로 부장에게 보고한 문건내용임.

201) 2005년10월4일 독일 교민 태용운 면담내용임.

- 사건 관련자들이 실정법을 어겼고 당시의 남북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위법행위를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유럽거주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사실의 확대과장, 동백림사건의 민비연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함
- 그리고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문제가 된 불법연행, 가혹행위, 사건의 확대조작 등의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탈피했지만 유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함
- 나아가 동백사건은 이 사건처럼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도 이를 특정 정권이나 공안기관이 (이례적으로 일곱차례에 걸쳐 사건 경과를 발표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민비연이라는 학생조직을 연관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등에 대해서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 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권이나 공안기관도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 金大中

## 韓國만 어제 오후 1시 日 失踪

「東京」外信社「아미사다」(山下) 日本官房次官은 8일 오후 1시 韓國의 前國會議員이었던 金大中이 租宿하고있던 그 日 日本의 租宿로부터 失踪한 事에 對하여 日本의 租宿에 對하여 搜查中 이다.

대한 다음과 같이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 「金」과 함께 租宿되어 있던 租宿의 租宿에 對하여 搜查中 이다. 租宿의 租宿에 對하여 搜查中 이다. 租宿의 租宿에 對하여 搜查中 이다.

「東京」外信社「아미사다」(山下) 日本官房次官은 8일 오후 1시 韓國의 前國會議員이었던 金大中이 租宿하고있던 그 日 日本의 租宿로부터 失踪한 事에 對하여 日本의 租宿에 對하여 搜查中 이다.

### 73.8 I



김대중 납치

#### 선정사유

- 상당부분 알려졌지만 공안기관이나 국가권력이 앞장서 정적을 탄압하고 살해하려고 한 대표적인 경우

#### 조사방향

- 김대중 납치시간을 기획하고 실행한 하부조직 실체와 구조, 작동체계를 규명해 권위주의 정권의 불법폭력에 대한 청산작업



김대중 납치



---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 차례 CONTENTS

### I. 개 요

---

1. 조사 목적 · 434
2. 사건 개요 및 의혹사항 · 435

### II. 조사 내용

---

1. 자료 조사 · 438
  2. 면담 조사 · 440
- 

### III. 조사 결과

---

1. 시대적 배경 · 444
  2. 의혹사항별 조사결과 · 457
- 

- 가. 중정에 의한 납치사실 확인 / 457
  - 1) 중정의 납치주도 입증자료 / 457
  - 2) 납치실행 착수 直前 상황 / 462
  - 3) 공작 추진상황 / 471
  - 4) 구체적 납치 실행과정 / 475
  - 5) 이동경로별 납치상황 / 501
  - 6) 평 가 / 513

- 
- 나. 최고위 지시자에 대한 판단 / 515
  - 다. 공작목표에 대한 판단 / 523
  - 라. 정부의 조직적 진상은폐 사실 확인 / 536

#### IV. 결론 및 의견

---

- 1. 결 론 · 548
  - 2. 위원회 의견 · 551
- 

※ 첨부 : 납치 공작관련 電文 등 참고자료 / 553

# I 概要

## 1 조사 목적

- 1973. 8. 8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김대중납치사건」은 납치현장에서 駐日파견관 金OO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개입 단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당시 한국정부는 공권력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상규명 보다는 일본정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 검·경 합동 「특별수사본부」 또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결국 75. 7 金OO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통해 내사종결 처리함으로써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임
- 따라서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온갖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는 비록 公訴時效가 지나 사법적 처벌은 면할지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얻는 것과 함께
  - 관련자들의 진솔한 증언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에 의한 진정한 화해의 장을 만들고자 하며
  - 또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함

##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 가 사건개요

- 金大中(前 대통령)은 73. 8. 8 일본 동경 소재 그랜드팔레스호텔에서 신원미상 남자들에 의해 납치된 후 행적이 묘연하다 8.13 동교동 자택 부근에서 풀려났는데, 당시 납치상황에 대한 그의 증언에 따르면
  - 8. 8 11:00경 동 호텔 2212호실에 투숙중인 梁OO(당시 OO당 당수)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 金OO(당시 OO당소속 의원)도 합석하여 점심을 먹고 13:00경 金OO과 함께 복도로 나오는 순간 2210호와 2215호 쪽에서 나온 6명의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2210호로 끌려 들어갔는데
  - 납치범들은 金大中을 침대에 눕혀 “떠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마취를 시켰으나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중 4명이 金大中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이용,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자동차에 태워 5~6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오사카 부근 어느 건물에 도착하였으며
  - 범인들은 그곳에서 金大中의 얼굴을 코만 남긴 채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방에 가두었다가 다시 자동차에 태워 1시간 이상 이동, 바닷가에 이르러 다른 팀에게 인계하자 이들은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모터보트로 1시간쯤 더 가서 큰 선박에 옮겨 실었고
  - 항해 중 배 밑쪽에 감금당해 있을 때 칠성판에다 몸을 묶고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바다에 水葬시킬 듯이 하다가 “비행기다”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는 중지되었다고 하며
  - 8.11경 한국 연안에 도착, 모터보트로 상륙해 앰블런스에 태워 양옥 집으로 옮겨져 계속 감금되었다가 「구국동맹행동대」라고 자칭하던 괴한들에 의해 8.13 22:00경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려났다고 함

### ■ 중정에 의한 납치 여부

- 한국정부는 중정 개입단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개입을 부인하였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통해 무혐의 종결 처리한 상태이나
- 동 사건은 그동안 중정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왔으며, 다만 지금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표는 없었음

### ■ 최고위 지시자는 누구인가

#### 【 李厚洛 중정부장 지시설 】

- 당시 李厚洛 부장은 73.3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이후 朴正熙 대통령의 不信을 받고 있던 중 金大中的 反유신 활동과 관련 중정의 대처방안에 대해 강한 질책을 받자
- 박대통령에 대한 신뢰회복의 최후 수단으로 중정요원들에게 공작추진을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李厚洛의 과잉충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

#### 【 朴正熙 대통령 지시설 】

- 국가적으로 중대한 공작사항이 李厚洛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 유신체제를 극력하게 비판하는 政敵을 제거하기 위해 박대통령이 李厚洛에게 사전 지시를 하여 실행되었다는 주장

## ■ 공작목표는 무엇이었는가

### 【 단순납치 주장 】

- 金大中은 미국과 일본의 정계·언론계·학계 등 인사들을 접촉, 박정권 지원 중단요구와 함께 교포들을 규합, 타도투쟁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反유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 李厚洛 등 사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金大中的 해외활동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에서 단순히 국내에 데려다 놓기 위해 납치를 하였다는 것임

### 【 살해계획 주장 】

- 피해당사자인 金大中은 호텔에서 발견된 대형배낭은 토막살해용으로 준비한 것이고, 용금호에서도 水葬을 기도하는 등 살해계획이 추진되었음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 다만 상황변화(목격자 출현 등)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것뿐이기 때문에 ‘단순 납치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납치사건’이라고 주장

## ■ 정부의 조직적 진상은폐 여부

- 당시 한국정부는 납치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일본정부와는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면서
- 납치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 및 용금호 선원들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등 事後관리와 「특별수사본부」 조사활동 조정·통제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제기

## II 調査 内容

### 1 자료 조사

#### ■ 국정원 보존자료(12,833쪽)

##### ○ 중정에 의한 납치실행 입증자료 확보

- 중정 파견관들이 金大中 납치를 위해 체류 가능한 호텔·거소지 감시와 병행하여 협조자를 활용, 유인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전문 등 관련자료 다량 입수 1)

##### ○ 공작계획안 작성사실 확인

- 핵심 관련자인 李哲熙·尹OO·金OO 등은 “KT공작계획안”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내용 확보 2)
- 그러나 국정원 관련자료 등 확인결과, 동 문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건발생 후 파기된 것으로 추정 3)

##### ○ 事後 사건은폐 기도관련 문건 확보

- 중정은 金大中 귀환 직후 국내 대책방안을 작성, 「특별수사본부」의 조사활동을 조정·통제한 사실 등을 통해 정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입증하였으며
- 98.2 동아일보에 보도된 “KT공작요원 실태조사보고” 등 관련자 事後대책 문건은 중정 공작부서에서 작성하였다는 증언을 확보 하였으나,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4)

- 1) KT공작·K.T·김대중 납치사건 등 색인어 입력을 통해 납치사건 관련자료와 金大中 동향감시 보고서 등 다량 확인
- 2) 당시 정보차장보 李哲熙, 공작단장 尹OO 및 駐日파견관 金OO은 공작계획서 작성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었던 핵심인물임
- 3) 현 국정원 조직 편제상 중정 공작부서의 후신 부서와 국정원 자료를 확인 했으나 동 문서는 발견되지 않음
- 4)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중정 문건(사본 추정)은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보아 당시 유출자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보임

## ■ 타 기관 보유자료(2,651쪽)

- 「김대중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중 金大中의 귀환직후 기자회견 녹음테이프(사본)를 통해 납치상황에 대한 최초 증언내용 확인 5)
-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대통령의전일지”(72.1~73.12, 640쪽) 입수, 박대통령과 李厚洛의 접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李厚洛에 대한 신뢰도 변화 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 해양수산부에서 통보한 “용금호 등록원부”에 船主가 鄭OO(중정요원)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 용금호는 중정에서 특수목적으로 운용하던 선박이란 증언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 6)
- 외교통상부에 보존된 납치사건관련 문서(2,000여쪽)를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韓·日 양국정부간 외교교섭 과정과 수사상황 등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駐日파견관 金OO의 납치사건 발생 전후 출입국기록 입수, 증언내용에 대한 보강증거로 활용

## ■ 일반자료(4,638쪽)

-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납치사건진상규명 시민의모임 著),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마이니치신문사 著), “김대중 납치사건 이것이 진상이다”(이영신 著) 등 관련 책자 15권(4,000쪽)
- “월간조선” “신동아” 등 각종 월간지에 게재된 金大中, 李厚洛 증언내용 등 관련자료 32건(602쪽)
- 98.2 동아일보에 보도된 중정의 事後 관리대책 문건 등 신문·방송·인터넷자료 6건(36쪽)

5) 金大中은 73.8.13 밤 귀환 직후 동교동 자택에서 납치상황에 대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실시

6) 鄭OO은 중정 공작단 소속 직원으로 부산항에서 용금호 선박 운용 책임자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2 면담조사

### ■ 사건관여 중정 직원

- 납치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중정 직원 27명 중 사망자·건강악화자 등을 제외한 11명에 대한 면담을 통해 공작계획 수립에서 납치 후 放免하기까지의 각 단계별 구체적 상황 확인
- 면담 실시자 현황

연번	성명	당시 직책	관련성	비고
1	李 哲 熙 (84세)	정보차장보	공작추진 상황 총괄	2회 실시
2	尹 〇 〇 (82세)	O국 공작단장	현지공작 지휘·감독	3회 실시
3	金 〇 〇 (81세)	동경 파견관	납치현장 출동	2회 실시
4	洪 〇 〇 (77세)	"	"	
5	劉 〇 〇 (75세)	요코하마 파견관	"	전화면담
6	柳 〇 〇 (76세)	동경 파견관	"	駐美파견관 면담
7	韓 〇 〇 (80세)	"	호텔 사전정찰	
8	金 〇 〇 (82세)	오사카 파견관	오사카 安家 대기	면담이후 사망
9	金 〇 〇 (여, 66세)	오사카 安家 고용원	오사카 安家 관리	
10	鄭 〇 〇 (65세)	O국 공작단원	용금호 이송 책임	
11	李 〇 〇 (65세)	O국 공작단원	서울 安家 감시·放免	

○ 면담 미실시자 현황

연 번	성 명	당시 직책	관 련 성	미실시 사유
1	李 厚 洛	부 장	공작추진 지시	건강악화
2	金 致 烈	차 장	지휘라인	건강악화
3	河 〇 〇	〇국장	공작추진 부서 책임자	사 망
4	金 〇 〇	駐日대사관 공사	현지공작 총괄책임	사 망
5	尹 〇 〇	동경 파견관	납치현장 출동	신원 확인불능
6	金 〇 〇	오사카 파견관	총영사관 차량 지원	연락처 확인불능
7	朴 〇 〇	“	안내 및 연락	중요도 미약
8	朴 〇 〇	“	오사카 安家 책임자	사 망
9	朴 〇 〇	〇국 공작단원	용금호 이송	사 망
10	安 〇 〇	오사카총영사관 직원	오사카 부두 이송	신원 확인불능
11	金 〇 〇	〇국 공작단원	부산항~서울 호송	신원 확인불능
12	姜 〇 〇	〇국 공작단원	서울 호송, 安家 감시·방면	사 망
13	金 〇 〇	〇 〇 실장	부산항~서울 호송	신원 확인불능
14	黃 〇 〇	〇국 직원	석방시 차량 운전	중요도 미약
15	尹 〇 〇	〇국 공작단원	용금호 선원 事後관리	연락처 확인불능
16	安 〇 〇	〇 〇 실 직원	용금호 선원 서약서 징구	중요도 미약

\* 李厚洛에 대한 면담조사를 위해 주거지를 탐문하여 방문했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신 당시 비서실장 李00(79세)을 통해 李厚洛의 납치사건 관련 비공개 언동내용 청취

■ 용금호 선원 7)

연번	성명	당시 직책	관련성	비고
1	李 O O (73세)	선장	용금호 운항 책임	
2	金 O O (68세)	조기장	용금호로 이송·감시임무	
3	曺 O O (79세)	조리장	金大中에게 음식 제공	
4	李 O O (68세)	갑판장	용금호내 감시임무	

■ 김대중 前 대통령

- 위원 및 조사관들이 직접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피해당사자인 金大中 前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 호텔에서 납치된 후 放免되기까지의 상황과 최고위 지시자 및 살해계획 관련 주장·근거에 대한 견해 청취

■ 기타 관련인물

연번	성명	당시 직책	관련성	비고
1	李 O O (82세)	O국장	자진귀국 설득 특명 수행	
2	李 O O (79세)	부장비서실장	李厚洛의 납치사건 발생이후 비공개 언동내용 득문	

7) 당시 용금호 선원은 총 18명이었으나, 이 중 납치상황을 잘 알고 있는 4명을 선정하여 면담 실시

## ■ 소결론

- 사건관련 핵심자료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관련자들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 8국과 駐日과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을 통해 “KT공작 계획서”가 작성된 사실과 납치실행 과정은 명확히 밝혀졌고
    - 또한 사건 발생 후 중정에서 작성한 대책방안 문건 등은 진상 은폐 과정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며
    - 국가기록원·해양수산부·외교통상부·출입국관리소 등 타 기관에서 입수한 내용을 통해서도 관련사실 일부 확인
  -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요청 결과
    - 사건관련 중정직원 27명 중 사망·건강악화(7명), 신원·연락처 확인 불능(6명)·중요도 미약 (3명) 등을 제외한 11명(15회) 전원과
    - 용금호 선원(선장 李OO 등 4명) 및 피해자인 金大中 前 대통령 등을 포함하여 총 18명(22회)에 대해 면담실시
  -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신문이 보장된 수사활동이 아니라 면담조사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와 李厚洛의 건강상태 악화로 증언 청취가 불가능한 점,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자료가 사건의 실체 확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점 등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8)
- ※ 전직 중정직원들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증언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면담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8) 한국정부는 73. 8.13 밤 金大中이 귀환하자 8.14 검·경 합동으로 마포경찰서에 「김대중납치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용의 차량과 선박 수사 등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음

### Ⅲ 調査 結果

#### 1 시대적 배경

##### ■ 朴正熙, 金大中の 정치활동 견제

##### 【 대립관계 형성과정 】

- 金大中は 70.9 실시된 신민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서 金永三과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하여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 \* 70.12.19 박대통령은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駐日대사로 있던 李厚洛을 중정 부장에 임명하였는데 이는 大選(71.4.27)을 대비한 인선으로 판단됨 9)
- 선거운동 기간 중 “10년 세도 썩은 정치, 못 살겠다 같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향토예비군제 폐지 등을 공약, 71. 4.18 장충단공원 유세시 대규모 군중이 집결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자
- 박대통령은 金大中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투표일 이틀 전 (71.4.25) 장충단공원 유세를 통해 ‘마지막 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 결국 야당의 부정선거 주장 속에 90여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3선에 성공하였으나, 金大中과는 政敵관계가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 10)
- ※ 大選을 통해 金大中の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하자 박대통령은 그의 장기집권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 집중적인 견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때부터 중정이 金大中에 대해 본격적으로 집중동향 내사를 진행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9) 박대통령은 뒷날 학계·언론계 인사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李厚洛을 曹操라고 지칭하면서 金大中이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 되자 大選을 대비하여 중정부장에 임명했다고 언급한바 있음 (「청와대비서실 1」, 김 진, 92.3, 179p 참조)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참조

### 【 중정, 金大中 집중 견제활동 추진 】

- 중정은 이미 71년부터 金大中에 대해 수사공작 등 형식으로 집중 동향내사를 통해 견제활동을 추진하였는데
- 이는 金大中이大選 출마 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72.10)까지의 국정원 MF자료 분석결과, “KT동향내사 보고”등 제목으로 1,100여 건의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사실로서도 알 수 있음 11)
- \* 동 자료를 통해 중정은 71년부터 金大中을 “KT”로 약칭, 표기한 사실 확인 12)

### 【 金大中, 박정권 비판활동 강화 】

- 金大中은大選 패배 후 71.5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는데 13)
  - 李厚洛 부장이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하여 72.7.13 “남북공동성명과 나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14)
    -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박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독재적인 지배 체제 강화와 영구집권에 악용하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국가보안법의 즉시 폐기, 민주적 내정 개혁, 75년 대통령선거 불출마와 정권이양 공약 요구
- 등 대통령후보자였던 위상을 바탕으로 박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활동 적극 전개

---

11) 동 MF자료는 납치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납치사건 발생 전부터 중정이 金大中에 대한 동향내사에 집중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목록(문서제목 표기)을 출력, 참고자료로 활용

12) 중정이 金大中을 ‘KT’로 약칭한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국 CIA 보고서에서 金大中의 영문 이름을 “KIM TAE CHUNG”으로 표기한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추론됨

13) 71.5.24 金大中이 목포지역 유세 후 상경하기 위해 승용차로 광주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암살 음모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14) “남북공동성명과 나의 견해” 성명서 (72.7.13) 全文 참조

## 【 10월維新과 국내외 정세 】

- 박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통일열기에 들떠 있을 때인 72.10.17 ‘특별선언’(이른바 10월維新)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과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15)
  - 72.11.22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된 유신헌법은 평화적 통일 지향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 등을 표방하였으나
    -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법관 임명권까지 부여하였고 이원적인 헌법 개정절차를 채택하는 등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 야당을 포함한 反유신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지만, 박대통령은 ‘10월維新’을 통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음
  - 예컨대 비상계엄 하에서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이 야당의원인 이세규·조윤형·조연하·최형우·박종률·김녹영·김상현 등을 구속 수사한 사건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유신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 이와 같이 유신헌법 공포와 함께 국내에서는 강력한 통제로 반대 여론을 억누르고 있을 때 거의 유일하게 金大中이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朴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비난하고 反유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 ※ 국내에서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세력을 탄압하고 강력한 통치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을 때 해외에서 金大中이 대통령후보였다는 위상을 바탕으로 反유신 투쟁에 주력하고 있던 상황은 박대통령 및 李厚洛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은 자명함

15) 李厚洛은 “신동아”(87.10월호)와 인터뷰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8월말 경부터 중정에 지시하여 삼권이 朴正熙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구조인 유신체제를 자신이 구상하였다고 시인

## ■ 金大中, 해외에서 反유신 활동 주력

### 【 反유신 활동내용 】

- 국회의원 신분이던 金大中은 72.10.11 신병치료차 일본으로 출국, 체류 중 10.17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국회해산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귀국을 포기하고 反유신 활동을 전개
- 주요 활동내용
  - 72.10.18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통일을 말하면서 독재적 영구 집권을 목표로 하는 반민주적 조치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위대한 한국민에 의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는 비난성명 발표 16)
  - 72.10.27 발표한 유신헌법안에 대해 “독재적 군림과 영구집권의 야망에 불타는 박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總統制개헌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여 북한의 공산 획일체제와 비슷한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성명 발표 17)
  - 72.11.21 미국 체류시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하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총통적 독재체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국시를 유린한 점” 등을 이유로 “이는 불법이며 무효이다”는 반박성명 발표 18)
  - 일본 자민당 우쓰노미야·사회당의 히데오 의원 및 미국무부 마샬그린 차관보·케네디 상원의원·라이샤워 교수 등 일본과 미국의 정계·언론계·학계 등 인사들과 접촉,朴정권 반대 활동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

16) 金大中의 비상계엄령 관련 성명서(72.10.18) 내용 全文 참조

17) 金大中의 유신헌법안 반대 성명서(72.10.27) 내용 全文 참조

18) 金大中의 유신헌법 국민투표 강행 관련 성명서(72.11.21) 내용 全文 참조



- 유신체제 비판 인터뷰 및 著書 출판 현황

- 한국 계엄령에 직언한다 (주간 아사히, 72.11.3)
- 나는 한국의 계엄령에 분노한다 (선데이 마이니찌, 72.11.5)
- 김대중이 한국의 위기를 호소하다 (주간 포스트, 72.11.7자)
- 분노로써 한국의 현실을 호소한다 (세계, 73.1)
- 조국 한국의 비통한 현실 (중앙공론, 73.1)
- 민주화만이 남북통일의 전제 (이코노미스트, 73.2.6)
- 독재와 나의 투쟁 (김대중 著, 73.7.2)

등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기사 및 저서가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됨

- 73.5.18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홀 강연시 20여명의 청년들이 난동을 부리며 방해한 사건 발생 19)
- 73.7.6 워싱턴에서 「한민통」 발기인대회를 개최코 재미교포 사회의 反 朴正熙 세력을 결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망명정권 수립’을 권하는 지지자도 있었으나, 金大中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 20)
- 73.7.10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을 위해 다시 일본에 입국, 8.4 민단에서 이탈한 세력들과 논의 끝에 金大中이 제의한 “先 민주 後 통일”이란 강령에 합의, 8.13 출범식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8. 8 납치사건이 발생하였음

19) 중정 駐美과견관은 동 샌프란시스코 시국강연시 金大中이 “受權대세 마련을 위한 교포들의 협력을 호소했다”고 보고

20) 중정 駐美과견관은 「한민통」 발기인대회시 金大中이 준비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연방제 및 남북동시 UN 가입을 주장했다는 등 보고

【 중정, 金大中 동향 수시 보고 】

- 중정 O국 소속으로 駐日·駐美한국대사관에 파견된 요원들은 金大中の 反유신 활동내용을 본부(O국)에 상세히 電文 21) 보고한 사실 확인
- 주요 전문내용(72.10~73.7.6)

연번	일 자	활동내용	구체적 내용
1	72.10.18	제국호텔에서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7 비상조치는 독재적 영구집권을 하려는 반민주적 조치다</li> <li>○ 박대통령의 행위는 이승만 독재를 쓰러뜨린 한국민의 힘에 의해 반드시 실패할 것임</li> </ul>
2	72.10.18	AP통신 동경 지국 도미나가 면담	새 개헌안을 한국민은 용납지 않을 것이며, 朴정권을 전복시킬 것임
3	72.10.26	참의원 의장 고노겐조 면담	10.17 선언을 비난하면서 한국은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고 주장
4	72.10.27	제국호텔 기자 회견	유신헌법안은 총통제적 개헌으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
5	72.11.10	동경 외신기자 구락부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朴정권은 정보정치, 권력, 금력을 교묘히 이용</li> <li>○ 통일문제는 1민족 2개 정부 방침하에 공존해 가면서 체제차이를 좁혀야 함</li> </ul>
6	72.11.13	하네다발 JAL 편으로 向美	
7	72.11.17	주간지 기사	계엄령 선포에 의한 헌법 개정은 영구집권을 노린 것임

21) 본부(O국)와 駐日·駐美과견관간에는 電文에 의한 지시하달 및 보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電文은 보안유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송수신된 후 해독작업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절차로 진행

연번	일 자	활동내용	구체적 내용
8	72.11.18	김OO 박사 접촉	○ 임시정부수립에 관한 견해 청취 ○ 한국정세에 관한 논고 부탁
9	72.11.20	미국무성 레너드 한국과장 접촉	10월 유신에 대한 의견 교환
10	72.11.21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유신헌법 국민투표 강행 관련 이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난하는 성명 발표
11	72.11.22	미국무성 마샬 그린 차관보 접촉	10월 유신 비난
12	72.12.14	콜럼비아 대학 시국 강연	○ 정부시책과 10월유신 비난 ○ 참석 교포들에게 유신반대 서명운동 전개
13	72.12.14	케네디상원의원 접촉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협조 요청
14	72.12.16	아메리칸 대학 시국 강연	○ 10.17 조치에 대한 비난 연설 ○ 미국 인사들에 대한 10월유신 반대 설득 당부
15	72.12.31	“한국사태와 나의 신념” 유인물 배포	向日 직전 10월유신 반대 유인물 작성, 각계에 배포
16	73. 1. 5	再 來 日	동경 프린스호텔에서 “무궁화여 영원하라” 집필
17	73. 2. 2	주간아사히저널 편집부기자와의 면담	○ 헌법개정은 박정권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 강화임 ○ 통일문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로 주장

연번	일 자	활동내용	구체적 내용
18	73. 2. 7	AA연구회 문의에 대한 회답	박대통령은 3권을 장악한 완전한 독재체제로 일본은 독재를 조장할 만한 원조를 삼가는 것이 좋음
19	73. 2.18 ~2.19	旧 한청 동계 강습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朴정권 탄압정책으로 당분간 귀국 불가</li> <li>o 朴정권은 형식적으로 남북통일 운운하나 사실상은 영구집권 계략으로 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함</li> </ul>
20	73. 3.21 ~3.22	입관법 연수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한국은 경제위기로 朴정권은 곧 망함</li> <li>o 해외교포와 연대, 朴정권 타도 운동을 전개 하자</li> </ul>
21	73. 3.23	외신구기자회견, 성명서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反朴투쟁의 국민적 승리는 멀지 않았으며, 朴정권은 통일의 열의와 실력이 없는 정권임</li> <li>o 남북동시 유엔가입, 연방제 창설 등을 통해 평화공존 체제 확립 및 남북교류 제창</li> </ul>
22	73. 3.23	다이가이타임스 기자 회견	북한은 빵은 있지만 자유가 없다. 한국은 빵도 자유도 없다
23	73. 3.25	JAL 006편으로 向美	이OO, 유OO, 강OO 등 出迎
24	73. 3.30	교포초청 강연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김OO, 이OO 등 반정부적 교포 30여명 저녁식사 초대</li> <li>o 10월유신 및 미국의 對韓정책 비난</li> </ul>
25	73. 4.14	콩고디어대학 기독교학자회참석	조국통일 방법으로 남북한 UN 동시가입 및 전쟁 억제를 위한 연방제 수립 주장

연번	일 자	활동내용	구체적 내용
26	73. 4.17	뉴욕아세아사회 학술회 참석	임OO, 정부 비판연동 자행
27	73. 4.28	시카고 시국 강연	○ 박정권은 국제적 고립과 권력층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함 ○ 교포들에게 민주수호 투쟁 선동
28	73. 4.29	4.19기념 가두 데모(뉴욕)	○ 박정권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음 ○ 4.19 혁명정신으로 박정권 타도 주장 및 가두데모 감행
29	73. 4.30	라이샤워, 헨더 슨 교수 방문	미국은 對韓 원조를 중지하고 박정권의 독재를 저지하는데 직접 개입해야 함
30	73. 5. 1	LA 데모 계획	좌 절
31	73. 5.18	샌프란시스코 시국 강연	○ 집권하면 남북연방제와 대중경제 구현 주장 ○ 受權태세 마련을 위한 교포 협조 호소 (데모로의 연결은 실패)
32	73. 6.17	달라스 한인교회 강연	○ 10월유신은 정권 연장의 구실임 ○ 현정권은 철저한 정보정치로 정권을 유지 하고 있다고 주장
33	73. 7. 6	메이플라워호텔 에서 「한민통」 발기인대회 개최	○ 「한민통」 발기준비위 결성 및 준비위원장에 金大中 선출 ○ 연방제 및 남북 동시 UN 가입 주장

※ 국정원 보존 자료를 통해 중정은 金大中의 反유신 활동 내용을  
종합, 박대통령에게 보고해온 사실 확인 22)

22) 중정은 납치공작이 한참 진행 중인 73.7.27에 “金大中 滯美·日 활동종합”(제4보, 72.10.11~  
73.7.24)제하 보고서를 청와대에 卽報(‘비서실에서 조치 필’이란 메모도 기재되어 있음)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위와 같이 납치사건 발생 전 金大中の 反유신 활동을 살펴보면
    -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유신헌법 공포와 관련하여 박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극렬 비난하였으며
    - 미국 및 일본의 정계·학계·언론계 등 유력인사들과 접촉,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원조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 특히 「한민통」 조직을 결성,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 중정은 反유신 활동을 조직화하여 對정부투쟁을 감행하기 위한 불순단체 구성을 기도하고 있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
    - 또한 기자회견 및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해
      - 한국은 경제위기로 朴정권은 곧 망할 것이며, 해외 교포와 연대하여 朴정권 타도운동을 전개하자
      - 북한은 빵은 있지만 자유가 없다. 한국은 빵도 자유도 없다
      - 朴정권은 국제적 고립과 권력층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내가 집권하면 남북연방제와 대중경제를 구현하겠으니 受權 태세 마련을 위해 교포들의 협조를 구한다
      - 미국은 對韓 원조를 중지하고 朴정권의 독재를 저지하는데 직접 개입해야 한다
      - 10월維新은 정권연장의 구실이며, 朴정권은 철저한 정보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 는 등 강경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받은 박대통령과 李厚洛은 당연히 대책방안 강구에 부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 ■ 李厚洛, ‘윤필용사건’이후 신뢰도 약화

### 【 중정부장에 임명 등 신뢰도 과시 】

- 李厚洛은 63.12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박대통령을 보좌하였으나, 69.10 동 직에서 물러나 1년여 간 駐日대사로 근무하다 70.12 중정부장에 전격 임명되었으며 23)
- 72.5 대통령특사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 金日成과 회담을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켰고, 또한 ‘10월維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박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음 24)

### 【 ‘윤필용사건’ 연루로 신임도 약화 초래 】

- 박대통령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아오던 李厚洛은 73.3 ‘윤필용사건’에 연루된 이후 신임도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 25)
- 이와 관련 72년~73년간 “대통령의전일지”를 분석한 결과 26)

23) 李厚洛은 비서실장에서 물러날 때 비서팀에게 “박대통령을 敎主로 하는 박정희敎를 신앙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는 일화에서 드러나듯 박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줄곧 강하게 표현해 옴

24) 박대통령은 73.1.12 연두 기자회견에서 “李厚洛 부장을 평양에 보낸 것은 큰 모험이었다. 훗날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가 고구려 수도 평양을 단신으로 방문, 억류되어 탈출한 고사를 생각해 보면서 민족의 비극을 미연에 막기 위해 큰 모험을 강행한 것이다”는 비유를 통해 강한 신뢰감을 표현

25) ‘윤필용사건’이란 73.3 박대통령의 지시로 姜昌成 보안사령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건으로 72년 말경 윤필용(수경사령관)이 李厚洛 부장과의 술자리에서 “각하가 연만하여 노쇠하기 전에 물러나 영원한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하며, 후계자는 형님(李厚洛 지칭)이 되어야 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박대통령에게 들어감으로써 윤필용에 대해업무상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건임(주한미국 대사가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내용 참고)

26)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대통령의전일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박대통령과의 접견자, 접견일시 및 장소, 접견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납치사건 전후 李厚洛과 朴正熙 대통령의 접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72.1~73.2간 李厚洛은 매월 12~24회 박대통령을 빈번 접견하고 현안을 보고하였으나, 73.3 ‘윤필용사건’이후에는 10회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 이는 ‘윤필용사건’으로 인해 박대통령의 李厚洛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줌
- \* O국장 李00은 당시 李厚洛도 처벌될 뻔 하였으나, 姜昌成 보안사령관에게 “軍(윤필용)과 官界(이후락)의 심복들이 배신했다고 알려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건의, 윤필용만 처벌되고 李厚洛에게는 1주일간 근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

#### 【 金大中 관련 대책강구에 고심 】

- o 李厚洛이 ‘윤필용 사건’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金大中이 해외에서 反유신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던 상황은 李厚洛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27)
- o 이와 같은 판단 근거에 대한 국정원 보존 자료는
  - “KT 滯美 활동 봉쇄공작 예산표”란 문건은 실행행사를 통해 金大中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 사실과
  - \* 실제로 73.5.19 金大中的 샌프란시스코 인터네셔널 홀 강연시 20여명의 청년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 발생
  - 73.7.10 金大中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자 O국에서는 부장 지시사항으로 駐日파견관에게 동향감시 철저와 견제대책 강구 지침을 하달하였고, 駐日파견관은 동향내사 결과를 수시 본부에 보고한 사실 등으로서 추론이 가능함

27) ‘윤필용사건’ 연루 혐의로 중정 국장급 3명이 해임되었다고 하며, 李厚洛은 “신동아”(87.10월호)와 인터뷰시 金大中的 해외 활동과 관련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중정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추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



※ 金大中의 해외에서의 反유신 활동은 朴正熙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윤필용사건’으로 박대통령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던 李厚洛에게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고 판단됨

## ■ 소결론

- 중정은 이미 71년경부터 金大中에 대한 동향내사를 통해 집중 견제활동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 이는 大選(71.4)을 통해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金大中이 박대통령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이로써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金大中이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본격적인 政敵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72.10.11 金大中(국회의원 신분)은 일본으로 출국, 체류 중 ‘10.17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해산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反유신 활동에 주력할 당시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박대통령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던 李厚洛은 73.3 ‘윤필용사건’에 연루된 이후 청와대 독대보고 횡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던 시기로
  - 더욱이 金大中이 미국과 일본의 정계·언론계·학계 등 유력인사들과 접촉, 朴정권 지원중단 협조요청과 함께 「한민통」을 결성하여 朴정권 타도 투쟁을 전개하면서 망명정부 수립 의사까지 밝혔다는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 및 李厚洛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 이는 73.5 중정이 실력행사로 金大中의 滯美활동 봉쇄공작을 추진한 사실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납치공작이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金大中 관련 대책방안이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줌
- 한편 O국은 부장 지시에 의거 駐日·駐美과견관에게 金大中 동향감시 지침을 하달, 이들이 파악한 활동내용을 상세히 종합하여 납치공작이 한참 진행 중이던 73.7.27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2 의혹사항별 조사결과

### 가 | 증정에 의한 납치사실 확인

#### 1) 증정의 납치주도 입증자료

##### ■ 사건 관련자 증언 확보

- 전직 중정직원 李哲熙(정보차장보)·尹OO(공작단장)·金OO(駐日과견관)등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결과 28)
  - 공작계획 수립 지시자 등 지휘라인, 공작계획안 작성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작에 동원된 중정요원 신원, 용금호 동원 경위와 현지 공작 진행상황뿐 아니라 공작추진 전 자진귀국을 설득한 사실과
  - 호텔에서 납치키로 결정된 경위, 대형배낭 등 구입·현장행동 대원 선정 등 납치준비 사항, 이동경로별 납치상황, 국내 安家 도착 후 放免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 「김대중납치사건」은 중정 O국에서 주도하여 실행하였음을 확인
- 또한 용금호 선원(선장 李OO, 조기장 金OO 등)에 대한 면담결과
  - 중정요원 鄭OO·朴OO의 지시로 오사카항에서 金大中을 인계 받아 통선을 이용, 용금호에 실어 국내로 이송한 사실과
  - 용금호에서의 구체적인 감금상황, 水葬위협 및 비행기 출현 여부 등 의혹사항에 대한 증언 확보 29)

28) 납치사건에 관여한 중정직원들에 대한 면담결과,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납치상황에 대한 증언내용은 상이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李厚洛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면담이 불가능하였으나 당시 부장 비서실장이던 李OO로부터 87년 경 李厚洛에게 “金大中 납치를 자신이 지시했다”는 말을 한바 있다는 득문내용 확인

29) 용금호 선원 면담을 통해 일본으로 출항경로, 오사카항 정박·대기상황, 金大中 이송 및 감시 동향, 오사카항 출항경로, 水葬위협 여부, 통신연락 및 부산항 입항 상황 등에 대해 확인

○ 사건가담 중정직원 신원 및 임무 확인

연번	성명	당시 직책	당시 임무	비고
1	李厚洛	부장	공작추진 지시	
2	李哲熙	정보차장보	공작추진 상황 총괄	
3	河○○	○국장	“	사망
4	金○○	駐日대사관 공사	현지공작 총괄책임	사망
5	尹○○	○국 공작단장	현지공작 지휘 감독	
6	金○○	동경 파견관	납치현장 행동대원	
7	洪○○	“	“	
8	尹○○	“	“	
9	柳○○	“	“	
10	劉○○	요코하마 파견관	“	
11	韓 ○	동경 파견관	호텔 사전정찰	
12	金○○	오사카 파견관	총영사관 차량 지원	사망
13	朴○○	“	안내 및 연락	
14	朴○○	오사카지역 파견관	오사카 安家 관리 책임자	사망
15	金○○	“	오사카 安家 대기	사망

연 번	성 명	당시 직책	당시 임무	비 고
16	金 O O	오사카 安家 관리인	오사카 安家 관리	
17	安 O O	오사카 파견 직원	오사카항 이동시 운전	
18	鄭 O O	O국 공작단원	용금호 이송 책임	
19	朴 O O	“	“	사 망
20	金 O O	O국 과장	부산항~서울 이송	사 망
21	金 O O	OO실장	부산항~서울 이송	
22	姜 O O	O국 과장	安家감시·석방임무	사 망
23	李 O O	O국 공작단원	安家감시·석방임무	
24	黃 O O	수송과 직원	放免시 차량 운전	

■ 납치실행 추진상황 電文 확보

- 국정원 자료 및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공작계획서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 O국 지시에 의거 공작계획안을 작성, 파우치로 송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전문과
    - 駐日파견관들이 납치를 위해 金大中의 거소지 등을 감시하고 협조자를 활용하여 유인, 임무수행(납치) 계획보고 문건
- 등 “KT공작계획안”을 직접 작성했다는 金OO의 증언과 현지 공작책임자로 파견되어 납치를 실행했다고 시인한 尹 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확보

## ■ 일본 경시청 수사자료 확인

- 일본정부는 납치사건 발생 직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조사와 목격자 증언 등 조사를 통해
  - 납치현장인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실에서 駐日대사관 일등 서기관 金OO의 지문을 발견하였고
  - 동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金大中을 태우고 이동한 납치차량은 요코하마총영사관 부영사 劉OO 소유(品川 55ㄷ 2077)란 사실 확인 30)

## ■ 사건관련자 事後 대책방안 강구 사실 확인

- 중정은 사건에 관여된 駐日파견관들을 귀국 조치시키는 한편 金大中 귀환 직후 국내대책 방안을 작성하여 「특별수사본부」의 조사활동을 조정·통제하는 등 진상은폐를 기도하였고
- 98.2 동아일보에 보도된 “KT공작요원 실태조사보고”(79.3 작성) 등은 관련자들에 대한 事後대책 방안을 제시한 문건으로
  - MF자료 검색 등을 통해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내용상 중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31)
  - 또한 전직 직원 면담을 통해서도 당시 O국에서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증언 확보 32)

30) 일본 경시청이 범행 현장에서 金OO의 지문을 발견한 경위는 60년대에 金OO이 기자 신분으로 가장하여 일본 입국당시 외국인등록 서류에 날인한 지문이 남아 있어 이와 대조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납치차량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요금계 근무자가 메모해 놓은 차량 번호(2077)를 근거로 추적한 결과, 劉OO 소유 차량으로 확인

31) 동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는 “당시 협조자가 안기부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했으며, 현재는 분실했다”고 설명

32) 납치사건 당시 서울 安家에서 감시임무를 수행한 李OO 면담결과, 당시 공작단에 근무한 전직 직원 李OO로부터 특문한 바에 의하면 “납치사건으로 인해 결국 李厚洛 부장이 경질되자 관여했던 직원들의 보직관계 등을 챙겨주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차에 김재규 부장이 박대통령에게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동아일보에 보도된 문서 사본을 보니 공작단 차트사가 쓴 글씨더라”고 언급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

## ■ 소결론

- 납치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駐日파견관 金OO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중정 개입단서가 나왔으나
    - 한국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마찰을 무마하는데 급급하였으며
    - 결국 75.7 서울지검에서 金OO 등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통해 내사종결을 선언함으로써 진상이 은폐된 채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음
  - 본 위원회는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 전직 중정 직원 및 용금호 선원들의 납치사건 가담 인정 증언
    - O국과 駐日파견관간 납치실행 추진상황 송수신 전문내용
    -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事後 관리대책 방안 문건
-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김대중납치사건」은 중정에서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임
- 또한 공작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 공작계획안 작성과정 및 내용, 납치물품(대형배낭 등)의 용도, 용금호 동원 목적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였고
    - 호텔에서 납치 후 오사카 安家를 거쳐 용금호로 부산항에 도착, 국내 安家에 감금하다 放免하기까지의 이동경로별 납치상황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해행위의 실상을 확인하였으나
    - 다만 “KT공작계획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의혹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음

## 2) 납치실행 착수 直前 상황

### ■ 金大中에 대한 집중 동향내사 실시

- 73. 7.10 金大中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재입국하자 O국은 부장 지시사항으로 駐日과견관에게 집중 동향감시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송수신 전문내용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였음 33)
- 주요 전문내용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	73. 6.29	부장(O국) 지시	73.7.2 일본에서 발매 예정인 KT 著 “독재와 나의 투쟁” 책자 긴급수집·송부 및 발간 경위와 주동자, 자금출처 등 확인 보고할 것
2	73. 7. 2	駐日과견관 보고	KT 책자(3부)를 7.3 11시 30분 하네다발 KE-704편으로 000호실로 송부함
3	73. 7.11	駐美과견관 보고	金大中은 7.8 09:15 NWA-003 편으로 일본 동경으로 출발
4	73. 7.11	駐日과견관 보고	KT는 7.10 16:00 NWA-003편으로 동경 도착
5	73. 7.11	부장(O국) 지시	○ KT 滯日 중 동향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 - 자금원 색출 및 봉쇄방안(불순자금원 등) - 주요 접촉인물, 접촉동향, 국내외 연락상황, 불순집회 개최동향
6	73. 7.12	O국 지시	숙소 및 현재 동태 파악, 7.12 한 전문 보고 할 것

33) 73.7.21자 전문내용을 보면 그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동향보고와는 달리 駐日과견관 전원을 동원하여 金大中이 체류 가능한 호텔을 대상으로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던 사실 확인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7	73. 7.12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에는 배OO, 조OO, 김OO, 김OO이 나왔고, 김OO 차로 행방을 감추었음</li> <li>- 입국당시 체류 주소가 다이찌호텔로 되어 있으나 투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본인 가명 사용 농후</li> </ul> </li> </ul>
8	73. 7.13	부장(O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 동향보고를 매일 12:00 마감, 15:00까지 본부에 도착토록 책임 이행할 것</li> <li>○ 긴급사항은 수시 보고하되 관련대책 및 조치와 활동계획을 필히 보고할 것</li> <li>○ OOO 파견관은 책임활동관을 선정, 본부 지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한 활동지원책을 강구할 것</li> <li>○ 전담 책임활동관은 가용한 협조자 및 인원을 활용, 지시사항을 책임 수행할 것</li> </ul>
9	73. 7.14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 동향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7.14 협조자가 KT와 접촉토록 조종하여 언동내용 입수</li> <li>· 미국 체류 중 정치인, 언론인, 국무성 고위층 등 100여 명의 인사와 접촉, 이들은 한국의 비민주적 사태 우려 표명</li> <li>·朴정권은 내부 혼란으로 붕괴 직전에 있으며 전직 중정부장(김형욱)도 미국에 도피중이고 현직 대사들도 망명하는 예가 발생할 것임</li> <li>·KT는 약 2개월간 일본에 체류할 계획이며, 각계 인사와 접촉 예정이니 협력을 요청함</li> <li>·소문에 민간계 인사를 시켜 중정이 테러를 한다고 하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작정임</li> </ul> </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0	73. 7.15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는 日朝의원연맹 사무국장 시오노야가즈오 및 AA연구회장 우쓰노미야 의원과 접촉 시도</li> <li>- 체일 기간 중 베트남과와 반정부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체 결성 계획</li> <li>- 미국보다 일본에서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동, 운동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li> </ul> </li> </ul>
11	73. 7.16	부장(○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의원간친회 멤버 및 駐日 한국특파원과 민단요원을 활용, 일본 정계·언론계 인사와의 접촉을 차단할 것</li> <li>○ 駐日특파원 등 활용, KT 비난자료 유포할 것</li> <li>○ 베트남과를 적색분자로 완전 규정 발표, 접촉 명분을 제거시킬 것</li> <li>○ 첩망을 활용, 베트남과 자금원 색출 폭로 및 민단간부, 한민자통 세력을 활용하여 각개격파 할 것</li> </ul>
12	73. 7.17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와 협조자 접촉시 언동내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주장하자 격려를 하였고, 독재적인 박정권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역설하자 동조자가 많았음</li> <li>- 교포들이 단결, 反박정희 체제확립이 필요함을 언론이 이런 논조로 전개해 달라</li> <li>- 일본 정계 및 정부가 박정권을 지원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음</li> <li>- 현재 박정권이 추진하는 남북회담은 자신의 선거공약이며 정책인데 이를 도용하고 있으니 폭로해 주었으면 좋겠음</li> </ul> </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3	73. 7.18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조자가 제보한바에 의하면 KT는 금일 11시 ~ 11시 30분간 후꾸다야에서 총련 부의장과 접촉하였다고 함</li> <li>○ 동 석상에서 총련 부의장은 KT에게 평양방문을 종용하자 KT는 이를 즉석에서 응하지는 않았으나 방문할 뜻을 비쳤다고 함</li> <li>○ 000-07251 전문 지시는 긴요한 실정이며, 동 방안을 작성 73.7.19 중으로 특별 파우치로 건의하겠음</li> </ul>
14	73. 7.19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7247 지시에 의거 000이 임무 담당</li> <li>○ 7.16 10시 예정했던 베트남 6개 단체 대표와 회합은 金大中과 베트남과간 의견조정 관계로 무기 연기</li> <li>○ 金大中은 현재 게이오 프라자 도쿄 프린스 데고구호텔에 방을 예약해 놓고 계획적으로 은의하면서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li> </ul>
15	73. 7.21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日 미국대사관000에게 탐문내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관계 지원 보고에 의하면 한국 정보부가 金大中을 암살 또는 납치하기 위해 활약하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다고 함</li> <li>- 金大中은 일본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반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하며, 그것이 망명 정부의 조직이냐는 질문에 규모가 커지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li> <li>- 000이 당신의 보증(체포하지 않는다는)하에 귀국을 종용할 수 없느냐고 하자 駐韓미국 대사관의 협력을 받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첨언</li> </ul> </li> </ul>

○ 위 전문내용을 통해 O국은 駐日파견관에게

- 73. 7.10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하자 부장지시 사항으로 자금원 색출 및 봉쇄방안, 주요인물 접촉상황 등 체일 중 철저한 동향 감시 지침을 하달하고
- 7.13에는 책임 활동관을 선정, 본부 지시사항을 책임 수행할 것과 매일 15:00까지 동향을 전송하는 일일보고 체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 7.16에는 협조자를 활용, 일본 정계·언론계 인사와의 접촉 차단과 베트콩파를 적색분자로 규정 발표, 접촉명분 제거 등 견제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 34)

○ 이와 관련하여 駐日파견관은

- 金大中이 미국 체류 중 고위 인사들과 접촉,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을 주장했으며, 일본정부에朴정권을 지원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 또한 73. 7.18 조총련 부의장과 접촉, 평양 방문을 종용하자 이에 응할 뜻이 있음을 보였으며, 망명정부 조직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 동향을 수시 보고

○ 한편 73. 7.18자 “OOO-07251 전문지시는 긴요한 실정이며, 동 방안을 작성 7.19 중으로 특별 파우치로 건의하겠음”이란 내용은 O국 지시에 의거 공작계획안을 작성, 송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73.7.19 駐日파견관이 공작계획안을 작성, 본부에 송부한 사실을 볼 때 73.7초경부터 지휘부에서 공작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34) 위 전문내용 중 ‘베트콩파’란 당시 재일교포 조직인 민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배OO, 곽OO, 김OO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용어임

## ■ 수사 증거자료 확보 추진

- O국장은 공작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O국장의 요청에 의해 駐日 파견관에게 金大中の 수사 증거자료 입수 지시를 하달한 사실 확인
  - 金大中 재입국시 O국장이 O국장에게 보낸 협조건 내용 (73.7.12)
    - KT가 근간 미국 등지에서 반정부 행위를 활발히 전개하여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 일본 입국시 滯日동향을 일일파악, 당국(O국)에 통보 바람
  - 金大中이 총련 부의장을 접촉, 평양 방문 시사 첩보와 관련 수사자료 입수 협조건 내용 (73.7.20)
    - 조총련 부의장 인적사항, 접촉 동기 및 구체적 대화내용
    - KT의 북한 방문 의사 관련 구체적 사실과 실지로 평양 방문 전망이 있는지 여부와 조총련 등 좌경단체와의 접촉계획
  - O국장의 요청에 따라 O국장은 駐日파견관에게 수사 증거자료로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토록 지시하는 전문 하달 (73.7.23) 35)
- ※ 73.5경부터 O국장 李OO은 李厚洛 부장으로부터 金大中の 자진귀국 설득추진 특명을 받은 후 이희호를 접촉, 설득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던 중 마침 金大中이 조총련 부의장을 만나 평양 방문 의사를 보였다는 첩보에 의거 수사 증거자료 입수를 O국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납치 공작은 O국 주관 하에 극비리에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임

35) 金大中에 대한 수사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활동한 O국은 국내담당 부서이고, 납치공작을 주도했던 O국은 해외담당 부서로서 金大中이 일본에 체류 중인 관계로 O국에 수사자료 입수와 관련한 협조 의뢰를 한 것임

## ■ 金大中 자진귀국 설득 추진

### 【 李厚洛, 자진귀국 설득 특명하달 】

- 73.5말 李厚洛은 O국장 李OO을 궁정동 安家로 불러 “金大中의 가족을 활용하여 자진귀국을 설득하라”는 특명 하달 36)
  - 李厚洛은 “해외에서의 일체의 언행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적절한 시기에 정치 재개를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토록 했으며
  - O국장은 金大中의 妻 이희호에게 “그동안의 활동이나 발언은 일체 불문에 부칠 테니 귀국해서 정치를 하도록 하자. 상부의 결심과 명을 받아 하는 얘기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설득
- 73. 6 미국에 살고 있던 이희호의 친척 李OO가 귀국하자 同人을 통해 O국장과 이희호 명의로 자진귀국을 설득하는 편지를 金大中에게 보낸 사실도 있음 37)

### 【 자진귀국 설득관련 입증자료 】

- O국장은 자진귀국 설득 작업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던 중 73. 8. 6 19:45에 O국장에게 동일 김OO 집에서 이희호를 접촉한 결과를 통보하였는바 그 내용은
  - “현재 국내의 정치적 여건 하에서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함으로 남편 (金大中)에게 미국 유학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36) O국장 李OO은 당시 삼청동에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사무실 준공식에 참석, 행사 종료 후 李厚洛 부장과 함께 차를 타고 궁정동 安家로 이동하여 자진귀국 설득 특명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李OO이 73.5.19에 O국장에 임명된 사실과 73.6월초 이희호의 친척을 통해 金大中에게 편지를 전달한 점으로 보아 특명을 받은 시기는 73.5월말 경으로 추정됨

37) 당시 중정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O국장의 편지를 전달한 이희호의 친척은 李OO로 확인되었으며, 동 문서에는 “73.6.5에 李OO가 일시 귀국 후 국외에서 국가와 민족에 해가 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여 동지들과 고락을 같이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이희호의私信을 가지고 출국했다”고 되어 있음

- “귀국 후의 신분보장만 해 준다면 전화와 서신 등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하니 O국장과 함께 渡日하여 미국유학을 보장받는다는 조건하에 귀국토록 설득시키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 O국장은 동일 20:00 “梁OO으로 하여금 이희호에게 전화토록 함이 좋겠다고 보안차정보와 협의되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통보
- o O국장에게 통보를 받은 O국장은 73. 8. 6 20:30 駐日과건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긴급 하달하면서 “이희호는 KT 귀국 설득 결심이 선 것으로 판단됨으로 梁OO을 조종, KT가 이희호에게 전화를 하여 귀국可否를 문의토록 조종할 것”과 “KT의 병세 및 건강상태를 상세히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 자진귀국 설득 관련 추가 증언내용 】

- o 李哲熙는 납치공작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金OO 공사에게 “梁OO을 통해 金大中에게 ‘국내로 들어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고 자진귀국을 설득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 o 金OO 공사도 “월간조선”(87.10월호)과의 인터뷰에서 梁OO에게 “귀국해도 안 잡아넣도록 정부와 교섭해 볼 테니 金大中을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38)
- o 金大中은 O국장 李OO의 귀국 설득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귀국치 않으면 매우 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경고내용도 들어있었다고 주장 39)

38) 金OO은 월간조선(87.10월호)과의 인터뷰에서 梁OO이 金大中 납치에 협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梁OO을 통해 자진귀국 설득을 추진한 사실은 인정

39) O국장 李OO은 자진귀국 설득 편지를 받은 金大中이 “이제부터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답장을 보내오자 이희호가 먼저 일본에 함께 가자고 제의하여 동내용을 李厚洛에게 보고 후 이희호의 여권 발급을 의뢰한 후 기다리고 있던 중 납치사건이 발생했다고 증언

## ■ 소결론

- 73. 7.10 金大中이 미국에서 일본에 재입국하자 O국은 駐日파견관에게 일일 동향보고체계 확립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 73. 5 金大中の 滯美 활동 봉쇄공작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볼 때 이런 연장선상에서 납치공작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 73. 7.13 “책임 활동관을 선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라”는 지시내용은 지휘부에서 납치공작 착수를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임
- 공작계획안은 현지사정에 밝은 駐日파견관 (金OO)에게 작성·보고토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73. 7.19 駐日파견관이 작성한 공작계획안을 O국에 송부하고 7.21 金 O O이 브리핑을 위해 입국한 사실로 알 수 있으며
  - “金大中 관련 대책방안(공작계획안 추정)을 작성·보고하라”는 지시전문이 하달된 시점은 73. 7.14경으로 추정, 이는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 하자마자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해줌
- 그리고 공작안이 확정되기 전인 시점에서 “金大中이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과 독재적인 박정권 지원 중단을 역설했다”(73.7.17)거나 “조총련 부의장과 접촉시 평양 방문 의사를 보였다”(73.7.18)는 駐日파견관의 보고내용은 지휘부에 공작추진의 당위성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며
- 한편 73.5경 O국장은 李厚洛의 특명을 받고 金大中の 자진귀국 설득공작을 추진하던 중 73.8.6에야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O국에 통보함으로써 “梁OO을 통해 金大中の 귀국 可否를 문의하라”는 긴급전문이 하달되었지만, 그 때는 납치장소 결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73.7.10)할 당시에 이미 자진귀국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 납치공작 추진지시가 내려진 상태로 판단됨

### 3) 공작 추진상황

#### ■ 공작계획 수립 과정

##### 【 李厚洛, 공작추진 지시 】

- 73년 일자미상 李厚洛은 李哲熙를 궁정동 安家로 불러 “金大中이 해외에서 정부를 헐뜯고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공작추진을 지시하자
- 李哲熙는 ‘동백림사건’으로 인해 해외 정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반대를 하였으나, 다시 安家로 불러 “金大中을 데려와야겠다. 데려오기만 하면 그 후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하면서 재차 강력 지시하여
- 李哲熙는 결국 O국장 河OO과 협의 후 공작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고 진술 40)

##### 【 공작계획안 작성자 】

- 납치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 중 李哲熙·尹OO·金OO 등 3명은 공작계획서 작성 사실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언내용은 상이 41)

\* 지휘라인에 있었던 李厚洛은 건강악화로 증언이 불가능하고, 河OO국장과 金OO 공사는 사망

40) 李哲熙는 李厚洛이 “金大中을 데려오라”는 납치공작 지시를 하였다면서 동 지시를 받고 “동백림 사건 때도 정보활동에 공백상태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지금 金大中을 데려오면 오히려 영웅을 만들어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대며 적극 반대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하였고, 李厚洛이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李厚洛 부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라는 심증은 가졌다고 증언

41) 李哲熙는 河OO 국장과 협의, 尹OO 단장에게 공작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尹 단장이 작성한 계획서를 李 부장에게 결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尹 단장은 자신이 공작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하고 金OO 파견관이 작성한 계획안을 검토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



- 다만 金OO은 金OO 공사의 지시를 받고 “KT공작계획안”을 작성, 귀국하여 본부에서 브리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 駐日과견관이 보고한 전문내용을 통해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42)
- 73.7.18자 전문 말미에 “OOO-07251 전문 지시는 긴요한 실정이며, 동 방안을 작성하여 7.19 중으로 특별 파우치편 건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 “OOO-07251 전문지시” 문건이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는 O국에서 駐日과견관에게 金大中에 대한 공작계획안 작성을 지시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동 지시에 의거 계획안을 작성하여 7.19에 파우치 편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金OO이 공작계획안 브리핑을 위해 입국한 날이 7.21로 확인된 사항과 부합됨

【 공작계획안 확정시기 】

- 73. 7.19 공작계획안이 파우치 편으로 O국에 송부된 사실과 駐日과견관 金OO이 7.21 “KT공작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귀국한 점과
- 동일 현지공작 책임자로 과견된 尹 단장과 함께 渡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종적으로 공작계획안이 확정된 시기는 73.7.21로 판단됨 43)

42) 金OO은 金OO 공사로부터 “본부에서 金大中을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공작계획서를 만들어 귀국해서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KT공작계획서”란 제목으로 작성 후 귀국, 李哲熙 차장보와 河OO 국장에게 브리핑을 하였으나 채택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

43) 金OO 출입국조회 결과 73.7.21 입국 후 동일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尹 단장은 李哲熙의 지시를 받고 현지공작 지휘 감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金OO과 함께 출국하였다고 증언

■ 공작계획서 내용

【 핵심인물 증언내용 비교 】

구 분	증 언 내 용	비 고
李 哲 熙 차장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厚洛 부장이 “金大中을 국내로 데려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여 河OO 국장과 尹OO 단장이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 이를 李厚洛에게 보고</li> <li>○ 계획안은 尹OO 지휘하에 金OO 공사의 협조를 받아 납치하는 계획이었지 살해계획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li> <li>○ 또한 河OO 국장이 용금호 동원 필요성을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재가를 하였음</li> </ul>	단순납치 계획주장
金 O O 駐日과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공작계획서”의 내용은 “일본 야쿠자 10여명을 매수 하여 金大中을 납치 후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었다”며 납치계획이었지 살해계획은 없었음</li> <li>○ 계획안을 작성, 귀국 후 李哲熙 및 河OO에게 브리핑을 했으나, 결국 동 방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야쿠자 대신 駐日과견관들을 동원, 납치하는 것으로 변경</li> <li>○ 尹OO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시 李哲熙로부터 절대 살해 하지 말 것, 요원들을 총동원하여 수행할 것 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li> </ul>	단순납치 계획주장
尹 O O 공작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OO이 작성한 계획서를 보니 “제1안은 야쿠자 이용, 납치 후 파우치로 데려오는 것이었고, 제2안은 야쿠자 이용, 제거(암살)하는 것”이었음</li> <li>○ 파우치로 데려오는 방안은 공항 검색조치로 인해 실행이 불가능하고, 야쿠자 이용 제거 방안은 보안상 이유로 불가능하며 살해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반대의견 제시</li> <li>○ 결국 金OO 공사에게 駐日과견관들을 동원, 납치하여 데려오라는 지시가 내려져 자신이 현지감독을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金大中 이송수단 활용에 대비하여 용금호를 사전에 출항토록 하여 오사카항에 대기시켰음</li> </ul>	살해계획 논의인정 · 단순납치 실행주장

## ■ 소결론

- 李厚洛 부장이 李哲熙에게 납치공작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실무자들의 반대의견도 제시되기는 했지만 李厚洛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결국 O국에서 비밀리에 공작을 추진키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 “KT공작계획안”은 ‘李厚洛 부장 ⇨ 李哲熙 차장보 ⇨ 河OO 국장 ⇨ 金OO 공사 ⇨ 金OO 파견관’이란 명령계통을 통해 73.7.14경 지시가 하달되어 7.19 작성·보고 되었고
  - 尹 단장은 뒤늦게 李哲熙의 지시로 金OO이 작성한 계획안을 검토 후 73.7.21 金OO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 납치실행에 착수함으로써 현지공작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
- 또한 金OO이 작성한 공작계획안에는 “야쿠자를 활용, 납치 후 파우치로 데려오는 안”과는 별도로 “야쿠자를 활용, 제거(암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尹 단장의 증언은
  - 尹 단장이 면담과정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했던 점과 3차에 걸친 면담시 시종일관 “당초 계획안에는 살해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평가되나
  - 공작계획 작성자인 金OO은 살해안이 들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尹 단장 또한 동 계획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대하여 결국 金OO 공사에게 “駐日파견관을 동원하여 납치해 오라”는 지침이 하달되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단순 납치계획이 추진되었다고 주장
- 한편 현지공작 지휘체계는 직책상 金OO 공사가 총책임자였으나, 호텔에서 납치키로 결정된 이후부터는 尹 단장이 실질적인 현장 지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됨

#### 4) 구체적 납치 실행과정

##### ■ 납치목적 감시활동 전개

○ 73. 7.21부터 駐日파견관이 동원되어 본격적으로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44)

##### ○ 주요 전문내용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	73. 7.21	駐日파견관 보고	○ KT 동향감시 - KT동향 지시를 위하여 파견관 전원을 동원, 데이요부라자·제국·다이이찌·뉴오다니·프린스·오꾸라 호텔을 잠복 감시 하였으나, 특별하게 나타난 증거는 없고 계속 24시간 동향감시 하고 있음
2	73. 7.21	駐日파견관 보고	○ 000-07460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확실 한 사항은 아니며, 000도 친한파 의원들을 중심 으로 압력을 가하는 한편 진상을 탐문한 바 ○ 그러한 요청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실만이 확인되었으나, 동 사항은 앞으로 경계 가 요함으로 적극 저지하겠음
3	73. 7.21	駐日파견관 보고	○ KT 동향 - 7.21 베트남 협조자로부터 시라우메 여관에서 광동의 등이 한국 정객들과 자주 모임을 갖는 다는 첩보를 입수 - 파견관 000과 000이 현지경찰 결과 잠복하기 곤란하여 협조자로 하여금 여관에 투숙하여 감시케 하였음

44) 尹〇〇과 金〇〇이 함께 73.7.21 渡日한 날부터 金大中 납치를 위한 감시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4	73. 7.21	부장(O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00-07247 건에 대한 이행 재강조 지시</li> <li>- 국내외 인사와의 접촉사항, 접촉내용을 필히 입수 보고토록 할 것</li> <li>- 특이동향 없을 시는 활동사항 보고 제출 및 일일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li> <li>- “추후 조사확인 보고 위계”라고 보고된 사항에 대한 추보는 필히 이행할 것</li> </ul>
5	73. 7.22	駐日과견관 보고	각 호텔 감시 중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음
6	73. 7.23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KT의 일정한 연락처 확인 및 7.24 협조자에게 접촉케 하고 있음</li> <li>o 기 보고한바 있는 반정부운동 단체를 본격적으로 결성, 발족 예정이며 임창영의 후원을 받을 예정임</li> <li>o KT는 어젯밤 우쓰노미야 자민당 의원을 만나 일본에서의 반정부운동 단체 결성취지 설명 및 적극 지원 요청에 대해 정치인들을 동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함</li> </ul>
7	73. 7.23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KT 숙소확인</li> <li>- KT는 신쥬구꾸도쓰가 2-105 하라다맨션 누마다쥬 집에 투숙하고 있음을 확인</li> <li>- 지시사항 이행할 예정임</li> </ul>
8	73. 7.24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金大中의 숙소를 확인, 잠복 감시 하였으나 특이점 발견할 수 없음</li> <li>o 7.24~25 양일간 협조자를 활용하여 金大中을 유인, 주연을 베풀도록 한 후 시기를 포착, 임무 수행 예정임</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9	73. 7.24	부장(O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의 고정 연락처 및 우쓰노미야 의원과의 접촉 장소를 확인 보고할 것</li> <li>○ 김OO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조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 여부, 취약점(경제·가족·혈연관계 등)</li> <li>- 포섭 활용방안 또는 KT로부터 이탈 방안</li> </ul> </li> </ul>
10	73. 7.24	부장(O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콩과의 회합, 토의 내용 및 다음 사항을 조사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OO 체일 중 동향(접촉인물 및 언동)</li> <li>- KT와 임OO 및 베트콩과간 연락루트</li> <li>- KT 숙소(하라다맨션) 동거인 및 신변경호원 유무</li> <li>- 김OO과 베트콩과간 연락루트 및 金의 동향</li> </ul> </li> </ul>
11	73. 7.25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콩 6개 단체 회의시 배OO 언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은 미국에서 중정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행동과 신변을 조심중임</li> <li>- 金大中의 통일정책 노선과 우리 노선에 차이가 있으나,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강요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너무 가혹함</li> <li>- 노선 차이는 있으나 차정권 타도라는 목표는 동일하므로 합동으로 운동할 수 있음</li> <li>- 金大中은 총련과 협동대회는 3.1절이나 8.15 행사는 삼가고 7.4 남북공동성명 합동대회는 좋다고 하였음</li> </ul> </li> <li>○ 지시사항에 대한 건 계속 잠복 감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으며, 다가라 호텔 잠복 예정임</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2	73. 7.25	부장(O국) 지시	최근 베트남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유인물 (민족시보, 통일조선신문 등)을 빠짐없이 각각 5부씩 수집 보고할 것
13	73. 7.26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지시사항(OO-07339)에 대한 보고임</li> <li>- 임OO 접촉인물은 배OO, 광OO 등이며, 7.25 15:00 구 동경본부 사무실을 방문, 한국 정부 비난과 KT의 미국에서 활동상황, 재미 교포의 적극적 지원 및 재일교포도 KT를 적극 지원하도록 요망했음</li> <li>- 연락루트는 김OO, 배OO, 조OO임</li> <li>- KT 숙소에는 보디가드 2명이 항상 행동을 같이하고 있음</li> <li>- OO, OOO 기관 등은 보안상 접촉을 고의적으로 회피</li> <li>- 김OO과 베트남과간 연락은 주로 전화를 이용</li> <li>- 김OO은 철저한 KT 추종자로 현재로서는 포섭이 불가능한 상태임</li> </ul>
14	73. 7.26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KT와 베트남과의 견해 차이</li> <li>- KT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인데 반해 베트남 정책은 김일성 주장과 동일하여 양자간에 통일정책 견해 차이가 노골화 됨</li> <li>- 베트남측은 만일 견해 일치가 안 될시朴정권 타도는 같이 하나 통일운동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강력한 태도라 함</li> <li>- OOO는 “KT는 건방지다. 대통령 한 번 해먹겠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5	73. 7.26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00-07548건 보고관련 추가내용으로 7.25 18:30 다가라호텔 665호실에서 KT와 베트콩과의 간담회 개최 동향을 협조자를 통해 입수</li> <li>o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정책에 관해 KT는 자기의 기본노선을 고집하고 있고, 배OO는 김일성 노선을 주장 토론 끝에 합동조직 결성은 시간을 두고 의견 조정을 하자는 결론을 보았음</li> <li>- 합동조직 결성은 8.15까지는 불가능하게 됨</li> <li>- 8.15 행사는 6개 단체만이 히비야 공회당에서 실시키로 하고 강사로서 KT와 임OO을 초청하기로 했음</li> <li>- KT 언동에 의하면 김OO, 조OO 등 호남 출신으로 독자적인 반정부운동 조직 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함</li> </ul> </li> </ul>
16	73. 7.26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7.23 협조자는 KT의 요청으로 하라다맨션 누마다츄(김OO) 집에서 단독으로 만나 본국에 돌아가 정치투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내 체제로는 귀국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함</li> <li>- 일본이나 미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위사람들의 의견이 지배적임</li> <li>- 자기(KT) 정파 소속 정치인에 대한 압박과 친척의 경제활동 방해상태에서는 귀국 불가</li> <li>- 8월 중순경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대학에서 강의를 담당, 연구생활 예정임</li> </ul> </li> <li>* 협조자는 국내에서의 KT의 주위 환경을 완화시키면 귀국할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는 느낌이였다 함</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17	73. 7.27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 거소인 하라다맨션 809호에 대해 7.25 ~26간 내사결과, 주간에는 50대 여성과 20대 남자가 있는 것을 확인</li> <li>- 동 여인은 809호실에 기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OO의 누이로 확인</li> <li>- 7.25 협조자가 KT와 전화통화 결과, 동 맨션에서 자는 것으로 보여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음</li> </ul> </li> </ul>
18	73. 7.27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6 구 동본 상임위원회 개최시 ooo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를 기하여 조직결성을 추진했으나 KT와의 의견차이로 연기되었음</li> <li>- 金大中의 말에 의하면 정치가로서 자기 위신을 굽혀가며 대중단체와 함부로 합동할 수 없다고 했음</li> <li>- 金大中은 미국 정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차정권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였음</li> <li>- KT는 「한민통」 일본지부를 결성하고 한국과 미국에도 둔다고 했음</li> </ul> </li> </ul>
19	73. 7.28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지 “세계” 9월호에 KT와 좌담한 기사가 게재될 예정이라는 단편 첩보를 보고함</li> <li>○ 현재 임OO이 투숙 중인 게이오 브라자호텔 2730호를 특별 감시 중에 있으나 KT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어 계속 감시중임</li> <li>○ 특별 감시를 위해 동일 층에 파견관이 감시하는 방을 현재 교섭 중에 있음</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20	73. 7.28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와 베트콩 6개 단체는 통일정책 노선의 차이로 분열상태에 있음</li> <li>○ KT는 노선이 다른 베트콩과 같이 운동할 필요가 없으며, 독자적으로 호남출신자 등을 규합, 조직을 만들 것임을 천명하였음</li> <li>○ KT는 남북공동성명 1주년 기념식은 총련과 같이해도 좋으나 3.1절, 8.15 행사를 총련과 합동으로 하는 것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공박하였음</li> <li>○ KT와 6개 단체는 거리가 멀어지는 단계에 놓여 있으나, 조OO 만은 KT와 계속 접촉</li> </ul>
21	73. 7.29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7 6개단체 실무자회의를 개최, 8.15행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단체 독자적으로 8.15 11:00 히비야공회당에서 800명 이상 동원, “한국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중앙대회” 개최</li> <li>- 동 행사에 내빈으로 KT와 임창영 초청</li> </ul> </li> </ul>
22	73. 7.30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既 보고한 바와 같이 통일노선 차이로 KT와 베트콩간에 공백이 생기고 있으나</li> <li>○ 민통협 사무국장 등은 통일노선 차이는 있지만 차정권 타도운동에는 동일하지 않느냐며 KT를 냉정하게 꿰지 말고 차정권 타도운동이라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나와 베트콩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li> </ul>
23	73. 7.30	駐日과건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 친근자인 김OO을 미행, KT 거소 확인 중 인바 약 1년 전 하라다맨션 805호로 이사간 것으로 추측, 현재 확인중임</li> <li>○ KT공작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7.31 특별파우치 편으로 송부 위계임</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24	73. 7.31	駐日파견관 보고	7.31 16:00 하네다발 KE-702편 보안관에게 KT공작관계 보고서를 송부하니 수령 바람
25	73. 7.31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7.30 19:00 협조자 000가 신쥬구구 신쥬구장 한식점에서 KT 외 2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우연한 제보에 의거</li> <li>o 尹 단장 및 파견관 000등 6명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바 KT는 이미 동 음식점에서 행적을 감추었음</li> <li>o 000은 협조자를 조종, 000신문 000와같이 8.1 19:30 KT와 만나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었음</li> </ul>
26	73. 7.31	駐日파견관 보고	임00은 경도 그랜드호텔 726호에 투숙중이며, 7.31 오전부터 베트콩 김00 안내로 경도 시내 관광을 하고 있음
27	73. 8. 1	駐日파견관 보고	000 조종에 의해 협조자는 8.1 19:00 000 신문 000 및 KT와 접촉 후 모 장소로 옮겨 주연을 베풀 예정인바 기회를 보아 지시사항 이행 예정임
28	73. 8. 2	O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임시부호 변경 지시</li> <li>- KT 보고서에 사용되는 부호를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사용할 것</li> <li>- KT : 우에다(上田), 나까노(中野), 시모바라(下原), 박소수(朴小守), 임창수(林昌洙)</li> <li>- 윤 단장 : (부호명칭 표기 생략)</li> <li>- 파견관 : (부호명칭 표기 생략)</li> <li>- KT 및 윤 단장은 부여된 부호 중 임의로 수시 변경 사용 및 금후 KT 보고서에 KT, 윤 단장, 파견관 부호 일체 사용금지</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29	73. 8. 2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콩 일파는 임OO이 8.4~5경 도미 예정이었으나, 8.15행사에 특별강사로 참가토록 설득하여 8.15까지 체제하도록 하였음</li> <li>○ 단체 구성은 그간 배OO와 KT간 의견차이로 정체상태였으나, 조OO이 중간 역할을 하여朴정권 타도는 동일하니까 단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 8.15 결성이 불가능시는 8.25에 결성하자는 데 의견 일치</li> </ul>
30	73. 8. 2	駐日과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OO 조종에 의거 협조자가 8.1 19:00~23:20간 KT와 접촉시 득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중순경 미국 출국, 라이샤워 교수 소개로 하버드대학 청강생으로 입학</li> <li>- CIA(중정)는 조총련 부의장과 만났다고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임OO의 북한 방문 계획을 만류한 바 있음</li> <li>- 자기가 장소를 자주 이동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CIA에서 미행한 것 같지는 않았음</li> <li>- 배OO 일파는 조총련계인데 접촉을 왜 하는 가라는 질문에 배OO의 사상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임OO의 북한방문을 만류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대답</li> <li>- KT의 건강상태는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으며 한쪽 다리를 절고 있음</li> <li>- KT의 경계심이 완화된 것 같으며 협조자를 어느 정도 믿는 눈치임</li> </ul> </li> <li>* 협조자로 하여금 KT에게 동조하는 등 위장 접근시켜 자주 접촉토록 조종하여 이번 공작에 유리한 장소로 KT를 유인</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31	73. 8. 3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는 미국의 사단법인 “한국민주제도통일문제연구소” 동경사무소를 신주구 하라다맨션 809호실에 설치하였음</li> <li>- 동 연구소장은 金大中이며, 동경 사무소장은 조OO이 임명되었음</li> </ul> </li> </ul>
32	73. 8. 3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콩 일파는 8.2 18:00~21:00간 본교구 소재 일본 요정에서 임창영과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간담회에는 김OO, 배OO, 곽OO, 조OO 등 28명 참석</li> </ul> </li> <li>○ 베트콩은 8.15 행사 안내포스터 3,000매를 인쇄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KT가 강연한다는 것도 들어 있음</li> </ul>
33	73. 8. 6	駐日파견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은 현재 지방에 가 있으며 금야 동경으로 돌아올 예정임</li> <li>- 명일(8.7) 13:00경 양(梁OO 지칭)과 점심식사를 할 위계임(실제로는 8.8로 연기)</li> </ul> </li> </ul>
34	73. 8. 6 19:45	○국장이 ○국장에게 전통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회호 접촉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 14:00~17:10 종로구 연지동 김정례 집에서 접촉</li> <li>- 이회호는 “현재 국내 정치적 여건 하에서는 정치활동이 불가능함으로 남편(金大中)에게 미국유학을 권유하고 있으며, 김상현 등에 대한 구명 책임감은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 귀국 후의 신분보장만 해 준다면 전화, 서신 등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하여 ○국장과 같이 도일하여 남편에게 미국 유학을 보장받는다는 조건하에 귀국토록 설득시키겠다”고 대답했음</li> </ul> </li> </ul>

연번	일 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일 중인 金大中的 병세 및 건강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여 회보해 주시기 바람</li> <li>* 8.6 20:00 별도 0국장 확인한 바 梁(梁00)으로 하여금 이희호에게 전화토록 함이 좋겠다고 보안차장보와 협의되었다 함</li> </ul>
35	73. 8. 6 20:30	부장(0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국장이 이희호에 대한 조종을 실시한 결과 이희호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li> <li>- 복역 중인 김상현 등에 대한 구명 책임감은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 귀국 후의 신분보장만 하여 준다면 귀국토록 설득하겠다고 함</li> <li>- 조종결과, 이희호는 KT 귀국 설득의 결심이선 것으로 판단됨으로 梁OO을 조종, KT가 스스로 이희호에게 전화를 하여 귀국 가부를 문의하도록 조종할 것</li> <li>- KT의 병세 및 건강상태를 상세히 확인 보고 할 것</li> </ul>
36	73. 8. 7	부장(0국)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000-07164(7.11, KT동향감시 지시건), 07302(7.21, 동향보고 재강조 지시건), 00-1739(8.2, 임시부호 변경 지시건)관련 사항임</li> <li>o 임창수(KT 지칭) 동향 일일보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창수의 동향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막연한 보고는 지양 및 상황 자체가 임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임창영 및 베트콩과 주요인물 동향도 일일 보고사항에 포함시킬 것</li> <li>- 추후 확인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자동 보고, 일관성 있도록 유의</li> </ul> </li> </ul>

연번	일자	작성부서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쏘 과견관은 주 임무 수행과정에서 임창수(KT) 및 베트콩파에 관한 동향이 입수된 즉시 000이 이를 종합보고 할 수 있는 체제 확립할 것</li> <li>- 추후 본건 보고사항은 00-1739 (임시부호 변경지시건)에 따른 부호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조 후 부호 부여 대상범위를 확대해도 가함</li> </ul>
37	73. 8. 7	박 O O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金大中의 삼촌이라는 김OO은 동경에 가서 상봉하나 金大中 신변은 사설 경비원에 의해 엄중히 경계되고 있음</li> <li>o 재일교포 동향인사들 중에는 金大中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는 등 조총련 및 베트콩파와의 야합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li> </ul>
38	73. 8. 9	미상(5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KT 被拉관계동향” 제하 보고 내용</li> <li>- 피납경위는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와 2215호실에 있던 한국어를 사용하는 괴한 5명에게 납치되었으며</li> <li>- 2210호실에서 실탄 5발이 들어있는 탄창과 마취제로 보이는 약병, 배낭 3개 등 발견</li> <li>- 일본 관방장관은 8.8 17:00 “KT는 본국에서 형사피의자로 계속 수배를 받고 있어 일본정부는 경호활동을 하였는데 납치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납치범을 체포하기 위해 전 공항의 경비를 강화하였다”고 발표</li> <li>- 일본 경시청은 아직 유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8.8 서울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신분 확인 등 검색 활동 전개</li> </ul>

○ 위와 같은 전문내용을 통해

- 73. 7.21부터 金大中이 체류 가능한 호텔과 거소지 등을 대상으로 납치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착수하였고, 45) ○ ○ ○을 협조자로 활용, 金大中을 유인하여 납치를 실행하는 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 金大中과 절친한 고향 친구인 재일교포 김○○을 포섭,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金大中의 거소지로 확인된 하라다맨션 809호에 신변 경호원 유무를 확인토록 지시한 것은 동 장소에서 납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73. 7.31자 “KT공작관계 보고서를 하네다발 KE-702편 보안관에게 송부 하니 수령 바람”이라는 전문은 상세한 공작 추진방안을 보고하는 문서로 추정되나 동 문건은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 73. 7.31 야간에 金大中이 한 식당에 출현했다는 협조자 제보로 尹 단장과 駐日파견관 6명이 긴급 출동한 사실은 납치실행을 위한 긴박한 상황 전개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 46)
- 한편 73. 8. 2 金大中(KT), 尹 단장 및 駐日파견관들의 부호 변경을 지시한 것은 공작 보안상 조치로 판단되며, 73. 8. 7자 전문에서 실재로 ‘KT’를 ‘임창수’로 변경, 지침을 하달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73. 8. 6자 “8.7 金大中이 梁○○과 점심식사 예정”이란 전문내용은 동 첩보를 통해 梁○○의 투숙호텔 방에서 납치키로 결정되었다는 증언에 대한 보강자료로 판단됨

45) 駐日파견관 金○○에 의하면 金大中 거소지를 확인한 후에 자신이 협조자로 관리했던 자위대 출신자 ○○○가 운영하던 ○○ 홍신소에 미행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일본측 수사자료에 의하면 동 홍신소에서 감시한 기간은 73.7.25부터 3일간이란 사실 확인

46) 尹 단장 및 金○○ 파견관의 증언에 의하면 李哲熙 차장보가 金○○ 공사에게 전화를 하여 “그 물건(김대중 지칭) 빨리 해 보내라”고 독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 또한 납치실행 과정 중 金大中的 특이동향으로는
  - 본격적으로 반정부 운동단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일본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의원이 정치인 동원, 후원 약속을 했다는 등 유력 인사들과 접촉,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 베트콩과와 통일노선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朴정권 타도 투쟁은 연대키로 하였으며, 합동조직 결성은 73. 8.15까지는 불가능하여 8.15 행사에 金大中과 임창영을 초청키로 하였고
  - 협조자를 통해 귀국 가능성을 탐문하였으나 현 국내 체제에서는 귀국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귀국 불가 태도를 확인했으며
  - 또한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 후 미국과 한국에도 동 조직 결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고, 총련 부의장 접촉 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부인하면서 임창영의 북한 방문 계획도 반대했다고 피력
- 그리고 73. 8. 6에 “이희호가 O국장과 동행, 일본에 가서 귀국을 설득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었다는 O국장의 통보를 받은 O국장은 동 내용을 駐日과견관에게 긴급히 하달, 梁OO을 활용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했던 사실과 그 시점에는 이미 尹 단장 지휘아래 납치 준비작업에 착수한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치실행 전에 마지막으로 자진귀국 설득을 해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 한편 73.8.7자 전문을 보고한 朴 O O은 오사카에 파견되어 安家관리 책임자로 활동한 자로서 동 내용으로 보아 공작추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47)

47) 오사카 지역 파견관 金 O O과 오사카 安家 관리인 金 O O 등은 사전에 공작추진 사항에 대한 아무런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건발생 당일 뉴스를 통해 처음 납치사실을 알았다고 증언

## ■ 용금호 동원

### 【 용금호 관련 기본사항 】

#### ○ 중정에서 운용 경위

- 용금호는 1944년 건조되어 미군 화물선으로 사용되다 한국 해군에 매각된 후 72.5 중정 O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군으로부터 인수하여 48)
- 부산 소재 동화상사 소속 민간 화물선으로 등록한 후 평상시에는 화물을 싣고 일본을 왕래하였고 납치사건 발생 전 특수임무 목적으로 운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49)

#### ○ 등록원부상 제원

- 제조사 : 1944년 미국 J.K WELDING사에서 건조
- 길이 : 52m, 총톤수 : 536톤
- 기관종류 : 디젤발동기 2개(1,000마력, 나선추진기 2개)
- 속도 : 평균 9~11 노트 50)
- 등록일 : 72. 5.22 신규 불하
- 소유자 : 鄭 O O (부산시)
- 선명변경(74.1) : 유성호, 소유자 변경(74.2) : 이 O O
- 폐선 및 등록말소 일자 : 1978. 5.23

48) 李哲熙, 尹 단장 및 鄭 O O 등으로부터 용금호는 중정에서 특수임무를 위해 운용하던 선박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증언을 확보하였음

49) 선원들은 용금호가 중정 공작선인 사실은 몰랐으나, 선주 鄭 O O이 중정요원이란 걸 알게 되면서 중정에서 운용하는 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며 납치사건 이전에는 화물을 싣고 일본에 출항한 적 밖에 없다고 증언

50) 용금호의 속력은 최고 35노트라는 주장도 있으나,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30년이 다 된 배였기 때문에 평균 9~11 노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한국정부의 특별수사본부 수사상황서에는 9.5노트로 기재된 사실 확인

【 용금호 선원 신원 확인 】 51)

연번	직명	성명	비고
1	선장	李 0 0	
2	1등 항해사	朱 0 0	
3	실항사	朴 0 0	선원카드 입수
4	갑판장	李 0 0	선원카드 입수
5	2등 조타수	朴 0 0	
6	1등 갑판원	姜 0 0	
7	갑고수	吳 0 0	
8	2등 갑판원	金 0 0	선원카드 입수
9	4등 갑판원	林 0 0	
10	기관장	金 0 0	선원카드 입수
11	1등 기관사	李 0 0	
12	2등 기관사	鄭 0 0	
13	3등 기관사	朴 0 0	
14	조기장	金 0 0	
15	2등 조타수	尹 0 0	
16	1등 기관원	姜 0 0	선원카드 입수
17	통신장	鄭 0 0	선원카드 입수
18	조리장	曹 0 0	선원카드 입수
19	사무장	鄭 0 0	0국 공작단원
20	갑판원	朴 0 0	0국 공작단원

51) 중정요원 鄭 0 0과 朴 0 0은 평소 용금호에 승선하지 않았으며, 당시 선원 2명을 뺀 후 선원으로 가장하여 승선한 것임

【 용금호 동원 목적 】

○ 관련자 증언내용 비교

구 분	증 언 내 용	비 고
尹 〇 〇 (공작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작계획이 확정된 후 李哲熙로부터 현지공작 지도감독 지시를 받고 金大中 이송을 위한 예비수단으로 동원</li> <li>○ 따라서 鄭 〇 〇에게 “金大中을 데리러 간다”는 임무는 말하지 않았고, “오사카항에 도착하면 배 고장을 가장,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를 기다려라”는 지침만을 주었음</li> <li>* 처음부터 용금호로 이송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납치 성공 후 수송방법은 일본 내 조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용금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li> </ul>	예비이송 수단으로 준비
鄭 〇 〇 (용금호운용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7중순경 尹 〇 〇으로부터 “일본에서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야 하는데 비밀이동을 해야 하니까 힘쓰는 사람 3~4명을 구해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음</li> <li>○ 尹 〇 〇은 ‘백’이란 姓만 적은 전화번호를 주며 “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오사카 어디서 만나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안전하게 데려와라”는 지침을 주었음</li> <li>* 尹 〇 〇은 73.7말에 용금호가 일본으로 출항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이송 임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li> </ul>	사전 임무 인지否認
李 哲 熙 (차장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작계획 수립과정에서 河 〇 〇 국장이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배가 동원되어야 할 것 같다. 비행기에 태워올 수도 없고 배가 지원되도록 허가를 해 주라”고 제안하여</li> <li>○ 공작선을 노출시키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며 재고를 요청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여 결국 사용을 허가했다고 주장</li> </ul>	공작계획 단계에서 사용허가
용금호선원	출항 시 金大中 납치 후 이송 임무 수행 예정이란 계획은 전혀 몰랐으며, 오사카항 정박 중 金大中을 인계받은 후 비로소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	사전 임무 인지否認

○ 판 단

- 용금호 동원 경위와 관련 尹 단장·鄭 O O·李哲熙의 증언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지시를 내렸던 尹 단장의 진술에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작계획 단계부터 용금호를 이용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李哲熙의 재가를 받은 점과 鄭 O O 등 중정 요원들을 승선토록 한 사실 등을 통해 처음부터 납치공작에 사용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 용금호 출항 경로 】

○ 관련자료 비교

구 분	증언 및 자료 내용	비 고
용금호 선원 증언내용	부산항 출항, 여수항에서 정원석 선적 후 다카마쓰항에 도착, 정원석을 하역하고 이틀간 체류하다 오사카항으로 이동	정확한 일자 기억 不可
「특별수사본부」 조사기록	73.7.21 여수항에서 정원석을 신고 출항, 다카마쓰항(高松港)을 경유하여 7.28 오사카항(大板港) 입항	
오사카항 입항 신고서 내용	73.7.24 여수항 출발, 7.26 다카마쓰항 입항 후 7.28 출항, 7.29 04:00 오사카항에 입항하였고 다음 입항지는 부산항이며, 출발 예정은 8.1 18:00로 기재되어 있음	“김대중납치 사건의 전모” 책자 151p
일본 경시청 조사결과	경시청 외사과장 시로우치가 중의원 외무위에 참석(77.4.20), 용금호 입출항 경로 답변내용은 73.7.26 다카마쓰항 입항, 정원석 하역 후 7.29 04:00 오사카항 외항 제8구역에 정박했다고 답변	“김대중납치 사건의 전모” 책자 160p

○ 판 단

-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용금호는 73. 7.24 부산항을 출발, 여수항에서 정원석 선적 후 일본 내해를 통과하여 7.26 다카마쓰항(高松港)에 입항, 하역 후
- 다카마쓰항에서 이틀간 체류하다 7.28 출항, 7.29 04:00 오사카항(大板港)에 입항한 경로가 맞는 것으로 판단됨

【 오카카항 정박 상황 】

- 73.7.29 오사카항에 도착 후 입항수속 절차를 마치고 중정요원 鄭 O O과朴 O O은 鄭 O O(조기장)·金 O O(2등 기관사) 등 선원 2명을 선발하여 항구 근처에 있는 나폴리호텔에 투숙하면서 대기
- 鄭 O O은 동 호텔에 체류하면서 尹 단장에게 받은 전화번호로 수시 연락을 하여 “무슨 일 없느냐?”고 문의하였으나 “기다려라”는 지침만을 받았음
- 입항신고서에 “8.1 부산항으로 출항 예정”이라고 신고한 관계로 엔진고장을 이유로 계속 정박하고 있던 중 납치사건 발생 며칠 전 鄭 O O은 선장 李 O O에게 “중요한 물건을 하나 실기 위해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해 달라”는 지시를 내림
- 선장 李 O O는 밀수품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듣고 조기장 金 O O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통선 선장을 만나 “언제든지 연락하면 배를 가지고 오도록 해 주라”면서 15만 엔을 주고 예약 52)

52) 李 O O와 金 O O에 의하면 일반 통선을 이용할 경우 세관 옆에 있는 통선장에서 검색을 받은 후에 운항을 하게 되어 있어 밀수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밤늦게 세관을 통하지 않고 운항을 할 수 있는 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李 O O가 잘 알고 있던 통선 선장 집으로 찾아가 “언제든지 연락하면 배를 가지고 오도록 해 주라”는 약속을 받아 놓았다하며, 통선의 이름은 “사치(サチ)”라는 배로 기억된다고 증언

※ 용금호 선원들은 일본통운 오사카항지점을 통해 통선 운항을 계약, 7.30~8.8간 매일 2회 육지를 왕래하였으나, 鄭 O O이 별도로 통선을 준비하도록 한 목적은 비밀이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관의 검색을 받지 않고 용금호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 ■ 납치장소 결정 및 준비상황

### 【 그랜드팔레스호텔에서 납치실행 결정 】

- 李哲熙는 尹 단장과 金 O O 공사에게 “그 물건(김대중 지칭) 빨리 해 보내라”는 등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납치실행을 독촉하였으며
- 尹 단장은 駐日과견관들과 함께 金大中 거소지(하라다맨션 809호) 등 감시활동과 협조자를 활용하여 유인, 납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하자
- 결국 金 공사가 73. 8. 8 11:00 金大中이 梁OO의 숙소인 그랜드팔레스호텔 2211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 호텔에서 납치기로 최종 결정 53)

※ 73.8.6 金 O O이 위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동 호텔 2210호 예약 등 납치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8.7에 구체적인 방문 시간까지 확인이 되자 尹 단장은 현장 행동조 선발 등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됨 54)

53) 梁OO은 OO당 당수였으나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73.7.16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일본 출국시 중정의 주선으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사실이 있다는 등 중정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래서 金大中과의 접촉사실을 金 O O 공사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梁OO은 77.6 김형욱이 미국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프레이저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73.8.4 퇴원하자 金 O O 공사가 예의차 숙소를 방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 후 金 공사를 만났거나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정보제공 사실을 부인

54) 金大中은 73.7.29 15:00 투숙 중인 힐튼호텔에서 梁OO과 접촉 후 다시 상면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8.6 아침 梁OO에게 전화를 하여 “8.7 정오에 만나자”고 했으나, 梁OO이 “우즈기시즈마 의원과 점심 선약이 있다”고 하자 “그럼 8.8에 방문하겠다”고 한 후 8.7 10:00경 金大中은 김종충을 시켜 梁OO에게 전화를 하여 “(8.8) 오전 11시에 만나자”고 방문 시간을 통보하였다고 증언

【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실 확보 】

- 호텔에서 납치키로 결정한 후 尹 단장은 “梁00의 방 옆방에서 누가 자야 한다. 그래서 방을 확보해서 당일 우리가 그 방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金 O O 공사에게 제안
- 73. 8. 6 파견관 중 한 명이 2210호실 예약 임무를 수행하였고, 韓 0이 8.6 저녁에 체크인 후 체류하다 8.7 자정 무렵 나왔으며, 8. 8 대사관에 출근하여 2210호실 열쇠를 행동조에게 인계 55)
- \* 납치 당시 2210호실과 2215호실 쪽에서 범인들이 나왔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2215실도 중정요원들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2210호실만 예약한 것으로 확인

【 행동대원 선정 및 오사카 安家 사전정찰 】

- 尹 단장(HID 출신)은 駐日파견관 중 행동대원으로 金 O O , 洪 O O , 柳 O O 등 HID 출신자와 방첩대(CIC) 출신인 尹 O O를 선정 하였으며, 劉 O O에게는 운전 임무를 부여 56)
- 柳 O O은 尹 단장의 지시를 받고 오사카 安家를 사전정찰 했으며, 당초 계획은 ‘오오쓰(大津)’에서 金大中을 오사카 파견관에게 인계, 이들이 오사카항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

---

55) 韓 0에 의하면 73.8.6 조 O O 파견관이 바쁜 일이 있다며 “공작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랜드 팔레스호텔 2210호실을 대신 체크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다나카 긴지로(畑中金次郎)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대면 된다”고 하여 그날 밤에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일본 측이 통보한 수사상황서에는 2210호실 투숙자는 8.6 18:45 체크인 하면서 ‘후꾸오까시(福岡市) 호리카와쵸(堀川町) 102 하다나카상사(畑中商事) 하타나카 긴지로(畑中金次郎)’라고 숙박부에 기재했으며, ‘하다나카’란 자는 8.7 23:00경 동 호텔 23층 크라운라운지에서 맥주 2병을 마신 후 2210호실에서 마시지를 받은 사실 확인

56) 尹 단장은 행동조 선정 경위에 대해 韓 0은 2210호실에 투숙했기 때문에 금방 근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안 데리고 갔으며, 尹 O O는 O국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고, 洪 O O는 HID 출신이란 연고관계 보다 본인이 살던 거주지 바로 앞집에 사는 인연이 있었으며, 柳 O O은 HID 시절부터 키우던 후배이고 劉 O O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하여 자가용을 가져오도록 하였다고 증언



【 납치용 물품 준비 】

- 납치사건 발생 후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에서 유류품이 발견되었는데 동 물품들은 尹 단장과 金 O O이 준비한 것으로 확인 57)
- 유류품 현황

연 번	물 품 종 류	비 고
1	32구경 권총실탄 7발이 든 탄창 1개	탄창은 서독제, 실탄 3발은 美 레밍턴사 및 4발은 스미스 & 웹슨사 제품으로 확인
2	대형 배낭(록색) 2개	일본 경시청 조사결과, 73.8.6 지요다구 간다 진뽀쵸오 소재 등산용구점 ‘사카이야’에서 구입사실 확인
3	술더백(키스링) 1개	록색과 같은 장소에서 구입
4	로프(나일론 끈)	길이 13m
5	영양제 신그로먼트병 1개	마취용 수면제 액 1/3 잔존
6	대형 차 봉투	
7	피 묻은 휴지	휴지에 부착된 혈흔은 B형
8	북한제 담배 갑 1개 및 양담배	2215호실에서 발견
9	흡연용 파이프 1개	金大中 소지품(타액은 A형)
10	권 총 58)	尹 단장 개인 소지품

57) 납치상황 발생시 金大中 납치조(尹 단장 등 4명)와 梁OO 등 감시조(金 O O 등 2명)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납치조는 감시조가 유류품을 챙겨 나올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감시조는 물품들을 납치조가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2210호실을 확인하지 않고서 호텔을 빠져나와버려 현장에 유류품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 확인

58) 권총은 유류품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尹 단장 면담 과정에서 납치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고, 현장 유류 지문 47개를 검출, 대조 중이라는 등의 일본 측 수사상황 통보서를 통해 유류품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확인

○ 주요 물품별 용도

구 분	용 도	증언자
권총 및 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 개인 소지품으로 파우치를 통해 받았으며 공작이 실패했을 경우 비상용(자살용)으로 준비</li> <li>○ 공작관이 공작 장비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리 테스트를 하지 않아 권총과 탄창이 서로 크기가 맞지 않은 관계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음</li> <li>○ 金大中 살해용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li> <li>○ 자살용이라면 실탄 7발이 필요하겠느냐는 반론에 대해 군 시절부터 탄창에 실탄을 다 채우는 습관이었다고 주장</li> <li>* 권총은 사건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버렸다고 증언</li> </ul>	尹단장 柳 0 0
대형배낭 2개 (룩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과 金 0 0이 납치 이틀 전인 73.8.6 등산용품점에서 제일 큰 것으로 구입</li> <li>○ 尹 단장은 룩색의 용도에 대해 金大中을 마취 시킨 후 배낭에 담아 메고 나오려고 준비했다고 주장</li> <li>○ 2개를 구입한 이유는 배낭 크기가 사람이 앉으면 엉덩이만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어 한 개는 머리부터 덮어서 나올 생각이었다고 증언</li> <li>○ 토막살해 후 담아서 나오려는 용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li> <li>○ 金 0 0은 尹 0 0이 “파우치로 보낼 것을 대비해서 룩색을 사러 가지”고 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尹 0 0은 당초부터 파우치에 의한 방법은 반대했다면서 金大中을 담아 나오려는 용도였다고 강조</li> </ul>	尹단장 金 0 0 洪 0 0 柳 0 0

구 분	용 도	증언자
로프(1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O O은 룩색 구입시 로프도 함께 구입</li> <li>○ 로프의 용도는 金大中을 배낭에 담아 줄로 매어 밑으로 내려 보낼 생각이었다고 주장</li> <li>○ 22층인데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했다고 진술</li> </ul>	尹단장
마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O O이 준비했으며, 완전히 실신이 되지 않게 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li> <li>○ 원래 마취는 주사를 놓아야 하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金大中을 마취시킨 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였다고 증언</li> </ul>	尹단장 金 O O 洪 O O
북한제 담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5호실에서 나온 것으로 직접 연관성은 없음</li> <li>○ 2215호실은 납치 후 尹 O O가 金敬仁을 데리고 들어가 감시한 방임</li> </ul>	金 O O

### 【 납치차량 준비 】

- 尹 단장은 劉 O O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하여 자가용을 가지고 8.8 아침에 駐日대사관으로 오도록 지시하였고 59)
- 납치 전날 金 O O에게 劉 O O의 차량 색깔과 번호를 바꾸라는 지시도 하였으나, “폐차장에 가서 교체하려고 했지만 번호판이 잘 안 떨어져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59) 劉 O O은 당시 요코하마영사관 파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73.7말 尹 O O 단장이 일본에 오자 거의 전 요원들이 소집되어 金大中의 소재를 파악하는 감시활동을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공작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73.8.7 駐日대사관 에서 “8.8 아침 대사관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8.8 아침 대사관에 도착하자 “어떤 사람을 데리러 그랜드팔레스호텔에 가야 하는데 운전을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서 직감적으로 대상자가 金大中이란 것을 알았다고 증언

## ■ 소결론

- 73. 7.21 尹 단장이 현지공작 지휘감독을 위해 渡日하면서부터 駐日 파견관 전원이 동원되어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활동에 착수하였는데
  -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73.7.29)하기 전부터 金大中 체류 예상 호텔 등 감시와 병행, 협조자를 활용한 유인공작이 추진된 사실은
  - 만약 용금호가 없는 상황에서 납치를 했을 경우 다른 이송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파우치 활용방안 또는 암매장 계획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반면 73. 7.31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KT공작관계 보고서”가 O국에 송부된 사실은 용금호 도착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며
  - 납치 이틀 전인 73. 8. 6 공작을 주도하고 있던 O국에서 駐日파견관에게 金大中의 자진귀국 의사 可否 확인 지시가 긴급 하달된 점과
  - 납치 하루 전날까지도 金大中 동향보고 재강조와 지시와 함께 “임무수행 가능성여부에 중점을 두라”는 지침이 내려진 점은 최소한 용금호 도착 후에는 단순납치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자료로 평가
- 또한 尹 단장은 용금호 동원 경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金大中 이송을 위해 사용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 사전에 李哲熙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고, 중정요원 2명을 승선시켜 오사카항에서 대기토록 한 점 등으로 보아 납치 후 이송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 처음 공작계획 단계부터 金大中의 국내 이송을 위한 용도로서 용금호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임

- 결국 73. 8. 6 金 O O 공사가 “金大中이 8. 8 梁OO의 숙소인 그랜드 팔레스호텔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尹 단장은 동 호텔에서 납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 감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梁OO의 숙소(2211호) 바로 옆방인 2210호실을 예약, 韓 O으로 하여금 미리 체크인 하도록 조치하고
  - 현장 행동대원으로 駐日과견관 중 金 O O·洪 O O 등 5명을 선정한 후 柳 O O으로 하여금 오사카 安家를 사전 정찰토록 하였고, 납치차량은 劉 O O의 자가용을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 8.8 납치 당일에는 일본에 입국할 때 파우치 편으로 몰래 반입한 권총(실탄 7발이 든 탄창 포함)뿐 아니라 金 O O과 함께 등산용품점에서 구입한 대형배낭(룩색, 2개)·로프 등을 가지고 동 호텔로 집결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증언한 尹 단장은 호텔에서 납치하기로 결정되면서 오사카 安家를 거쳐 용금호를 이용하여 국내로 이송한다는 계획을 구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반면 尹 단장이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의 용도에 대해 “긴급 상황 발생시 자살용으로 준비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납득이 되지 않은 점과
  - 또한 대형배낭(2개)은 “金大中을 마취시킨 후 담아 나오려는 생각에서 구입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파우치용 또는 토막살해용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완전하게 불식하기는 어렵고
  - 더욱이 로프(13m)와 관련해서는 “金大中을 낚은 배낭을 묶어 밑으로 내려 보내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진술은 납치장소가 22층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점

등은 살해계획 진행 가능성 주장에 대한 정황증거로 평가

## 5) 이동경로별 납치상황

### ■ 호텔에서 납치실행

일시	구체적 상황	증언자
8. 8 10:0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행동조에 편성된 尹 단장·金 〇 〇·尹 〇 〇·洪 〇 〇·柳 〇 〇·劉 〇 〇 등 6명은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 실집결 60)</li> <li>○ 梁〇〇의 방(2211호실)을 감시하기 위해 2215호 쪽에 2~3명 배치 61)</li> </ul>	尹 단장 金 〇 〇 洪 〇 〇 劉 〇 〇
8. 8 11:00경	金大中은 비서 김강수를 대동, 동 호텔에 도착 후에 비서는 1층 로비에 대기토록 하고 梁〇〇의 방으로 혼자 올라가 응접실(2212호실)에서 국내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의견 교환	金大中 梁 〇 〇
8. 8 12:00경	동 호텔에 투숙(2028호) 중이던 金〇〇은 8. 8 아침 梁〇〇의 부탁으로 서점에 다녀온 후 梁〇〇의 방에 올라가 金大中과 상면, 룸서비스로 점심 식사를 함 62)	金大中 梁 〇 〇 金 〇 〇
8. 8 13:1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이 방 안에서 梁〇〇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 金〇〇의 배웅을 받으며 2212호실에서 복도로 나와 이동하는 순간 尹 단장 등 6명이 달려들어 납치 실행</li> <li>○ 납치조인 尹 단장·洪 〇 〇·柳 〇 〇·劉 〇 〇은 金大中을 끌고 2210호실로 들어갔고, 감시조인 金 〇 〇·尹 〇 〇는 金〇〇을 밀고 梁〇〇의 방(2211호실)으로 들어감 63)</li> </ul>	尹 단장 金 〇 〇 洪 〇 〇 劉 〇 〇

60) 일본 경시청 조사결과, 납치차량(劉 〇 〇 소유)이 동일 호텔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은 타임카드에 10:52으로 기록

61) 梁〇〇이 투숙한 방은 스위트룸으로 2211호(침실)와 2212호(응접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납치 당일 2212호실 건너편 방인 2215호실이 열려 있어 중정요원들이 감시 장소로 이용하였고, 납치 후 尹 〇 〇가 동 호실로 金〇〇을 데리고 들어가 梁〇〇과 분리하여 2210호실 접근을 제지하였다고 주장

62) 공작팀은 金大中과 梁〇〇이 접촉한다는 정보를 입수 후 호텔에서 납치기로 결정했으며, 동 장소에 金〇〇이 합석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金〇〇의 출현으로 인해 살해계획을 중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63) 金〇〇은 괴한들이 달려들 때 저항을 하자 “우리들은 한국에서 왔다. 떠들면 국제적인 수치가 된다. 金大中 선생과 잠깐 얘기만 하면 된다”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증언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8 13:10~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조는 2210호실에서 金大中을 폭행하고 침대에 놓혀 “떠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마취제를 문헌 수건을 코에 댔으나 金大中은 의식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 64)</li> <li>○ 감시조인 金 O O과 尹 O O는 梁 O O(2212호)과 金 O O(2215호)을 분리하여 2210호실 접근을 제지 65)</li> </ul>	尹 단 장 金 O O 洪 O O 劉 O O 金 大 中
8. 8 13:15~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조는 金大中의 어깨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66)</li> <li>○ 엘리베이터로 이동 중 17층쯤에서 일본인 2명이 탑승, 7층쯤에서 내리는 순간 金大中은 일본어로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음 67)</li> <li>○ 지하주차장에 도착 후 金大中을 납치차량 뒷좌석 바닥에 엎어놓고 양쪽에서 尹 단장과 洪 O O가 밟고 눌렀으며, 劉 O O은 운전을 하고 柳 O O이 조수석에 탑승, 호텔을 긴급히 빠져 나감 68)</li> </ul>	尹 단 장 洪 O O 劉 O O 金 大 中
8. 8 13:30경	梁 O O(2212호실)을 감시하고 있던 金 O O은 金 O O(2215호실)을 감시하던 尹 O O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梁 O O에게 “옆방(2210호실)에 가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호텔을 빠져나옴 69)	金 O O 梁 O O 金 O O

- 64) 尹 단장 등은 마취를 하면서 잘못된 상황을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약하게 수면액을 사용했다고 주장
- 65) 金 O O은 梁 O O에게 “金大中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경제위조를 하지 말라 하고 망명정부를 수립한다고 해서 우국청년들이 金大中을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 하여 옆방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설득하였다고 증언
- 66) 尹 단장은 납치시 사용할 물품으로 대형배낭 등을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납치가 실행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의문이나 실제 상황이 벌어지자 당황하여 일단 호텔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것으로 추정
- 67) 尹 단장, 洪 O O, 劉 O O 등은 엘리베이터에서 金大中이 일본인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정신이 돈 사람이라는 의미의 손짓을 했다면서 폭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부인을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68) 일본 경시청 조사결과, 납치차량이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간 시간은 타임카드에 13:19으로 기록된 사실 확인
- 69) 梁 O O과 金 O O은 金大中이 끌려간 2210호실에 접근하기 위해 범인들과 몸싸움을 하였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제지를 하였다고 증언

## ■ 납치차량 이동경로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8 13:2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차량은 동명고속도로를 이용, 오사카방향으로 이동</li> <li>○ 金大中은 누군가 “이쪽으로 가면 교토(京都) 저쪽으로 가면 오오쓰(大津)”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오사카 부근이라고 여김 70)</li> <li>○ 원래 계획은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들에게 金大中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나타나지 않음 71)</li> <li>○ 한참을 기다리다 柳 O O이 尹 단장에게 오사카 安家로 가자는 의미로 “야스다(安田)상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安家로 이동키로 결정</li> </ul>	尹 단장 洪 O O 柳 O O 劉 O O 金大中

## ■ 오사카 安家 체류상황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8 20:3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은 오사카 安家에 도착 즉시 洪 O O는 劉 O O의 차량으로 함께 복귀토록 조치하고 행동대원 중 柳 O O만 남도록 함 72)</li> <li>○ 또한 金大中의 코만 남기고 얼굴 전체를 포장용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묶은 뒤 다다미방에 감금</li> </ul>	尹 단장 洪 O O 劉 O O 柳 O O 金 O O 金大中

70) 尹 단장은 사전정찰 임무를 맡아 현지를 다녀온 柳 O O이 실제로 납치상황이 벌어지자 당황하여 길을 헤매 주유소 직원에게 오오쓰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

71) 柳 O O은 과거에 오사카 파견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安家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尹 O O의 지시로 사전에 오사카 安家를 다녀온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임무는 오오쓰까지 안내하여 오사카 파견관들 金 O O·朴 O O)에게 金大中을 인계하는 것까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尹 단장은 처음부터 오사카 安家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柳 O O의 증언에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72) 安家 관리인 金 O O(현지고용원)은 “8.8 저녁 8시 경 혼자 安家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구멍을 통해 누가 왔는가 보니 오사카총영사관 직원인 朴 O O이 보이기에 문을 열어 주었으며, 그러자 몇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한 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들어와 다다미방에 처넣었다”고 증언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8 20:3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安家에 체류 중 金大中の 양복 상의를 벗기고 롤렉스시계, 일화 20만 엔, 여권 등 소지품을 빼앗음 73)</li> <li>○ 劉 O O은 오사카총영사관에 연락, 朴 O O에게 총영사관 차량(벤츠, 운전기사 安 O O)을 가지고 오도록 조치 74)</li> <li>○ 오오즈에서 만나지 못한 오사카 파견관 金 O O과 朴 O O은 납치조가 安家 도착 후 차량 지원 등 협조를 하였음 75)</li> <li>○ 尹 단장은 나폴리호텔에 체류하던 용금호 책임자 鄭 O O에게 연락, 오사카항 부속부두인 ‘아마가사키’(尼崎)에서 만나기로 함</li> </ul>	尹 단장 柳 O O 金大中

### ■ 용금호 이송 상황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8 22:00~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은 오사카총영사관 차량(운전 安 O O)에 金大中을 싣고 柳 O O과 함께 오사카항으로 이동 76)</li> <li>○ 용금호 책임자 鄭 O O은 선장 李 O O에게 일본 통선을 ‘아마가사키’ 부두로 오게 한 후 중정요원 朴 O O 및 선원 金 O O, 鄭 O O 등과 함께 이동</li> </ul>	尹 단장 柳 O O 鄭 O O 金大中

73) 尹 단장 등은 金大中の 증언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74) 오사카 安家 관리인 金 O O의 증언에 의해 소재지는 “코베시(神戸市) 히가시나다구(東灘區) 오카모토(岡本) 엑셀맨션 000호(32평 아파트)”로 확인

75) 오사카지역에서 활동하던 朴 O O(安家관리 책임)와 金 O O 등은 공작 추진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金 O O와 金 O O(安家 관리인)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尹 단장도 사전에 安家에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安家관리 책임자 朴 O O이 한참 후에 전문을 해독하기 위해 나타나 화를 낸 적이 있다며 당연히 金 O O 공사가 사전 조치를 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

76) 安家 관리인 金 O O은 尹 단장 등이 떠나고 난 후 엘리베이터 안에 피가 떨어져 있어 청소를 한 사실이 있다 하며, 또한 피 묻은 옷가지를 처리하라고 하여 다음날 가위로 잘라 태웠다고 증언하고 있어 金大中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피를 흘린 것으로 보임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p style="text-align: center;">8. 8 23:00~2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속장소인 ‘아마가사키’ 부두에서 尹 단장은 鄭 O O에게 金大中을 인계하면서 “바로 가라”는 지시만 하고 차량을 이용, 현장 이탈 77)</li> <li>○ 鄭 O O은 金大中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 통선에 실은 다음 세관을 통하지 않고 30여 분만에 용금호에 도착</li> <li>○ 尹 단장과 柳 O O은 오사카에 있는 金 O O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柳 O O은 대사관으로 복귀했고, 尹 단장은 며칠 후 항공편으로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 78)</li> <li>○ 용금호에 도착하여 밧줄 사다리를 이용, 金大中을 갑판 위로 끌어올린 후 머리를 감싼 테이프를 뜯어내고 눈에는 붕대를 대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였으며,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화물창에 감금 79)</li> <li>○ 金大中은 용금호에서 바지에 있던 일화 20만엔, 외국인등록증, 수첩, 일기장, 명예외신기자증, 워싱턴은행 거래증, 명함이 든 지갑 등을 탈취 당함 8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尹 단 장 柳 O O 鄭 O O 金 O O 李 O O 金 大 中</p>

- 77) 尹 단장은 공작책임자로서 용금호에 승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권을 가지고 항공편으로 일본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동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해야 일본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용금호에 승선한 선원은 입항신고서 작성시 세관에서 인원수를 파악해 놓은 상태인데 경찰의 검색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승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 78) 尹 단장은 일본에 들어올 때 공작 추진 중 잘못되어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여권을 대사관에 맡겨둔 관계로 즉시 귀국할 수 없어 金 O O 집에서 며칠 체류하고 있자 본부에서 “尹 단장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빨리 들어오라”고 독촉을 하여 “본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혹시 망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였는지 몰라도 河 O O 국장이 직접 일본에 들어와 여권을 전달해 주어 홍콩을 거쳐 귀국하였다면서 金大中이 국내 도착 후 풀려나기 전에 들어왔다고 증언
- 79) 용금호 선원들은 尹 단장에게 金大中을 인계받을 때까지도 대상자가 金대중인 사실을 몰랐으며, 용금호에 도착 후에서야 비로소 납치된 사람이 金大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조기장 金 O O은 눈은 상처가 나지 않게 붕대를 댄고 입에 재갈을 물린 이유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
- 80) 金大中은 이 중 일부는 8.13 방면시 돌려주었으나 대부분은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용금호 책임자 鄭 O O 및 선원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

## ■ 용금호 출항 상황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9 08:00~09:00	용금호가 출항한 시기에 대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특별수사본부」 조사내용 및 일본 측의 수사결과를 볼 때 8.9 아침에 출항한 것으로 판단 81)	鄭 0 0 金 0 0 李 0 0 李 0 0
8. 9~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을 화물창에 감금 후 선원 중 金 0 0, 鄭 0 0, 李 0 0 등이 교대로 감시</li> <li>○ 金大中的 몸을 십자형 널빤지에 묶고 손과 발에 줄을 연결하여 그것을 다시 널빤지 끝에 묶어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 82)</li> <li>○ 金大中は 자신의 몸을 칠성판에 묶은 후 선원들이 “숨이불을 붙여놔야 물이 차니까 안 떠오른다”는 등 말을 하여 水葬을 하려는 것으로 각했다고 주장 하나 용금호 선원들은 水葬위협 부인 83)</li> </ul>	金 0 0 李 0 0 金大中

※ 金大中은 항해 중 비행기가 출현한 후 살았다고 주장하나, 미국 또는 일본에서 金大中 구출을 위해 비행기를 파견했다는 자료는 없음 84)

- 81) 73.8.8 밤 金大中을 용금호에 실은 직후 출항했다는 근거로 尹 0 0이 鄭 0 0에게 “바로 출발하라”고 지시한 점, 선장 李 0 0·갑판장 李 0 0·조리장 曹 0 0 등은 바로 출항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중정요원 鄭 0 0·조기장 金 0 0은 8.9 아침 출항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金大中也 “선창 밑으로 끌려 내려가 밤을 지낸 다음 이튿날 아침에 깨워졌다”는 증언을 한바 있으며, 한국정부의 「특별수사본부」 조사결과 8.9 09:00경 空船으로 출항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 경시청 외사과장 시로우치(城内康光)는 중의원 외무위(77.4.20)에서 8.9 08:45 오사카항을 출항한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답변
- 82) 金大中は 손발을 움직여 탕겨보아도 끄떡을 안 했다면서 50kg이 넘는 돌맹이 같은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놓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용금호 선원들은 손발에 줄을 매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들을 매단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었겠다고 증언
- 83) 鄭 0 0은 尹 0 0 단장으로부터 “대상자(김대중)를 신고 오라”는 지시만을 받았을 뿐 용금호에서 水葬을 하라는 등 어떠한 처리지침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용금호 선원들도 鄭 0 0에게 “일체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만을 받았다면 水葬 위협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71년 대통령선거시 金大中 지지자로서 용금호가 도쿠야마(徳山)에 기항할 때 탈출계획까지 구상했다고 주장하는 갑판장 李 0 0도 감시 중 金大中이 “지금 들을 묶어 水葬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 “절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건디어 보세요”라고 말해준 일이 있다면 水葬기도 사실 부인
- 84) 金大中は 귀환 후 최초 기자회견시 “그것이 비행기 소리인지, 엔진소리인지, 파도소리인지 불분명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鄭 0 0은 항해 중 비행기가 지나간 적은 있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오물투척 감시 비행으로 용금호에 경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선원들 또한 金大中이 화물창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기관 엔진소리를 비행기 소리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 9~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鄭 O O은 오사카항 출항 후 통신장(鄭 O O)에게 지시하여 “화물(대상자 김대중)을 무사히 신고 출발하였음”이란 내용을 본부(8국)에 송신 85)</li> <li>○ 용금호는 오사카항 출항시 도쿠야마(徳山)에 기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8.10 01:00경 일본상운 오사카항지점에 “엔진클러치 고장으로 도쿠야마에 기항하지 않고 부산으로 직행한다”는 내용을 송신 86)</li> <li>○ 또한 도쿠야마 부근을 지날 때 일본 경찰의 검색에 대비하여 화물창보다 더 밀에 있는 조그만 창고로 金大中을 옮겨 감금</li> <li>○ 모지(門司) 해상보안부 헤사키 신호소의 73년도 신호일지에는 “8.10 09:45, 용금호 서쪽으로 향함”이라고 기록 87)</li> <li>○ 용금호는 8.9 아침 오사카항을 출항, 일본내해를 경유하여 8.10 아침 모지(門司) 부근을 통과한 후 8.10 밤 부산항 외곽에 도착 88)</li> </ul>	<p>鄭 O O 金 O O 李 O O 金大中</p>

※ 피해자 金大中 및 용금호 선원 모두 항해 중 화물창에 감금해 놓은 金大中을 갑판 위로 끌어내는 등 직접적으로 水葬을 시도 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부분에 증언 일치

85) 선장 李 O O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용금호에는 요즘과 같은 무전기를 사용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는 없었으며, 다만 모르스부호를 사용한 수동식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일본 출항시에 한국에 있는 동아상선과도 송수신을 하였다고 진술

86) 鄭 O O은 위와 같은 송신 내용 이외에는 O국과 송수신한 전문은 없다고 주장

87) “김대중납치사건의 전모”(마이니썬신문사, 85.9) 148p~160p 참조

88) 용금호를 이용하여 부산항에서 오사카항까지 걸리는 항해시간은 용금호 속력(9~11노트)을 감안 할 때 평균 36~48시간이 소요된다는 선원들의 증언에 따라 용금호가 8.9 아침에 출항하여 8.10 아침 모지 부근을 통과한 사실과 조기장 金 O O은 “부산항에 도착 후 하루를 대기하고 나서 다음날 밤에 金大中을 하선시켜 앰블런스에 태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10 밤 부산항 부근에 도착한 것으로 보임

## ■ 부산항 입항 및 하선상황

일시	구체적 상황	증언자
8.1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 밤에 부산항 외곽에 도착, 하루를 대기하다</li> <li>8.11 밤 金大中을 하선시킨 후 의사의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은 후 앰블런스에 태워 이동 89)</li> <li>○ 부산항에는 金 O O OO과장, 金 O O OO실장 등이 서울 安家까지 이동임무를 수행</li> <li>* 관련자 사망·신원미확인 등으로 면담이 불가능하여 서울 安家까지의 구체적 이동경로는 미확인</li> </ul>	鄭 O O 金 O O 李 O O 金大中

## ■ 서울 安家 체류 및 放免상황

일시	구체적 상황	증언자
8.12~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1 밤 미상 장소에서 하룻밤을 체류한 후 8.12 서울 安家로 이동 90)</li> <li>○ 8.12 O국 공작단원 李 O O은 姜 O O 과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安家에서 金大中 감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지휘부에서는 “눈가리개를 떼지 말 것, 가죽 수갑은 자해할지 모르니 풀어주지 말 것, 말을 걸지 말 것” 등 지침만 하달 91)</li> </ul>	李 O O 金大中

89) 한국정부의 「특별수사본부」 조사결과, 용금호는 8.11 23:58 부산항 외항에 입항 후 8.12 07:50 부산항 제4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반 선원들은 8.12 아침 하선한 것으로 판단되며, O국장 李 O O은 당시 장일훈 치안국장이 “부산항 제4부두에 근무하던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8.11경 밤중에 용금호 선원들이 내리면서 한 사람을 양쪽에서 부축하고 옷으로 머리를 덮어 씌웠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다며 이들이 앰블런스에 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었는데 8.13 金大中이 귀환했다는 뉴스가 나와 차적 조회를 해보니 치안국에서 중정에 대여해 준 위장번호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수송과 직원을 불러 관련사항을 물어보니 공작단 직원들과 부산항에 갔다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金大中은 모터보트로 육지에 상륙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혈압을 낮추는 주사를 2대 맞은 후에 앰블런스 같은 차에 태워져 이동하였다고 증언

90) 金大中은 어느 시골집에 도착하여 범인들이 자신들을 “구국동맹행동대”라고 밝혔으며 알약 두 개를 먹고 깨어보니 2층 양옥집이었다고 증언

91) 李 O O에 의하면 동 安家는 서울 수유리에 있었는데 육군 정보사에서 관리하던 곳으로 당시 명미상 직원 한 명이 보조를 하였으며, 식사를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姜 O O 과장은 본부에 수시 왕래를 하였다면 서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사람에 대한 대우방법이나 경비 또는 보급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姜 과장이 없을 때는 수갑도 풀어주는 등 조금 편하게 대해 주었다고 했으며, 金大中도 서울 安家에서는 잘 대해주었다고 인정하고 있음

일 시	구 체 적 상 황	증 언 자
8.12~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3 오후 姜 O O 과장이 본부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어두운 시간에 동교동 집 앞에도 풀어 주어라”는 지침을 받음 92)</li> <li>○ 20:00경 姜 O O은 金大中에게 “집 근방에서 내려줄 테니 3분 동안 서 있다가 우리가 가고 나면 안대를 풀고 걸어가라”고 알려줌</li> <li>○ 21:00경 金대중을 자동차 뒷좌석에 태워 姜 O O과 李 O O이 양 옆에 앉아 동교동으로 이동하여 22:00경 자택 부근에서 放免하면서 “애국청년 구국대” 명의의 경고성 메모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줌 93)</li> </ul>	李 O O 金大中

### ■ 납치과정 중 발생한 불법행위

구 분	불 법 행 위	비 고
2210호실	납치를 당한 후 반항을 하자 폭행 및 “떠들면 죽이겠다”고 협박	마취 병행
엘리베이터	일본인들에게 “살인자들이다.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복부 구타	납치차량에 태운 후 위에서 누름
오사카 安家	일화 20만엔, 로렉스 손목시계, 양복 상의, 구두, 여권 등 탈취	얼굴에 테이프 부착 및 손발 결박
용금호	바지에 있던 일화 20만엔, 외국인등록증, 수첩, 일기장, 명예외신기자증, 워싱턴은행 거래증, 명함, 지갑 등 탈취(일부 돌려줌)	넙빤지에 몸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림

92) 李厚洛 부장은 부산항 도착 후 바로 金大中을 방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복시켜서 보내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신동아 87.10월호), 李哲熙 차장보 및 尹 단장은 서울 安家 감시와 동교동 석방상황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주장

93) 동 메모지는 姜 O O이 작성한 것으로 “金大中의 조국을 배신하는 망국적인 해외행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애국 충정에서 조국내로 끌어들여 왔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 밖에서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임

■ 납치 단계별 가담자 현황

연번	납치단계	가담자 현황
1	공작 추진지시	李厚洛 부장
2	공작상황 총괄	李哲熙 정보차장보·河 〇〇 해외공작국장
3	현지공작 책임자	金 〇〇 공사·尹 〇〇 공작단장
4	납치 행동대원	尹 단장·金 〇〇·尹 〇〇·洪 〇〇·柳 〇〇·劉 〇〇
5	오사카 安家 이동	尹 단장·洪 〇〇·柳 〇〇·劉 〇〇 * 金 〇〇·尹 〇〇는 梁 〇〇 및 金 〇〇 감시
6	오사카 安家 대기	尹 단장·柳 〇〇·朴 〇〇·朴 〇〇·金 〇〇·金 〇〇 * 행동대원 중 洪 〇〇·劉 〇〇은 복귀
7	오사카항 이동	尹 단장·柳 〇〇·安 〇〇(운전) * 오사카거점 파견관들은 동행하지 않음
8	용금호 이송	鄭 〇〇·朴 〇〇 및 李 〇〇·金 〇〇·鄭 〇〇(선원) *尹 단장·柳 〇〇은 복귀
9	용금호 출항	鄭 〇〇·朴 〇〇 및 용금호 선원(金 〇〇 등)
10	서울 安家 이동	金 〇〇·姜 〇〇·金 〇〇
11	서울 安家 감시	姜 〇〇·李 〇〇
12	동교동 放免	姜 〇〇·李 〇〇·黃 〇〇(운전)

## ■ 소결론

- 사건에 가담한 중정요원 및 용금호 선원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밝혀진 이동경로별 구체적인 납치상황과 피해자인 金大中의 증언을 비교·분석한 결과
  - 柳 O O이 尹 단장의 지시를 받고 오사카 安家를 사전 정찰한 사실과 당초 납치 후에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들에게 金大中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 鄭 O O이 오사카항에서 金大中을 인계받아 은밀히 용금호로 옮기기 위해 별도의 통선을 준비한 정황 등을 볼 때 사전에 安家를 경유, 용금호로 이송하는 구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는데
  - 실제 납치상황을 통해서도 오사카 파견관들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생략되기는 했지만 “호텔에서 납치 ⇒ 安家 경유 ⇒ 용금호 이송 ⇒ 부산항 도착” 등 단계별로 실행된 점은 이를 입증하고 있음
- 한편 호텔이라는 장소적 취약점과 金OO·梁OO 및 종업원 등 다수의 목격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납치를 강행한 것은 지휘부에서 실행을 독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 실제 납치를 자행하면서도 막상 준비한 대형배낭(룩색) 등은 사용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호텔을 이탈하는데 급급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현장에 金 O O의 지문을 남긴 사실은 공작이 조직적·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 더욱이 ‘오오쓰’에서 오사카거점 파견관이 나타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비록 은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安家로 이동하는 경로가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현지공작은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음



○ 이동경로별 납치상황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 危害행위를 살펴보면

- 호텔에서 납치할 당시 “떠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과 함께 마취제 사용 등 불법행위는 있었으나, 권총이나 칼로 위협하는 등의 살해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은 없었으며
-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金大中이 동승한 일본인들에게 “살인자다.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복부를 구타하였고
- 납치차량에 태운 후 오사카 安家로 이동할 때에는 뒷좌석 바닥에 엎어놓고 움직일 경우 발로 내리누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 安家에서는 소지품을 빼앗고 코만 남긴 채 얼굴을 포장용 테이프로 감은 후 손발을 결박한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행위로 느꼈을 것은 자명하고
- 용금호에 감금되어 있을 당시 십자형 널빤지에 묶고 재갈을 물려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水葬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충분히 인식할 수도 있으며
- 더욱이 피해자가 선원들로부터 “숨이불을 붙여 놓으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水葬을 당한다는 위기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접적으로 갑판 위에서 바다에 던지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없었고
- 또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며, 서울 安家에서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가죽 수갑을 채운 상태로 감금을 당했으나, 중정요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다소 완화된 분위기에서 지내다 放免된 사실 확인

## 6) 평 가

- 관련자 진술과 국정원 보존 자료 등을 통해 「김대중납치사건」은 당시 중정부장 李厚洛의 지시에 의해 O국 공작단이 駐日파견관들을 동원하여 실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73. 7.10 金大中이 미국에서 일본에 재입국하자 7.14경 O국은 駐日파견관에게 공작방안 작성지침을 하달, 7.19에 동 계획안이 보고 되었고, 7.31 구체적 방법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KT 공작관계 보고서”를 본부에 송부하였으며
  - 73. 7.21 尹 O O이 渡日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감시·추적활동에 착수, 8. 8 호텔에서 납치한 후 용금호를 이용하여 국내로 이송, 安家에 감금하다 방면하는 등 단계별 납치상황 확인
- 공작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문건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동 계획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李철희·尹 단장·金 O O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 金 O O이 작성한 계획안에 야쿠자를 활용한 살해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 결국 최종안은 駐日파견관을 동원하여 국내로 납치해 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
- 한편 73.5경부터 李厚洛의 지시를 받은 O국장 李 O O은 金大中の 처 이희호를 통해 자진귀국을 설득한 결과, 납치실행 준비에 착수한 시기인 73. 8. 6 구체적 진척사항이 나오자 이를 O국에 긴급 통보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駐日파견관에게 긴급 하달되어 梁OO을 통해 金大中の 자진귀국 설득을 시도한 사실 확인

- 용금호를 동원한 목적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金大中 납치 후 이송수단으로 활용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했다는 尹 단장의 진술과 관련
  - 李哲熙의 사전 재가를 받아 중정요원 2명을 승선시켜 선원들을 지휘토록 하였고, 오사카항에서 대기토록 지시한 점 등 처음부터 공작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나
  - 용금호 동원 사실을 단순납치 계획 추진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73. 7.21부터 납치를 위한 감시·추적 활동에 착수한 점과 7.29에야 용금호가 오사카 항에 도착한 시간 차이를 들어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됨
- 또한 사건 가담 중정 직원 및 선원들과 피해자인 金大中의 진술내용을 비교·분석, 납치공작 준비과정과 납치상황을 종합해 볼 때
  - 尹 단장이 납치실행 전에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에게 金大中을 인계, 安家를 경유하여 용금호로 이송하는 구상을 했다는 주장은 柳 O O이 오사카 安家를 사전 정찰한 점과 鄭 O O이 별도의 통선을 은밀리 준비한 점 등을 통해 사실로 판단되며
  - 실제 납치상황에서도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들과의 접촉은 실패했지만 “호텔에서 납치 ⇒ 安家 경유 ⇒ 용금호 이송 ⇒ 부산항 도착” 등 단계별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 다만 납치용 물품으로 준비했다는 권총과 대형배낭·로프의 용도가 尹 단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용금호 내에서 칠성판에 몸을 묶은 사실은 살해의혹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납치과정에서 토막살해 또는 水葬을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긴 구체적인 정황이나 위협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李厚洛 부장 단독지시 근거자료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1	李厚洛 증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동아”(87.10월호)와의 인터뷰시 자신의 지시에 의해 중정이 납치사건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면서 최영근이 주장한 박대통령 지시 발언에 대해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해라면서 “하늘에 맹세코 박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강력 부인</li> <li>* 李厚洛은 87.9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 “신동아”와의 인터뷰(87.8)경위를 설명하면서 박대통령 지시설을 재차 부인</li> <li>○ 당시 부장비서실장 李 O O는 87년 경 金大中の 측근 朴 O O로부터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으로 양심선언을 해 줄 수 없는가?”라는 제안을 李厚洛에게 전달했더니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박대통령이 시킨 것으로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li> </ul>
2	李哲熙 (정보차장보)	李厚洛 부장으로부터 직접“金大中을 데려오라”는 납치공작 추진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3	박대통령의 개입 否認 언동	박대통령은 미국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과의 인터뷰(74.12.7)에서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이 추악한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 94)
4	李厚洛의 事後 보고 주장	李厚洛은 “신동아”(87.10월호)와의 인터뷰시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사건 발생 즉시 보고하지 않고 국내 신문에 관련기사가 나온 날(73.8.9) 처음 보고를 했다”고 증언

94) 당시 외무부는 73.8.9 오전 金大中の 실종사실을 외신을 통해 인지, 駐日대사관에 사건 전모 파악 보고 훈령 하달 및 8.9 10:00 윤석현 차관이 後宮 일본대사의 방문을 받고 요담 후 청와대에 동 내용을 보고하여 “한국정부는 실종사건과 무관, 金大中の 신변 보호 요청, 일본 정부의 사건 철저 규명과 일본 언론의 한국 관계기관 개입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훈령을 박대통령에게 받은 사실과 외교부 존안 문서(2006.3 공개)를 통해 박대통령은 납치사건 발생 직후인 73.8.10 목격자 梁OO과 金OO에 대해 귀국을 1주일간 연기하여 일본 측의 수사에 협력토록 강력히 권고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을 외무부를 통해 하달한 사실 확인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5	대통령의전일지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인 73.7에 李厚洛은 박대통령과 3회 접견했으며, 그것도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한 73.7.10 이후에는 7.16(10여 분)밖에 없고</li> <li>○ 8.4에는 김종필 총리와 함께 1시간여 접견한 것이 전부이고 납치실행에 착수한 시점인 7.21~8. 3간 박대통령은 狼島에서 여름휴가를 즐긴 것으로 확인<sup>95)</sup></li> <li>○ 李厚洛의 주장대로 事後에 박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 납치사건 후 73.8.11에 40분 접견 및 8.13에 1시간 30분 접견사실로 보아 보고시점은 이 때인 것으로 추정됨</li> </ul>
6	李 O O 증언 (O 국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 귀환 후인 73.8.14경 박대통령이 극비리에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하여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납치사건을 은밀히 조사해 봐라. 이 일로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li> <li>○ 李厚洛 부장을 만나 납치 지시를 했음을 시인 받은 후 박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 다더니 이거 날 죽일 생각을 했구만”이라고 탄식을 했다고 증언 <sup>96)</sup></li> </ul> <p>* 대통령의전일지에 李 O O과 박대통령의 접견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 李 O O은 경호실장을 통해 극비리 방문하여 기록에는 남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p>

95) 만약 李厚洛이 공작추진 계획을 사전에 박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면 당연히 빈번 접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작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기에 2주간의 장기 휴가(72년에는 5일 휴가)를 간 사실은 박대통령이 事後에 알았다는 반증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96) 李 O O은 박대통령의 조사 지시를 받은 후 李厚洛 부장을 만나 지시사항을 보고했더니 “내가 했다”고 시인하면서 “金大中이 해외동포들을 규합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해서 대한민국 망명정부 대표로서, 한민통 의장으로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통일문제를 협의하고 오려 한다는 정보가 몇 차례 입수되어 미국에 있을 때 데려오려고 했으나 선불리 건드렸다가는 안될 것 같아 기다리던 중 마침 일본에 들어오자 데려와 버리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데려온 것이다”라고 했으며, O국장에게도 확인한 결과 “金大中이 망명정부를 세워 김일성과 협의하고 통일문제에 관해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연방제로 가려고 한 것이다. 李 부장으로부터 과거 연동에 대해 불문에 부친다는 말을 듣고도 미국으로 가려고 했고, 미국에 가버리면 순순히 귀국할 것 같지 않아 동경에서 납치해 온 것이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7	김 정 럽 (대통령비서실장)	납치사건이 보도된 후 박대통령은 중정 공작이거나 일본 우익단체 소행 또는 민단의 과잉충성, 金大中 하부계열의 조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부서에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
8	김 중 필 (국무총리)	“월간조선”(87.10월호)과 인터뷰를 통해 납치사건 후에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박대통령이 “李厚洛이 옆에다 갖다 놓고서는 나한테 얘기를 해!”라고 노발대발 했다고 증언  * “대통령의전일지” 상 金鍾泌은 金大中 귀환 후인 73.8.14에 박대통령과 접견사실 확인
9	김 O O (駐日대사관 공사)	○ 金 O O 공사는 “월간조선”(87.10월호)과의 인터뷰를 통해 74년초 청와대를 방문, 박종규 경호실장을 만 났는데 ○ 박종규는 金大中이 납치되던 날 박대통령이 집무실로 호출하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네가 한 짓이냐?”고 고함을 쳐 아니라고 했더니 李厚洛을 불러 호통을 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10	김 치 열 (법무장관)	76년 말 경 법무장관 재직시 청와대에 보고를 하러 갔더니 박대통령이 험악한 얼굴로 “왜 쓸데없이 납치 사건 같은 걸 해가지고 김형욱이까지 외국서 저렇게 떠들게 만드는지”라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증언
11	김 성 진 (청와대 공보관)	○ 06.9.16 평화방송에 출연, 박대통령 사전 지시와 관련 - 납치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자 이를 보고했더니 외무부·중정·경호실에 개입 여부 확인전화를 하였으며 - 그 후 李厚洛 부장이 청와대에 들어와 중정 개입 사실을 보고하자 “당장 돌려보내라. 절대 위해를 가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

■ 朴正熙 대통령 사전지시 근거자료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1	피해자 金大中	<p>李厚洛처럼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자청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만약 李厚洛의 단독 작품이라면 박대통령은 李厚洛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박대통령이 지상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p> <p>* 金大中 前 대통령은 박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李厚洛이 金 0 0 공사에게 ‘지상명령’ 이라고 했겠느냐고 주장</p>
2	사안의 중대성	<p>o 한국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납치사실이 알려질 경우 일본의 주권침해 주장에 따른 외교문제 발생 및 국제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최고권력자의 지시 없이 실행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 제기와 함께</p> <p>o 당시 박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가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공작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p>
3	관련자 事後 관리대책 지시	<p>o 尹 단장의 관리관 재임용 지시</p> <p>- 75년 밀수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퇴직조치 되었으나 77.8 박대통령의 재가로 관리관에 재임용되었음 97)</p> <p>o 납치사건 관련자 대책방안 강구 지시</p> <p>- 79.3 김재규 부장 시절 작성된 “KT공작요원 실태조사 보고” 등 문건을 통해 박대통령은 사건 가담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시한 사실 확인</p>

97) 尹 0 0은 “박대통령이 중정 공작단 해체(75.8) 이유에 대해 하문하면서 본인이 그만두게 된 경위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들었으며 결국 김재규 부장시절 관리관으로 재임용되었는데, 박대통령은 재임용을 해주면서 “金大中 사건으로 인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정년 퇴직하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조치도 해 놓겠다”는 말도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였고, 재임용 상신서에서 박대통령의 결재 사인 확인(98.2 동아일보 보도내용)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4	李厚洛의 박대통령 사전지시 연결관련 傳聞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哲熙는 李厚洛 부장에게 공작추진 지시를 받을 당시 계속 반대의사를 피력하자 “데러오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라고 하여 박대통령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박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li> <li>○ 최영근(前 의원, 사망)에 의하면 李厚洛은 80년경 “박대통령이 金大中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살려서 데러오는 것으로 추진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li> </ul>
5	尹 〇 〇 (공작단장)	尹 〇 〇은 金 〇 〇 공사가 본부에 전문을 보내 “박대통령의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추진할 수 없다”고 버틴 일이 있다며,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정보제공 등 협조를 했다고 증언
6	駐韓미국대사관 보고 전문내용	美 국가안보기록보관소는 06.5 납치사건 관련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73.10.10자에 하비브 대사는 국무장관에게 보고하는 전문을 통해 “납치사건은 李厚洛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게 확실하다. 박대통령의 명백(explicit)하거나 암묵(implicit)적인 승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
7	김종필 총리의 비서관 김홍래 특이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동아”(07.3월호)는 “김종필 총리 정무비서관 김홍래(76세,사망)가 중정 납치실행조의 작전수행 확인보고 특명을 받고 당일 오사카안가에 있었다”는 당시 NHK 서울주재 기자 천학범(80세)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갔을 가능성 제기</li> <li>* 김홍래는 73.8.8(납치당일)~8.21간 일본 출입국 확인</li> <li>○ 이와 관련 김 前 총리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홍래의 일본 출장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언급</li> </ul>



## ■ 판 단

- 李厚洛은 자신이 납치 지시를 했다고 명백히 시인한 적은 없지만
  - “신동아”(87.10월호) 등과 인터뷰시 중정 개입을 인정한 바 있고, 李厚洛에게 직접 구두지시를 받았다는 李哲熙의 진술과 사건 발생이후 “내(李厚洛)가 지시했다”는 말을 당사자에게 들었다는 당시 부장비서실장 李 O O 및 O국장 李 O O의 증언을 비롯해
  - 납치공작이 실제로 중정 O국 주도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관련자 증언 및 국정원 자료에 의해 입증된 점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李厚洛이 중정 공작부서에 납치공작을 추진토록 지시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나

- 박대통령이 사전에 납치지시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KT공작 계획서”가 남아 있지 않아 대통령의 결재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李厚洛에게 사전에 구두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자료 또한 없는 관계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 우선 박대통령이 事後에 납치공작 추진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로는
  - 73. 8. 9 오전에 외무부는 金大中 실종사실을 외신을 통해 인지했다는 내용과 윤석현 차관이 駐韓 일본대사와의 접견 상황을 보고한 후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한국정부는 金大中 실종사건과 무관하다”는 등 훈령을 발표토록 하였고
  - 73. 8.10 박대통령은 외무부에 지시하여 목격자 梁 O O과 金 O O에 대해 귀국을 연기하여 일본 측의 수사에 협력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훈령을 駐日대사관에 하달하도록 했으며

- 李厚洛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박대통령의 사전지시는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해 왔고, 박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정렴·김종필·김성진 등은 事後인지 정황을 제시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 “대통령의전일지”상 납치사건 발생 전후시기 李厚洛과 朴正熙의 접견상황을 통해 事後보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 李厚洛이 최영근에게 “박대통령 지시를 받고 공작을 추진했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시기가 10.26사건 이후라는 점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李厚洛 또한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 만약 李厚洛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박대통령이 즉시 책임을 물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3.11 일본과 외교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후 李厚洛을 결국 해임한 사실

등을 통해 李厚洛은 ‘윤필용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박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납치공작을 강행했다는 것이고

○ 반면 박대통령이 事前에 李厚洛에게 지시했다는 근거자료는

- 중정에 의한 납치임이 탄로가 났을 경우 일본과의 외교문제 발생과 국제사회에서 위신추락 등을 고려할 때 과연 李厚洛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실행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 최영근(前 의원)이 80년 초경 李厚洛으로부터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의미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과 李哲熙가 李厚洛에게 지시를 받을 당시 반대의사를 피력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했다는 傳聞증언과

- 尹 단장은 金 O O공사가 “박대통령의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추진할 수 없다”는 반발을 보이다 얼마 후 정보제공과 인원동원 등에 적극 협조를 했다는 증언을 하였고
- 박대통령의 측근들은 事後인지 증언을 하고 있으나, “대통령 의전일지”에 그들의 접견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 당시 駐韓미국 대사의 전문보고에 “박대통령의 명백하거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된 사실과
- 73.7.27 중정이 “金大中 滯美·日 활동 종합” 제하로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이미 납치공작에 착수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공작추진 사항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 박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공작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유신체제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고
- “金大中이 미국과 일본 정계 등에 朴正권 지원중단을 요구하면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이 李厚洛에게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을 것은 자명하며
- 납치사건 관여 중정직원 및 용금호 선원들을 事後관리토록 한 점

등 사전지시 주장에 대한 정황증거 자료를 종합, 분석해 볼때 박대통령의 직접 지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고 판단됨

※ 박대통령의 사전지시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事後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살해계획 근거자료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1	피해자 金大中 (前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에서 납치될 당시 발견된 유류품 중 룩색은 토막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물증이며, 용금호에서 칠성판에 묶어 돌맹이를 달아 水葬을 기도했으나 비행기 출현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li> <li>○ 80년 최영근(前 의원, 사망)이 10.26사건 이후 李厚洛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박대통령으로부터 살해지시를 받았으나, 납치를 해서 데려오는 것으로 명령을 소화해서 시행했다”는 것임 98)</li> </ul>
2	金炯旭 (前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형욱 회고록」을 통해 납치사건 후 범인 중의 한 명인 柳 O O(현장행동대원)이 미국으로 찾아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은 金大中을 호텔 내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죽인 다음 배낭에 넣어서 버릴 예정이었으나</li> <li>- 金OO이 목격하여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li> </ul> </li> </ul>
3	尹 O O (공작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O O이 작성한 공작계획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안이 일본 야쿠자를 이용, 납치하여 파우치로 데려오는 것이었고, 제2안은 야쿠자를 이용, 제거(암살)하는 것이었다며</li> <li>- 당초에는 살해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단순 납치계획이 실행되었다고 증언</li> </ul> </li> </ul>

98) 최영근은 10.26사건 이후 李厚洛을 만나 납치사건에 대해 물어 보자 “金大中이 해외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자 어느 날 사석에서 불쾌한 어조로 金大中을 없애라는 뜻의 욕설을 하여 농담으로 넘겨 버렸는데 얼마 후 박대통령은 청와대로 나를 부르더니 정색을 하고 이 문제를 金鍾泌(총리)하고도 이야기 한 것이라며 엄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金大中을 죽일 경우 언젠가는 나한테 그 책임이 올 것이라는 걸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납치를 해서 한국에 데려다 놓는 선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소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당초부터 납치였지 제거 지시가 아니었다”는 말을 하여 그대로 金大中에게 전해 주었으나, 李厚洛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임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4	권총 및 실탄 소지(7발 장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은 현지공작 지도감독을 위해 출국시 파우치 편으로 권총과 탄창(실탄 7발 장전)을 받은 후 납치 현장 출동시 소지하고 있었다고 시인</li> <li>○ 권총은 비상시 자살용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탄을 7발이나 장전해 놓은 점은 살해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 제기</li> </ul>
5	납치현장에서 대형 배낭 발견	납치현장인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실에서 발견된 대형배낭(록색) 은 토막살해 또는 파우치 활용방안이 추진되었다는 증거라는 주장
6	납치실행 착수 시기와 용금호 동원시기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국과 駐日과견관간 전문내용을 통해 73.7.21부터 납치실행에 착수한 사실 확인</li> <li>- 尹 단장은 용금호는 공작계획 단계부터 金大中을 이송하기 위해 동원키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송용으로 활용할 것을 대비하여 오사카항에 대기토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li> <li>-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날이 73.7.29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전에 납치에 성공했을 경우 처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의문점 상존</li> </ul>
7	미국 의회의 중정 활동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8.6.22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는 “미국내에서 우호국 정보기관 활동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li> <li>- 72년 金大中이 미국 방문시 KCIA(중정)가 동향을 면밀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측 요인과의 회담 저지를 위해 전력을 경주했으나 효과가 없자</li> <li>- 미국에 거주하는 범죄자를 시켜 金大中을 살해할 계획까지 검토했다고 주장</li> </ul>
8	국내 도착 후 처리방안 불투명	金大中을 실은 용금호가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하루 동안 대기했다는 주장과 함께 安家에 이틀 동안 감금 후 갑자기 석방시킨 점에 의혹 제기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9	일본 야쿠자출신 양원석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10 월간지 “인사이드월드”는 제일교포 출신 일본 폭력단 야마구찌 두목 야나가와 다카시(柳川魏志, 한국명: 梁元錫, 사망)에게 金大中 살해 관련 증언을 들었다고 보도</li> <li>○ 梁元錫은 “金 O O 공사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래서 金大中이 나쁜 인간임을 알게 되어 한국을 위해 내 손으로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공사, 尹 O O 등과 몇 차례 만났는데 그런 사실이 일본 경찰에 알려져 미행과 도청을 당해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li> <li>- 나는 여러 곳으로부터 金大中을 죽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li> </ul> </li> </ul>
10	일본 경찰 간부 니시야마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10 월간지 “인사이드월드”는 당시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일본 경찰 간부 니시야마가 오사카총영사관에 근무한 金 O O으로부터 득문했다는 내용을 게재 99)</li> <li>○ 니시야마는 “73.7.10 金大中이 동경 도착 시부터 중정 요원들이 미행해 왔으며, 金大中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카하시(高橋) 경찰청장관이 金 O O 공사를 불러 金大中을 미행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었다”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은 중정이 많은 돈을 주고 야마구찌 폭력조직을 동원해서 미행시키고 또 자위대에서 은퇴한 정보원을 동원, 미행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li> <li>- 오사카지역 거점장 金 O O에게 “金大中을 도중에 죽여서 암매장할 계획이었다”는 고백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li> </ul> </li> </ul>

99) 니시야마가 金 O O(오사카거점장, 사망)에게 들었다는 내용은 “납치 당일 朴 O O와 함께 오오쓰 인터체인지 부근 공터에서 金大中을 납치한 尹 단장 일행과 만나 자동차를 바꿔 타도록 되어 있었으나, 길을 잘못 들어 만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1시간 동안 기다리던 尹 단장 등은 동명고속도로를 이용 오사카 安家로 숨어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행동대원이었던 柳 O O의 증언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나, “金 O O은 그 책임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 정보부를 떠나게 됐는데 그때 암매장 계획을 고백했다”는 주장은 당사자인 金 O O이 83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단순납치 근거자료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1	李厚洛 (부장)	87년 “신동아”(87.10월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지시로 납치공작이 추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계획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 100) * 최영근의 증언에 대해서는 뉘앙스 차이로 뜻이 와전되었다며, 박대통령의 살해지시설도 부인
2	李哲熙 (정보차장보)	李厚洛 부장으로부터 “金大中을 데려오라”는 납치지시를 받았으며, 따라서 단순 납치하는 공작이 추진되었다고 주장 * 金 O O의 살해안 포함 계획안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
3	尹 O O (공작단장)	金 O O이 작성한 계획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결국 金 O O 공사에게 駐日파견관을 동원하여 납치, 국내로 데려오는 계획이 하달되었으며, 자신은 현지 공작 지휘감독 지시를 받고 渡日했다고 주장
4	권총의 용도	○尹 단장은 납치현장에 권총(실탄 7발 장전 탄창 포함)을 가지고 간 목적은 공작이 실패할 경우 자살용으로 준비했으며 ○탄창에 7발을 다 채운 것은 군 시절부터의 습관이라고 강변
5	대형배낭 용도	대형배낭(록색) 2개를 구입한尹 단장은 그 용도에 대해 金大中 납치 후 마취를 시켜 하반신을 한 개에 넣고 다른 한 개는 위에서 덮어 매고 나오려고 했다고 주장

100) 李厚洛은 87.8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 재임중의 일이니까 결과적으로 金大中씨와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중정이 납치사건에 개입했음을 시인했으나, “호텔에서 발견된 배낭 등 유류품과 관련 살해 목적이 있었다면 그 준비가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며 토막살해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살해하려면 무엇 때문에 배를 가지고 갔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처음부터 납치가 목적이었지 살해 또는 水葬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최영근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뉘앙스 차이로 그렇게 뜻이 와전되었다”며 박대통령의 살해지시설에 대해서도 부인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6	용금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은 李哲熙로부터 현지공작 지휘감독 지시를 받은 후 金大中 납치 성공시 예비 이송수단용으로 용금호를 준비했다면서</li> <li>○ 살해계획이 있었다면 납치, 살해 후 아무데나 유기하면 되지 굳이 검문검색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금호에 태우기 위해 오사카항까지 이동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 101)</li> </ul>
7	토막살해용 도구 未준비	<p>호텔 내에서 토막살해 주장에 대해 金大中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막살해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칼·톱·비닐 등 도구도 준비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 제시</p> <p>* 柳 0 0도 金炯旭의 토막살해 인정 주장에 대해 부인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는데 살해계획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p>
8	水葬 기도 행위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금호 선원들에 의하면 金大中이 칠성관에 묶어 돌맹이를 달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li> <li>○ 널빤지를 십자형으로 만들어 묶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손을 줄로 묶은 후 다시 널빤지 끝에 묶어서 움직임을 최소화시켰는데 그것을 돌을 매단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li> </ul>
9	비행기 출현 입증자료 未발견	<p>金大中은 水葬을 기도하던 순간에 비행기가 출현하자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및 미국정부에서 金大中 구출을 위해 비행기를 보냈다는 근거자료는 발견되지 않음</p>
10	다수 인원 동원 사실	<p>납치에 가담한 중정직원 공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면 야쿠자 1~2명을 동원하면 간단한 일로, 20여 명의 직원들과 용금호 선원들(18명)이 관여됐는데 보안상 이유로도 살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p>

101) 만약 용금호에서 水葬을 하려고 했다면 비록 중정요원 鄭 0 0과 朴 0 0이 승선하고 있었지만 현지공작 책임자인 尹 0 0이 함께 승선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나 국내로 데려오는 납치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11	공작추진 前 자진귀국 설득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5경 李厚洛은 O국장 李 O O에게 金大中의 가족을 활용, 자진귀국을 추진하라는 특명 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실행 직전(73.8.6)에 李 O O과 이회호가 일본에 동행하여 金大中을 설득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어</li> <li>- O국장은 공작추진팀에게 梁 O O을 조종, 자진귀국을 유도하라는 긴급전문 하달 사실 확인</li> </ul> </li> <li>○ 이를 통해 李厚洛은 O국장이 추진하던 자진귀국 설득작업에 진척사항이 없던 중 73.7.10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하자 O국에 납치공작을 지시하였다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주장</li> </ul>
12	납치과정 중 살해시도 행위 全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에서 납치 후 마취 및 安家에서 결박 등 행위는 있었지만 토막살해 시도는 없었으며</li> <li>○ 용금호에서도 널빤지에 몸을 묶은 사실은 있으나, 水葬을 위해 갑판으로 끌어올려 던지려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납치 관여 중정직원과 용금호 선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金大中도 이를 인정 102)</li> </ul>
13	공작 추진기간이 단기간이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厚洛부장의 지시에 의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73.7.10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한 이후이고 7.21 金 O O이 작성한 공작계획안이 검토된 후 동일 尹 단장이 일본에 파견되어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에 착수, 8.8 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li> <li>○ 상식적으로 살해공작이었다면 장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외교관 신분으로 나가 있는 파견관들이 다수 동원됐고 O국에서는 尹 단장만 파견한 사실을 볼 때도 단순 납치계획이라는 주장</li> </ul>

102) 납치사건에 관여한 전직 중정직원들에 대한 면담결과, 尹 단장은 준장 진급 누락 후 관리관으로 승진되었으나 75년 신직수 부장시절 밀수에 연루된 혐의로 퇴직 조치를 당했고, 金 O O은 사건 관련 면직처리 되어 복직 후에도 보직 등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용금호 선원 중 갑판장 李 O O는 당시 金大中 지지자로 알려져 중정에서 고초를 당했다는 등 이들 모두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나, 살해계획 및 水葬기도 의혹과 관련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증언

연번	증언 및 근거자료	구체적 내용
14	납치실행 직전 동향보고 재강조 지시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국은 73.8.7 납치실행 하루 전 駐日파견관에게 金大中 동향보고에 대한 재강조 지시를 하달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자체를 임무수행 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둘 것과</li> <li>- 全 파견관은 주 임무 수행과정에서 金大中에 대한 동향이 입수된 즉시 000이 종합보고 체제 확립을 지시</li> </ul> </li> <li>○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만약 8.8 호텔에서 납치 후 암살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과연 이러한 동향보고 재강조 지시가 필요했겠는가 하는 의문 제기</li> </ul>
15	살해계획 不要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이 해외에서 反유신 투쟁을 전개한 상황이 과연 암살을 해야 할 정도로 朴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li> <li>○ 후에 「한민통」 결성을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사법처리 했듯이 얼마든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살해할 경우 당연히 한국정부에서 개입한 것으로 여길 텐데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무모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주장</li> </ul> <p>* 실제로 O국은 당시 金大中이 조총련 부의장을 접촉, 평양 방문 의사를 보였다는 정보에 따라 O국을 경유 駐日파견관에게 수사 증거자료 입수 지시를 하달한 사실 확인</p>
16	기타 관련자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 비서로 활동한 조활준은 73.8.4 駐日대사관 공관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金大中 선생을 훔쳐가기(납치)로 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증언(마이니찌신문사 제작, “김대중사건의 전모” 125p 참조)</li> <li>○ 李厚洛은 “신동아”(87.10월호)와 인터뷰시 이틀 간 서울 安家에 감금시킨 이유를 “회복시켜 보내려고 지체했다”고 주장</li> <li>○ 인원동원 및 정보제공 임무를 맡은 金 O O 공사도 단순 납치계획이었다며 살해계획 부인 (“월간조선” 87.10월호)</li> </ul>

## ■ 판 단

### 【 살해공작 추진 근거 및 반론 】

① “KT공작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金 O O은 “일본 야쿠자를 이용한 납치계획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尹 O O은 “야쿠자를 활용, 암살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살해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

⇨ 尹 단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당초 살해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尹 단장도 실행 과정에서는 단순납치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살해계획 논의 자체를 부인

② 재일교포 출신 폭력단 두목 梁元錫(사망)이 증언한 “金 O O을 만나 金大中 제거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일본 경찰의 미행과 도청으로 인해 가담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살해공작 진행 가능성 시사

⇨ 공작계획안은 ‘李厚洛부장 ⇨ 李哲熙차장보 ⇨ 河 O O국장 ⇨ 金 O O공사 ⇨ 金 O O 파견관’ 등 지휘라인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梁元錫이 金 O O을 만나 金大中 암살안을 제안 받은 시기는 金 O O이 대책방안 작성 지시(73.7.14경)를 받고 본부에 보고(73.7.19)하기 전에 실행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에서 梁元錫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梁元錫의 증언은 당초 살해안이 포함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확인해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는 불확실함

③ 金 O O은 “金大中의 체류지(하라다맨션)에 대해 평소 협조자로 관리해 오던 자위대출신 O O O 가 운영하던 O O 흥신소에 돈을 주고 미행 감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는데, 이는 살해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정보수집 단계로 볼 수 있음

- ⇨ 일본 경시청 조사결과, 동 흥신소가 金 0 0의 의뢰를 받고 감시한 것은 73.7.25부터 3일간이었다는 사실과 73.7.21부터 駐日파견관들이 감시에 착수한 점을 감안할 때 노출을 대비한 의뢰행위라는 주장
- ④ 73.7.21부터 駐日파견관들이 납치를 위한 감시활동에 착수하였고,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것은 73.7.29인 점을 감안할 때 용금호 도착 전에 납치에 성공했을 경우의 처리방안이 불명확한 사실은 파우치 활용방안 또는 암매장 계획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 尹 단장은 용금호를 준비한 경위에 대해 공작계획 단계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납치 후 이송 수단용으로 대비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금호 도착 전 살해안 추진 가능성을 유추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입증 자료는 발견하지 못함
- ⑤ 납치현장인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실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 대형배낭(록색, 2개)은 토막살해 또는 파우치 용도였고, 권총도 살해용으로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 탄창에 실탄이 7발이 장전된 사실과 대형배낭은 金大中을 마취 후 담아 나오기 위한 용도였다는 尹 단장의 진술에 대해 金 0 0 등은 파우치 이용 방안도 논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살해용으로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 호텔에서 납치키로 결정된 후 파우치 이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증언 또는 자료는 없으며, 토막살해를 위한 도구인 톱·칼·비닐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梁 0 0과 종업원들의 목격 가능성, 토막살해를 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호텔에서 납치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토막살해까지 계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尹 단장은 군 시절부터 탄창에 실탄을 꼭 채우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

⑥ 金炯旭(前 중정부장)은 현장 행동대원이었던 柳 O O에게 “호텔에서 토막살해 계획이 있었으나, 金 O O의 목격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 제시

⇨ 駐美파견관을 통해 柳 O O 면담결과, 金炯旭을 만난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金炯旭이 실종된 상황에서 사실여부 확인 불가

⑦ 일본 경찰간부 출신 니시아마가 오사카 거점장 金 O O(사망)으로부터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에게 金大中을 인계하는 계획이 어긋나자 급히 安家로 이동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내용은 柳 O O의 진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金 O O이 “金大中을 암매장 또는 水葬할 계획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것 또한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

⇨ 살해계획이 있었다면 호텔로부터 오사카 安家를 거쳐 용금호에 인계하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살해하여 암매장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인 金大中도 인정하듯 직접적인 살해위협 행위는 없었으며, 또한 金 O O의 언동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신뢰성이 미약하다는 주장

⑧ 金大中은 용금호에서 칠성관에 몸을 묶고 재갈을 물린 상태로 돌을 매달아 水葬을 시키려고 했으나, 비행기의 출현으로 인해 중지했다고 주장

⇨ 중정요원 鄭 O O 및 용금호 선원들은 돌을 매달았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李哲熙·李 O O(O국장) 등은 이를 인정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며

⇨ 이들의 주장처럼 金大中의 몸을 묶고 배 밑에 감금시킨 이유는 일본 경찰의 검색에 대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비행기 출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金大中 구출을 위해 뒀다는 근거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점과 더욱이 향해 중 직접적인 水葬기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水葬계획이 상황변화로 인해 중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⑨ 용금호가 부산항에 도착 후 하루 동안 대기하다 安家로 이동, 이틀간 감금한 상황에서 갑자기 방면시킨 사실은 국내 도착 후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곧 살해 계획의 실패로 인해 金大中의 신병처리가 불확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서임

⇨ 李哲熙는 공작계획서상 金大中을 국내로 데려온 이후의 처리방안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尹 단장도 서울 安家에 감금타 방면한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 安家에 감금하다 방면시킨 이유에 대해 李厚洛은 87년 월간지와 인터뷰시 “회복시킨 후에 보내려고 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당시 金大中이 납치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일본 언론에서 한국정부의 공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임

⑩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는 보고서를 통해 “중정은 1972년 金大中이 미국 체류 시에 범죄자를 시켜 암살할 계획까지 검토했다”고 밝혔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납치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가능

⇨ 위와 같은 보고내용은 제3자인 미국의 정보기관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곤란

⑪ 尹 단장은 “金大中을 용금호에 인계한 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자 河 0 0 국장을 급히 보내 귀국을 설득했다”면서 “본부에서는 내가 망명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귀국을 지체한 이유는 살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의혹 제기

⇨ 尹 단장은 일본 입국시 대사관에다 여권을 맡겨 두었는데, 사건발생 후 일본 경찰의 감시로 인해 여권을 전달받지 못해 귀국이 지연됐다고 주장

## 【 국정원 자료를 통한 단순납치 근거 】

### ○ 공작추진 과정이 단기간이란 점

- 73.7.10 金大中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자 李厚洛의 지시로 구체적인 공작계획이 수립되었고, 73.7.21 尹 단장이 파견된 후 본격적으로 납치를 위한 감시에 착수, 8. 8 실행된 정황으로 보아
- 공작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이 너무 단기간이었다는 측면에서 살해공작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임

### ○ 단계별로 다수 인원이 가담한 사실

- 납치실행 단계별로 다수의 중정요원과 용금호 선원들이 동원된 점은 살해공작과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음

### ○ 용금호를 이송수단으로 동원

- 尹 단장은 공작계획 단계부터 용금호 동원이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鄭 O O 등 중정요원을 승선시켜 오사카항에 대기토록 지시한 사실 등을 통해 납치 후 金大中的 국내 수송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 해 둔 조치로 보임

### ○ 자진귀국 설득 추진

- 73.5 李厚洛이 O국장에게 金大中 자진귀국 설득 특명을 하달하였으나, 8월 초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던 사실은 73.7 李哲熙를 통해 O국에 납치공작 추진지시가 은밀히 내려졌을 가능성 제기

### ○ O국과 駐日파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

- 납치장소 결정(73.8.6) 등 실행에 착수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진귀국 설득과 일일 동향보고 재강조 지침이 내려진 점은 이미 단순납치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음을 강하게 시사

## 【 최종 판단 】

○ 납치과정 중 살해위협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사건에 가담한 중정요원 및 용금호 선원들은 “납치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 金 O O이 작성한 “KT공작계획안”에 살해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尹 O O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고
- 권총(실탄 7발 장전), 대형배낭로프의 용도, 용금호에서 나무판에 결박된 것, 尹 단장의 지연귀국 등 사유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그때 만약 납치에 성공했다면 마땅한 이송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암매장계획 의혹도 상존

등 살해공작이 하달되어 일정 단계까지 추진되다 목격자 출현 등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되었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단순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의 단순납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O국과 駐日파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과 납치과정에서 토막살해·암매장·水葬 등 직접적인 살해기도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 다수의 중정요원과 용금호 선원들이 가담, 단계별로 납치를 진행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放免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작계획 단계에서는 야쿠자를 이용한 살해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 또는 호텔에서 납치가 실행된 단계에서는 단순납치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 중정의 사건 은폐기도 사항

연 번	구 분	구체적 내용
1	납치사건 개입 사실否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73.8.28 조절위원장 김영주 명의 성명을 통해 李厚洛을 납치 주역으로 지목, “깡패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남북대화 중단 발표</li> <li>○ 이에 李厚洛은 8.29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중정은 결코 납치사건과는 무관하다. 내 부하가 한 사람이라도 개입했다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등 불개입 입장 천명</li> <li>○ 87.9.28 李厚洛은 “신동아”(87.10월호)등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외교구락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 조직력이나 공권력 개입을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중정 개입 시인 내용을 번복 103)</li> </ul>
2	납치사건 관여 駐日파견관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발생 후 일본 경시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金 O O을 즉각 귀국(73.8.19)토록 조치 104)</li> <li>○ 또한 일본 정부가 73.9.5 金 O O의 지문이 발견되었 다면서 임의출두를 요청하자 즉시 劉 O O·洪 O O·柳 O O·安 O O·朴 O O 등 사건에 관여된 파견관들을 귀국토록 함으로써 일본 측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활동을 사전 차단 105)</li> </ul>

103) 동 기자회견은 안기부의 압력에 의해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안기부는 “신동아”(87.10월호)에 납치사건은 중정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李厚洛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된 것과 관련 기밀누설로 처벌하는 방안 등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李 O O (李厚洛부장 비서실장)에 의하면 당시 李 O O 차장이 李厚洛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104) 金 O O은 납치 실행에 가담 후 한국으로 직접 가면 도망갔다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73.8.10) 하자 본부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오히려 납치사건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므로 빨리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후 8.17 재도일 하였으나, 일본 경시청에서 감시를 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가족들은 버둔 채 다시 귀국하였다고 증언

105) 외교부 존안자료를 통해 駐日파견관들의 귀국 일자 확인 및 73.9.8 일본 공동통신 본사가 서울 특파원에게 납치사건 관련 駐日공관의 외교관 명단 입수 지시를 내렸다는 첩보에 따라 중정 O국에서 외교관 명단 회수 조치를 하였다는 문건 확인

연 번	구 분	구체적 내용
3	「특별수사본부」 조정·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부는 金大中이 귀환한 다음날(73.8.14)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정 O O) 설치</li> <li>○ 중정의 「특별수사본부」 수사활동 조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관련 추측기사 배제를 위해 수사본부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정 O O 본부장에게 지시</li> <li>- 8.14 2차 심문까지는 金大中 家 출장 심문 및 3차부터는 외신기자 등 차단을 위해 소환 내지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심문조사토록 지시</li> <li>- O국장이 8.14 金大中과 단독 면담, 행동을 자중토록 경고</li> </ul> </li> </ul> <p>등 내용이 기재된 “김대중사건 조치사항”(73.8.14 작성) 문건 확인 106)</p>
4	事後 대책방안 문건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활동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 자작극, 극우세력 또는 베트콩과의 소행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 유도</li> <li>- KT사건 수사 및 발표는 중정 조정하에 실시</li> </ul> </li> <li>○ 정치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당의 특별조사위 구성 요구는 단호히 배격</li> <li>- 야당 내 反 金大中계 인사를 활용, 동 사건의 僞計說(자작극설)을 유포토록 조종</li> </ul> </li> <li>○ 민심순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행사 개최 추진</li> <li>- 金大中의 사대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도록 유도</li> </ul> </li> </ul>

106) 73.10.8자 “KT사건 수사상황 보고”를 보면 “정 O O 수사본부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귀국 체류 중인 駐日 외교관 8명(중정요원)에 대해 납치사건과 관련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문 초안을 작성, 當部の 수정을 요청하여 왔는데 대상자중 金 O O은 既 발표하였으므로 재발표가 불요하고 劉 O O에 대한 조사결과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토록 조치” 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특별수사본부」는 중정의 조정·통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연 번	구 분	구 체 적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 신병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 또는 自家에 연금시켜 신병치료를 이유로 외부인사와의 접촉 차단</li> <li>- 외세를 이용, 경거망동한 행동을 못하게 경고</li> <li>- 일본의 金大中 신병 인도요청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 未종결 등을 이유로 거부 107)</li> </ul> </li> <li>○ 보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8.15부터 중정 주관하에 철저한 보도통제 실시</li> <li>- 정부 관계당국의 정식발표 사항에 한해 보도</li> <li>- 애국청년구국대가 金大中을 납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국에 대한 배신 행각 등 부각</li> <li>- 외신보도의 국내 언론 인용보도 억제</li> <li>- 일본 신문의 駐韓특파원 송고기사 검토 및 억측 기사 게재 신문은 문공부에서 개별적 추궁 108)</li> <li>- 동 지침 위배 및 비협조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분의 대응조치 강구</li> </ul> </li> <li>○ 사건종결 처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국청년구국대 수사에 역점을 두는 인상 부각</li> <li>- 민심을 감안, 사건을 미궁에 빠지도록 유도 109)</li> <li>- 사건이 未해결되는 적당한 시기를 택해 관련자 인책으로 민심 순화</li> </ul> </li> </ul>

107) 일본정부는 73.8.14 수사상황 수시 통보 및 金大中과 梁 O O이 渡日하여 수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8.17 兩人이 국내 수사에 불가결한 증인인 관계로 渡日이 어렵다며 거부 입장 통보

108) 당시 문공부는 73.8.24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납치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권력 개입 주장 기사를 게재하자 서울지국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림

109) 특별수사본부는 金 O O 등 관련자들에 대해 입건도 하지 않은 채 74. 8 내사중지 및 75. 7 내사종결 처리하였는바 중정의 조정에 의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연 번	구 분	구체적 내용
5	용금호 선원 보안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보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정은 용금호가 납치선박 혐의를 받게 되자 일본에 출항을 하지 않고 국내 화물 운반만을 함으로써 선원들의 생계곤란 야기</li> <li>* 선원들은 일본에 출항시 경시청에서 납치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하자 중정에서 일본 운항선박 승선 제한조치를 했다고 주장</li> <li>- 尹 단장은 납치사건 이후에도 용금호 선원 관리 책임을 맡아 생활대책비로 2,000만원을 수령, 특별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 110)</li> </ul> </li> <li>○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정은 선원들에게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용금호 승선시 지득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및 위반시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111)</li> </ul> </li> <li>○ 취업 알선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단장은 선원들이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취업을 위해 관련업체에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112)</li> </ul> </li> </ul>

110) 당시 조리장 曹 O O의 경우 다른 선원들이 尹 단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본인에게는 왜 안 주느냐고 항의를 하여 결국 200만 원을 받아냈다고 주장(尹 단장도 지급사실 시인) 및 98.2 동아일보는 尹 단장이 79.12.27 2천 만 원을 수령한 영수증 사본을 확인했다고 보도 (尹 단장도 수령사실 시인)

111) 동아일보가 보도한 당시 서약서 내용은 “본인은 과거 특정선박 승선 기간 중 지득한 일체의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임을 명심하고 지금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지켜 왔으며, 동 공로로 금번 특별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상기 사실에 대한 보안을 더욱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본인은 금번 특별보상금과 과거의 협조 사실을 근거로 이를 제차 거론, 부당한 요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차후 어떠한 요구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오며 이를 위반시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것으로 동 서약서 집행자는 尹 O O 단장, 임회자는 鄭 O O 및 감찰실 安 O O 직원의 날인이 되어 있다는 것임

112) 98.2 동아일보는 중정이 작성한 문서 중 “용금호 관계 인사 일람표”란 문건을 통해 용금호 선원들에 대한 취업 주선 등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일례로 선장 李 O O (국제해운 취업 추진 중), 갑판원 林 O O(여수수산센터내 매점 임대계약 추진 중), 기관사 李 O O (제주 버스회사 허가시 취업), 통신장 鄭 O O(공영주택관리 허가시 취업), 조타수 尹 O O (제주 모래 채취업 허가연기 신청 중)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내용을 게재

연 번	구 분	구체적 내용
6	사건관계 직원 관리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尹 O O 관리관 진급 및 재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공작 지휘감독을 맡은 尹 단장(당시 육군 대령)은 준장 진급에 계속 누락되었으나, 75년 초 예편과 동시에 관리관으로 진급 113)</li> <li>- 75년 말 경 尹 단장은 용금호 선원들의 밀수사건 연루된 혐의로 퇴직조치를 당했으나, 77.8 박 대통령의 지시로 관리관에 재임용된 사실 확인</li> <li>* 尹 단장의 관리관 진급 및 재임용 조치는 공작책임자에 대한 보상책으로 판단됨 114)</li> </ul> </li> <li>○ 金 O O에 대한 형식적인 免職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11 한국정부는 납치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받은 金 O O 면직(駐日대사관 파견관) 처리 발표</li> <li>- 이에 따라 74.12 중정에서도 퇴직조치를 취했다고 했으나, 1년 후에 복직을 시켜 준 사실 확인 115)</li> </ul> </li> <li>○ 李厚洛의 공권력 개입 부인 압력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李厚洛은 월간지 “신동아”(87.10월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납치사건에 중정 개입사실 시사</li> <li>- 당시 안기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사법처리 검토 등 압력을 행사, 87.9.28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번복케 한 사실 확인</li> </ul> </li> </ul>

113) 尹 단장은 金大中 납치 성공 공로로 당연히 장군 진급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73년~74년 계속해서 진급에 누락이 되자 75년 초 윤일군 차장에게 “정보부에서 하나도 장군 진급을 안 해 준단 말인가?”라고 따지면서 신직수 부장과 면담을 하겠다고 하자 윤 차장이 신 부장에게 결재를 받고 나와서는 “부장님이 관리관을 시켜 준다고 한다”고 하여 그 이튿날 예편과 동시에 관리관으로 진급이 되었다고 증언

114) 98.2 동아일보에 보도된 중정 작성 문건(“KT공작요원 실태조사 보고” 등)은 동아일보(취재담당 기자)에 확인결과, 현재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다만 동아일보 독자정보실의 협조를 통해 당시 사진자료로 보도되었던 “KT공작요원 실태조사 보고” 문건의 표지 및 목차, “윤 O O의 관리관 임용제청서”, “KT사건 관계인사 일람표”등을 이미지화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동 자료를 출력하여 입수하였는바 事後 관리대책 강구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였음

115) 金 O O은 복직 후 李哲熙 차장보의 지시로 O 국 부단장이란 보직을 받았으나, 2개월 후 李哲熙가 불러 “보안을 어떻게 지키는거야? 공작단 부단장이란 걸 일본에서 알고 항의해 왔다”면서 “사무실 하나 얻어 줄 테니 나가서 거기 있어라”고 하여 원남동에 사무실을 얻어 직책도 없이 부이사관급(3급) 대우를 받으면서 8년여 간 근무하다 82년 말 퇴직했다고 증언

■ 한·일 정부간 외교적 해결 추진

○ 외교절충 과정 116)

시 기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제 1 기 (73.8.8~9.3)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 한국정부는 납치사건과 무관 등 입장 천명</li> <li>○ 8.14 진상규명 의지 및 韓日 우호관계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될 것임을 일본 정부에 전달</li> <li>○ 8.17 金鍾泌 총리가 일본 다나카 수상 및 오히라 외상에게 私信을 보내 유감 표명</li> <li>○ 8.29 李厚洛 부장의 중정 불개입 성명 발표</li> </ul>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의 진상규명 조속 해결 방침</li> <li>○ 韓日관계 영향 최소화 입장</li> <li>○ 金大中·梁○○·金○○ 渡日 협조요청</li> <li>* 한국정부는 일본 측의 요청에 거부 입장 표명</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간 수사상황 통보 등 협력관계 유지</li> <li>○ 납치사건으로 인해 한일간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상호 상반되는 입장을 통해 대립상태 견지</li> </ul>
제 2 기 (73.9.4~10.25)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 駐日대사관 金○○ 서기관 임의출두 요청</li> <li>○ 일방적인 수사결과 발표와 金○○의 임의출두 요청 등 일련의 강경조치가 한국 측을 자극하게 되자 다소 신중한 태도 시현</li> <li>○ 9.19 오히라 외상, 김종필 총리에게 친서 전달</li> </ul>

116) 2006.3 외교부에서 공개한 납치사건 관련 문서 중 “김대중 사건을 圍繞한 외교교섭”제하 문건을 통해 한·일간 외교절충 과정 확인

시 기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제 2 기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5 신직수 법무장관은 金 O O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었다면서 납치사건과 무관함을 주장</li> <li>○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따라 金 O O 출두 요청 거절</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O O의 사건 관련 여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li> <li>○ 일본 측은 對韓經協 추진 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하면서도 韓國民 감정 자극을 우려, 신중한 태도 시현</li> </ul>
제 3 기 (73.10.26 이후)	金大中 연금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5 수사당국은 金大中의 연금해제 통보</li> <li>○ 10.26 기자회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사건으로 인해 한일간 우호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음</li> <li>- 본인의 해외활동이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국가에 누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함</li> <li>- 본인은 주한미군 철수, 김일성의 연방제 등을 지지한 적이 없음</li> </ul> </li> </ul>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6 김용식 외무장관과 우시로꾸 대사간 회담시 본 사건에 공권력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金大中의 자유회복으로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천명</li> <li>○ 한국의 금번 연금해제 조치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교교섭의 기초가 됨</li> </ul>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의 자유회복만으로 원상회복이란 견해는 일본정부의 소수견해에 불과함</li> <li>○ 内外에 납득이 가고 이치가 통하는 공정한 해결을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음</li> </ul>

시 기	구 분	구 체 적 내 용
사건 해결 (73.11.1~11.2)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 김용식 외무장관 담화 발표</li> <li>- 金 O O은 사건관여 혐의에 따라 免職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며</li> <li>- 11.2 김종필 총리가 訪日, 다나카 수상과 면담시 일본정부와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게 될 것임</li> </ul>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 니카이도 관방장관 담화 발표</li> <li>- 한국 측의 金 O O 관련 인정은 일본 측 수사결과와 합치함</li> <li>- 한국정부가 이와 관련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진상규명을 할 것을 기대하며, 金大中の 자유 회복을 환영하고 訪日을 희망함</li> </ul>
	외교적 해결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 김종필 총리와 다나카 수상간 면담 진행</li> <li>- 金大中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박대통령 親書 전달</li> <li>- 다나카 수상은 김 총리를 파견, 친서 전달 및 우호관계 증진 기대 말씀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回答親書 전달</li> <li>○ 면담 내용</li> <li>- 양국 首腦의 親書 내용 同日 공표에 합의</li> <li>- 양국간 외교적 해결에 합의, 추후 한국 정부가 金 O O 수사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키로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동 문제를 거론치 않기로 약속 117)</li> </ul>

117) 문명자(재미교포 출신 기자)는 “말지”(94.2월호)를 통해 73.10 000 사장 조 O O이 뉴욕에 왔을 때 “박대통령의 부탁으로 오 O O를 통해 다나카 수상을 만나 김대중사건을 해결했다”고 과시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미국무성 한국과장 0000로부터 한국정부가 일본 측에 3억엔을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면서 “73.8.15 조 O O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대통령을 만난 후 8.16~9.21간 3억 엔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의 전일지”를 확인한 결과, 73.8.17 박대통령이 조 O O을 접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또 다른 증언으로 “신동아”(2001.2월호)는 일본 시사주간지 “문예춘추”에 실린 다나카 총리의 측근 기무라 히로야스의 증언을 소개하였는데 기무라는 “당시 이OO 무임소장관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OO씨가 73.10 다나카 수상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당일 총리 관저를 방문한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OO씨가 4억엔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가방을 다나카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73.11.2 김종필 총리와 다나카 수상간 면담시 이OO 장관이 수행을 한 점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외교적 합의이후 양국의 입장

상 황	구 분	구 체 적 내 용
韓日간 상반된 입장 견지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11.8 제3차 수사상황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치차량은 요코하마영사관 劉 O O 부영사 사용 차량이란 용의점 농후</li> </ul> </li> <li>○ 74.7.23 일본 외무차관의 미결사항 처리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大中·梁 O O·金 O O 再來日</li> <li>- 金 O O에 대한 한국 측 수사결과와 조치</li> <li>- 劉 O O 소유차량에 대한 사건 당일 사용실태</li> <li>- 용금호 선원 신원 및 운항 상황</li> </ul> </li> </ul> <p>* 일본 측은 납치사건 발생 1주년인 74.8.8 이전까지 이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중정은 “회답시 金 O O의 관련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 회답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영선 駐日대사에게 그 취지를 전달</p>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8.14 납치사건 관련 내사중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다방면 또는 단계적 수사를 계속하였으나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 관련 자료 未포착</li> <li>- 결국 현 단계에서는 金 O O 등 용의자들의 범행 가담 자료가 없으므로 내사 중지기로 결정</li> </ul> </li> <li>○ 74.8.14 김동조 외무장관과 駐韓 일본대사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장관은 일본대사에게 내사중지 결정서를 전달하면서 73.11 金鍾泌 총리와 다나카 수상간 회담으로 외교적·정치적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 언급 및 내사중지 결정은 수사종결임을 강조</li> <li>- 이에 대해 우시로꾸 일본대사는 일본 측에서 제시한 수사결과 회보 요망 5개 항목 중 劉 O O 소유 차량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다시 수사결과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li> </ul> </li> </ul>

○ 8.15사건 이후 외교적 절충과정

상 황	구 체 적 내 용
한국의 공세적 외교 전환 및 일본 측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8.15 발생한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납치사건 관련 수세적 입장에 있던 한국은 공세적 외교로 전환</li> <li>* 74.9.2 김동조 외무장관이 後宮 일본대사에게 8.15사건에 관한 공범자 및 배후조종자 수사 등을 요구하는 口述書 전달</li> <li>○ 74.10.25 後宮 대사,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납치사건 관련 요구사항을 기재한 口述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O O에 대한 한국 측 취조 결과 등 상세한 내용</li> <li>- 金大中에 대한 13회에 걸친 취조의 상세한 내용</li> <li>- 梁 O O·金 O O에 대한 6회에 걸친 취조의 상세한 내용</li> <li>- 劉 O O 소유차량(品川 55호2077)의 범행 당일과 그 전후의 사용상황에 대한 정보</li> <li>- 용금호의 선원 취조 결과의 상세한 내용과 승선한 선원의 성명과 사진</li> </ul> </li> <li>* 이는 8.15사건을 계기로 한국 측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 측이 제기한 것으로 판단됨</li> <li>○ 74.12월 하순 김동조 외무장관이 UN총회 참석 후 동경을 경유하여 귀국시 일본 측은 “김대중 사건이 정치적인 해결은 보았으나,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남았으니 매듭짓도록 하자. 그것 없이는 경험은 곤란하다”는 입장 통고</li> <li>○ 75.6.27 김영선 駐日대사와 東郷 외무성차관 면담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東郷은 74.10.25자 日측 口述書에 대한 회답을 일 국회가 개최되는 75.7.10~7.15 사이에 받게 되기를 희망하고</li> <li>- 金 O O 문제를 일단 매듭짓자면서 문안에 관해서는 7.10 이전에 협의토록 하자고 제안</li> </ul> </li> </ul>

상 황	구 체 적 내 용
2차 외교적 해결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7.4 金 O O 문제 해결과 일본외상 訪韓에 관한 日측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O O 문제는 한국 측으로부터 쌍방이 사전 양해한 문안의 구술서를 일측이 받고 해결키로 수상, 외상의 양해를 받았는바 73.7.10까지 문안 협의 후 7.15 안에 日측에 수교 요망</li> <li>- 이로써 금후 일본 경찰은 물론 일본정부로서 金 O O 문제는 다시는 재론치 않기로 하겠음</li> </ul> </li> <li>○ 75.7.8 외무부장관은 駐日대사에게 니시야마 駐韓대사가 방문, 日측이 제안한 타결안(구술서 문안 등)에 대해 金 O O 문제 등 김대중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 공표 또는 문서로서 보장할 것 등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통보</li> <li>○ 75.7.9 외무부장관, 김영선 대사에게 지시사항 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O O 문제 등 金大中사건에 관련된 일체 문제를 재론치 않을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던지 별도 문서로 보장할 것</li> <li>- 문세광사건에 관한 日측의 정책을 성실, 조속히 이행할 것을 문서로 보장할 것</li> <li>- 공표는 쌍방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식으로 할 것</li> </ul> </li> <li>○ 75.7.22 김동조 외무장관은 니시야마 駐韓대사에게 金 O O 문제에 관한 口述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 O O에 대해 면직 후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치 못해 74.8.14 내사중지 결정 및 일본 측 제공자료를 활용, 취조를 속행했으나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처분</li> <li>- 金 O O은 일본 경찰당국의 혐의를 받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기 74.12 공무원직을 사직케 하였음</li> </ul> </li> <li>* 외무장관은 駐日대사에게 동 口述書와 관련 日측에 더 이상 再論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지시</li> <li>○ 75.7.24 미야자와 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口述書 내용과 관련 金 O O 문제를 재론치 않을 것이며, 金大中의 신병에 관한 외교적 합의내용이 지켜지는 한 金大中 사건에 관해 더 이상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li> </ul>

## ■ 평 가

- 한국정부는 납치사건 발생 직후 공권력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상은폐에 주력하였는데
  - 사건에 관여된 駐日과견관들의 조기 귀국조치를 통해 일본 당국의 조사를 회피토록 했고,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 金 O O의 출두요청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으며
  - 중정은 「특별수사본부」의 조사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통제와 함께 언론을 통해 “金大中の 조국에 대한 배신행각을 부각”토록 하여 민심을 호도하고 사건을 미궁에 빠지도록 하겠다는 등의 “국내 대책방안”을 작성, 추진하였고
  - 또한 용금호 선원들에게는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으며, 중정 직원들의 경우는 보직관리 등 애로사항 해결로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했고
  - 李厚洛이 87.8 중정 개입을 시인한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안기부에서 이를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事後 관리대책에 부신했으며
- 박대통령은 73.11 다나카 수상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親書를 전달하였으며, 75.7 金 O O을 불기소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일본 정부와 외교협상을 통해 사건을 재론하지 않는데 합의하였음
- ※ 당시 한국정부가 납치사건 진상을 은폐한 잘못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일본정부 또한 한국의 공권력 개입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에 협조한 사실은 결국 잘못된 행위를 묵인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음

## IV 結論 및 意見

### 1 結 論

- 「진실위」는 그동안 진상이 은폐된 채 의혹에 휩싸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온 「김대중납치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사건 발생 후 30여년이 지난 시간적 경과 등에 의해 관련자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진술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었는데
    - 공작계획서를 작성했거나 결재한 李哲熙, 尹 단장, 金 O O 등의 증언내용이 서로 엇갈려 진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 사건관련 핵심자료인 “KT공작계획서”가 발견되지 않아 의혹사항 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으나
  - 당시 중정 O국과 駐日과견관 사이에 송수신된 전문내용이 보존되어 있어 핵심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납치사건에 참여한 전직 중정요원(11명)과 용금호 선원(4명)을 포함 총 18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음
-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의혹사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김대중납치사건」은 당시 중정부장 李厚洛의 지시에 의해 O국 공작단 주도로 駐日과견관들과 용금호 선원들을 동원하여 실행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납치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해행위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정부(중정)의 조직적 진상은폐 실상도 명백히 확인하였음

○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 당시 朴正熙 1인 중심의 초강경 권위주의체제에서 李厚洛 부장이 李哲熙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고, 金 O O 공사가 “박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곧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정황과 더불어

- 납치공작이 한창 진행 중이던 73. 7.27 金大中の 反유신 활동사항을 종합한 내용이 박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되었을 때 공작진행과 관련한 상황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 박대통령이 사건 발생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하였고, 金鍾泌 총리를 파견하여 일본과의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을 종합분석해 볼 때 박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납치공작의 구체적 목표로서 살해계획이 추진되었다는 근거로

- 초기 공작계획 수립 당시 야쿠자를 동원하여 암살하는 방안과 납치 후 외교행낭 편으로 반입하려는 계획이 논의되었다는 관련자 진술에 의거 공작목표에 살해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 납치 현장에 권총과 대형배낭 및 로프를 지참했으며, 용금호에서 칠성관에 몸을 묶은 행위는 잠정적으로 살해할 경우를 대비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 용금호를 국내 이송수단용으로 준비했다는 주장은 오사카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납치실행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설명할 수 없고

- 尹 단장이 金大中을 용금호에 인계한 후 즉시 귀국치 않고 河 O O 국장이 일본에 와서 귀국을 종용할 때까지 지체한 이유가 불명확한 점

등 암살계획이 하달되어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목격자 출현 등 상황 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되었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실제 납치과정에서는 토막살해, 암매장 또는 水葬 등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사실과

- 공작기간이 단기간일 뿐 아니라 다수의 중정요원 및 용금호 선원이 여러 단계에 걸쳐 동원되어 공작이 수행된 것은 비밀누설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살해공작과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으며

- 또한 납치실행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진귀국 설득과 더불어 “金大中 동향보고 재강조” 지침이 하달된 점은 단순 납치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평가

되는 등 단순납치 계획에 대한 여러 근거 또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나 호텔에서 납치한 이후에는 단순 납치계획이 확정되어 실행된 것으로 판단함

○ 韓·日 양국 정부의 납치사건 처리과정을 검토해 보면

- 한국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호도하고, 일본 측과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무마에 나섰으며

- 일본정부는 결국 75.7 金 O O의 불기소처분 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종결하는데 협조한 사실

등 양국 정부 모두 사건의 진상은폐에 관여한 잘못이 있음

## 2 위원회 의견

- 먼저 피해자인 金大中 前 대통령이 납치상황 및 진상은폐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필요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정 직원들은 조직체계상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치공작에 가담한 이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면담과정에서 진솔한 증언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했으며, 특히 현지공작 책임자였던 尹〇〇 및 駐日파견관 金〇〇은 관련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金大中 前 대통령께서는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뜻을 밝혀 왔는데, 이는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앞서 용서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위원회는 조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前職 중정직원들은 金大中 前 대통령께서 납치과정 중 겪었을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로써 진정한 용서와 함께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박대통령이 다나카 수상에게 親書를 전달하면서 납치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지만, 본 위원회는 이번 진상규명 작업을 계기로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이 일본 내에서 납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한편 일본정부 또한 한국의 공권력 개입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합의해줌으로써 결국 사건발생 초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 따라서 본 위원회가 30 여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납치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 韓·日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일본 당국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국정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저지른 정치공작 등 잘못들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국가의 중추적이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 첨부 : 납치 공작관련 電文 등 참고자료

KT 滯美활동 봉쇄공작 예산표(1973.5 추정)											
구분	항목	단위	수량	단가	총액	구분	항목	단위	수량	단가	총액
1. 인건비	인건비	인원	100	100,000	10,000,000	2. 물자비	물자비	종류	100	100,000	10,000,000
	인건비	인원	100	100,000	10,000,000		물자비	종류	100	100,000	10,000,000
	인건비	인원	100	100,000	10,000,000		물자비	종류	100	100,000	10,000,000
2. 물자비	물자비	종류	100	100,000	10,000,000	3. 기타	기타	종류	100	100,000	10,000,000
	물자비	종류	100	100,000	10,000,000		기타	종류	100	100,000	10,000,000
	물자비	종류	100	100,000	10,000,000		기타	종류	100	100,000	10,000,000
3. 기타	기타	종류	100	100,000	10,000,000	4. 합계	합계	종류	100	100,000	10,000,000
	기타	종류	100	100,000	10,000,000		합계	종류	100	100,000	10,000,000
	기타	종류	100	100,000	10,000,000		합계	종류	100	100,000	10,000,000

# 전보용지

위판은            에서  
 기입함

발신: 부            장  
 수신: 주입파견관  
 참조:  
 수신인:

대 :            -151

1. K.T 체일 중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K.T. 및 동조자에 대한 동향 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

가. 자금원 색출 및 봉쇄 방안

**중점** (특히 불순 자금의 유입 여부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나. 주요 접촉인물 및 접촉동향

(일본 정, 재, 언론계 및 조총련, 민단체 망라)

다. 국내외와의 연락 상황(연락방법, 연락대상)

라. 불순 집회 개최 동향

마. 기타 특이 동향.            끝

결	처	전결	차	장	부	상
재	주 7/11/73	전결	x			7/11

KT 滯日 동향감시 철저 지시전문(1973.7.11)

# 전보용지

위판은                   에서  
기입함

발신: 부                   장  
수신: 주입파견관  
참조:  
수신인:

## 1. 상황

KT의 제일 활동은 기보고된 바와 어히 주제국 각기  
에 대한 접촉을 개취하고 있는바임.

## 2. 지시 사항

가. 한일의원간친회 멤버 및 주입 한국특파원,  
민단 요원을 활용 일본외 정계, 언론계 인사와의 접촉을 차  
단할 것.

나. 공관, 민단 친한 단체를 활용 언론기관 견제  
및 주입 의신구                   을 비롯한 주입특파원을 활용 KT 비난  
자료 유포토록 할 것.

다. 베트남 파를 적색분자로 완전 규정 발표, 접촉  
명분을 제거시키고 첩망<sup>을</sup> 활용한 베트남 파 자금원을 수출 박  
도 하고 민단 간부 및 한민자통 세력을 활용하여 각계 격파  
할 것.                   끝

KT 滯日 동향감시관련 추가지시 전문(1973.7.16)

# 전보용지

위란은 :에서  
기입함

발신:부 장

수신:주 일 파견관

참 조:

수신인:

연 : -07164

1. KT 동향 보고를 매일 12:00 마감으로 15:00까지  
본부 도착토록 책임 이행할 것.

2. 긴급 사항은 수시 보고 하되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조치와 활동 계획을 필히 보고 할 것.

3. ■■■은 책임 활동관을 선정, 본부 지시 이행에 차질  
없도록 가능한 활동 지원책을 강구할 것.

4. 전담 책임 활동관은 가능한 협조자 및 인원을 활  
용, 본건 임무 및 지시사항을 책임 수행 할 것. 끝

결					차장보	차 장 부	활
9/13	9/13	9/13	9/13	9/13	9/13	9/13	9/13

인

KT 滯日동향 일일보고 체계 확립 지시전문(1973.7.13)

번호: - 0739 일 시: 181840

수신: 부 장  
발신: 주 일 파 견 관



제목: K T 동향 보고:

1. 협조자 이 금일 1730분 에게 제보한바

에의하면 KT 는 금일 11시부터 11시30분 까지 후 2차 야 에서 총련  
부의장과 접촉 하였다고함. 동 석상에서 총련 부의장은 KT 가 평양을  
방문 하도록 종용 했으며 KT 는 이를 즉석에서 응하지는 않았으나 방문  
할 뜻을 비쳤다고함.

동면담 석상에는 전주한 루파원 배 [redacted] 가 참석했으며, 동사항을  
에게 알려주었다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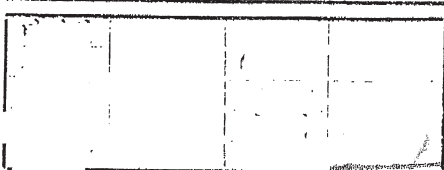
2. - 07251 전분 지시는 긴요한 실정이며, 동방안을 작성 73.

7. 19. 중으로특별 파우치면/로 건의 하겠음 ( )

( "별도 취급" )

			가	장	보	차	장	부	수
			가	장	보	차	장	부	수

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mps are present over the table.



KT공작계획안 작성 · 보고 추정 전문내용(1973.7.18)

전 보

종 별

번호: - 160

일시: 21 09 00

수신: 부 장  
발신: 주 일 파견관

	21 09 00
	21 09 10

제목: KT 동향 감시

KT 동향지시를 위하여 파견관 전원을 동원하여 데이오 부라자, 제국호텔, 신바시 다이이찌 호텔, 긴자 다이이찌 호텔, 뉴오다니 호텔, 드코 프랑스 호텔, 오구타 호텔도 잠복 행동 감시하였으나 특별하게 나타난 증거 없음 계속 24 시간 동향 감시 하고있음 ( ) 끝

일	시간	장소	차량번호	차량	부상
21	09	KT			

--	--

駐日파견관 전원 동원, 납치실행 착수 보고 전문(1973.7.21)

중요보고

일시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top right corner, including the name '홍기' and other illegible characters.

정보출처:

제 목: 金大中 滯美·日 活動 綜合 (第4報)

내 용:

1. 金大中은 72. 10. 11. 出國以來 5次에 걸쳐 美國·日本을 往來하면서 反政府 活動을 展開해 온바 便宜上 金大中 의 海外 反政府 活動을 다음과 같이 5期로 区分하여 動向을 綜合分析 하였음.

- 第1期: 日本 (72. 10. 11 ~ 11. 13)
- 第2期: 美國 (72. 11. 14 ~ 73. 1. 4)
- 第3期: 日本 (73. 1. 5 ~ 3. 24)
- 第4期: 美國 (73. 3. 25 ~ 7. 9)
- 第5期: 日本 (73. 7. 10 ~ )

마-356 71. 9. 1

김대중 滯美·日 活動 綜合 (제4보, 1973.7.27)



2. 本報告書는 金大中 滯美 日活動  
 相의 第4報로 綜合된 것으로서  
 第4期末 (美國活動) 以後 第5期  
 (現在 日本活動) 까지의 主要活動  
 을 類型別로 区分 綜合하고 國內  
 金大中 側近人物 및 國外 金大中  
 支援人物들의 動靜을 蒐集 収録  
 한 것임.

*비밀로써 소치함*

※ 本報告書는 靑瓦台에 即報 하는  
 한편 關係機關 (政務首席, \*民情  
 首席, \*公報首席, 總理) 等에  
 配布함이 可하겠음.

*정호익*

3



X

金 大 中  
 滯 美 · 日 · 活 動 綜 合  
 ( 第 4 報 )

73 . 7 . 27

전 보

종 별

번호 : 07662 일 시 : 301930

수신 : 부 장

발신 : 주 일 파견 관

30 1945  
2010

KT 동향:

1. KT 친근자인 김 [ ] 을 추측 미행 KT 거트 확인중인바,
2. 김 [ ] 거처인 도즈가 2 - 16 으로부터 약 1년전에 이사를 갔으며, 하하다만손 805 토실로 이사만 간것으로 추측 현재 확인중임.
3. KT 공작에 맞선 다른 구체적인 사항 7. 31. 특별 파우치 편으로 송부 위계임 ( )

설				차장보	화	장	부
서				전			

要約報告畢

김 [ ]

--	--

KT공작관계 보고서 송부관련 전문(1973.7.31)

전 보

종 별

번호: 06673 일 시: 71 11:21

수신: 부 장

발신: 주 일 파 견 관

3/12/10
1220

7.31/7.16:00 하네마 빌KE-702 편 보안관에게 KT 공작 관계 보고서를 송부 하오니 수령 바랍니다.

연					차장보	자 장	부 장
재	2007	7/31/19	송부	전결			


KT공작관계 보고서 송부관련 전문(1973.7.31)

전 보

중 별

번호: -07681

일시: 31. 15:20

수신: 부 장

발신: 주 일 파 견 관

	31 16%
	1710

제목: K T 동향 .

1. 73.7.30.19:00 협조자 (동명 ) 으로 부터 신주구구 사  
 신주구구장 ( 한식점 ) 에서 KT 의 2명이 식사하고 있다는 우연한 제보  
 에의거 윤단장 파견관 [redacted] 주시 현장에 도착함바

KT 는 이미 등업식점으로 부터 활취을 감추었음

2. 은 닉름 김모와 자주접촉친근한 편이며  
 KT 건은 김모하 에게 KT 가 식사하고있다고 언급한것임.

3. [redacted] 은 조종 [redacted] 신분 가 [redacted] 이  
 73.8.1.19:30분KT 와 만나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었음. 끝

결					차장보	차 장	부 장
재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전 결		[redacted]

[redacted]


남치실행을 위한 현장출동 상황보고 전문(1973.7.31)

전 보

중 별

번호: - 08028 일 시: 01 17:40

수신: 부 장

발신: 주 일 파 견 관

	이/19 20
	19 20 K

제목: KT 동향

조종에 의하여 은 8.1.19:00 신문 와KT 와  
 적출후 모 장소로 옮겨 주연을 베풀 예정인바 한스를 보아 지시될 사항 이행  
 예정임, ( )

결				차장보	차	장	부	장
재		홍	홍	1978 8 12	전	결		

김대중


협조자 활용, 김대중 유인 후 지시사항 이행 전문(1978.8.1)

# 전 보 용 지

06 2030

위판은                   에서  
기입함

발 신 : 부 장  
수 신 : 주일과전반  
참 조 :  
수신인 :

접수일자: 73.8.6					
☑	☐	☐	☐	☐	☐

과                   - 08095

1. 국장이 이회호에 대한 조종을 실시한 결과 이회호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2. 반응  
복역중인 김상현등에 대한 구명 책임감은 충분히 느끼고 갖의 귀국후의 신분보장만 하여 준다면 귀국토록 설득하겠다고 함
3. 조종결과 이회호는 K.T 귀국 설득의 결심이 선것으로 판단됨으로 앞                   은 조종 K.T가 스스로 이회호에게 전화를하여 귀국가부를 문의 하도록 조종할것
4. K.T의 명세 및 건강상태를 상세히 확인 보고 할것

결	부 장	전 결	자장보	차 장	부 장
[인]	[인]	[인]	[인]	[인]	[인]

납치실행 직전 자진귀국 설득지시 전문(1973.8.6)

# 전보용지

-0810  
2 1010

위판은                   에서  
기입함

발신: 부                   장  
수신: 주입파견관  
참조:  
수신인:

접수일자: 73. 8. 7	취급구분 (암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 :                   -07164, 07302,                   -1739

1. 입장수 동향 입입보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  
이행에 만전을 기함 것.

가. 입장수의 동향에 대하여는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  
적으로 보고하고 막연한 보고는 지양하므로서 상황 자체가  
임무 수행의 가능성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것.  
(예: "지방을 마중"임 경우, 출마목적, 접촉내용 등은 추후 보  
고한다하드라도 최소한 언제, 누구와 어디로 갔다는 정도는  
보고되어야함 것임)

나. 입장영 및 베트남 파 주요 인물 동향도 입입보고 사  
항에 포함시킬 것.

다. 추후 확인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 지시가 없  
라도 자동적으로 보고하여 보고에 입관성이 있도록 유의함 것  
(예: "입장수와 베트남 파는 베트남 파사무실에서 회합하였음"  
이라는 보고에 대하여는 회합내용, 참석자등 구체적인 사항을  
만드시 추후 확인 보고함 것)

납치실행 하루 전 김대중 동향보고 재강조 지시전문(1973.8.7)



# 전 보 용 지

위판은                   에서  
기입함

발 선 :  
수 선 :  
참 조 :  
수신인 :

접수일자 :

취급구분

□	□	□

라. 전 [ ] 는 주입부 수행과정에서 <sup>합합수</sup> 및 베르  
종 파악에 관한 동향이 입수되는 즉시 이 이를 종합보고  
할 수 있는 제제를 확립 함 것.

2. 추후 본건 보고 사항은 -1739에 따른 부호를  
사용 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조 후 부호 부여 대상범위  
를 확대하여도 가함.                    끝

결						차장보	차 장	부 장
재	3/23/88	3/23/88	3/23/88	3/23/88	3/23/88	3/23/88	3/23/88	3/23/88

K . T  
敗家에 따른 動向 및 對策 方案

73. 8. 14.

중정 작성 事後 대책방안 문건 (1973. 8. 14)

## 目 次

### I. KT 敝社를 圍繞한 動向

1. KT 與 側近 動向
2. 敝社에 對한 反應
3. 檢 査 動向
4. 日本 KT 事件 特別 搜查本部

### II. 予想되는 問題點

1. 國際的 問題點
2. 國內的 問題點

### III. 對処 方案

1. 報道 調整
2. 警察 搜查 発表
3. 政府 解明 措置
4. KT 身柄 處理

5. 事件 終結 處理 方向
6. 政治 對策
7. 動向 監視 措置
8. 流言 蜚語 團束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Ⅲ)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정치 · 사법편(Ⅳ)

● 언론 · 노동편(Ⅴ)

● 학원 · 간첩편(Ⅵ)

## 과거와 대화

# 미래의 성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

편 집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발행처 | 국가정보원

발간일 | 2007년 10월 10일